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 인도에 반한 죄를 중심으로 -

이규창 외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 인도에 반한 죄를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이규창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실장)
공동연구자: 도경옥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위원)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
조영아 (상지대학교 부교수)
한명섭 (통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 인도에 반한 죄를 중심으로 -

통일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범죄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3/5년차) KINU 연구총서 17-01

발 행 일 2017년 12월 15일
저 자 이규창, 도경옥, 이영환, 조영아, 한명섭
발 행 인 손기웅
발 행 처 통일연구원
편 집 인 통일정책연구실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02-2023-8000
(FAX) 02-2023-8296
홈 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아미고디자인(02-517-5043)
인쇄처 (주)아미고디자인(02-517-5043)
I S B N 978-89-8479-886-1 93340
남북 통일 문제[南北統一問題]
340.911-KDC6 / 320.9519-DDC23 CIP2017031253
가 격 11,500원

© 통일연구원, 2017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 인도에 반한 죄를 중심으로 -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차 례

요약	9
I. 문제제기	19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1
2. 주요 개념	23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26
II. 복권 방안	29
1. 통일독일의 복권제도	32
2. 통일한국의 북한주민 복권 방안	53
3. 소결	67
III. 보상·배상 및 특별지원 방안	69
1. 국내법에 의한 보상·배상 및 명예회복과 특별지원	74
2. 국제형사제도에 의한 배상	95
3. 소결	121
IV. 인간존엄성 및 정신건강 회복 방안	123
1. 국내외 피해 사례와 치료적 시사점	125
2. 피해 북한주민의 심리적 외상의 영향과 치료 방안	138
3. 정신건강 지원정책	161
4. 소결	167

북한인권 피해규제 방안과 과제

- 인도에 반한 죄를 중심으로 -

V. 매장지 조사·발굴 및 유전자 보존 방안	169
1.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의 불가결성	171
2. 매장 추정지 조사	179
3. 향후 현장조사·발굴 시 고려사항과 준비방향	191
4. 유전자 정보의 수집과 보존·활용	204
5. 소결	217
VI. 결론 및 정책적 고려사항	219
참고문헌	227
부 록	242
최근 발간자료 안내	251

표 차례

표 III-1 COI의 북한에 의한 인도에 반한 죄 판단	83
표 III-2 국내 전환기 정의 사례의 피해보상 및 명예회복과 지원	84
표 III-3 Lubanga 사건 상소심재판부의 배상명령	112
표 III-4 Lubanga 사건 신탁기금의 상징적 집단배상 프로젝트	115

그림 차례

그림 V-1 각 도별 추정 매장지 및 시체처리장소 현황	182
그림 V-2 인권유린 피해사망자 유해 발굴 필요성	185
그림 V-3 유해 발굴이 필요한 이유	186
그림 V-4 유해 발굴이 불필요한 이유	186
그림 V-5 북한의 전환기에 고려되어야 할 매장지 처리 우선순위	187

요 약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큰 충격과 피해를 입은 북한주민들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통일 이후 사회통합의 초석이 마련될 수 있다. 인도에 반한 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북한주민들에게 법적인 차원에서 금전적인 보상·배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사법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구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인식에 따라 본 연구보고서는 구제의 대상으로 법적인 측면에서의 피해자들의 복권(復權)과 배상·보상 외에 인간존엄성 및 정신건강 회복 문제와 매장지 조사·발굴 및 유전자 보존 문제를 다루었다.

제II장에서는 복권 문제를 살펴보았다. 통일 이후 피해자 복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독일의 경우와 같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통일독일은 피해자 복권 문제에 대해 통일 초기에는 기존 동서독의 관련 제도를 활용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형사복권법·행정복권법·직업복권법의 제정을 통해 자유법치국가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판결과 행정처분에 대한 파기 내지 무효화 조치를 하고 그에 따른 후속청구권으로 각종 보상과 원호 조치를 취하였다. 특별법은 정당성 확보를 위해 통일합의서나 통일헌법에 근거하여 통일한국의 새로운 의회가 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률 형태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가능하다면 전환기 정의와 관련된 진실규명, 가해자 처벌, 피해자 구제, 불법 기록물 보존관리, 사회문화적 청산사업 등을 규율하는 포괄적인 단일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통일 과정과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성과 시급성에 따라 각 기제별로 단행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통일독일의 경우 형사복권법과 행정복권법 및 직업복권법을 구분하였으나 남북한 통일의 경우에는 굳이 행정복권법과 직업복권법을 이원화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정권에 의한 체제불법적 판결이나 행정처분에 대한

요 약

파기 내지 무효화의 판단은 그 기준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양립가능 한지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의 양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매우 어려운 사법적 판단으로 사전에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 하기도 어려워 결국은 개별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 기준을 형성해 나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형사복권이나 행정복권의 심사는 모두 법원이 관할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원의 복권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에 따라 발생하는 추후청구권에 기인한 보상 등의 조치는 행정업무에 해당하므로 기존의 관련 행정부서나 복권청과 같은 새로운 행정기구를 설립하여 담당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복권 관련 특별법에서는 이와 같은 업무 관할과 심사기준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신청 및 재판절차, 결정 및 효과, 불복방법 등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장에서서는 배상·보상 및 특별지원 방안을 분석하였다. 통일로 인해 북한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실체가 사라지고 북한 정권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통일한국에 승계되지 않게 된다. 이 점에서 통일한국이 인도에 반한 죄로 인한 북한주민의 피해를 보전해주어야 한다면 이는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배상이 아니라 보상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데 그 형태는 포괄입법의 형태와 개별입법의 형태 모두 가능하다. 보상과 함께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이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추모시설 건립 및 위령사업, 인권침해 보존 등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특별법을 운영할 위원회는 포괄입법의 경우에는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하거나 대통령 직속 기구로 운영하고, 개별입법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보상의 수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인도에 반한 죄의 행위 유형에 따라 다르게

요 약

산정할 필요가 있고, 유엔인권피해자 권리구제원칙을 비롯한 국제법상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인도에 반한 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북한주민들과 그 가족 및 유족들에게 특별법 제정을 통한 특별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별지원의 내용은 의료지원, 생활지원 및 생계지원 등이 되어야 한다.

제Ⅳ장에서는 인간존엄성 및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북한 피해주민들의 회복은 단순히 전문가의 치료적 노력으로 달성되지 않으며,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사회적 노력과 국가의 지원정책, 민간 차원의 활동과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노력이 뒷받침 될 때 가능하다. 첫째, 피해자의 인간존엄성 회복을 위해 통일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의 회복이 필요하다. 사회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 조치와 정책은 북한 범죄피해자들의 인간존엄성과 정신건강 회복의 기초가 될 것이다. 경제적 배상, 명예회복, 진상규명 및 가해자의 진실한 사과, 국가의 공개적 사과, 추모위령사업 같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를 덜어주려는 현실적인 노력이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적 치유 노력에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피해자들의 물리적, 신체적, 법적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지원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피해 북한주민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적 지원, 신체적 질병치료를 위한 의료지원, 안정된 주거지원, 범죄피해에 대한 경제적 보상 및 배상, 생계비 지원 등에 관한 국가 차원의 사회지원정책 및 제도가 확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셋째, 피해자들 및 유가족들의 심리적 외상 치료를 위한 전문센터를 국가 차원에서 설립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기관을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전문적인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분단시기 동안 국가로부터 부당한 폭력을 입은 피해자들의 치유에 대한 노하우를

요 약

쌓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전문치료와 전문가 교육의 허브를 담당하고, 치료의 전문성을 높이며, 병원, 법원, 경찰, 사회복지체계, 정책 결정자와 같은 다양한 관련 기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통일 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과거의 역사적 기억에 대한 공동체의 공동된 기억을 마련하고, 이 기억을 인정하며, 공동체 전체가 과거에 저질러진 불의에 대해 치유적 공동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다양한 기회와 프로그램, 공간 등이 마련되어야 하며, 관련 분야에서 민간단체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심리적 외상 치료 및 사회갈등 조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을 설립,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정부와 사회기관은 지역사회의 지지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동체의 치유적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방송이나 교육을 통해 대중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거나, 외상의 증상이나 대처법,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심리교육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준전문가를 발굴하여 피해자의 지역사회 연결과 회복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피해자의 치료와 관련된 다양한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연대 활동을 통해서 피해자의 치료에 대한 전문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심리 외상 전문 치료 기관, 국가 폭력 피해자 재활기관, 사회갈등조정 기관이 함께 연대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적 역량을 쌓아나가야 한다. 여덟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치료적 접근의 문화적 적합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

요 약

자들의 외상의 심각도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치료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북한 문화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적으로 민감하고 적절한 평가와 진단, 치료개입, 지역사회 연결과 공동체 안에서 회복과정 수립이 필요하다.

제V장에서는 매장지 조사·발굴 및 유전자 보존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었다. 통일과정에서의 북한지역 내 인권범죄 피해사망자 매장지 조사와 유해 발굴, 신원 확인 등 일련의 과제는 진실규명과 법과학적 증거물 확보를 통한 가해자 책임규명, 피해자 배·보상 및 지원정책 수립 기초를 마련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또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유해 발굴과 현장보존 작업이 지역 경제사회기반시설 건설에 대한 기대와 충돌할 가능성을 낮추고, 북한지역 주민들의 기대하는 방향으로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중요한 일이다. 북한 전역에 걸쳐 진행되어야 할 발굴 작업과 유전자 정보의 수집과 활용 과정에 북한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지역 주민들이 정의와 법치의 실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면 민주주의의 안착에도 기여할 수 있다. 통일 과정에서 북한 전역의 수많은 매장지들을 현장조사하고 유해를 발굴하며 신원을 감식하는 일에는 막대한 인력과 재정투입이 필요할 것이다. 향후 북한지역에서의 현장조사와 발굴 등에 필요한 정책적 대비의 뼈대로서 정부 차원에서는 국내의 전문가풀을 구축하여 필요예산 규모와 전문인력 규모, 구성 및 운영방안 등에 관한 기초연구를 시작할만하다. 또한 대규모 인권범죄 현장에서 유해를 발굴할 때 중요한 문제인 현장훼손 방지, 피해가족 참여와 현지주민 협조, 정보제공자와 현장인력 안전조치 등에 관한 국제사례의 시사점을 모으고 우리 현실에 맞도록 발전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요 약

분단이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는 북한인권문제의 피해자일 수 있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로부터 유전자 정보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한 법률과 제도를 모색하고, 탈북민들의 유전자 정보 수집·보존 방안을 우선 구상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인권침해 우려를 초래하지 않도록 인권의 보호와 증진 목적, 절차와 수단이 명확하여야 하고, 당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이산가족 및 납북자, 국군포로 가족 유전자 정보 수집과 보존은 계속되어야 하고 참여율도 높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정부 부처나 기관마다 독자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있는 여러 유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들을 필요한 시기에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 나가야 한다.

본 연구보고서에서 다룬 피해자 복권, 보상, 명예회복, 특별지원, 인간 존엄성 및 정신건강 회복, 매장지 조사·발굴과 유전자 보존 방안은 각각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면서 상호 연관되어 있다. 북한주민들의 온전한 구제를 위해서는 이 네 가지 분야의 구제가 동시에 추진되어야만 한다. 특별법 제정도 각자 독자적인 영역을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 외에 이 네 가지 영역을 동시에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북한주민들의 구제를 위해 통일한국의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동시에 통일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해, 그리고 7천 5백만 통일한국의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게 어울려 살 수 있는 공동체의 형성을 위해서는 민간의 자발적인 활동이 정부의 역할 못지않게 중요하다. 북한주민들의 복권, 보상, 의료지원, 심리치료, 생활지원 및 생계지원,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인간존엄성 및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 매장지 조사·발굴과 유전자 보존 활동은 오랜 시간과 상당한 재원이 소요된다. 이를 위해서는 범죄은닉 재산 활용 등을 통한 재

요 약

원 마련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 이후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원 마련 방안의 일환으로 로마규정상의 피해자배상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로마규정 이행법률에는 피해자배상제도에 상응하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련 판례에 주목하면서 피해자배상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피해구제, 복권, 피해자배상제도, 매장지 발굴, 트라우마 치료

Abstract

Measurements and Challenges to Relieve Victims of North Korea Human Right Abuses

Lee, Kyu-Chang et al.

Effective measurements should be devised to relieve North Korean residents who have suffered tremendous shocks and damages by the crimes against the humanity. To relieve North Korean residents, legal, psychological, historical, and social factors should be comprehensively considered. This study tackles with (1)right reinstatement of the victims, (2)reparation and special support, (3)rehabilitation of human dignity and psychological recovery, (4)investigation and excavation of burial, and conservation of gene. To fully relieve North Korean residents, all these four sectors should be simultaneously handled. Measures to enact Special Act that regulates all four sectors simultaneously should be devised, as well as the Special Acts that cover each sectors independently. Relief of North Koreans requisites active role of unified Korean government and voluntary act of nongovernmental actors. Substantial financial expenses are required to relieve North Korean residents. To secure funding, measurements utilizing concealed property of criminals and etc should be considered. In addition, seeking measurements to utilize order of compensation by enacting Special Act after the unification is necessary. Furthermore, measures to utilize order of compensation system under the Rome Statute should be examined. Focusing on ICC rela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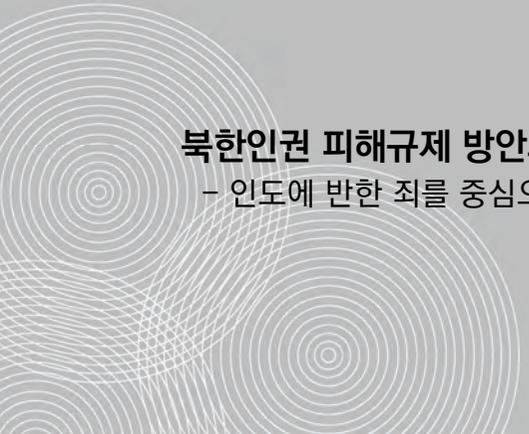
Abstract

case studies, introducing order of compensation system should be reviewed.

Keywords: Victim Relief, Reinstatement of Right, Reparation to Victims of Crimes, Excavation of Burial, Trauma Care

I. 문제제기

이규창(통일연구원)



북한인권 피해규제 방안과 과제

- 인도에 반한 죄를 중심으로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남북통일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범죄가 발생가능하며 통일정책 및 사회통합, 북한인권 측면에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둘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통일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범죄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5개년 연구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5개년 연구 가운데 3년차 연구에 해당한다. 1년차(2015년)에는 범죄의 경제적인 현상에 주목하여 통일과정에서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경제범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¹⁾

통일과정에서 발생가능한, 그리고 현재에도 발생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범죄는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라고 할 수 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는 2014년 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내의 인권침해 행위를 광범위하게 조사한 후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이하 ‘로마규정’)상의 네 가지 관할대상범죄 가운데 하나인 인도에 반한 죄가 북한에서 자행되어 왔으며 현재도 자행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²⁾ COI 보고서 발표 이후 국제사회는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 등의 북한인권결의를 비롯하여 북한 당국에 의한 인도에 반한 죄 위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회부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2년차인 2016년부터는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고

¹⁾ 이규창 외,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서울: 통일연구원, 2015).

²⁾ UN Doc. A/HRC/25/63 (7 February 2014),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aras. 74~79; UN Doc. A/HRC/25/CPR.1 (7 February 2014),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aras. 1166~1210.

있는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관련 요소들을 북한문제에 적용하여 향후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의 통일정책 및 사회통합정책의 과제들을 도출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전환기 정의는 가해자 처벌, 피해자 구제, 기관개혁, 진실화해 등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법적 분야와 비사법적 분야가 혼합되어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전환기 정의 요소들 가운데 2년차(2016년)에는 인도에 반한 죄를 위반한 북한인권 가해자들의 책임(accountability)규명 문제를 다루었다.³⁾ 이어 3년차(2017년)인 금년에는 인도에 반한 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북한주민에 대한 구제(救濟)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적절히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통일 이후 인권침해 및 피해에 대하여 구제를 하는 것은 전환기 정의에 있어 중요한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⁴⁾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큰 충격과 피해를 입은 북한주민들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통일 이후 사회통합의 초석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과제의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한편, 이 보고서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 또는 ‘범죄피해’는 남한의 「범죄피해자 보호법」(법률 제14583호)상의 범죄피해 내지 범죄피해자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피해자’를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정의하고(제3조 제1호), 범죄피해자들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여러 제도적인 장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본 연구보고서에서 언급하는 ‘범죄피해’ 또는 ‘범죄피해를 입은 북한주민’들이란 북한지역에서 북한 당국에 의해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 특히 인도에 반한 죄로 인해 발생한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와 그러한 피해를 입은 북한주민과 그 가족을 말한다.

3) 이규창 외,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로마규정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16).

4) 강윤주, “통일 법적 마련에 있어 국제법상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구현의 필요성,” 법제처, 『2016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세종: 법제처, 2016), p. 4.

2. 주요 개념

첫째, 본 연구보고서는 북한인권 피해자들의 ‘구제(救濟)’를 다룬다. 구제의 사전적인 의미는 “자연적인 재해나 사회적인 피해를 당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다.⁵⁾ 그런데 구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법적인 정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내법에 구제 문제를 다루는 여러 특별법이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구제에 대한 법적인 정의는 내리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피해구제에 대한 정의 없이 배상 및 위로지원(제6조), 손실보상(제7조), 사실조사(제9조)를 구제의 내용으로 규율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도 마찬가지로 피해구제에 대한 정의 없이 손해배상(제4조)과 손해배상을 위해 필요한 정보청구권(제6조) 문제를 다루고 있다.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역시 구제에 대한 법적인 정의를 내리지 않고 구제의 방법으로 재임용 탈락 교원에 대한 재임용 재심사를 규율하고 있다(제1조). 이 밖에 「석면피해구제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의 특별법에도 구제가 등장하고 있지만 구제에 대한 정의는 내리지 않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제에 대한 법적인 정의를 찾아보기 어렵지만 구제는 법적인 측면에서 주로 배상이나 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구제를 법적인 측면으로만 국한하여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구제는 사회적, 심리적, 역사적인 측면 등 비사법적인 영역까지 확대하여 이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도에 반한 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들에게 법적인 차원에서 금전적인 보상·배상⁶⁾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사법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⁵⁾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구제”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검색일: 2017.07.07.).

형태의 구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인권피해자 권리구제원칙은 피해자 구제와 관련하여 피해배상, 원상회복, 금전배상 외에 의료서비스와 정신건강 서비스, 진상규명, 실종자 및 사망자 수색, 매장지 조사, 피해자 추모사업 등을 배상(reparation)에 포함시켜 기술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은 2014년 유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배상 프로그램은 물질적 조치(material measures)가 따르는 프로그램과 상징적 조치(symbolic measures)가 따르는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상징적 조치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상징적 조치들이 피해자들을 기억하게 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⁷⁾ 또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일반논평 제3호는 고문방지협약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 ‘구제(redress)’에는 보상이 포함되며, 보상의 개념에는 원상회복, 배상, 재할, 만족, 재발방지 약속 및 고문방지협약상의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 해당된다는 유권적인 해석을 내리고 있다.⁸⁾ 유엔 고문특별보고관을 역임한 노박(Manfred Nowak)도 피해자들은 금전배상 외에 자신들의 존엄성을 회복하기에 가장 적합한 보상 방안에 관심이 있다고 보고 있다.⁹⁾ 특히, 고문 피해자들은 장기간 육체적 피해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⁶⁾ 국내법상의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reparation, compensation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본 연구보고서에 reparation은 배상으로, compensation은 금전배상으로 번역하여 사용한다. 용어 번역과 관련하여서는 제III장 제2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한다.

⁷⁾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of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 UN Doc. A/69/518 (14 October 2014), paras. 84~85.

⁸⁾ Committee against Torture, General Comment No. 3, UN Doc. CAT/C/GC/3 (19 November 2012), para. 2.

⁹⁾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Manfred Nowak, UN Doc. A/HRC/4/33 (15 January 2007), para. 64.

Stress Disorders: PTSD)로 인해 고통을 당했다는 점에서 다양한 형태의 의학적, 정신적, 사회적 및 법적 복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¹⁰⁾ 구제를 배상 및 보상 등 금전적, 법적 측면에 국한하여 좁게 이해하고 있는 국내와는 달리 국제사회는 구제의 범위를 넓게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엔인권피해자 권리구제원칙과 유엔고문방지위원회의 일반논평 제3호에 대해서는 제Ⅲ장 제1절에서 살펴본다.

둘째, 본 연구보고서는 ‘피해자’의 문제를 다룬다. 피해자의 범주는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피해로 인한 사망자와 그 유족까지를 포함한다. 피해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Ⅲ장에서 유엔인권피해자 권리구제원칙을 설명하면서 다시 한 번 언급한다.

셋째, 본 연구보고서는 인도에 반한 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인도에 반한 죄란 로마규정 제7조에 정의되어 있는데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그 공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행하여진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살해, 절멸, 노예화, 성폭력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도 로마규정과 마찬가지로 인도에 반한 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연구보고서가 인도에 반한 죄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COI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인도에 반한 죄가 북한인권 현안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통일과정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¹⁰⁾ *Ibid.*, para. 66.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본 연구보고서는 다양한 구제의 형태 내지는 방법 가운데 복권(復權), 보상·배상 및 특별지원 방안, 인간존엄성 및 정신건강 회복 방안, 매장지 조사·발굴과 유전자 보존 방안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피해자 구제 방안과 이에 따르는 법·정책적 과제를 살펴본다.

제II장에서는 북한주민들의 복권 방안을 분석한다. 제II장에서 주된 연구 방법은 통일독일과의 비교를 통한 비교법적 고찰이다. 통일독일 사례를 택한 이유는 피해자 구제 방안의 일환으로 복권 문제가 가장 활발하게 논의된 사례가 통일독일 사례이기 때문이다. 통일독일의 경우 구동독 정권에 의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구제를 위해 형사복권법, 행정복권법, 직업복권법을 제정하였다. 독일 사례 분석을 통해 북한 정권에 의해 피해를 입은 북한주민들에 대한 형사복권, 행정복권, 직업복권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경우의 법정책적인 과제를 살펴본다.

제III장에서는 인도에 반한 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북한주민들에 대한 국내법상의 보상·배상 방안 및 국제형사법에 의한 배상 방안을 분석한다. 특히, 국내법에 의한 보상의 경우 북한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삶의 영위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피해를 입은 북한주민에 대한 특별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제IV장에서는 피해자들의 인간존엄성 및 정신건강 회복 문제를 다룬다. 북한에서 고문, 가혹행위, 성폭행 등 심각한 범죄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은 북한주민들은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자존감이 매우 낮은 상태로 북한주민들의 온전한 구제를 위해서는 인간존엄성 및 정신건강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한다. 북한에서 인도에 반한 죄는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행위 유형의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가장 심각한 곳이 정치범수용소와 교화소이다.¹¹⁾ 정치범수용소 수용자들은 인간이 아닌 ‘강제노동을 위한 도구’나 ‘일하는 개미’로 취급되고 있는 실정이다.¹²⁾ 이들이

통일 이후 인격을 가진 개별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향유하고,¹³⁾ 나아가 통일한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¹⁴⁾ 파괴된 인간존엄성과 정신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비단 개인적인 차원을 떠나 사회통합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비금전적 수단으로서 심각한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한 상담과 치료, 오랜 구금이나 기근 상태로 인하여 저하된 건강회복을 위한 의료 시스템 구비도 피해자 구제의 일환으로 준비되어야 한다.¹⁵⁾

제V장에서는 매장지 조사·발굴 및 유전자 보존 문제를 다룬다. 이 문제를 피해자 구제의 범주에 포함시킨 이유는 많은 북한주민들이 인도에 반한 죄로 이미 사망하여 복권 및 명예회복, 보상, 배상, 추모 및 위령(慰靈) 사업 등의 조치를 위해서는 매장지 조사·발굴과 유전자 보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해 발굴과 보존, 위령 사업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화해 및 피해자의 명예회복, 그리고 기억을 위해 중요하다¹⁶⁾고 보는 인식과 일맥상통한다.

피해자 구제는 국내에서 소위 과거청산 또는 (체제)불법청산과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본 연구

11) COI 보고서에 따르면 살해, 절멸, 노예화, 고문, 성폭력 등의 인도에 반한 죄가 정치범수용소, 교화소 등에서 자행되었으며, 현재도 자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표 III-1〉 참조.

12) 이금순·김수암·이규창, 『북한 정치범수용소』 (서울: 통일연구원, 2013), pp. 61~62, p. 80

13) 세계인권선언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14) 남한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이하 생략).

15) 강운주, “통일 법제 마련에 있어 국제법상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구현의 필요성,” p. 66.

16) 김동춘, 『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 (서울: (주)사계절출판사, 2014), pp. 396~400.

는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우려하고 있는 인도에 반한 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이가 난다. 또한 기존 연구는 국내법에 의해 구제, 그중에서도 복권과 보상으로 연구의 범위가 한정되었다.¹⁷⁾ 반면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성과에 더해 국제형사법에 의한 배상제도까지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국내법에 의한 보상의 경우에도 단순한 보상 차원에서 더 나아가 사회보장제도와 연계 방안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보고서는 기존의 법적 접근 중심의 연구에서 비사법적인 연구 주제인 희생자 추모, 인간존엄성 및 정신건강 회복 문제까지 연구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실효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사법적인 측면과 비사법적인 측면, 제도적인 측면과 내적통합의 측면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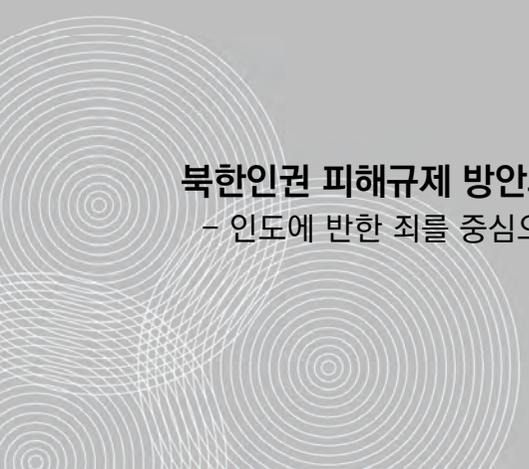
연구의 범위와 관련하여 시기는 통일 이후를 대상으로 한다. 북한 당국의 지속적인 인권침해, 북한의 낮은 법의식, 효과적인 구제제도의 미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북한 당국에 의해 피해를 입은 북한주민들이 통일 이전 북한 사법제도에 의해 복권, 보상 및 배상, 정신건강 회복 등의 구제를 받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연구진은 통일법, 국제법, 북한인권, 상담학 전문가로 구성된 학제간 공동연구로 구성되었다. 제I장 문제제기는 연구책임자인 이규창이 담당하였고, 제II장은 한명섭이, 제III장은 이규창과 도경옥이 공동집필하였다. 제IV장은 상담학 전문가인 조영아가 담당하였고, 제V장은 이영환이 집필하였다. 제VI장은 연구진들의 집필내용을 토대로 연구책임자인 이규창이 작성하였다.

¹⁷⁾ 대표적으로 국내의 과거청산 연구를 집대성한 것으로 평가받는 선행연구는 피해자 구제로 형사복권, 행정복권, 직업복권을 다루고 있다. 김하중, 『통일한국의 과거청산』(서울: 나남, 2013), 제5장.

II. 복권 방안

한명섭(통인법률사무소)



북한인권 피해규제 방안과 과제

- 인도에 반한 죄를 중심으로 -

전환기 정의에서 피해자 구제 문제는 가해자 처벌과 더불어 수리의 양 쪽 바퀴로 비유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남북통일의 경우에도 북한 정권 하에서 재판소 판결이나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의한 체제불법¹⁸⁾ 피해자들의 구제 내지 복권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피해자 복권은 통일 이전 북한 체제 하에서 이루어진 각종 체제불법행위로 인해 부당하게 생명, 신체, 신체의 자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와 명예의 회복 및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보상을 내용으로 한다.

본 장에서는 통일 이후 제기되는 북한주민의 복권 문제에 대해 통일독일의 사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한국에 적합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독일의 경우에는 피해자 복권을 구동독의 재판이나 행정처분의 효력을 인정하는 전제 하에 관련 법률의 제정을 통해 자유법치국가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재판이나 행정처분 등에 대해서는 무효화 조치를 하고, 이에 기초하여 권리를 회복시키고 각종 사회적 조정급부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통일독일의 사례를 분석의 대상으로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제를 달리하는 분단국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체제불법 피해자 복권이라는 점에서 남북한 통일의 경우와 가장 유사한 사례이다. 둘째, 복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법적 쟁점 중 분단국이라는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통일독일의 법적 해결 과정을 참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통일독일의 구동독 체제청산 과정에서 가해자 처벌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가 존재

¹⁸⁾ 체제불법(Systemunrecht)이란 국내 형사법학계에서는 “행위를 할 당시에는 국가의 권력강제에 의하여 보장되는 총체적 규범질서 속에서 실정법이나 이에 준하는 명령에 근거한 국가행위의 형태로 자행됨으로써 체제 내부에서는 불법으로 평가받지 아니하였지만, 그 체제의 붕괴로 인하여 종전의 가치질서와 법률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비로소 불법으로 평가받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국가적 불법(Staatliches Unrecht)으로도 불리고 있다. 이효원, “통일 이후 북한의 체제불법에 대한 극복방안,” 『법학』, 제51권 4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p. 85.

하나 피해자 복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먼저 복권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국내 법상 복권은 형벌의 하나인 자격상실과 자격정지에 대한 형법과 사면법상의 복권을 의미하기 때문에 통일독일 복권법상의 복권과는 달리 매우 제한된 개념으로 사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도 통일 이후 피해자 구제 문제에 대해서는 통상 피해자 복권의 문제로 접근하면서 그 내용에 북한 정권에 의한 판결과 행정처분의 무효화 문제와 피해자의 권리 및 명예회복, 금전적 보상 문제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복권’은 우리 형법과 사면법상의 ‘복권’이 아니라 통일독일의 각종 복권법상의 ‘복권’과 같이 기존의 체제불법적 판결이나 행정처분에 대한 파기 내지 무효화 조치와 그로 인한 권리의 회복 및 피해보상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다만, 피해보상에 대한 문제는 제Ⅲ장에서 별도로 다루게 되므로 본 장에서는 통일독일의 각종 복권법에 대한 소개 및 분석에서 개요를 소개하고 북한주민의 복권 방안과 관련해서는 기본 방향만을 제시하기로 한다.

1. 통일독일의 복권제도

가. 통일 이전의 복권제도

(1) 서독

동독 체제불법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는 통일 이전부터 일정 제도가 실시되고 있었다. 분단 이후 동독지역에서 서독지역으로 탈출한 대규모 동독주민들에 대한 동독 법원의 판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서독은 1953년 5월 2일 「내독간 형사사법 및 공무구조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innerdeutsche Rechts und Amtshilfe: RHG)」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서독의 일부인 동독법원의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그 판

결을 집행하는 것이 법치국가원칙이나 연방법률의 목적에 반하는 경우에는 집행을 불허하도록 하고 있다. 동독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거주지 관할 주최고검찰청 검사장에게 자신에 대한 판결이 집행될 수 없는 것이라는 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 그 밖에 1955년에는 「구금자지원법(Häftlingshilfegesetz)」을 제정하여 동독에서의 불법구금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마련하였다.

(2) 동독

(가) 국가조약 체결 이후 조치

사법적 불법의 피해자 구제작업은 평화혁명 이후 구동독 자체 청산과정에서도 진행되었다. 구동독 인민의회는 동서독 국가조약(Staatsvertrag)¹⁹⁾상의 법률동화 의무 이행 차원에서 1990년 6월 29일 제6차 형법개정법률을 통하여 종전까지 사법통제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파기 규정을 개정하였다.

구동독에서의 파기란 확정된 형사판결을 재심사하여 이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였는데 주로 상부의 지침과 일치되지 않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정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구동독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2항은 파기사유로 ① 재판이 법률에 위반된 때, ② 형벌선고가 현저히 부당한 때, ③ 판결이유가 부당한 때를 들고 있었다. 확정된 판결의 파기에 대한 신청은 검찰총장이나 대법원장이 대법원에 할 수 있었다(제312조 제1항). 이와 같은 구동독 형사소송법 제331조 이하의 파기제도는 주로 피고인을 불리하게 하는데 사용되었다. 하지만 제6차 형법개정법률을 통하여

¹⁹⁾ 정식명칭은 「동서독간 통화·경제 및 사회 통합에 관한 조약(Staatsvertrag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으로 흔히 통합조약으로 약칭되기도 한다. 체결일: 1990년 5월 18일, 발효일: 1990년 7월 1일.

오로지 ‘유죄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한해서만 파기신청을 허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종전의 파기제도에 제한을 하게 된 것이다. 다만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도 파기신청권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이나 대법원장에게만 주어졌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자에게 주어진 권리는 아니었다.

(나) 통일조약 체결 이후 조치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파기신청권을 부여한 것은 통일조약(Einigungsvertrag)²⁰에서 비롯된다. 1990년 8월 31일 체결된 통일조약은 제17조 내지 19조에서 복권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통일조약 제18조는 “① 가입 발효 이전에 이루어진 구동독 법원의 판결은 계속 유효하며 제8조에 의하여 발효된 법률이나 제9조에 의거하여 계속 유효한 법률의 적용에 따라 지속적인 효력을 가지며 집행될 수 있다. 위 법률은 판결과 그 집행이 법치주의원리에 합치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원용된다. 제17조의 적용은 배제되지 아니한다. ② 구동독 형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본 조약 제1부속서에 따라 중국판결의 파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통일 이전 구동독 법원의 판결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였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통일조약 제17조는 “쌍방은 정치적 동기에 의한 형사소추 또는 반법치국가적·위헌적 불법재판의 피해자가 된 모든 사람들이 복권될 수 있는 법적 기초를 즉각 마련할 것을 확인한다. 독일 사회주의통일당(SED) 불법정권의 희생자들에 대한 복권은 보상조치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불법재판 피해자들에 대한

²⁰ 정식명칭: 통일독일 재건에 관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간 조약(Vertrag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체결일: 1990년 8월 31일, 발효일: 1990년 10월 3일.

복권과 보상에 대한 법적 규범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동독의 행정조치에 대해서도 통일조약 제19조는 “가입 발효 이전에 이루어진 구동독의 행정행위는 계속 유효하다. 이 행정행위가 법치국가적 원리나 본 조약의 규정들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소될 수 있다. 기타 행정행위의 효력 존속에 관한 규정의 적용은 배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통일조약은 통일 이전 구동독의 재판이나 행정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법치국가 원칙이나 통일조약의 규정에 반하는 재판과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무효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의 구제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법의 기본 이념인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별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정의 내지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위 통일조약에 근거하여 구동독 인민의회는 통일조약 발효 이전인 1990년 9월 6일 ‘정치적 동기 또는 기타 법치국가에 반하는 형사소추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실시를 위해 복권법을 제정하여 1990년 9월 18일 공포하였다. 위 복권법은 형사복권 이외에도 행정복권과 직업복권도 함께 규율하고 있었다. 즉 형사 유죄판결을 받은 자 외에도 1949년 10월 7일 이후부터 구동독의 행정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 및 구동독 기업의 결정으로 인해 직업상의 불이익을 받은 자 등이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며 나아가 연합국점령군에 의해 구금되었던 자도 동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었다.²¹⁾

동독의 복권법이 제정된 이후 동서독 양측은 통일조약 제9조 제3항에 따라 동법률의 효력 존속 여부를 합의하기 위하여 추가교섭을 추진하였다. 교섭결과 양측은 1990년 9월 18일자 통일조약 추가협정을 통하여 구복권법 중 행정복권과 직업복권 부분은 폐지하고, 형사복권 부분만을

²¹⁾ 법무부, 『통일독일의 구동독 체제불법청산 개관』 (서울: 법무부, 1995), p. 792.

수정하여 계속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추가협정 제3조 제6호 a). 다만 구동독측의 계속되는 요구를 받아들여 추가협정에서는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 이외에도 ‘반법치국가적인 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명령’으로 인해 피해자가 되었던 자를 복권대상에 포함시켰다(추가협정 제3조 제6호 a).²²⁾

나. 통일 이후의 복권제도

1990년 10월 3일 통일조약 발효에 의하여 동서독 통일이 완성되었다. 하지만 복권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새로운 복권법이 통일과 더불어 제정되어 시행된 것이 아니라 통일조약 발효일 이전 구동독에서 시행되었던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파기규정과 동독의회가 제정한 복권법 및 통일조약과 동조약 부속서, 추가협정이 병행하여 계속 적용되었다. 이들의 효력은 1992년 11월 형사복권법 발효 시까지 유지되었다.

하지만 구동독에서 마련된 파기절차와 복권절차는 각각 심리대상과 요건을 달리하고 있어 적용에 있어서 적지 않은 혼란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파기는 구동독의 정권수립일인 1949년 10월 7일부터 통일조약 발효일 전일인 1990년 10월 2일까지의 형사재판을 대상으로 함에 비하여, 복권은 제2차 세계대전 시 독일의 항복일인 1945년 5월 8일부터 구동독 6차 형법개정법을 발효일 전일인 1990년 6월 30일까지의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비사법기관에 의한 형사법적 박해도 대상으로 한다. 또한 파기는 재판에 중대한 법률위반이 있거나 재판결과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법치국가적 원칙에 반할 것을 요건으로 하나, 복권은 판결이 정치적 기본권의 평화적인 행사를 이유로 선고되었을 것으로 요건으로 한다. 파기절차는 통상 구두변론을 거쳐 판결로 재판하고 불복이 허용되지 않지만 복권절차는 원칙적으로 구두변론절차 없이 결정으로 재판하고 동 결

²²⁾ 위의 책, p. 793.

정에 대하여는 항고가 허용된다.²³⁾

이와 같은 절차상의 혼란을 제거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독일 연방정부는 통일 이후 복권에 관한 새로운 입법 업무에 착수하여 형사복권과 행정복권 및 직업복권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였다.

(1) 형사복권

(가) 형사복권법 제정 및 개정

통일독일은 1992년 9월 25일 「독일사회주의통일당의 불법청산을 위한 제1차 법률(Erstes Gesetz zur Bereinigung von SED-Unrecht)」을 제정하여 같은 해 11월 3일 공포하였다. 위 법률 제1관 「가입지역에서의 반법치국가적인 형사소추처분으로 인한 피해자의 복권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통상 「형사복권법(Strafrechtliches Rehabilitierungsgesetz)」이라고 한다. 형사복권법은 구동독에서 시행된 기존의 파기규정 및 복권법을 대체한 법률이다.

형사복권법은 1994년 6월 8일과 1995년 12월 15일에 각각 개정이 있었으며, 1997년 7월 1일에는 「구동독에서 정치적 박해의 희생자를 위한 복권법 규정의 개정을 위한 법률」(이하, ‘제1차 복권법개정법’)에 의해 형사·행정 및 직업복권법 전반에 걸친 개정이 이루어져 법집행과 관련된 흠결이 보충되었다. 1999년 12월 17일에는 「제2차 구동독에서 정치적 박해의 희생자를 위한 복권법 규정의 개정을 위한 법률」(이하, ‘제2차 복권법개정법’)에 의해 형사복권법상의 금전보상액이 상향조정되었고, 모든 복권법상의 복권신청 기간이 연장되었다.²⁴⁾

²³⁾ Hans-Hermann Lochen and Christian Meyer-Seitz, *Leitfaden zur strafrechtlichen Rehabilitierung und Entschädigung* (Berlin: Verlag für die Rechts- und Anwaltspraxis, 1994), S. 10; 법무부, 『통일독일의 구동독 체제불법청산 개관』, p. 798에서 재인용.

²⁴⁾ 법무부, 『독일통일 10년의 법적고찰』 (과천: 법무부, 2000), pp. 247~248 참고.

(나) 형사복권의 대상

형사복권의 대상이 되는 재판은 통일조약 제3조에 명기된 가입영역(구동독지역)에서 1945년 5월 8일(독일 항복일)부터 1990년 10월 2일(통일조약 발효 전일)까지 기간 중 독일국가법원에 의한 형사재판이다(제1조).

재판(Entscheidung)에는 법원 판결 외에 법원의 결정과 명령도 포함된다. 한편, 형사복권법 제1조 제5항은 “법원의 재판이 아닌 형사처분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조(형사 절차 이외의 자유박탈에 대한 반법치국가적 판단) 제1항은 “이 법의 규정은 자유박탈을 야기하였던 법원이나 행정청의 판단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법은 특히 정치적 박해 기타 본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 기여하였던 치료감호시설의 수용사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2항은 “구금과 유사한 조건 하에서의 생활 또는 구금과 유사한 조건의 강제노역은 자유박탈과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규정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재판의 주체를 독일국가법원(Staatliches deutsches Gericht)으로 한정된 것은 소련군사법원의 재판을 제외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형사재판이 아닌 행정질서벌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장소적으로는 구동독 지역에서 이루어진 재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구동독 이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진 재판은 복권 대상이 아니다.

(다) 심사기준

형사복권법 제1조 제1항 및 제2항은 복권의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1항 본문에서는 복권의 일반적 기준으로 ‘재판이 자유법치국가의 기본원칙과 양립하지 않는 경우’에 그 재판은 신청에 기하여 법치국가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일반적 기준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내용으로 재판이 정치적 박해에 이용된 경우(제1항

제1호)와 선고된 법률효과와 그 기초가 된 범죄행위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제1항 제2호)를 규정하고 있다. 재판이 정치적 박해에 이용된 경우와 선고된 법률효과와 그 기초가 된 범죄행위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는 자유법치국가의 기본원칙과 양립하지 않는 경우의 특별 예시 사항이므로 그 밖에 경우에도 자유법치국가의 기본원칙과 양립하지 않는 재판으로 인정되면 당연히 취소의 대상이 된다.

형사복권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정치적 박해에 이용된 경우로 추정되는 구체적 사례를 열거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a) 동독형법상의 국가배반적인 정보의 전달(동독 형법 제99조), b) 국가적 인신매매(동독 형법 제105조), c) 반국가적 선동(동독 형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2항과 제3항), d) 불법단체 조직과의 교류(동독 형법 제219조), e) 불법월경(동독 형법 제21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문 제3호 내지 제6호 및 제4항), f) 1949년 10월 7일 동독 헌법 제6조 제2항에 의한 파업선동, g) 병역면탈 및 병역거부(동독 형법 제256조), h) 내용상 상기 a 내지 e에 명시된 규정에 상응하는 규정에 의한 경우, i) 서독이나 그 동맹국가 또는 자유법치국가적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조직을 위할 의사로 범한 국가전복, 간첩, 간첩목적 제국주의 첩보기관과의 접촉, 배반적 첩보행위, 동맹국가에 대한 국가적 범의를 침해하는 범죄, 위 범죄에 대한 불고지, 비밀누설(동독 형법 제96조, 제97조, 제98조, 제100조, 제108조, 제229조, 제1항 제2호, 제245조, 제246조) 또는 위 규정과 내용상 상응하는 규정에 의한 경우이다. 위 열거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재판의 경우에는 그 재판이 정치적 박해에 이용된 경우인지 여부를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한편, 형사복권법 제1조 제2항은 험니츠 지방법원 발트하임 지원의 1950년 재판은 자유법치국가질서의 기본원칙과 양립하지 않는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1950년 4월 26일부터 1950년 7월 14일까

지 험니츠 지방법원의 2개 특별형사부는 발트하임에서 3,324건의 확정판결을 선고하였는데 대부분이 장기 징역형이고 3명에 대한 사형판결도 있었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대부분 나치체제 하에서 체제에 기인한 폭력행사였는데 대부분 증거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독립성이 전무한 법관들로 구성된 특별재판부에서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들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도 완전히 봉쇄된 상태였다.²⁵⁾ 발트하임 재판은 전형적인 반자유법치국가적 재판으로 형사복권법에서 특별규정을 두어 공소사실과 관계없이 전부 무효선언을 하도록 한 것이다.

(라) 신청

복권 신청권자는 재판에 의해 직접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며,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반법치국가적인 재판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의 복권에 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진 자 또는 검사이다. 단, 검사는 재판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 자의 의사에 반하여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기간은 처음에는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되었으나 제2차 불법청산법에 의해 1995년 12월 31일로 연장되었다. 그 이후 제1차 복권법개정법에 의해 1999년 12월 31일로, 제2차 복권법개정법에 의해 2001년 12월 31일로 재차 연장되었다.

형사복권법 발효 이전에 구복권법이나 파기절차에 따른 신청인은 형사복권법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제26조). 복권신청은 독일 내의 모든 법원에 서면이나 조서를 통하여 할 수 있다.

²⁵⁾ 법무부, 『통일독일의 구동독 체제불법청산 개관』, p. 813 참고.

(5) 관할 및 심리

재판은 1990년 10월 3일 당시 적용되었던 지구법원의 장소적 관할을 기준으로 할 때 제1심 형사소송절차나 수사절차가 행하여졌던 지역을 관할하게 되는 지구법원이나 그 지구법원 소재지에 설립된 지방법원이 제1조에 따른 재판을 관할하며, 동독 최고법원이 제1심 재판을 한 경우에는 베를린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복권심리의 대상이 된 재판의 선고 이후 법원의 관할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재판의 선고 당시 제1항에 따라 관할하게 되었을 법원에 토지관할이 있다(제8조).

구(區)법원과 지방법원은 각기 3인의 직업판사로 구성된 복권부가 재판을 담당하며, 1990년 10월 3일 이전에 가입영역에서 직업판사나 검사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독일법관법(das Deutsche Richtergesetz)」 및 통일조약상의 기준에 따라 법관의 자격을 갖지 못하는 자는 법률에 의해 복권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 1990년 10월 3일 이전에 가입영역에서 직업판사나 검사로 재직하였던 자는 복권재판에서 2인 이상 참여할 수 없다(제9조).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이 경우 법원은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라 그 조사, 특히 증거조사의 방법과 범위를 정한다. 법원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재판에 필요한 문서 기타 증거방법을 제출하거나 제시하도록 하고 신청의 기초가 된 사실을 소명하도록 할 수 있다.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복권심리의 대상이 된 재판서 등본이나 공소장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개별적인 조사를 검찰에 위임할 수 있다(제10조).

사회적 긴급성이나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우선처리하며, 재판 전에 법원은 검사에게 의견개진의 기회를 부여한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구두설명 없이 재판한다. 사실의 규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구두설명을 명할 수 있다(제11조).

(바) 결정 및 이의신청

법원은 결정으로 재판하며, 결정에는 판사, 소송관계인 및 그 대리인의 성명을 기재하며, 복권심리의 대상이 된 재판의 사건번호, 대상재판 취소의 근거가 되는 이의와 법적 효과의 확정, 불법적 자유박탈의 기간, 형사복권법 제6조의 의해 상환되는 벌금액 및 기타 청구권 존부의 확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제12조). 이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을 송달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제13조).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부과하지 않는다(제14조).

(사) 재판 무효의 범위

형사복권법 제1조 제3항은 “재판이 수개의 형벌규정의 위반을 근거로 하고 동시에 파기의 제1항의 요건이 그 형벌규정의 일부에 있어서만 성립하는 경우 처분의 선고에 있어 그 밖의 법률위반이 중대한 것이 아닌 때에는 재판의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재판의 전부취소가 고려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제1항의 요건이 성립하는 재판의 일부분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효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법치국가의 원칙에 반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한 사람이 여러 법률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았고 그중 일부만이 법치국가적 기본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일 경우, 나머지 법률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재판의 결과에 있어서 중요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부를 무효로 하도록 한 것이다.

(아) 효과

법원의 심리결과 대상 재판이 무효가 되면 그 효과로서 신청인은 추후청구권(Folgeanspruch)과 사회적 조정급부청구권(soziale Ausgleichsleistung)을 갖게 된다.

추후청구권이 재판의 무효화에 따른 당연한 권리라면 사회적 조정급

부청구권은 국가가 사회적 법치국가 원리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을 배려하기 위해 부여하는 권리로 그 성격을 달리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통일독일이 구동독의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승계하지 않는다는 원칙에서 출발하는 조치이다.

추후청구권은 크게 형의 집행종료, 전과말소, 납입된 벌금과 소송비용 등에 대한 보상으로 구분된다. 형사법원 재판의 집행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 재판의 확정력 발생과 동시에 집행이 종료된다(제4조 제1항). 목적물의 몰수나 재산몰수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산법 및 투자법에 따라 재산의 반환양도 또는 반환이 이루어진다(제3조 제2항). 또한 구동독 형벌등록부의 기록은 연방중앙등록부로 인계되는데 복권절차에서 무효로 선언된 판결은 연방중앙등록부에 이기(移記)되지 아니하고 이미 기재된 것은 삭제된다(제5조). 재판이 취소된 경우 납부된 벌금, 소송비용 및 당사자의 필요경비를 상환청구 할 수 있으며 상환은 동독 마르크화와 서독 마르크화 간의 비율을 2대 1로 하도록 규정하였다(제6조 제1항).

사회적 조정급부청구권에 대해서는 형사복권법 제3장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16조(사회적 조정급부) 제1항은 “복권과 함께 당사자에게는 자유박탈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회적 조정급부청구권이 부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정급부청구권이 부여되는 것이므로 조정급부는 권리자의 신청을 필요로 한다. 신청자는 형사복권법에 의하여 복권된 자 외에도 구동독의 복권법에 의하여 복권된 자, 통일조약 발효 이후 파기절차에 따라 보상청구권을 부여받은 자, 구금지원법 제10조 제4항에 다른 급부청구권증명서를 가진 자도 해당된다. 다만 제16조 제2항에서는 “권리자가 인도주의 및 법치국가질서의 원칙을 위반하였거나, 상당한 정도로 자신의 이익 또는 타인의 불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지위를 남용한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사회적 조정급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 권리자로부터 파생된 권리를 갖는 자도 동일하다.”고 조정급부청구권에 대한 예외적인 배제규정을 두고 있다.

사회적 조정급부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유박탈에 대한 금전보상(제17조), 원조급부(제18조), 피해자원호(제21조), 유족원호(제22조) 등이다.

자유법치국가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자유박탈에 대한 금전보상은 형사복권법 제정 당시에는 각 1개월에 대하여 300마르크였는데, 제2차 복권법개정법을 통해 1개월에 600마르크로 상향되었다(제17조).

원조급부는 제17조의 금전보상 청구권자가 특별히 그 경제상황을 침해받아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에 금전보상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급부로 급부의 제공 여부는 구금자원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과거 정치적 구금자 후원 재단’이 담당한다(제18조). 금전보상이 지급되지 않아 특별히 곤경에 처하게 된 때에는 주무관청이 신청인에게 이러한 급부를 승인할 수 있다(제19조).

피해자원호는 자유박탈로 인하여 건강손상을 입은 자에게 이러한 손상으로 인한 건강 및 경제상의 손실에 대하여 연방원호법을 준용한 원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만 동일한 손상을 이유로 연방원호법이나 연방원호법을 준용하는 법률을 근거로 이미 원호가 제공된 경우에는 피해자 원호를 제공하지 않는다(제21조).

유족원호는 피해의 결과로 인하여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연방원호법에 따라 신청을 해서 제공받는 것으로, 유족에게 연방원호법 또는 연방원호법을 준용하도록 한 법률을 근거로 원호가 이미 제공된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제22조).

(2) 행정복권

(가) 법률의 제정

동독 공산정권에 의한 행정상의 불법행위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행되었다. 크게는 생산수단의 집단화에서부터 시작하여 작게는 운전면허 취소 등 일상적인 법 침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²⁶⁾ 행정복권은 후술하는 직

²⁶⁾ 김영탁, 『독일통일과 동독재건과정』(서울: 한울아카데미, 1997), p. 254.

업복권법과 마찬가지로 1994년 6월 23일 제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 발효된 「독일사회주의통일당의 불법청산을 위한 제2차 법률(Zweites Gesetz zur Bereinigung von SED-Unrecht)」의 부분 법률인 제1관 「행정복권법(Verwaltungsrechtliches Rehabilitierungsgesetz)」에 의해 진행되었다. 행정복권법은 통일조약 제19조의 “가입 발효 이전에 내려진 동독의 행정행위는 계속 유효하며 그것이 법치국가 원리나 이 조약의 규정들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소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입법조치로 통일조약에서 구체화하지 못한 행정처분의 취소에 관한 절차 및 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후속청구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나) 복권의 대상

행정복권법 제1조(반법치국가적 행정결정의 취소) 제1항은 “1945년 5월 8일부터 1990년 10월 2일 사이의 기간 중에 통일조약 제3조에 규정된 가입영역에서 개별 사안을 규율하기 위하여 발한 독일 행정청의 고권적인 처분이 건강의 손상(제3조), 재산상의 침해(제7조) 또는 직업상 불이익(제8조)을 초래하였으며,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처분으로서 그 결과가 현재까지 직접적으로 증대하고 감내불능하게 계속되는 때에는 신청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복권법은 동독정권의 반법치국가적 행정처분 또는 정치적 박해에 의한 현저한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권이 되도록 함으로써 수인할 수 있는 통상적이고 사소한 불법을 제외하고 증대하고 감내 불가능한 결과에 대한 복권으로 그 요건을 제한한 것이다.

(다) 심사기준

취소의 심사기준은 형사복권법과 마찬가지로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이다. 행정복권법 제1조 제2항은 “개별 사안에 있어 정의·법적 안정성 또는 비례성의 원칙에 현저히 위배되고 정치적 박해에 기여하였거나 자

의적인 행위로 인정되는 조치는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반법치국가성의 심사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라) 절차

행정복권은 신청자의 서면신청에 의해 개시된다. 신청자는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자연인 및 그의 사망 이후 당사자의 복권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이익을 가진 자이다(제9조 제1항). 신청기간은 법제정 당시에는 1995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그 이후 개정을 통해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다.

관할기관은 복권신청의 대상인 구동독 국가기관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행위지를 관할하는 신설 5개주 및 베를린 소재 복권청이다. 여러 주의 복권청이 관할을 가지는 때에는 처음으로 그 사건을 취급한 관청이 결정한다. 복권청의 확인결정은 추후청구권에 관하여 결정하는 관청과 기관을 기속한다(제12조 제1항~제3항). 연방원호법상 요구되는 결정은 연방원호법의 집행의무가 있는 관청이 행한다(제12조 제4항).

복권청에서의 절차에 있어 증인은 증언의무를 지며 감정인은 감정보고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제13조 제1항). 증거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입수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신청인이나 신청인의 권리가 유래하는 근거가 되는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된 때에는, 대상 행정처분의 반법치국가성에 관련한 진술은 그것이 믿을 만한 것인 때에 한하여 당해 결정의 기초로 할 수 있다(제13조 제2항). 행정복권법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주법이 제정될 때까지 행정절차법, 행정송달법 및 행정집행법의 규정을 적용한다(제13조 제3항).

이의절차를 포함한 복권청에서의 행정절차는 그 비용이 면제된다. 다만 행정절차상의 신청 또는 이의가 명백히 성립되지 않아 기각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제14조).

(마) 결정 및 효과

행정복권신청이 인용되면 신청자에게 후속청구권이 부여된다. 후속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는 복권신청자가 침해당하였던 법익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데, 행정복권법 제2조 내지 제8조에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강상 및 경제상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연방원호법의 준용에 의한 피해자원호(제3조), 당사자가 피해의 결과로 사망한 경우 연방원호법의 준용에 의해 제공되는 유족원호(제4조), 재산몰수의 경과를 야기하였을 경우에 제공되는 재산법, 투자우선법, 보상법에 의한 반환양도, 반환 또는 보상청구권(제7조), 직업 또는 교육상의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 제공되는 직업복권법에 의한 각종 급부청구 등이다(제8조).

(3) 직업복권

(가) 법률의 제정

직업적 구제에 관한 사항은 1994년 7월 1일 발효된 「독일사회주의통일당의 불법청산을 위한 제2차 법률」의 부분 법률인 제2관 「직업복권법(Berufliches Rehabilitierungsgesetz)」에 의해 시행되었다. 이 법은 형사복권법 및 행정복권법과 연계하여 동독 시절의 박해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교육이나 직업상의 불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권자의 범위를 확장하여 특히 노동법 영역에서의 박해사례도 이 법이 포섭하고 있다.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급부의 핵심은 연금보험상의 불이익을 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직업적 영역에 있어 정치적 박해 피해자에 대하여 교육의 계속이나 전환 및 대학교육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것도 이 법의 규율 범위에 포함된다.²⁷⁾

²⁷⁾ 법무부, 『독일통일 10년의 법적고찰』, p. 292.

(나) 복권의 대상 및 요건

직업복권법은 직업복권법상의 피해자 개념에 대한 정의규정을 통해 복권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제1조(피해자의 개념) 제1항은 “1945년 5월 8일부터 1990년 10월 2일 사이의 기간 동안 1. 통일조약 제3조에 규정된 지역(가입영역)에서 감수한 불법적 자유박탈의 결과로, 2. 형사복권법 제25조 제2항 제1문 제1호 또는 제2호상의 구금의 결과로, 3. 행정복권법 제1조상의 고권적 처분으로, 4. 정치적 박해를 초래하는 가입영역에서의 기타 처분에 의하여 이미 종사하였거나 시작하였거나 숙련되었거나 또는 직업 관련 교육의 시작으로 성취하려고 노력한 것이 입증될 수 있는 직업 또는 사회적으로 동등하게 평가되는 직업을 최소한 일시적으로도 가지지 못한 자(피박해자)는 이 법에 의한 급부청구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복권절차나 파기절차에서 불법적 자유박탈의 기간이, 구금자 원호법 제10조 제4항의 증서에서 구금의 기간이 확인되거나 또는 행정복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분의 취소 또는 반법치국가성의 확인이 이루어져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업복권법에 의한 복권신청자는 동독체제의 성격상 동독주민들의 일반적인 운명이었던 직업적 불이익의 피해자가 아니라 동법 제1조 제1항 소정의 ‘피박해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피해자에 한한다. 그리고 복권신청의 요건으로 피박해성, 정치적 박해, 직업 또는 직업교육에 대한 침해 등이 필요하다.²⁸⁾

피박해자가 인간의 존엄성이나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심각한 정도로 자신의 이익이나 타인의 불이익을 목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현저하게 남용한 경우에는 직업복권법에 의한 급부는 보장되지 않는다(제4조).

²⁸⁾ 김하중, 『통일한국의 과거청산』, p. 330.

(다) 절차

피박해자는 직업복권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권증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피박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그 신청에 대하여 법적 이익을 가지는 경우 이를 신청할 수 있다(제20조 제1항). 신청은 행정복권을 담당하는 복권청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제20조 제3항). 복권청은 위 복권증서의 거의 복권신청기간은 법 제정 당시에는 1995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그 이후 개정을 통해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다. 복권신청기간과 관련하여 형사복권 또는 구금자원호법 소정의 절차가 직업복권에 선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 또는 위법확인결정 이후 6개월 내에 신청을 하면 된다(제20조 제2항). 신청기간 내에 다른 국내관청이나 독일법원에 접수된 경우에는 적법한 신청으로 간주한다(제20조 제3항).

복권청에서의 절차에서 증인은 증언의무를, 감정인은 감정보고서를 작성할 의무를 지며, 피박해자 특징(제1조 제1항), 박해기간(제2조 제1항) 및 학생으로서의 박해(제3조 제1항)에 대한 신청인의 진술은 증거가 존재하지 않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없거나 또는 신청인이나 그의 권리의 근원이 되는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증거가 멸실한 경우 그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의 기초로 할 수 있다. 직업복권법에 달리 규정하고 있는 않는 한, 상응하는 주 법령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행정절차법, 행정송달법 및 행정집행법의 규정을 적용한다(제25조).

이의절차를 포함한 복권청의 행정절차에 있어서는 그 비용이 면제된다. 행정절차에 있어서의 신청 또는 이의제기가 명백히 성립하지 않아 기각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비용을 부담토록 할 수 있다(제26조). 직업복권법에 의한 분쟁은 행정소송에 의한다(제27조 제1항).

(라) 결정 및 효과

직업복권신청이 인용되면 신청자에게 연금보험상의 조정급부청구권, 교육상 복권급부청구권, 특별히 곤궁한 피박해자에 조정급부청구권 등이 부여된다.

첫째, 연금보험상의 불이익 조정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직업복권법 제10조 내지 제16조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조정방법으로서의 연금의 증액 여부와 정도는 박해기간과 평균수입에 의하여 결정된다. 불이익 조정급부는 연금개시로부터 소급효를 인정하되 최고 1990년 7월 1일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제16조). 연금산정은 복권청이 아니라 연금보험담당자가 처리한다.

둘째, 교육상 복권급부청구권은 각종 교육의 우선적인 지원보장, 새로 대학교육을 시작하는 피박해자에 대한 30세의 입학연령제한 배제, 피박해학생에 대한 우선적인 직업보충교육과 전환교육 특례 등이 포함된다.

셋째, 직업복권법 제3장에서는 생계능력이 없는 특별곤궁자에 대한 조정급부를 보장하여 신청에 따라 매월 일정액(법 제정 당시 150마르크였으나 개정을 통해 300마르크로 조정) 조정급부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제3장에 의한 조정급부는 소득에 따라 보장되는 사회보장급부에 있어서 소득으로 산입하지 않으며, 조정급부청구권은 압류할 수 없다(제9조).

한편, 복권을 신청하였으나 복권증서교부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복권청은 제2장 또는 제3장에서 규정한 급부 또는 연방교육촉진법 제60조 제1호의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임시증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복권 상호 간의 관계

형사복권법, 행정복권법, 직업복권법 등 3가지 유형의 복권법은 상호 연계되어 보완관계에 있다. 형사복권법에 의하여 이미 복권된 경우에도

이와는 별도로 「독일사회주의통일당의 불법청산을 위한 제2차 법률」에 의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형사복권은 박탈된 재산의 반환 또는 보상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사회적 조정급부청구권의 기초가 된다. 행정복권법은 동독 행정기관의 반법치국가적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반법치국가성의 확인을 가능하게 함과 아울러 현재까지 그 영향이 남아 있는 반법치국가적 행정처분의 효과를 사회적 조정장치로 완화하도록 규정한다. 이 점에서 행정복권법은 직업복권법을 고려하고 있다.²⁹⁾

고전적 조치로 인하여 직업상 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일단 행정복권법 규정에 의하여 반법치국가적 행정조치의 취소 또는 반법치국가성 확인이 이루어지고, 그 후 직업복권법에 따라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급부신청이 제기될 수 있다. 직업복권법은 형사복권법 및 행정복권법과 연계되어 있고, 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노동법 영역에서 박해를 당한 경우에는 직업복권법이 적용된다. 결국 박해의 유형에 따라 위의 3가지 복권법 중 어느 법이 적용될 것인지가 결정된다.³⁰⁾

(5) 복권과 보상실태

기록으로도 남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수용소와 감옥에서 희생되었다. 추정에 따르면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독에서 약 25만 명의 정치범들이 있었으며, 10만 5천 명가량은 주로 정치적인 이유로 직업적인 불이익을 당했다.³¹⁾

1992년 처음으로 배상법이 제정되어 2005년까지 17만 명의 사람들이 보상을 받았다. 또한 독일 외무부는 과거 소비에트 연방국가들로 유배당한 13,500명에 이르는 독일인 등에게 복권과 재활기회를 제공했다. 정치적인 이유로 감옥생활을 한 사람들에게는 약 430달러에 이르는 보

29) 위의 책, p. 325.

30) 위의 책, pp. 325~326.

31) 한명섭, 『통일법제 특강』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6), p. 500.

상금이 일시불로 주어졌다.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복권 및 보상을 신청했으며 이들 중 절반 정도가 복권 및 보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1994년 7월 1일 두 번째로 제정된 「독일사회주의통일당의 불법청산을 위한 제2차 법률」에 의한 조치 이후에도 몇 년 동안 보상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독일의회는 2007년 6월 23일 동독 체제 하에서 정치적 박해를 받은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금을 증가시키는 것을 뼈대로 하는 세 번째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구동독시절 최소한 6개월 이상 정치적인 감옥에 수감됐었고 저소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치범들에게 매달 250유로(340달러)를 종신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³²⁾

다.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동독의 불법에 의한 피해자들의 구제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첫째, 남북한 통일과정에서도 독일 통일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과거청산 과정에서 북한 정권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 구제 문제가 피할 수 없는 큰 과제로 대두될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불법정권에 의한 피해자 구제 문제는 통일독일의 사례와 같이 불법판결이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해 박탈된 권리를 회복시키는 절차와 그 과정 및 결과로써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양자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셋째, 통일 이전 동독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법정권인 북한이 자체적으로 피해자 구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넷째, 상대방의 국가성을 부인하는 분단국의 통합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법적 쟁점과 관련법 제정 등에 있어서는 독일의 법적 쟁점 해결 방식과 각종 복권법의 내용이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독일이 피해자 복권과 보상

³²⁾ 동독 사회주의통일당 독재청산재단(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통일독일에서의 과거 공산주의자 청산문제』(베를린: 동독 사회주의통일당 독재청산재단, 2011), pp. 41~42 참고.

문제를 동시에 다루면서 형사복권과 행정복권 및 직업복권으로 구분하되 상호 보완성을 갖고 연계가 되도록 하여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업무를 마무리 한 점에 매우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 복권과 보상 문제는 법리적으로 남한 헌법 제3조에 기초하여 반국가단체로서의 지위를 갖는 북한의 행정 및 사법적 처분에 대한 효력 인정 여부, 북한 정권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통일한국이 승계하는 것인지 여부, 북한주민에 대한 피해가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조정급부적인 손실보상 문제로 해결하면 되는 것인지 등의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이 제기된다. 이와 같은 법적 쟁점 해결에 대한 독일의 사례는 통일한국의 피해자 구제 문제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다만 우리와 독일의 법제도상의 차이로 인해 통일독일의 사례를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의 현실과 통일한국의 법제도에 맞는 새로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통일한국의 북한주민 복권 방안

가. 복권의 대상과 논의의 전제

피해자 복권과 관련한 북한 정권 하에서의 체제불법행위는 크게 판결과 행정처분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파기 내지 무효화 조치의 대상은 북한 정권 하에서 발생한 모든 위법한 판결과 행정처분이 될 것이다. 주의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판결에는 법원의 판결과 결정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행정처분은 북한의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따른 국가의 행정행위는 물론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 행정처분이나 사실상의 행정처분 등 국가권력에 의해 이루어진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북한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모든 사법적·행정적 처분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한편, 통일 이후 이와 같은 북한 정권에 의한 불법 판결이나 행정처분에 대한 파기 내지 무효화 조치를 검토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통일한국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에서 있었던 기존 판결이나 행정처분의 효력을 인정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정권에 의한 판결이나 행정처분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복권과 관련해서는 간명한 방법일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 정권에 의한 판결이나 행정처분이 모두 체제 불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일괄해서 무효화한다면 예를 들어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개인적 법익을 침해한 범죄에 대한 판결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비춰 볼 때도 적법한 것으로 보이는 행정처분 등도 무효화가 될 것이어서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또한 복권과 관련된 권리회복이나 피해보상 등을 위해서는 결국 해당 판결이나 행정처분이 체제불법적인 것인지 여부를 다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큰 실익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일 이후 과거청산 내지 전환기 정의 차원에서의 복권 문제는 통일독일의 경우와 같이 통일 이전에 북한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판결이나 행정처분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검토하고자 한다.

나. 통일 이전 남북한 관련 제도와 활용의 한계

(1) 북한 정권에 의한 북한의 복권 관련 제도 활용 방안과 한계

독일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북한주민에 대한 복권은 북한의 민주화된 정권에 의해 실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복권을 실시하는 방법으로는 복권을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 등을 통해 할 수도 있고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새로운 법률 제정을 통한 방법은 남한 또는 통일한국의 입법권 범위 밖의 문제이므로 구체적인 검토는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통일 이전에 북한이 법률 제정을 통해 실시한 복권이 미흡할 경우에는 통일한국이 다시 복권 관련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피해자 복권과 관련하여 활용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는 북한의 법제도로는 형사법상의 재심과 사면, 신소제도 등이 있다. 북한도 확정된 형사 판결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8장 제2절에서 재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은 “새로운 사실에 기초하

여 확정된 판결, 판정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을 임무로 한다(제402조). 재심은 중앙검찰소 소장이 제기하며(제406조), 중앙재판소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심리해결한다(제403조). 재심사유는 "1. 판결, 판정의 기초로 하였던 증거가 거짓이라는 것이 알려진 경우, 2. 판결,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로서 재판할 당시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새로 알려진 경우"이다(제408조). 재심신청은 공민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검사에게 한다(제409조). 중앙검찰소 소장은 필요에 따라 중앙재판소 소장을 통하여 재심을 제기하기 위해 사건기록을 요구한 범죄사건에 대한 판결, 판정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제410조). 재심에서는 재심제기의 사유로 되는 사실을 전면적으로 심리확정하면서 피소자를 정확히 확정하였는가, 형벌을 옳게 적용하였는가 하는 것을 심리 해결한다(제413조). 중앙재판소는 재심의 제기가 정당할 경우 확정된 판결, 판정을 취소하고 범죄사건을 검사 또는 제1심 재판소에 돌려보내거나 직접 기각한다. 재심제기가 부당할 경우에는 재심제기를 거부하고 확정된 판결, 판정을 지지하는 판정을 한다(제415조).

또한 북한 형법에 따르면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형벌은 특사 또는 대사로 면제된다(제54조 제1항). 특사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실시하고, 대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실시한다(제54조). 특사나 대사를 받은 자는 그날로부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자와 같이 법적으로 차별하지 않는다(제56조). 특사는 남한 사면법상의 특별사면과 복권과 유사하며, 대사는 일반사면 및 복권과 유사한 제도라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의 일반법에는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³³⁾ 다만 신소청원법상의 신소제

³³⁾ 특별법인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2011년 12월 3일 법을 개정하면서 "경제무역지대에서의 행정소송절차는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여(제83조 제2항) 행정소송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행정소송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되고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관련 내용은 이규창, "북한 경제법령상

도가 있다. 신소는 자기의 권리와 이익에 대한 침해를 미리 막거나 침해된 권리와 이익을 회복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신소청원법 제2조). 신소청원법은 1998년 6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120호로 채택되었으며, 법 제16조를 보면 신소청원은 각 기관, 기업소, 단체의 신소청원사업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1971년에 발간된 『법학사전』을 보면 신소청원제도는 이미 1960년판 『김일성선집』 제4권에 실린 김일성 교시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가 설명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소청원법 제정 전부터 시행되어 오던 제도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신소청원의 주권적 감독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신소부에서 하도록 하고 있어 이 제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북한의 법제도들은 그 제도의 취지 자체가 통일독일의 복권법과 같이 불법체제 하에서 이루어진 판결이나 행정조치들을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하여 파기 내지 무효화 조치를 취하고 그에 따른 권리 및 명예회복과 보상 문제를 다루는 과거청산 내지 전환기 정의 차원에서 의 복권 문제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2) 통일 이후 남한의 복권 관련 제도 활용 방안과 한계

남북한 통일 시 남한의 법제도가 북한지역으로 확대 적용된다고 전제할 경우 현행 남한의 법제도를 통해 북한주민의 복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남한의 법제도 상으로는 형의 선고의 효력으로 인해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형법과 사면법상의 복권제도가 있다.³⁴⁾ 하지만 이는 유효한 자격상실

의 분쟁해결제도 분석과 평가: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신·구 조문 비교를 중심으로,” 법무부, 『북한법령 연구』 (과천: 법무부, 2012), p. 640 참조.

³⁴⁾ 형법상의 복권이란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정지 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경우에, 본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지된 자격의 회복을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형법 제82조). 사면법상의 복

과 자격정지형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 대상이 매우 협소하여 피해자 복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오히려 피해자 복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는 확정된 형사판결에 대한 재심제도와 행정처분에 대한 일반적인 구제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심의 청구는 검사,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할 수 있으며(제424조),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제423조).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며(제434조 제1항),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제435조 제1항).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제435조 제2항).

문제는 북한 형사소송법상의 재심과 마찬가지로 우리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도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³⁵⁾ 따라서 우리 형사소송법상의

권은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를 대상으로(제3조 제3호), 대통령의 권한으로(제4조),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말한다(제5조 제1항 제5호).

³⁵⁾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재심사유로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심제도를 복한 정권 하에서의 체제불법 판결에 대한 무효화 조치를 하는데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행정처분과 관련하여서도 남한의 경우에는 국가의 행정처분에 대한 여러 가지 구제제도가 있다. 대표적으로는 행정구제법이 있는데 이는 행정의 합법성과 국민의 권익보호를 지향하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을 지칭한다.

행정심판법 제1조는 법의 목적을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청의 모든 처분 또는 부작위를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제3조 제1항). 다만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제3조 제2항). 행정심판은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세 종류가 있다(제5조).

행정소송(行政訴訟)은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정식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소송을 말한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행정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다. 행정소송법 제1조는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한 국가배상제도를 규율하는 ‘국가배상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각종 손실보상 관련 법률들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재심제도나 행정심판 및 소송제도는 현재 남한의 형

사판결과 행정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는 전혀 다른 북한 체제 하에서 이루어진 형사판결이나 행정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여 위 제도들을 적용하기에는 요건 및 절차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 밖에도 국내에서의 과거사 정리와 관련된 입법 사례 중에는 ① 삼청 교육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②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 ③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④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⑤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⑦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와 같이 명예회복에 관한 업무를 직접 다루는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례는 있었으나 복권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기 위한 입법례는 없었다(〈표 III-2〉 참조).

또한 통일독일의 각종 복권제도에서 인정하고 있는 추후청구권 중 사회조정급부적 성격의 보상에 대해서는 남한 법제도상 별도의 법률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독일의 경우와 같이 그 전제인 판결과 행정처분의 무효화 조치에 관한 문제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일괄해서 해결하는 것이 간명하면서도 적합한 방안일 것이다.

다. 특별법 제정을 통한 피해자 복권 방안

(1) 특별법 제정의 법적 근거와 제정 주체

피해자 복권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남북한 통일 합의서나 통일헌법에 법 제정의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일독일의 경우에는 통일조약 제17조 내지 제19조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었다. 남북한 간에도 통일합의서가 체결된다면 독일 통일조약을 참고하여 이와 유사한 관련 규정을 두면 될 것이다. 다만, 통

일합의서가 헌법적 규범력을 갖지 못한다면 피해자 복권 관련 법률 시행 과정에서 위헌소송제기 등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통일헌법에 직접적인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만일 통일합의서 체결 과정 없이 통일이 되거나 다른 사정으로 인해 통일합의서에 관련 규정을 두지 못할 경우에는 통일헌법에서라도 관련 근거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참고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에는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한 과거청산을 1995년 「국민통합 및 화해증진법 (Promotion of National Unity and Reconciliation Act, No. 34 of 1995)」 제정을 통해 실시하는데, 이 법은 기존의 백인정권과 새로운 해방운동 세력과의 역사적 타협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1993년의 임시헌법 마지막 조문에 근거하고 있다.³⁶⁾

특별법의 제정 주체는 그 내용이 주로 피해자인 북한주민과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복권에 따른 보상 등의 재정적 부담은 주로 남한 주민이 된다는 점에서 보면 반드시 통일헌법에 근거하여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제정해야 할 것이다.

³⁶⁾ 임시헌법의 마지막 조문은 “이 헌법의 채택은 남아프리카 국민들로 하여금 무자비한 인권침해, 무력충돌과정의 인도주의 원칙 위반, 증오와 공포, 죄책감과 복수의 유산들을 만들어낸 과거의 분열과 불화를 초월하는데 있어서 견고한 기틀을 제공한다. 이는 이제 복수가 아닌 이해, 보복이 아닌 원상회복(보상), 희생(처벌)이 아닌 인간성 (ubuntu)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초로 하여 수용된다. 그러한 화해와 재건을 이끌기 위해서는 과거의 충돌과정에서 자행된 정치적 목적과 관련 있는 행위와 부작위 및 위법 행위에 관해서 사면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 헌법에 따라 구성되는 의회는 1990년 10월 8일부터 1993년 12월 6일까지 확고한 기한을 확정하는 법을 채택하여, 법률이 통과한 다음에 언제든지 사면의 문제를 다루게 될 법정을 포함하여 사면의 방법과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 헌법과 이러한 헌신으로 우리 남아프리카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다. 신이며, 우리의 남아프리카를 축복하소서”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김한균 외, 『통일시대의 형사정책과 형사사법통합연구(II): 통일시대의 과거·불법청산 및 사회통합 방안의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p. 200.

(2) 입법 형태

특별법의 규정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민통합 및 화해증진법」과 같이 통일 이후 제기되는 전환기 정의와 관련된 진실규명, 가해자 처벌, 피해자 구제, 불법 기록물 보존관리, 사회문화적 청산사업 등의 모든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단일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이다. 다른 한 가지는 통일독일의 경우와 같이 전환기 정의 관련 기제별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이다.

통일 이전에 남북 상호 간 전환기 정의와 관련된 포괄적인 법률 제정에 관한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포괄적인 단일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사정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독일의 경우와 같이 순차적으로 개별 입법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복권에 관한 개별 입법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독일의 경우와 같이 형사복권법과 행정 및 직업복권법을 구분하여 별도 법률로 제정할 것인지 아니면 복권과 관련된 단일법을 제정할 것인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복권 관련 업무를 모두 법원에서 담당하도록 한다면 중복되는 내용이 많으므로 단일 입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각 복권의 업무담당기관을 달리 한다면 별개의 입법 방식을 택하는 것이 편리할 것으로 보인다.

(3) 복권 대상 형사재판과 행정처분

독일의 통일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통일한국의 복권 대상 형사판결은 분단 이후 북한 정권에 의한 형사판결 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체제불법적 성격의 판결이 될 것이다. 다만, 실무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체제불법적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죄명과 판결문상의 범죄사실을 보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 판결에는 판결문이라는 형식을 갖춘 판결 외에 의료처분 등 북한 재판소의 형사재판과 관련된 모든 처분이 해당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북한 형법상의 부가형벌인 선거권박탈형, 자격박탈형, 자격정

지형이 있으나 이와 같은 형벌에 대해서는 굳이 개별적 심사를 통해 복권 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통합 차원에서 일정 기준 하에 일괄해서 무효화시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통일독일의 경우와 같이 체제불법적 행정처분 등 국가적 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현존하는 경우에만 이를 원상회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고 등으로 인하여 직업을 상실한 경우에 대한 회복적 조치인 직업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복권도 필요하다. 다만 북한의 유일지배체제의 특성상 직업 복권과 관련된 각종 조치들 역시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모두 북한 정권에 의한 광의의 행정처분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굳이 행정복권과 직업복권을 구별할 필요 없이 함께 규율을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정복권의 경우 독일 행정복권법과 같이 그 대상을 침해가 중대한 경우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중대한 침해인지 여부는 판례 형성을 통해 기준을 정해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파기 대상 행정처분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하여 개인에 대한 생명, 신체, 재산, 직업상의 피해를 초래하였고, 그 결과가 현재까지 직접적으로 중대하고 감내 불가능하게 계속되는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존의 행정처분에 대한 광범위한 파기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4) 업무 관할기관

복권 업무를 담당하는 관할기관으로는 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와 같이 별도의 복권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³⁷⁾ ② 독일의 경우와 같이 형사복권은 법원이 담당하고 행정복권은 복권청이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 ③ 형사복권과 행정복권 모두 법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³⁷⁾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에는 국민통합 및 화해증진법의 규정에 따라 대위원회로 불리는 진실화해위원회 산하에 배상 및 복권위원회(Reparations and Rehabilitation Committee)라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배상 및 복권위원회는 의장과 부의장 및 5명의 구성원과 대위원회가 위원회에 지명하는 위원들로 구성하였다(법 제24조).

볼 수 있다.

복권 대상이 판결인 경우에는 법원이 복권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행정처분에 대한 복권 업무일 것이다. 복권 대상 행정처분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체제불법적 행정처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무상 매우 신중한 사법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업무이다. 또한 복권위원회나 복권청에서 업무를 담당할 경우 복권위원회나 복권청의 결정 역시 행정처분적 성격을 갖게 될 것이고, 그 결정이 다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면 절차만 복잡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행정처분의 무효화 조치뿐 아니라 그에 따른 피해보상 문제를 고려해도 해당 행정처분이 체제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화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은 해당 판결이나 행정처분의 무효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부여되는 후속청구권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보상 문제는 행정업무에 해당하므로 기존의 관련 행정부처나 별도의 복권 업무 관련 행정기구를 신설하여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5) 불법성 확인의 심사기준

복권 대상 판결과 행정처분의 불법성의 일반적인 심사기준은 통일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또는 자유법치국가적 기본 원칙과 양립하지 않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와 같은 기준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므로 특별법에서 독일 형사복권법과 같이 형사복권의 경우에는 재판이 정치적 박해에 이용된 경우와 선고형량과 범죄행위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를 전형적인 특별 예시규정으로 둘 필요가 있다. 행정복권의 경우에도 통일 행정복권법의 경우와 같이 반법치국가성을 심사기준으로 하면 될 것이다.

형사복권과 관련하여 구체적 기준 마련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대표적 체제불법 사례에 해당하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와 관련된 것이다. 정치범수용소의 경우에는 동독의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로 형사 복권법 제1조에서 특별히 규정하였던 험니츠 지방법원 발트하임 지원의 1950년 재판과 같이 정치범수용소로의 수용에 관한 모든 결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고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특별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판결로 명시할 만한 대표적인 대상 판결로는 북한 형법 제3장의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해당하는 판결이 될 것이다. 또한 북한이 대외비로 하고 있는 ‘형법부칙’을 적용한 판결들 역시 지나치게 그 형벌이 중하다는 점에서 무효화 조치의 주된 대상이 될 것이다.

(6) 신청 및 재판 절차

복권 대상 판결과 행정처분 등의 무효화에 대한 신청과 재판 등에 대해서는 법원의 비송사건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구체적 절차를 보면 먼저 관련자의 신청을 필요로 한다. 신청자는 일차적으로 판결이나 행정처분을 통해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가 될 것이다.³⁸⁾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무효확인에 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진 자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검사 및 진실규명을 위해 설치될 진실규명위원회 위원장 등도 피해자나 그 유족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무효화에 대한 신청은 원칙적으로 해당 판결 등을 선고한 법원이나 해당 행정처분 기관의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접수하도록 하되, 다른 법원에 접수를 할 경우에는 편의상 우선 이를 접수하여 해당 법원으로 사건을

³⁸⁾ 행정복권의 목적이 정치적 박해 및 차별에 대한 구제를 통한 피해의 제거에 있으므로 신청권자는 자연인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는 견해도 있다. 김하중, 『통일한국의 과거 청산』, p. 544.

이송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신청자는 판결이나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신청 시 그 판결 등으로 인한 불법침해의 원상회복 및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통일독일의 형사복권법의 경우에는 법원은 대상 판결의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만 하였을 뿐이고 그에 따른 사회적 조정급부와 관련된 보상의 문제 대해서는 사회적 조정급부청구권만 부여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을 뿐 별도의 보상 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법원이 구체적인 보상에 대한 판결까지 하도록 한다면 판결 무효 확인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고 법원의 업무가 지나치게 방대해진다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통일독일의 형사복권법과 같이 법원은 무효 여부만 판단을 하고, 그에 따른 보상 문제는 별도의 신청에 따라 별도의 행정기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관할 법원의 합의부에서 하도록 하고, 접수순서에 따라 처리하되 사회적으로 처분이 긴급한 사건이나 신청인이 고령이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긴급한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신청 당시 확정 판결에 의해 형집행 중에 있는 사건일 것이다. 형집행 중에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복권신청 시 형집행정지신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형집행정지신청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무효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범치국가의 원칙에 반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한 사람이 여러 법률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았고 그중 일부만이 범치국가적 기본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일 경우, 나머지 법률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독일 형사복권법의 경우와 같이 그 부분이 '재판의 결과에 있어서 중요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부를 무효로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신청사건은 성격상 비송사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법에서 기본적인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르도록 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재판은 결정으로써 한다. 신청인이 원상회복조치나 피해보상에 대한 신청을 한 사건에 대하여 무효확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결정문에 원상회복조치나 피해보상과 관련한 결정도 함께 하도록 한다. 피해보상 규모 등에 대해서는 법치국가의 기본원칙과 통일 비용 등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일정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7) 복권 결정의 효과

형사복권에 대하여 통일독일의 경우에는 심리결과 대상 판결이 무효가 되면 그 효과로서 신청인에게 추후청구권(Folgeanspruch)과 사회적 조정급부청구권(soziale Ausgleichsleistung)을 부여하였다. 추후청구권은 무효확인에 따른 당연한 권리로 형의 집행종료, 전과말소, 납입된 벌금과 소송비용 등에 대한 보상의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적 조정급부청구권에 대해서는 형사복권법 제16조 제1항에서 “복권과 함께 당사자에게는 자유박탈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회적 조정급부청구권이 부여된다.”고 규정하여 그 권리만을 부여하였으므로 실제 조정급부는 권리자의 신청을 필요로 하였다. 북한주민의 형사복권과 관련된 특별법에서도 통일독일의 형사복권법과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두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복권의 경우에도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행정행위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 처분으로 인해 상실된 자격이나 지위 및 권리가 회복되게 된다. 또한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통일독일 행정복권법의 경우와 같이 신청자에게 사회적 조정급부청구권을 부여하고 그 내용과 범위를 특별법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3. 소결

통일 이후 전환기 정의와 관련하여 북한 정권의 체제불법적인 판결이나 행정처분을 통해 피해를 입은 북한주민의 복권 문제는 체제불법행위를 한 가해자 처벌에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통일독일은 피해자 복권 문제에 대해 통일 초기에는 기존 동서독의 관련 제도를 활용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형사복권법·행정복권법·직업복권법의 제정을 통해 자유법치국가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판결과 행정처분에 대한 파기 내지 무효화 조치를 하고 그에 따른 후속청구권으로 각종 보상과 원호조치를 취하였다. 이와 같은 독일의 사례는 체제를 달리하는 분단국가의 통합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남북한 통일의 경우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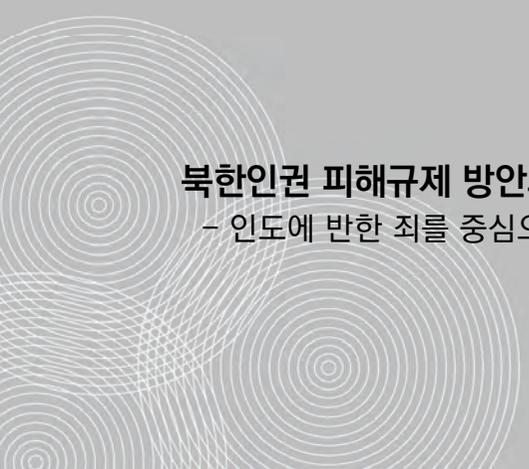
통일 이후의 피해자 복권 문제는 현재 북한의 형사판결에 대한 재심제도나 행정처분에 대한 신소 또는 청원제도나 남한의 형사판결에 대한 재심제도 및 행정구제제도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경우와 같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별법은 정당성 확보를 위해 통일합의서나 통일헌법에 근거하여 통일한국의 새로운 의회가 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률 형태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가능하다면 전환기 정의와 관련된 진실규명, 가해자 처벌, 피해자 구제, 불법 기록물 보존관리, 사회문화적 청산사업 등을 규율하는 포괄적인 단일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통일 과정과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성과 시급성에 따라 각 기제별로 단행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통일독일의 경우 형사복권법과 행정복권법 및 직업복권법을 구분하였으나 남북한 통일의 경우에는 굳이 행정복권법과 직업복권법을 이원화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정권에 의한 체제불법적 판결이나 행정처분에 대한 파기 내지 무효화의 판단은 그 기준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양립가능한지에 두어야 할 것

이다. 하지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의 양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매우 어려운 사법적 판단으로 사전에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도 어려워 결국은 개별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 기준을 형성해 나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형사복권이나 행정복권의 심사는 모두 법원이 관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원의 복권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에 따라 발생하는 추후청구권에 기인한 보상 등의 조치는 행정업무에 해당하므로 기존의 관련 행정부서나 복권청과 같은 새로운 행정기구를 설립하여 담당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복권 관련 특별법에서는 이와 같은 업무 관할과 심사기준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신청 및 재판절차, 결정 및 효과, 불복방법 등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Ⅲ. 보상·배상 및 특별지원 방안

이규창·도경옥(통일연구원)



북한인권 피해규제 방안과 과제

- 인도에 반한 죄를 중심으로 -

본 장에서는 통일 이후를 대상으로 피해자 보상 및 배상과 관련한 문제들을 살펴본다. 제1절에서는 국내법에 의한 보상 및 배상 관련 문제들을 살펴보고, 제2절에서는 국제형사법적인 문제로 ICC의 배상제도를 분석한다. 그에 앞서 통일 이전에 북한법 및 북한 사법제도에 의해 북한주민에 대한 실효적인 보상 또는 배상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간단히 짚고 넘어간다.

북한은 피해자 구제와 관련하여 손해보상법³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북한의 손해보상법은 재산을 침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인신(人身)을 침해하여 발생한 손해도 법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제1조). 인신침해에 대한 보상은 사람의 건강이나 생명을 침해하여 발생시킨 손해로서 사람의 자유를 구속하였거나 인격, 명예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에도 손해보상책임을 부담한다(제40조). 이는 본 연구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 특히 인도에 반한 죄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은 북한주민의 구제 측면에서 의미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피해를 입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북한주민 또는 그 권리의 승계인이며, 손해보상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피해를 끼친 기관, 기업소, 단체와 북한주민 또는 그 의무를 승계한 자가 된다(제9조). 재산이나 인신침해에 대한 손해보상과 관련된 문제는 당사자 간의 협의로써 해결하고, 협의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되어 있다(제56조). 민사재판을 위해 민사소송법⁴⁰⁾이 제정되어 있다. 또한 손해보상은 북한 형사소송법⁴¹⁾에도 규정되어 있다. 이 법에

³⁹⁾ 2001년 8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13호로 채택, 2005년 4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083호로 수정 보충된 것이다.

⁴⁰⁾ 북한 민사소송법은 1976년 1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8호로 제정되었으며, 최근 개정은 2015년 12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47호에 의해 수정 보충된 것이다. 2015년 개정된 민사소송법 규정은 법률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증보판)』(평양: 법률출판사, 2016), p. 415에서 볼 수 있다.

⁴¹⁾ 북한 형사소송법은 1950년 3월 3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5차 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최근 개정은 2012년 5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87호로 수정 보충된 것이다.

따르면 범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북한주민은 보상할 책임이 있는 자를 상대로 예심원이나 판사 또는 재판소에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123조). 나아가 예심원과 판사, 재판소는 피심자 또는 피소자가 저지른 범죄로 손해를 입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북한주민에게 손해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24조). 손해보상을 해야 하는 자는 범죄를 저질러 물질적 손해를 준 피심자, 피소자, 범죄 연루자 또는 범죄자의 행위에 대하여 재산적 책임을 지는 자이다(제125조). 손해보상청구는 범죄로 인해 손해를 입은 ‘물질적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제126조). 북한 형사소송법상의 손해보상청구제도는 민사소송의 절차를 밟는 경우에 있게 되는 심리의 중복을 피하고 재판소와 재판관계자들의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설명되고 있다.⁴²⁾ 북한 형사소송법에 의한 손해보상청구를 하지 못한 자는 민사소송 절차에 의해 손해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북한 형사소송법 제128조).

북한 형사소송법이 손해보상을 물질적 손해만을 대상으로 하고 정신적 손해, 인격적 손해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미흡한 부분으로 평가되지만 북한도 손해보상을 위한 나름의 법제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범죄 행위로 인한 북한의 민사소송과 형사소송법상의 손해보상청구제도가 실제로 작동되는지의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북한 당국에 의해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로 인한 손해를 입은 북한주민과 그 가족들이 북한 당국을 상대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법상의 손해보상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북한의 재판제도는 노동당의 영도 내지는 통제를 받고 있는데 북한 지도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북한 재판소가 받아 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북한의 태도는 COI 보고서 발표 이후 북한 지도부를

⁴²⁾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2판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7), p. 78; 법원행정처, 『북한의 형사법』 (서울: 법원행정처, 2006), p. 515에서 재인용.

대상으로 북한인권침해 책임규명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북한의 태도에서 잘 엿볼 수 있다.⁴³⁾ 또한 북한 형사소송법상의 손해보상청구 제도를 이용할 경우 인도에 반한 죄 침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 북한 형법⁴⁴⁾에는 인도에 반한 죄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⁴⁵⁾ 요컨대, 북한주민이 북한 당국에 의해 인도에 반한 죄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손해를 입은 경우 현재의 북한 사법제도에 의해 보상 또는 배상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주민의 보상 또는 배상 문제는 통일 이후에나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하다. 한편, 남한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국민은 헌법 제3조의 해석상 북한주민도 포함될 수 있다. 헌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피해자를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정의하고 있다(제3조 제1호). 그리고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여러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타인의 범위에 북한 정권이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북한의 법적지위, 남북한 특수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남북한의 분단 현실을 감안했을 때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장소적 범위로 한정한다고 이해되어야 한다.

43) COI 보고서 발표 이후 북한의 반발에 대해서는 이규창, “북한형사사법 실태와 동향,” 박학모·김대근·이규창, 『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pp. 106~112 참조.

44) 북한 형법은 1950년 3월 3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5차 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최근 개정은 2015년 7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78호에 의해 수정보충된 것이다. 2015년 개정된 북한 형법 규정은 법률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증보판)』, p. 494 이하에서 볼 수 있다.

45) 북한 형법상 인도에 반한 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규창 외,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로마규정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pp. 77~84.

1. 국내법에 의한 보상·배상 및 명예회복과 특별지원

본 절에서는 먼저 북한 당국의 인도에 반한 죄 위반으로 인해 북한주민이 입은 손해를 통일한국이 보전해주어야 한다고 할 때 보전의 법적 성격이 배상인지 아니면 보상인지를 간단히 살펴본다. 이어 국내의 전환기정의 관련 특별법들을 통해 통일 이후 피해보상의 방향을 가늠해보고, 이어 구체적인 내용으로 피해를 입은 북한주민들의 보상 수준을 산정할 경우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국제법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이어 북한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완전하고 충분한 보상은 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 측면에서 특별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본다.

가. 피해 보전으로서의 보상

북한 당국의 인도에 반한 죄 위반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와 관련하여 먼저 제기되는 법적 문제는 북한주민이 입은 피해를 보전(補填)하는 것이 통일한국에의 법적 책임인지의 여부이다.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 보전은 배상의 형태가 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의 존재 여부는 중요하다. 통일독일의 경우 통일독일이나 통일에 의하여 구동독 지역에 설립된 신연방주는 구동독의 법적 승계인이 아니었다. 구동독은 독일통일로 인해 법인격이 소멸하였기 때문이다.⁴⁶⁾ 다시 말해 구동독 정권이 동독 주민들에게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통일독일이 승계하여 이를 배상할 법적 의무가 없었다.

북한 정권이 북한주민들에게 저지른 심각한 중대한 범죄, 소위 체제 불법행위는 국가승계 유형에 따라 접근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만일 통일한국이 북한 정권의 불법행위 책임을 승계한다고 볼 경우 북한의 불법행위로 인한 북한주민의 피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⁴⁷⁾ 북한지역에 현

46) 법무부, 『독일통일의 구동독 체제불법청산 개관』, p. 780.

47) 김하중, 『통일한국의 과거청산』, p. 526.

북한 정권을 대신하는 정권이 들어설 경우 북한 정권의 불법행위책임이 신정권에 승계될 수 있다. 이 같은 국가승계 유형은 합병(또는 융합, merger)의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 남북한의 대등한 통합을 전제로 하는 합병(또는 융합) 형태의 국가승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천명하고 있는 우리 헌법 제4조의 정신과 비대칭성이 심화되고 있는 남북한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⁴⁸⁾ 결국 남북한의 통일은 국가승계 유형으로 구분할 경우 흡수통합(absorption)이 헌법에 부합한다. 이 경우 북한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실체는 남북통일로 인해 소멸하게 되고, 독일통일과 마찬가지로 북한 정권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통일한국에 승계되지 않게 된다.⁴⁹⁾ 이 같은 점에서 통일한국이 북한주민이 입은 피해를 보전해주어야 한다면 그것은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배상이 아니라 보상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 국제법위원회가 1983년 채택한 「국가재산·국가문서 및 국가채무에 대한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State Property, Archives and Debts)」은 불법행위책임의 국가승계 문제를 규율하지 않고 있다. 유엔 국제법위원회가 2001년 제출한 「국제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초안(International Law Commission's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⁵⁰⁾도 국가책임의 승계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다. 한편, 민간학술단체인 국제법학회(Institute de Droit International: IDI)는 국가책임 분야의 성문법전화 작업을 거쳐 2015년

48) 이규창, 『남북통일과 국가재산·채무·양허권의 승계』 (서울: 통일연구원, 2016), pp. 6~7.

49) 강준구, “체제불법 청산과 통일독일의 피해자 구제제도,” 『헌법과 통일법』, 제3호 (서울대 헌법·통일법센터, 2013), p. 244; 김하중, 『통일한국의 과거청산』, pp. 526~527; 한동훈, “정치적 피해자에 대한 사법적 회복,” 『통일법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쟁점과 과제』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 주최 학술회의 자료집, 2016.09.09.), p. 17.

50) UN General Assembly, *Official Records, Fifty-fifth Session, Supplement no. 10* (UN Doc. A/56/10).

최종보고서를 채택하였다.⁵¹⁾ 국제법학회는 이 연구보고서에서 어느 국가가 국가로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다른 국가에 통합되는 경우 국제불법행위에 기인한 선행국의 권리와 의무는 승계국에 이전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⁵²⁾ 남북통일의 경우에 적용해 보면 우리 헌법 제4조에 근거한 흡수통합의 경우 북한의 불법행위책임은 통일한국에 승계된다는 것이고, 이는 피해 보전의 형태가 보상이 아닌 배상이 되어야 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법학회의 최종보고서는 상당한 권위를 부여할 수는 있지만 민간학술단체의 보고서라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국제법학회의 최종보고서는 국제법상의 불법행위, 즉 국가가 대외적으로 국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불법행위 문제에 적용되며, 국가가 자국민들에게 저지른 대내적인 불법행위 문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불법행위책임 문제는 북한의 대외적인 불법행위가 아닌 대내적인 불법행위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법학회 최종보고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국내 전환기 정의 사례를 통해 본 피해보상 및 명예회복 방향

통일 이후 북한주민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대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법규의 적용은 법치국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많다는 점에서 북한 법규는 준거법으로 기능하기 어렵고, 남한의 현행 법률을 통일 관련 전환기 정의 문제에 적용하는 것도 이론적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⁵³⁾ 우리나라는 전환

⁵¹⁾ Institute de Droit International, *State Succession in Matters of State Responsibility: Final Report* (Ghent: IDI, 2015), para. 1.

⁵²⁾ *Ibid.*, para. 87, p. 60 (Art. 14). 국제법상 불법행위책임 승계와 관련된 내용은 이규창, 『남북통일과 국가재산·채무·양허권의 승계』, pp. 70~78; 임예준,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책임의 국가승계: 이론적 쟁점에 대한 소고,” 『국제법학회논총』, 제61권 4호 (대한국제법학회, 2016), pp. 181~203 참조.

⁵³⁾ 이효원, “통일국가의 사회통합방안,” (통일연구원 비공개 자문회의, 2017.06.09.), p. 7.

기 정의 실행과 관련하여 여러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이 같은 경험을 토대로 통일 이후 특별법을 제정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보상을 추진할 경우 몇 가지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주민의 보상을 위한 특별법은 크게 보면 포괄입법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개별입법의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과거 전환기 정의 사례는 삼청교육피해자,⁵⁴⁾ 노근리사건,⁵⁵⁾ 동학농민혁명 참여자,⁵⁶⁾ 특수임무수행자,⁵⁷⁾ 제주 4·3사건,⁵⁸⁾ 거창사건,⁵⁹⁾ 5·18 광주민주화운동⁶⁰⁾ 등 개별적인 사건을 다룬 사례들이 있는 반면 민주화운동,⁶¹⁾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⁶²⁾ 등 포괄적인 사건을 다룬 사례들이 있다. 국내 문헌은 전자를 개별적 과거청산으로, 후자를 포괄적 과거청산으로 구분하여 지칭하고 있다.⁶³⁾ 북한인권침해 사례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 형태 모두 적용될 수 있다고 보인다. 즉, 북한인권침해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응하는 방안과 특별한 사안, 예를 들어 국제사회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북한인권침해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고 있는 정치범수용소만의 보상 및 명예회복을 다루는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명예회복 및 보상의 전제로서, 또는 명예회복 및 보상과 함께 진

54) 관련 법률: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89호).

55) 관련 법률: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8735호).

56) 관련 법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0110호).

57) 관련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79호).

58) 관련 법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4189호).

59) 관련 법률: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2200호).

60) 관련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2910호).

61) 관련 법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89호).

62) 관련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법률 제12920호).

63) 김한균, “대한민국의 과거·불법청산,” 김한균 외, 『통일시대의 형사정책과 형사사법통합 연구(II): 통일시대의 과거·불법청산 및 사회통합 방안에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pp. 254, 267.

실규명(진상규명)이 다루어졌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 가운데 제주 4·3사건은 특별법의 명칭에 ‘진상규명’이 포함되어 있고, 법의 목적에도 희생자 명예회복과 함께 진상규명이 명시되어 있다.⁶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도 사실조사가 포함되어 있다(제6조). 이 밖에 국내 전환기 정의 관련 사례 가운데 진실규명과 관련한 특별법으로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1494호) 등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북한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보상의 경우에도 진실규명 내지 진상규명이 선결과제로 제기될 것은 자명하다. 특히 인도에 반한 죄가 지니고 있는 사안의 엄중성에 비추어 봤을 때 진실규명에 대한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북한인권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의 북한인권침해 기록이 중요하다. 그러나 분단 상황에서의 북한인권침해 기록 및 진상규명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인권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목적보다는 북한인권침해 책임(accountability)규명, 다시 말해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염두하고 설립되었다. 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진상규명은 통일 이후 특별법 제정과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셋째, 피해자 구제의 일환으로서의 명예회복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명예회복은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지만 보상과 함께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 명예회복만을 별도로 다룬 사례로는 노근리사건, 동학농민혁명, 제주 4·3사건, 거창사건이 있었고, 보상만을 다룬 사례로는 특수임무수행자 사건이 있었다. 명예회복과 보상을 함께 다룬 사례로는 삼청교육피해자,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 사례가 있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법률 명칭에 보상만이

⁶⁴⁾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조.

규정되어 있으나 그 내용에 명예회복이 포함되어 있다.⁶⁵⁾

북한인권의 경우에도 보상과 함께 명예회복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방안은 보상과 명예회복을 함께 다루는 방안, 보상만을 다루는 방안이 모두 가능하다. 생각건대, 북한인권침해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에는 보상만을 특별법의 범위로 하는 방안이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반면에, 정치범수용소처럼 중대한 사안만을 다루는 개별입법의 형태를 취할 경우에는 보상에 그쳐서는 안 되고 명예회복 문제가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정치범수용소의 경우에는 협의의 정치범뿐만 아니라 정치범으로 보기 어려운 일반범의 경우에도 정치범이라는 굴레를 씌워 수용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였기 때문이다.⁶⁶⁾

넷째, 국내의 과거 전환기 정의 사례는 명예회복과 관련하여 위령사업,⁶⁷⁾ 합동묘역관리 비용 지원,⁶⁸⁾ 기념사업,⁶⁹⁾ 추모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⁷⁰⁾ 유족등록,⁷¹⁾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⁷²⁾ 등의 제도를 운영하였다. 북한인권의 경우에도 북한지역 내의 북한인권박물관,⁷³⁾ 미국, 독일, 이스라엘

65)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66) 이금순·김수암·이규창, 『북한 정치범수용소』, p. 10.

67)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0조.

68)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69)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제9조.

70)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71)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72)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73) 이와 관련하여 남한지역 내에 북한인권박물관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017년 4월 14일에 통일부는 2019년까지 북한인권박물관을 건립한다는 목표 하에 가능한 부지와 시설 계획, 전시 콘텐츠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인권박물관 세운다,” 『서울경제』, 2017.04.14., <<http://www.sedaily.com/NewsView/1OEN730H1E>>.

의 홀로코스트(Holocost) 기념관 같은 추모시설 건립 및 위령사업, 인권 침해 현장 보존 등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함을 말해준다. 인권침해 현장 보존으로는 구류장의 경우에는 악명높은 구금 및 교정시설을 대표하는 온성군 북한 보위성 구류장, 교화소의 경우에는 전거리 교화소, 정치범수용소의 경우에는 명간(화성) 정치범수용소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유족도 보상 및 명예회복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국내 전환기 정의 사례는 시사한다. 위령사업 또한 합동묘역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피해를 입은 북한주민의 매장지 조사, 유전자 조사·발굴 및 보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제Ⅳ장에서 자세하게 살펴본다.

다섯째, 국내의 과거 전환기 정의 사례들은 특별법을 집행할 기구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는데 이는 북한인권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도 위원회 설치가 필요함을 말해준다.⁷⁴⁾ 기존 국내의 전환기 정의 사례의 경우 대부분의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되었다(〈표 Ⅲ-2〉 참조). 예외적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독립위원회로 운영되었다.⁷⁵⁾ 이는 진실·화해가 그만큼 중요한 사안으로 간주되었음을 말해준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는 장관(국방부 장관) 산하에 설치되었다.⁷⁶⁾ 거창사건 등의 경우에는 위원회와 별도로 시·도지사 산하의 실무위원회가 설치되었다.⁷⁷⁾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사례의 경우에는 위원회 외에 소위원회⁷⁸⁾와 사무처,⁷⁹⁾ 자문기구⁸⁰⁾가

74) 이와 관련하여 이효원은 특별기구로 ‘체제불법피해자 구제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이효원, “통일 이후 북한의 체제불법에 대한 극복방안,” p. 107.

7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조.

76)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77)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7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6조.

7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4조.

8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5조.

설치되어 운영되었다.

위원회의 위상은 해당 위원회 활동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수준을 보여준다. 북한인권침해로 인한 피해보상 및 명예회복 문제를 다룰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위원회의 위상을 별도의 독립기구로 할 것인지, 아니면 대부분의 과거 전환기 정의 사례처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할 것인지, 또는 통일부 또는 통일 이후 북한인권 문제를 관장할 장관 산하로 할 것인지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북한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북한주민에 대한 보상 및 명예회복 문제를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는지 보여주는 척도가 될 수 있다. 만일 북한인권침해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위원회는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하거나 대통령 직속 기구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위원회는 보상 및 명예회복뿐만 아니라 진상규명 및 남북한주민, 북한주민 간의 사회통합 및 화해 문제까지 다룰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시·도 차원의 실무위원회 내지 소위원회를 두어 실무를 담당케 하고, 실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외 전문가와 시민사회 인사가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반면 개별적인 사안을 다루는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에는 기존의 국내 전환기 정의 사례와 비슷한 수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여섯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일명 ‘과거사정리법’)은 진실규명 대상 행위를 ①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②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 흑사건, ③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④ 기타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⁸¹⁾ 이는 북한인권의 경우에도 행위의 유형에 따라 피해보상의 정도를 달리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 같은 점에 따라

피해자 구제 방식은 피해의 영역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⁸²⁾ 북한인권침해는 크게 국내법 위반과 국제법 위반, 특히 로마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네 가지 관할대상범죄 위반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법 위반과 국제법 위반은 피해보상액 산정 시 고려되어야 한다. 로마규정 관할대상 범죄 가운데 집단살해죄⁸³⁾와 인도에 반한 죄의 경우에도 침해 정도가 다르다는 점에서 피해보상의 정도가 다르게 산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인도에 반한 죄의 경우에도 그 행위 유형에 따라 보상의 수준을 다르게 산정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피해보상과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같은 인도에 반한 죄라고 하더라도 살해와 다른 유형의 행위를 구분하여 법정형을 달리 정하고 있다.⁸⁴⁾ 참고로 COI는 2014년 2월 발표한 상세보고서⁸⁵⁾에서 로마규정상 의 인도에 반한 죄 가운데 인종차별을 제외한 모든 행위 유형이 북한에서 자행되었으며,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곱째,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일명 ‘세월호피해지원법’)은 공동체 회복을 중시하고 있다. 세월호피해지원법은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법의 목적 가운데 하나로 명시하고(제1조),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1조). 피해자 구제에 있어 직접적 피해자 이외에 심각한 인권침해를 목격한 간접

8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3호~제6호.

82) 강준구, “체제불법 청산과 통일독일의 피해자 구제제도,” 『헌법과 통일법』, 제3호(서울대 헌법·통일법센터, 2013), pp. 244~245.

83)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행위가 집단살해죄(genocide)에 해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이규창, “집단살해죄의 주관적 구성요건과 북한인권,” 『통일과 법률』, 제29호(법무부, 2017), pp. 73~98 참조.

84)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85) UN Doc. A/HRC/25/CPR.1 (7 February 2014),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표 III-1 COI의 북한에 의한 인도에 반한 죄 판단

로마규정	COI 상세보고서					
	정치범 수용소	교학소·구금시설	종교인·반체제인사	탈북민	기아	납치
살해	○	○	○	○	○	
절멸	○	○			○	
노예화	○	○				
주민 추방, 강제이주		○				
구금, 신체적 자유 박탈	○	○	○	○		
고문	○	○	○	○		
성폭력	○	○		○		
박해	○		○			
강제실종				○		○
인종차별						
기타 비인도적 행위					○	

출처: COI 상세보고서, 제1033항~제1148항을 토대로 필자가 정리.

적 피해자들과 사회공동체 전반에 대한 치유와 회복 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⁸⁶⁾ 북한의 경우 인도에 반한 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 인격을 파괴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은 공개처형을 강제 목격하도록 함으로써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의 정신건강을 침해하고 있다. 세월호피해지원법은 북한의 경우에도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여덟째, 다수의 전환기 정의 관련 특별법들은 피해자 구제와 관련하여 보상 및 명예회복에 더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특별지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특별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아래의 별도의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⁸⁶⁾ 강윤주, “통일 법제 마련에 있어 국제법상 전환기정의(Transitional Justice) 구현의 필요성,” p. 66.

표 III-2 국내 전환기 정의 사례의 피해보상 및 명예회복과 지원

사례/사건	특별법	위원회	구제의 대상과 내용 및 범위
삼청교육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 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삼청교육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 피해자와 유족 - 명예회복 및 보상 - 의료지원
노근리사건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 희생자 및 유족 - 명예회복 - 위령사업 - 의료지원
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 참여자와 유족 - 명예회복 - 사실조사 - 기념사업
특수임무수행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국방부장관 소속)	-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 보상 - 특별위로금
제주 4·3사건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국무총리 소속)	- 희생자와 유족 -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 위령사업
거창사건 등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국무총리 소속)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시·도지사 소속)	- 사망자와 유족 - 명예회복 - 합동묘역 - 위령제례 및 위령탑 건립
5·18 민주화운동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지원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 관련자와 유족 - 명예회복 및 보상 - 의료지원 - 생활지원 - 생계지원
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 희생자와 유족 - 명예회복 및 보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독립) 소위원회 사무처 자문기구	- 희생자, 피해자, 유족,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진상규명, 화해 - 피해 및 명예회복 - 위령사업 및 사료관 운영 - 과거사연구재단

다. 인권피해구제 국제원칙 및 피해보상 산정 시 고려사항

그렇다면 보상의 수준은 어떠해야 하나? 앞에서 간단하게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정권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은 통일한국에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는 점에서 통일한국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보상 방식이 이루어지게 된다. 통일독일의 경우 피해자 보상은 공공부조로서의 성격을 갖는 사회적 조정급부를 제공하는 것으로 희생자들에 대한 피해의 전부보상은 당연히 배제되었다.⁸⁷⁾ 남북통일의 경우에도 북한 정권에 의해 피해를 입은 북한주민들에 대한 구제는 법적인 책임을 수반하는 배상이 아니라 사회부조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⁸⁸⁾ 점에서 완전 배상이 아니라 국가재정이나 피해자의 생활능력 등을 고려한 보상에 의한 방식이 이루어져야 한다.⁸⁹⁾ 그러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수준을 정할 경우 어떤 점들이 고려되어야 하는가?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범죄는 일반적인 범죄가 아니라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 특히 인도에 반한 죄이다. 따라서 인도에 반한 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보상 수준을 정할 경우 국제적인 원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2005년 12월 16일 유엔 총회 결의로 채택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 및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지침」⁹⁰⁾(이하 ‘유엔인권피해자 권리구제원칙’)이 고려되어야 한다. 유엔 총회는 1985년 결의를 통해 「권력 범죄 및 권력 남용의 피해자를 위한 사법정의의 기본원칙 선언」⁹¹⁾을 채택

⁸⁷⁾ 법무부, 『독일통일의 구동독 체제불법청산 개관』, p. 780.

⁸⁸⁾ 한동훈, “정치적 피해자에 대한 사법적 회복,” p. 17; 이효원, “통일국가의 사회통합방안,” p. 7.

⁸⁹⁾ 강준구, “체제불법 청산과 통일독일의 피해자 구제제도,” p. 244; 김하중, 『통일한국의 과거청산』, p. 527.

⁹⁰⁾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s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UN Doc. A/RES/60/147 (21 March 2006).

하였다. 이 두 결의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청산한다는 기본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법리의 발전을 이루고 있다. 차이점은 후자, 즉 1985년 결의가 국내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해 2005년의 유엔인권피해자 권리구제원칙 결의는 국제 범죄인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심각한 위반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엔인권피해자 권리구제원칙은 ‘피해자의 국제권리장전(international bill of rights of victims)’로 불리고 있다.⁹²⁾ 유엔인권피해자 권리구제원칙은 모두 27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해자 구제와 관련된 핵심적인 조항만을 살펴본다.⁹³⁾

유엔인권피해자 권리구제원칙은 피해의 범주와 관련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 감정적 손상, 경제적 손실 또는 근본적 권리의 실질적인 침해를 피해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직접적인 피해자의 직계가족과 피부양자는 물론 피해자를 돕거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입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개인도 포함하고 있다(제8원칙).

보상의 수준과 관련하여 유엔인권피해자 권리구제원칙은 적절하고 실효적이며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져야하고, 보상은 위반행위와 피해의 중대성에 비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5원칙). 또한 피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이 피해배상에 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하려고 하지 않을 경우 국가는 피해자를 위한 국가적인 보상 지원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제16원칙). 북한 당국에 의해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은 북한주민이 입은 손해를 통일한국이 배상해야 할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북한주민이

⁹¹⁾ 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 UN Doc. A/RES/40/34 (29 November 1985).

⁹²⁾ 장복희, “동아시아지역에서의 무력충돌의 성폭력 희생자들에 대한 법적 보상·배상,” 『인도법논총』, 제34호 (대한적십자사, 2014), p. 79.

⁹³⁾ 유엔인권피해자 권리구제원칙의 영어 전문(全文)은 부록 참조.

입은 손해를 보상해 줄 국제법상의 책무가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중대한 국제인권법 침해 또는 심각한 국제인도법 침해가 발생하기 이전 상태로 피해자를 원상회복시켜야 하며, 원상회복에는 자유, 인권의 향유, 정체성, 가정생활 및 시민권의 복구, 주거지 반환, 재산권 향유의 회복 및 반환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9원칙).

경제적으로 산정 가능한 손해에 대해서는 금전배상을 하여야 하는데 그 원인으로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 기회의 상실(직장, 교육, 사회적 기회 등), 물질적 손해 및 소득 상실, 정신적 충격, 전문가의 조력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서비스와 정신건강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제20원칙).

만족(satisfaction)과 관련하여서는 일반 국제법에서 언급되고 있는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 사과 외에도 사실의 입증 및 진상규명, 실종자 및 사망자 수색, 매장지 조사, 피해자 추모사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제22원칙).

둘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일명 ‘자유권규약’)은 동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이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아야 하며, 이와 같은 구제조치가 허용되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이 이를 집행할 것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3항).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일반논평 제31호는 이를 재확인하면서 자유권규약상의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에 대한 보상 없이는 자유권규약 제2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효적인 구제를 제공할 의무가 이행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⁹⁴⁾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자유권규약은 생명권(제6조), 고문 및 가혹행위의 금지(제7조), 노예상태의 금지(제8조),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제9조)

⁹⁴⁾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No. 31, UN Doc. CCPR/C.21/Rev.1 /Add.13 (26 May 2004), para. 16.

등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 고문방지협약⁹⁵⁾ 제14조는 당사국의 법체계 내에서 고문행위의 피해자가 구제를 받고, 또한 가능한 한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실효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2012년 발표한 일반논평 제3호에서 고문방지협약 제14조가 모든 고문 희생자에게 적용됨을 확인하고 있다.⁹⁶⁾ 또한 일반논평 제3호는 고문방지협약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 '구제(redress)'에는 보상이 포함되며, 보상의 개념에는 원상회복, 배상, 재활, 만족, 재발방지 약속 및 고문방지협약상의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 해당된다는 유권적인 해석을 내리고 있다.⁹⁷⁾

한편, 유엔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의 문안작성위원회(Drafting Committee)는 2017년 제69차 회기에서 일회독을 갖고 인도에 반한 죄의 초안을 채택하였다.⁹⁸⁾ 이 초안은 ILC가 2017년 유엔 총회에 제출한 공식 문건⁹⁹⁾에 포함되었는데 16개 조문과 주석으로 구성으로 되어 있다. ILC의 인도에 반한 죄 초안은 제12조 제3항에서 피해 보전과 관련하여 모든 국가는 인도에 반한 죄의 피해자들이 물질적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자국의 사법제도에서 보장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조치에는 원상회복, 금전배상, 만족, 재활, 중지, 재발방지 약속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⁹⁵⁾ 정식명칭: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⁹⁶⁾ Committee against Torture, General Comment No. 3, UN Doc. CAT/C/GC/3 (19 November 2012), para. 1.

⁹⁷⁾ *Ibid.*, para. 2.

⁹⁸⁾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Crimes against humanity: Texts and titles of the draft preamble, the draft articles and the draft annex provisionally adopted by the Drafting Committee on first reading*. UN Doc. A/CN.4/L.892 (26 May 2017).

⁹⁹⁾ United Nations,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General Assembly Official Records Seventy-second Session Supplement No. 10*(New York: United Nations, 2017). UN Doc. A/72/10.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⁰⁰⁾ ‘자국의 사법제도에서 보장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의 의미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손해에 대해 청구를 제기하거나 구제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하도록 필요한 법률, 규칙, 절차 또는 제도를 갖추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고 주석을 달고 있다.¹⁰¹⁾ 이 규정은 아직 초안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인도에 반한 죄로 인해 정신적 또는 물질적 손해를 입은 자들의 피해 보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성문법전화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라.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지원과 배상

(1) 특별지원의 필요성 및 사례

현재 남한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¹⁰²⁾ 그러나 통일이 되더라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의료급여법을 비롯한 남한의 사회보장제도를 북한지역에 즉시 확장 적용하기는 어렵다. 통일한국의 재정적인 상황, 북한주민들의 생활 상태, 사회보장제도 북한지역 적용에 대한 남한 주민

¹⁰⁰⁾ *Ibid.*, p. 92. 원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rticle 12 Victims, witnesses and others

3. Each State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in its legal system that the victims of a crime against humanity have the right to obtain reparation for material and moral damages, on an individual or collective basis, consisting, as appropriate, of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or other forms: restitution; compensation; satisfaction; rehabilitation; cessation and guarantees of non-repetition.

¹⁰¹⁾ *Ibid.*, p. 96(para. 14). 원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Draft article 12, paragraph 3, addresses the right of a victim of a crime against humanity to obtain reparation. The opening - “Each State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in its legal system” - obliges States to have or enact necessary laws, regulations, procedures or mechanisms to enable victims to pursue claims against and secure redress for the harm they have suffered from those who are responsible for the harm, be it the State itself or some other actor.

¹⁰²⁾ 관련 내용은 김석진·이규창,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분리 운영 방안: 경제적 및 법적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15), pp. 28~31 참조.

들의 인식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해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¹⁰³⁾ 그럴 경우 인도에 반한 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북한주민들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으며, 이 같은 점에서 그들에 대한 특별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북한주민들의 경우 분단 현실로 인하여 북한 정권의 통치 하에서 특별한 희생을 입은 자들이라는 점에서 통일 이후 이들에 대한 사회보상적인 지원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¹⁰⁴⁾

불법적인 정권 하에 놓여 있던 주민들에 대한 특별지원은 우리에게 앞서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우에서 볼 수 있다. 독일의 경우 1992년에 처음으로 보상법이 제정되어 부당하게 징역을 산 경우 수감 기간만큼 매월 250유로(현재 300유로로 인상)를 보상금으로 받게 되었다.¹⁰⁵⁾ 이후 1994년 7월 1일 제2차 독일 사회주의통일당(사통당) 불법청산법이 발효되었는데¹⁰⁶⁾ 이 법을 통해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징역은 살지 않았지만 사통당 정권이 자행한 탄압으로 인해 건강상의 장애를 안게 되었거나 재산을 상실하고 직업적으로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로 수혜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¹⁰⁷⁾ 2007년 사통당 불법청산법이 재개정되어 사통당 정권 범죄의 희생자들에게 이들이 겪은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희생자 연금(Opferrente)’을 지급하게 되었다. 연금 수혜 대상은 부당한 판결로 최소 180일 이상 징역을 살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만큼 궁

¹⁰³⁾ 자세한 내용은 위의 책, pp. 45~109 참조.

¹⁰⁴⁾ 이효원, “통일국가의 사회통합방안,” pp. 8~9.

¹⁰⁵⁾ 통일부, 『독일통일 총서 7: 과거청산분야 관련 정책문서』(서울: 통일부, 2014), p. 81.

¹⁰⁶⁾ 독일 사회주의통일당(사통당)의 1, 2차 불법청산법(형사복권법, 행정복권법, 직업복권법)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들을 참조. 강준구, “체제불법 청산과 통일독일의 피해자 구제제도,” p. 246; 이효원, “통일 이후 북한의 체제불법에 대한 극복방안,” p. 32; 한명섭, 『통일법제 특강』(서울: 한올아카데미, 2016), pp. 496~500; 김하중, 『통일한국의 과거청산』, pp. 289~337; 법무부, 『통일독일의 구동독체제불법청산 개관』(서울: 법무부, 1995), pp. 775~1011.

¹⁰⁷⁾ 통일부, 『독일통일 총서 7: 과거청산분야 관련 정책문서』, p. 81.

핍한 저소득자에 한해서 매달 300유로가 지급되고 있다.¹⁰⁸⁾ 이와 같은 피해자들에 대한 원호(援護)급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중의 인과관계가 요구되었다. 우선 자유박탈과 건강 손상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밖에 후유장애나 경제적 손해와 건강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들 인과관계는 개연성이 있으면 인정되었다.¹⁰⁹⁾ 직접적인 피해자 외에 불법구금으로 인한 건강상의 손상이나 불법적인 사형판결 집행으로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해서도 원호급부가 보장되었다. 유족원호는 사망한 자의 배우자, 자녀 및 직계존속에 한정되었으며, 형제자매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유족원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망이나 구금으로 인하여 입은 건강훼손에 직·간접적으로 기인하였어야 하며, 사망원인의 증명방법에는 제한이 없다.¹¹⁰⁾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특별지원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의 국내 전환기 정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특별지원 형태는 의료지원,¹¹¹⁾ 생활지원,¹¹²⁾ 생계지원,¹¹³⁾ 특별위로금¹¹⁴⁾ 등이 그것이다. 이 밖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안부피

108) 위의 책, p. 83.

109) 김하중, 『통일한국의 과거청산』, p. 313.

110) 위의 책, p. 313.

111)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의료지원 제8조.

112)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113)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114)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

해자법')도 사회보장 차원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서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사람들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간병인 지원 등을 하고 있다(제4조).

이상과 같은 통일독일 사례와 우리나라의 전환기 정의 사례의 특별지원제도는 인도에 반한 죄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 및 유족들에게 특별법 제정을 통한 특별지원이 필요하며, 그 내용은 의료지원, 생활 및 생계지원 등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2) 재원 마련 방안으로서의 배상

인도에 반한 죄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특별지원제도를 마련할 경우 그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이 필요하다. 그 방안의 일환으로 범죄은닉재산의 환수와 배상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급진적인 통일의 경우 북한의 국가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들에 의한 국가자산 약취 및 은닉이 우려된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국가자산 외에 국보급 미술품, 골동품, 문화재, 외화 자산, 고급정보, 첨단무기 등이 포함될 수 있다.¹¹⁵⁾ 이와 같은 국가자산 은닉 및 유출은 점진적·단계적 통일의 경우에도 모습을 변형하여 나타날 수 있다.¹¹⁶⁾ 배상제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배상명령제도의 활용과 국제형사법상의 피해자배상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첫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배상명령제도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배상명령제도란 형사재판과 민사상의 손해배상이 결합된 형태로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를

115) 이규창 외,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p. 212.

116) 위의 책, p. 214.

말한다.¹¹⁷⁾ 남북통일 이후 통일한국의 법원이 인도에 반한 죄 위반자들을 대상으로 독자적으로 재판을 하거나 혼합재판소(hybrid court)를 구성하여 재판을 진행할 경우¹¹⁸⁾ 북한인권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을 진행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배상명령도 동시에 선고하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제도는 본 연구보고서가 다루고 있는 인도에 반한 죄의 경우에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 우선,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¹¹⁹⁾ 통일 이전 북한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피해 금액을 산정하는 일과 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를 특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실무적인 문제 외에 현행 배상명령제도는 인도에 반한 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배상명령제도는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 범죄에 적용될 뿐,¹²⁰⁾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로마규정 이행법률’)의 관할 대상 범죄 가운데 하나인 인도에 반한 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통일 이후 북한에서 발생한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해 배상명령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거나 또는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로마규정상의 피해자배상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로마규정은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가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또는 피해자에 관한 배상을 명시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배상제도를 규

11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18) 통일 이후 혼합재판소를 구성하거나 또는 순수한 국내재판과 혼합재판으로 재판을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규창 외,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로마규정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pp. 88~96 참조.

11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12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정하고 있다.¹²¹⁾ 통일과정 또는 통일 이후 국내재판 또는 혼합재판에 의하지 않고 ICC에 북한인권 책임규명을 위한 재판을 회부할 경우¹²²⁾ 로마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로마규정상의 피해자배상제도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그러면 헤이그에 소재하고 있는 ICC 법정에서 재판을 하지 않고 국내에서 재판을 할 경우에도 로마규정상의 피해자배상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로마규정도 조약의 일부이고, 따라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로마규정과 로마규정상의 피해자배상규정이 국내 형사재판에 적용된다는 해석론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로마규정이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과 로마규정이 국내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통일과정 또는 통일 이후 통일한국에서 인도에 반한 죄를 이유로 형사재판을 진행할 경우 로마규정이 아닌 로마규정 이행법률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로마규정 이행법률에는 로마규정상의 피해자배상제도에 상응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국내에서 로마규정 이행법률을 준거법으로 형사재판을 진행할 경우 피해자배상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피해자배상제도의 도입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일 피해자배상제도의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판단이 내려질 경우 관련 법제의 정비가 요구된다.¹²³⁾ 로마규정상의 피해자배상제도에 대해서는 제2절에서 자세하게 분석한다.

¹²¹⁾ 로마규정 제75조 제2항.

¹²²⁾ ICC에 회부하는 방안과 관련된 내용은 이규창 외,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로마규정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pp. 89~90 참조.

¹²³⁾ 필자와 비슷한 시각에서 로마규정상의 피해자배상제도 규정은 국내 형사재판에 적용되지 않으며, 향후 관련 입법 제정 등 추가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 개진되었다. 이에영, “집단살해죄의 구성요건과 북한인권침해 책임규명에 대한 지정토론문,” 대법원 통일사법연구위원회, 제39차 회의자료 (2017.05.22.), p. 4.

2. 국제형사제도에 의한 배상

가. 국제형사재판에서 피해자를 위한 정의의 발전

제2차 세계대전의 참화는 국제형사재판제도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 1945년 10월 18일에는 런던협정의 부속서로 채택된 국제군사재판소 헌장에 의하여 독일인 전범을 처벌하기 위한 국제군사재판소가 뉘른베르크에 설치되었다. 그리고 1946년 5월 5일에는 극동국제군사재판소 헌장에 의하여 일본인 전범을 처벌하기 위한 극동국제군사재판소가 동경에 설치되었다. 그러나 국제군사재판소 헌장과 극동국제군사재판소 헌장은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은 두지 않았다. 두 재판소에서 피해자들은 증인의 신분으로만 재판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피해자를 공식 인정하는 등 피해자를 위한 정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한 아우슈비츠 생존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기도 하였다.

“뉘른베르크 재판은 필요한 조치로 간주되었다. 전쟁범죄를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재판이 생존자인 우리에게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 정의는 요원한 개념이었다. 그것은 확실히 개인적 차원이나 지역적 차원에서는 구현되지 않았다. 뉘른베르크 재판은 동떨어진 일이었으며, 국제법의 추상적 개념에 있어서는 중요했으나, 우리를 개인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¹²⁴⁾

이후 피해자학, 국제법, 인권법이 발전하면서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요구와 피해자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하였다. 1985년에는 유엔 총회에서 「권력 범죄 및 권력남용의 피해자를 위한 사법정의의 기본원칙 선언」¹²⁵⁾이 채택되었다.

¹²⁴⁾ Yael Danieli, “Reappraising the Nuremberg Trials and their Legacy: The Role of Victims in International Law,” *Cardozo Law Review*, vol. 27, issue. 4 (2006), p. 1643.

¹²⁵⁾ 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 UN Doc. A/RES/40/34 (29 November 1985).

이러한 발전에 힘입어 냉전 종식 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설치된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CTY)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ICTR)의 규정에는 피해자에 관한 조항들이 포함되었다. ICTY 규정 제22조와 ICTR 규정 제21조는 피해자 및 증인의 보호를 규정하였다. 나아가 ICTY 규정 제24조 제3항과 ICTR 규정 제23조 제3항은 “자유형 외에도, 1심재판부는 강박(*duress*) 등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property*)과 수익(*proceeds*)을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원상회복을 규정하였다. ICTY와 ICTR의 절차 및 증거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고, 피고인에 의한 불법적 재산 탈취가 범죄와 관련되어 있을 경우, 1심재판부는 판결에서 그러한 취지로 구체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¹²⁶⁾ 해당 판결 이후 1심재판부는 소추관의 요청에 의해서 또는 직권으로(*proprio motu*) 원상회복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특별심리를 실시하고, 이 절차에 따라 정당한 소유자가 결정되면 그 소유자에게 재산 또는 수익을 반환하도록 명령한다.¹²⁷⁾ 범죄와 관련이 없는 제3자가 그러한 재산 또는 수익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제3자는 1심재판부에 출석하여 자신이 소유한 재산 또는 수익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주장할 기회를 갖는다. 그러나 피해자 스스로는 원상회복 관련 심리를 신청하거나 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ICTY와 ICTR에서의 원상회복제도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동안 ICTY의 판결이나 ICTR의 판결에서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진 예는 없다.

한편, ICTY 규정과 ICTR 규정에는 금전배상에 관한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ICTY를 설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827호는 “국제재

¹²⁶⁾ ICTY 절차 및 증거 규칙 제98조 (B); ICTR 절차 및 증거 규칙 제99조.

¹²⁷⁾ ICTY 절차 및 증거 규칙 제105조; ICTR 절차 및 증거 규칙 제105조.

판소의 활동은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결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금전배상을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추구할 수 있는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금전배상은 재판소의 일 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¹²⁸⁾ 피해자에 대한 금전배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재판소 자체는 국제범죄 가해자에 대한 기소와 처벌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한정된 재원으로 피해자에 대한 금전배상을 실행하기는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¹²⁹⁾ 이후 ICTY 절차 및 증거 규칙 초안 작성 과정에서 금전배상 문제를 다루려는 시도가 일부 있었으나, ICTY 규정에 금전배상에 관한 언급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국내재판소를 통하여 금전배상을 구할 것을 규정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졌다. ICTY 절차 및 증거 규칙 제106조는 “피해자에 대한 금전배상”이라는 표제 하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 (A) 사무국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초래한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결을 관계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송부한다.
- (B) 관련 있는 국내법에 따라, 피해자 또는 피해자를 통하여 청구하는 자는 금전배상을 위하여 국내재판소 또는 다른 권한 있는 기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C) (B)항 하에서 이루어진 청구의 목적상, 본 재판소의 판결은 해당 손해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형사책임에 대하여 중 국적인 동시에 구속적이다.

ICTY의 초대 재판소장을 지낸 Antonio Cassese는 절차 및 증거 규칙에 상기와 같은 규정을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국내재판소로 가서 당신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일련의 암시를 주고 싶었다고

¹²⁸⁾ UN Doc. S/RES/827 (25 May 1993), para. 7. ICTR을 설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955호에는 금전배상에 관한 언급은 없다.

¹²⁹⁾ Virginia Morris and Michael P. Scharf, *An Insider's Guide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A Documentary History and Analysis* (New York: Transnational Publishers, 1995), pp. 286~287.

술회하였다.¹³⁰⁾ ICTR 절차 및 증거 규칙도 제106조에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재판소가 금전배상을 직접적 다루지는 않더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하여 설치된 재판소의 권위에 기대어 피해자들이 금전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ICTY와 ICTR의 불완전한 피해배상제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었다. 2000년도에 ICTY와 ICTR의 재판관들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피해자들은 손해에 대한 금전배상을 청구할 법적 권리를 갖는다고 언급하면서, 그렇지만 그러한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재판소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제금전배상위원회(International Compensation Commission)와 같은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¹³¹⁾ 2000년 당시 ICTY의 소추관이자 ICTR의 소추관이었던 Carla Del Ponte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연설에서 피해자 관련 제도의 결함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다.¹³²⁾ 그러나 안전보장이사회는 구 유고슬라비아 및 르완다의 피해자를 위한 배상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았다. Patrick Robinson ICTY 소장은 201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피해배상 문제를 적절히 다루지 않은 것은 피해자를 위한 정의의 실현에서 중대한 실패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재판소가 판결을 내리는 것만으로는 지역에 평화 및 화해를 가져올 수 없으며, 지속적인 평화를 이루

¹³⁰⁾ Remarks by Antonio Cassese, in Albrecht Randelzhofer and Christian Tomuschat eds. *State Responsibility and the Individual: Reparation in Instances of Grave Violations of Human Rights* (Leide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9), p. 48.

¹³¹⁾ UN Doc. S/2000/1063 (2 November 2000); UN Doc. S/2000/1198 (15 December 2000).

¹³²⁾ Address to the UN Security Council by Carla del Ponte, Prosecutor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for the Former Yugoslavia and Rwanda, ICTY Doc. JL/P.I.S./542-e (21 November 2000).

려면 다른 구제방법이 형사재판을 보완해야 하고, 그러한 구제방법 중 하나는 피해자에게 고통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¹³³⁾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는 2013년에 ICTY 소장과 ICTR 소장의 요청으로 구 유고슬라비아 및 르완다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¹³⁴⁾ IOM의 역할은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한 자문에 국한되며, IOM가 실제적인 피해배상 프로그램을 확립할 임무나 자원을 갖는 것은 아니다. ICTY와 ICTR에서의 피해배상 문제에 관한 논란은 ICC에 관한 로마규정의 기초자들에게 피해자의 요구와 이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의 중요성을 각인시켰다.

나. 로마규정상 피해자배상제도 개관

로마규정 협상 과정에서는 국제형사소송에서 피해자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개진되었고, 그 결과 형사절차상 피해자참가제도와 피해자배상제도가 채택되었다.¹³⁵⁾ 로마규정은 2005년 유엔 총회가 채택한 유엔인권피해자 권리구제원칙과 같은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가장 진전된 국제적 기준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로마규정상의 피해자배상제도는 국제법에서 매우 혁신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로마규정 제75조(피해자에 대한 배상)

1. 재판소는 원상회복, 보상 및 사회복귀를 포함하여 피해자에 대한 또는 피해자에 관한 배상의 원칙을 수립한다. 이를 근거로 재판소는 그 판결에서 피해자에 대한 또는 피해자에 관한 손해·

¹³³⁾ UN Doc. S/2010/588 (19 November 2010), para. 78.

¹³⁴⁾ IOM의 토지, 재산, 및 배상 담당부서(Land, Property and Reparations Division)는 무력충돌 또는 심각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와 지역적·국제적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¹³⁵⁾ 로마규정 제68조, 제75조 및 제79조.

손실 및 피해의 범위와 정도를 신청에 의하여 또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때 재판소가 근거로 삼은 원칙을 명시한다.¹³⁶⁾

2. 재판소는 원상회복, 보상 및 사회복귀 등을 포함하여 피해자에 대한 또는 피해자에 관한 적절한 배상을 명시하는 명령을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직접 내릴 수 있다. 적절한 경우, 재판소는 제79조에 규정된 신탁기금을 통하여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명령할 수 있다.
3. 이 조에 따른 명령을 내리기 전에 재판소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 피해자, 기타 이해관계자 또는 이해관계국으로부터의 또는 이들을 대리한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시된 의견들을 참작한다.
4. 이 조에 따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재판소는, 재판소의 관할범위에 대한 유죄판결 후에, 이 조에 따라 재판소가 내린 명령을 실행하기 위하여 제93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5. 당사국은 이 조에 따른 결정을 제109조의 규정이 이 조에 적용되는 것처럼 이행한다.
6.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따른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로마규정은 ‘reparation’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지만, 국제범죄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제공되는 다양한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¹³⁷⁾ 로마규정 제75조 제1항 제1문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에는 ‘restitution’, ‘compensation’, ‘rehabilitation’이 포함된다. 상기

¹³⁶⁾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Court shall establish principles relating to reparations to, or in respect of, victims, including restitution,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 On this basis, in its decision the Court may, either upon request or on its own motion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determine the scope and extent of any damage, loss and injury to, or in respect of, victims and will state the principle on which it is acting.”

¹³⁷⁾ Eva Dwertmann, *The Reparation System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ts Implementation,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Leide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10), p. 11.

우리나라의 공식 번역본은 ‘reparation’은 ‘배상’으로, ‘restitution’을 ‘원상회복’으로, ‘compensation’을 ‘보상’으로, ‘rehabilitation’을 ‘사회복귀’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 같은 번역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¹³⁸⁾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용어 번역은 재검토를 요하는 측면이 있다. 여기서는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공식 번역본상의 용어를 가능한 한 따르되, ‘compensation’은 우리 국내법상의 ‘배상’과 ‘보상’의 개념을 고려하여 ‘금전배상’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기로 한다.¹³⁹⁾ 그리고 ‘rehabilitation’은 좀 더 포괄적인 것으로 보이는 ‘재활’로 번역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국제법상 범죄에 대한 개인의 형사책임은 확립되어 있지만, 사실 그러한 책임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 의무가 논리적 필연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¹⁴⁰⁾ 로마규정의 경우 “재판소는 원상회복, 금전배상 및 재활을 포함하여 피해자에 대한 또는 피해자에 관한 배상의 원칙을 수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제75조 제1항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배상을 제공할 일반적인 의무를 확립하는 것에 대한 권한을 재판소에 부여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제75조 제1항과 제75조 제2항을 종합해서 보면, 재판소는 배상을 명령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의 원칙을 수립할 의무가 있으나, 손해·손실 및 피해의 범위와 정도를 결정하고 실제로 배상명령을 내리는 것은 모두 재판소의 재량사항이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배상을 제공할 의무는 로마규정 제75조 제2항에 의거하여 재판소가 이

¹³⁸⁾ 예컨대, ‘reparation’은 개별적인 배상유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므로 상위개념인 ‘피해회복’으로 번역하고, ‘compensation’은 ‘배상’으로, ‘rehabilitation’은 ‘재활’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있다. 이진국, “국제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배상의 가능성과 한계,” 『형사정책연구』, 제26권 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p. 167.

¹³⁹⁾ 우리 국내법에서는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전보의 경우에 ‘배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적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전보의 경우에 ‘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¹⁴⁰⁾ Conor McCarthy, “The Rome Statute’s Regime of Victim Redress: Challenges and Prospects,” in Carsten Stahn, *The Law and Practic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p. 1207.

를 명시적으로 부과한 경우에만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로마규정은 피해자를 위한 신탁기금(Trust Fund)을 설립하도록 하였는데,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로마규정 제79조 신탁기금

1. 재판소 관할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하여 당사국총회의 결정으로 신탁기금을 설립한다.
2. 재판소는 벌금 또는 몰수를 통하여 징수한 현금 및 기타 재산을 재판소의 명령에 따라 신탁기금으로 귀속되도록 명령할 수 있다.
3. 신탁기금은 당사국총회가 결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

로마규정 발효 후 2002년 9월 개최된 제1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재판소 관할 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이익을 위한 기금 설립(Establishment of a fund for the benefit of victims of crim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and of the families of such victims)」을 위한 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되었다.¹⁴¹⁾ 그리고 2005년 12월 개최된 제4차 당사국총회에서는 「피해자신탁기금규칙(Regulations of the Trust Fund for Victims)」이 채택되었다.¹⁴²⁾

다. ICC의 피해배상 관련 결정

2017년 9월 현재 피해배상 단계에 있는 사건은 총 3건(Lubanga 사건, Katanga 사건, Al Mahdi 사건)이다. Lubanga 사건에서는 전쟁범죄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었는데, ICC 설립 이후 첫 번째 유죄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Lubanga 사건의 1심재판부(I)는 2012년 8월 7일 피해자신탁기금에 의한 집단배상을 명하였다. 그러나 2015년 3월 3일 상소심재판부는 집단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을 받은 Lubanga에게

¹⁴¹⁾ Resolution ICC-ASP/1/Res.6 (9 September 2002).

¹⁴²⁾ Resolution ICC-ASP/4/Res.3 (3 December 2005).

직접적으로 내려져야 하며 그가 배상할 자력이 없다는 사실은 그의 배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서 1심재판부(I)의 배상명령을 변경하였다. Katanga 사건은 ICC 설립 이후 두 번째 유죄판결이자, 인도에 반한 죄 혐의에 대한 최초의 유죄판결이다. Katanga 사건의 1심재판부(II)는 2017년 3월 24일 개별배상과 집단배상을 명하였다. 그러나 2017년 4월 26일 피해자 측과 Katanga 측이 각각 동 배상명령에 대하여 상소를 한 상태이다. Al Mahdi 사건의 경우 2016년 9월 27일 1심재판부(VIII)에 의하여 전쟁범죄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2017년 8월 17일 개별배상과 집단배상을 명하였다. 이하에서는 배상절차의 진척도가 가장 빠른 Lubanga 사건을 심도 있게 살펴봄으로써 ICC가 피해 배상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Lubanga 사건의 1심재판부

ICC 1심재판부(I)는 2012년 3월 14일 Thomas Lubanga Dyilo가 콩고 내전 당시 15세 미만의 아동을 징집하여 적대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킨 것에 대하여 전쟁범죄로 유죄판결을 내렸다.¹⁴³⁾ 1심재판부(I)는 유죄판결을 내리는 날 양형과 배상에 대한 기일을 정하는 일정명령을 발부하면서, 재판당사자와 재판참가자에 대하여 재판부가 배상과 관련하여 적용해야 할 원칙과 재판부가 따라야 할 절차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¹⁴⁴⁾ 이에 따라 피해자 공공 자문부(Office of Public

¹⁴³⁾ Situation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in the Case of *The Prosecutor v. Thomas Lubanga Dyilo*, Trial Chamber I, Judgment pursuant to article 74 of the Statute, ICC-01/04-01/06 (14 March 2012).

¹⁴⁴⁾ Situation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in the Case of *The Prosecutor v. Thomas Lubanga Dyilo*, Trial Chamber I, Scheduling order concerning timetable for sentencing and reparations, ICC-01/04-01/06 (14 March 2012). 재판부는 특히 다음의 사항에 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다: i) 배상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또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ii) 집단 배상이나 개별배상, 또는 두 경우 모두에 있어서, 배상을 수령할 자, 피해 평가 방법, 배상금 지급 판정에 적용될 기준; iii) 로마규정 제75조 제2항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Counsel for Victims), ICC 사무국(Registry), 국제기구 및 NGO, 피해자신탁기금, 피고측, 피해자,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등이 의견을 제출하였다.¹⁴⁵⁾ 1심재판부(I)는 2012년 7월 10일 Lubanga에게 14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였고,¹⁴⁶⁾ 2012년 8월 7일 ‘배상에 적용될 원칙 및 절차를 수립하는 결정’을 내렸다.¹⁴⁷⁾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것 역시 재판소 설립 이후 최초이기 때문에 동 결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동 결정에서 제시된 원칙 및 절차는 해당 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ICC에서든 국내적, 지역적, 또는 다른 국제적 기구에서든 다른 사건에서의 피해자의 배상에 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¹⁴⁸⁾

(가) 배상원칙

1) 배상수령자

ICC 절차 및 증거 규칙 제85조 (a)는 피해자를 “재판소의 관할범죄의 실행의 결과로서 피해를 입은 자연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규칙 제85조 (b)는 종교, 교육, 예술 또는 과학이나 자선 목적으로 제공된

자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내리는 것이 가능한지 또는 적절한지 여부; iv) 로마규정 제 75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신탁기금을 통하여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명령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v) 재판당사자 또는 재판참가자가 ICC 절차 및 증거 제97조에 따라 전문가의견을 구하기를 원하는지 여부.

¹⁴⁵⁾ Lubanga 사건에서는 총 85명이 배상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 중 5명은 V01팀의 공동 법률대리인단에 의하여 대리되었고, 41명은 V02팀의 공동 법률대리인단에 의하여 대리되었으며, 4명은 피해자 공공 자문부에 의하여 대리되었다. 기타 35명은 대리인을 정하지 않았다. Situation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in the Case of *The Prosecutor v. Thomas Lubanga Dyilo*, Trial Chamber I, First Report to the Trial Chamber on applications for reparations, ICC-01/04-01/06 (28 March 2012).

¹⁴⁶⁾ Situation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in the Case of *The Prosecutor v. Thomas Lubanga Dyilo*, Trial Chamber I, Decision on Sentence pursuant Article 76 of the Statute, ICC-01/04-01/06 (10 July 2012).

¹⁴⁷⁾ Situation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in the Case of *The Prosecutor v. Thomas Lubanga Dyilo*, Trial Chamber I, Decision establishing the principles and procedures to be applied to reparations, ICC-01/04-01/06 (7 August 2012).

¹⁴⁸⁾ *Ibid.*, para. 181.

재산, 역사적 건조물, 병원, 기타 인도적 목적을 위한 장소 및 물건에 대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조직이나 기관도 피해자에 포함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재판부(I)는 이 같은 규정에 따라 배상은 직접피해자와 간접피해자(직접피해자의 가족, 심리되고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범죄의 실행을 방지하려고 한 자, 공판절차 참가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의 결과로서 개인적인 피해를 입은 자, 직접피해자에 도움을 주거나 개입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제공될 수 있다고 하였다.¹⁴⁹⁾ 또한 비정부·자선·비수익 단체, 법정단체 등과 같은 법적 실체(legal entities)에게도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¹⁵⁰⁾

2) 배상의 범위

1심재판부(I)는 국제인권법에서는 피해자 및 피해자집단이 배상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점차 인정되고 있다고 강조한 후, ICC 절차 및 증거 규칙 제97조 제1항이 “재판소는 개인을 기반으로 하여 또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단 혹은 양자를 모두 기반으로 배상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¹⁵¹⁾ 재판부는 Lubanga 사건 범죄피해자의 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점, 그리고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만이 배상을 신청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집단적인 접근이 적절하다고 보았다.¹⁵²⁾ 한편, 재판부는 개별배상과 집단배상이 상호 배제적이지 않으며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고, 개별배상의 경우에는 관련 지역사회 내에서 긴장과 분열을 초래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¹⁵³⁾

¹⁴⁹⁾ *Ibid.*, paras. 194, 196.

¹⁵⁰⁾ *Ibid.*, para. 197.

¹⁵¹⁾ *Ibid.*, para. 217.

¹⁵²⁾ *Ibid.*, para. 219.

3) 배상의 방법

로마규정 제75조 제1항은 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 금전배상, 재환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들을 ‘포함하여(including)’ 배상의 원칙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배상의 방법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Lubanga 사건의 1심재판부(I)도 배상의 방법이 원상회복, 금전배상, 재환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상징적이거나 예방적이거나 혁신적인 가치를 지니는 배상과 같은 다른 유형의 배상도 적절할 수 있다.”고 보았다.¹⁵⁴⁾

먼저 원상회복을 살펴보면, 1심재판부(I)는 가능한 한 피해자를 범죄가 실행되기 이전의 상황으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가족, 집, 이전의 직장으로의 복귀, 지속적인 교육의 제공, 상실하거나 탈취된 자산의 반환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¹⁵⁵⁾ 그러나 1심재판부(I)는 15세 미만의 아동을 징집하여 적대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킨 범죄의 피해자의 경우에는 원상회복 방법이 실효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금전배상과 관련하여, 1심재판부(I)는 경제적 피해를 충분히 산정할 수 있고, 배상금 지급 판정이 적절하고 비례에 맞으며, 이용가능한 자금에 비추어 실현가능한 경우, 금전배상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¹⁵⁶⁾ 재판부는 본질적으로 금전적 환산이 불가능한 피해가 있을지라도 금전배상은 “가해진 피해를 비례에 맞게 적절한 방식으로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제적 구제의 한 형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음의 경우가 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였다.

- a.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 상실 초래를 포함한 신체적 피해
- b.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고통을 야기하는 도덕적 및 비물질적 손해

¹⁵³⁾ *Ibid.*, para. 220.

¹⁵⁴⁾ *Ibid.*, para. 222.

¹⁵⁵⁾ *Ibid.*, paras. 223~224.

¹⁵⁶⁾ *Ibid.*, para. 226.

- c. 근로소득 및 근로기회 상실, 재산의 상실 또는 손해, 봉급 또는 월급 미수령, 개인의 일할 능력에 대한 기타 형태의 개입, 저축의 손실을 포함한 물질적 손해
- d. 고용, 교육 및 사회적 편익과 관련한 상실, 지위의 상실, 개인의 법적 권리에의 개입을 포함한 기회의 상실
- e. HIV와 에이즈에 감염된 소년·소녀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법적 또는 다른 관련 전문가, 의료서비스, 심리학적·사회적 지원 비용¹⁵⁷⁾

재판부는 금전배상에 관한 판정 시에는 해당 범죄가 직접피해자, 그 가족 및 공동체에 미칠 수 있는 젠더 및 연령 특장적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¹⁵⁸⁾

재활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재활에 대한 권리가 비차별에 관한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연령의 남성과 여성을 포함하는 젠더 통합적 접근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¹⁵⁹⁾ 그리고 재활에는 의료서비스 및 건강관리 제공, 트라우마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심리적·정신의학·사회적 지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¹⁶⁰⁾ 피해 아동의 경우에는 사회로 재통합시키는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데, 그러한 조치에는 교육 및 직업훈련의 제공, 사회에서의 유의미한 역할을 촉진하는 지속 가능한 근로기회가 포함된다고 하였다.¹⁶¹⁾ 또한, 추도 및 추모와 같은 상징적 배상도 재활 과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¹⁶²⁾

1심재판부(I)는 원상회복, 금전배상, 재활 외의 다른 형태의 배상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재판부는 유죄판결 및 형의 선고도 배상의 예에 해당하며,¹⁶³⁾ 유죄판결문의 공표도 해당 범죄에 관한 인식 제고를 통

¹⁵⁷⁾ *Ibid.*, para. 230.

¹⁵⁸⁾ *Ibid.*, para. 231.

¹⁵⁹⁾ *Ibid.*, para. 232.

¹⁶⁰⁾ *Ibid.*, para. 233.

¹⁶¹⁾ *Ibid.*, para. 235.

¹⁶²⁾ *Ibid.*, para. 236.

하여 향후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¹⁶⁴⁾ 그 밖에도 피해자의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캠페인의 수립 또는 지원, 특정 개인이 경험한 피해를 확인하는 증서 발급, 피해자에게 재판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시행, 피해자의 낙인화(stigmatisation)와 주변화(marginalisation)를 감소시키는 교육 캠페인 등의 방법을 제시하였다.¹⁶⁵⁾ 재판부는 가해자가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피해자 개인 또는 피해자 집단에게 자발적으로 사과하는 것도 배상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¹⁶⁶⁾

4) 배상의 정도

1심재판부(I)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적절하고, 충분하며,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차별적이어서는 안 되고, 젠더 통합적 방식으로만 들어지고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¹⁶⁷⁾ 배상의 목적은 피해자와 그 가족 및 지역사회의 화해에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¹⁶⁸⁾ 그리고 피해자와 그 가족 및 지역사회가 장기간에 걸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립적인(self-sustaining) 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연금 또는 다른 형태의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일시금 보다는 분할로 지급하라고 하였다.¹⁶⁹⁾

5) 인과관계

인과관계는 어떤 사람이 피해자로서 배상을 청구하고 받으려면 그 사람이 입은 피해와 유죄판결이 내려진 범죄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될 필

¹⁶³⁾ *Ibid.*, para. 237.

¹⁶⁴⁾ *Ibid.*, para. 238.

¹⁶⁵⁾ *Ibid.*, para. 239.

¹⁶⁶⁾ *Ibid.*, para. 241.

¹⁶⁷⁾ *Ibid.*, paras. 242~243.

¹⁶⁸⁾ *Ibid.*, para. 244.

¹⁶⁹⁾ *Ibid.*, para. 246.

요가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1심재판부(I)는 피해자와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의 상충하는 이해관계 및 권리의 조화를 고려할 때 최소한 범죄와 피해 간에는 ‘조건(but/for)’ 관계가 성립해야 하며, 범죄는 배상을 추구하는 피해의 ‘근인(proximate cause)’이어야 한다고 밝혔다.¹⁷⁰⁾

6) 증명의 기준 및 정도

1심재판부(I)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음(beyond a reasonable doubt) 기준이 적용되나, 배상절차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개연성의 우위(balance of probabilities) 기준으로 충분하다고 보았다.¹⁷¹⁾ 한편, 재판부는 피해자신탁기금이나 그 외의 재원으로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범죄의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성격과 피해자의 수를 고려할 때 사실문제(factual matters) 판단에 관한 전반적으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¹⁷²⁾

(나) 배상명령

Lubanga 사건의 1심재판부(I)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배상명령’과 ‘피해자신탁기금을 통한 배상명령’을 상호 배제적인 개념(mutually exclusive concepts)으로 이해하였다. Lubanga는 배상할 자력이 없기 때문에 비금전적 배상만이 가능한데, 피해자에 대한 공개적 또는 비공개적 사죄와 같은 상징적 배상에는 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그러한 조치는 배상명령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면서,¹⁷³⁾ 피해자신탁기금을

¹⁷⁰⁾ *Ibid.*, para. 250.

¹⁷¹⁾ *Ibid.*, paras. 251, 253. 여기서 개연성의 우위란 다투어지는 사실이 존재할 가능성이 그렇지 아닐할 경우보다 높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통상 민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와 같다. 이 점에서 개연성의 우위는 증거의 우위(preponderance of evidence)와 같은 의미로 이해된다. 이진국, “국제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배상의 가능성과 한계,” p. 179.

¹⁷²⁾ *Ibid.*, para. 254.

통한 배상명령을 결정하였다. 재판부는 “적절한 경우, 재판소는 제79조에 규정된 신탁기금을 통하여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로마규정 제75조 제2항과 관련하여,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적용할 때 ‘통하여(through)’라는 단어는 통상적인 의미인 ‘의하여(by means of)’로 해석되며, 따라서 배상의 이행에 신탁기금의 재원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¹⁷⁴⁾ 나아가 1심재판부(I)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배상할 자력이 없어 신탁기금을 통하여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벌금 또는 몰수로 징수되어 신탁기금에 기탁된 자원 이외에도 신탁기금 자체의 재원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¹⁷⁵⁾

한편, 1심재판부(I)는 자금이 한정되어 있는 점, 그리고 개별 피해자를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를 피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탁기금 자체의 재원에 의한 배상은 개별보상보다는 집단배상으로 이루어지거나 조직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탁기금의 제안을 받아들였다.¹⁷⁶⁾ 그리고 신탁기금이 제안한 5단계 이행계획안을 승인하였다: 첫째, 신탁기금, 사무국, 피해자 공공 자문부, 전문가는 본 사건에서 어느 지역이 배상절차와 관련이 되는지를 결정할 것; 둘째, 확인된 지역에서 협의(consultation) 절차를 거칠 것; 셋째, 이 같은 협의 단계에서 전문가그룹을 통해 피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것; 넷째, 배상의 원칙 및 절차를 설명하고 피해자의 기대를 고려하기 위하여 각 지역에서 공개적인 토론을 실시할 것; 다섯째, 각 지역에서 나온 집단배상에 관한 제안을 수집한 후 재판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것.¹⁷⁷⁾

¹⁷³⁾ *Ibid.*, para. 269.

¹⁷⁴⁾ *Ibid.*, para. 270.

¹⁷⁵⁾ *Ibid.*, para. 271. ICC 절차 및 증거 규칙 제98조 제5항은 신탁기금은 피해자를 위하여 ‘다른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신탁기금규칙 제56조는 신탁기금 이사회가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재원을 신탁기금의 ‘다른 자원’으로 보완할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¹⁷⁶⁾ *Ibid.*, para. 274.

(2) Lubanga 사건의 상소심재판부

2015년 3월 3일 상소심재판부는 1심재판부(I)의 배상명령을 변경하고, 신탁기금에 대하여 집단배상 이행계획안을 1심재판부(II)에 제출할 것을 명하였다.¹⁷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상소심재판부는 로마 규정 제75조에 따른 배상명령은 적어도 다음의 다섯 가지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 1)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내려져야 한다;
- 2)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명령에서 판정된 배상과 관련한 그 또는 그녀의 책임을 확정하고 고지해야 한다;
- 3) ICC 절차 및 증거 규칙 제97조 제1항 및 제98조에 따라, 배상의 유형(집단배상 또는 개별배상 또는 둘 다)을 명시하고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 4) 유죄판결이 내려진 범죄의 결과로서 직접피해자 및 간접피해자에게 야기된 피해를 적시하고, 사건의 상황에 기초하여 1심재판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배상의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 5) 배상받을 자격이 있는 피해자를 결정하거나, 피해자가 받은 피해와 유죄판결이 내려진 범죄 간의 관계에 기초한 자격요건을 확립해야 한다.¹⁷⁹⁾

그리고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즉각적으로 배상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신탁기금은 피해자신탁기금규칙 제56조에 의거하여 '다른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신탁기금에 상환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¹⁸⁰⁾ 또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배상책임은 발생한 피해,

¹⁷⁷⁾ *Ibid.*, para. 282.

¹⁷⁸⁾ Situation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in the Case of *The Prosecutor v. Thomas Lubanga Dyilo*, The Appeals Chamber, Judgment on the appeals against the "Decision establishing the principles and procedures to be applied to reparations" of 7 August 2012 with AMENDED order for reparations (Annex A) and public annexes 1 and 2, ICC-01/04-01/06 A A 2 A 3 (3 March 2015).

¹⁷⁹⁾ *Ibid.*, para. 1.

그리고 특히 유죄가 인정된 범죄 실행에의 참여 정도에 비례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다.¹⁸¹⁾ 이 같은 전제 하에 상소심재판부가 Lubanga에게 내린 배상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⁸²⁾

표 III-3 Lubanga 사건 상소심재판부의 배상명령

항 목	주요 내용
배상수령권이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입은 피해가 Lubanga의 범죄와 관련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한에 있어서는 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원칙을 고려하여, 본 배상명령은 적절한 경우 지역사회에 대하여 이행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탁기금 이사회는 상기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사회 구성원들도 지원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피해자 신원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는 공식적·비공식적 신분증이나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밖의 다른 자료를 사용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서가 없는 경우 2명의 증인이 서명한 진술도 허용됨.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피해자에게 초래된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 피해 및 트라우마 - 심리적 트라우마, 심리적 장애의 발생 - 학교교육의 중단 및 상실 - 가족의 분리 - 폭력 및 공포 환경에의 노출 - 가족 및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화의 어려움 - 공격 총동 통제의 어려움 - 민간인의 생활 기술을 습득하지 못한 결과 고용 등에서 불이익 발생 ■ 간접피해자에게 초래된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구성원의 급작스런 상실에 따른 심리적 고통 - 가족 구성원의 기여 상실로 수반되는 물질적 손실 - 아동이 관련 범죄로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개입함에 따라 입게 되는 손실, 피해 또는 손해

180) *Ibid.*, para. 5.

181) *Ibid.*, para. 6.

182) *Ibid.*, Annex A, paras. 54~72.

항 목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및 지역사회에 재정착한 소년병 출신 아동의 공격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심리적 및 또는 물질적 고통
인과관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와 피해 간에는 '조건(but/for)' 관계가 성립해야 함. ■ Lubanga의 범죄는 배상을 추구하는 피해의 '근인(proximate cause)'이어야 함.
Lubanga의 배상책임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ubanga는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의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와 관련하여 배상책임이 있음. ■ 본 배상명령은 직접피해자와 간접피해자를 모두 다루는데, '간접 피해자'가 배상제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직접피해자와 간접피해자 간 긴밀한 인적 관계(예컨대 소년병과 그의 또는 그녀의 부모 간의 관계) 존재 여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증명의 기준으로는 '개연성의 우위' 기준이 적용됨.
배상의 방법 및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상회복, 금전배상, 재활뿐만 아니라 상징적·예방적·혁신적 가치를 지니는 배상과 같은 다른 유형의 배상도 포함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상회복은 가능한 한 범죄 발생 이전의 상황으로 피해자를 되돌려 놓아야 하나, 아동을 징집하여 적대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킨 범죄의 피해자의 경우에는 원상회복 방법이 실효적이지 않을 수 있음. - 금전배상의 경우에는 아동을 징집하여 적대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킨 범죄가 직접피해자, 그 가족 및 지역사회에 미친 젠더 및 연령 특징적 영향이 고려되어야 함. - 피해 아동의 재활과 관련해서는 이들의 사회로의 재통합을 용이하게 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그러한 조치에는 교육 및 직업훈련의 제공, 사회에서의 유의미한 역할을 촉진하는 지속가능한 근로기회가 포함됨. - 아동 피해자들이 느낄 수 있는 수치심을 다루는 한편, 아동들의 추가적인 피해자화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재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 또한 소년병이었던 아동들의 재활 및 재통합을 위한 조치에는 지역사회가 포함될 수 있는데, 혁신적 목표를 가진 프로그램은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추도 및 추모와 같은 상징적 배상 역시 재활 과정에 기여할 수 있음. - 재판소는 피해자의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캠페인의 수립 또는 지원, 특정 개인이 경험한 피해를 확인하는 증명 발급, 피해자에게 재판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시행, 피해자의 낙인화와 주변화를 감소시키는 교육 캠페인과 같은 다른 형태의 배상을 도입할 권한이 있음.

항 목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적인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아동의 효과적인 재통합을 위해서는 해당 아동에 대한 피해자화, 차별 및 낙인화가 근절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Lubanga는 공개적으로든 비공개적으로든 개별 피해자 또는 피해자집단에게 자발적으로 사과함으로써 이러한 과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신탁기금은 배상 계획 시 의료서비스(정신의학·심리적 지원 포함) 제공, 그리고 재활, 주거, 교육, 훈련 관련 지원 제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신탁기금은 배상의 모든 방법에 기초하여 배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하며, 피해자, 관련 지역사회의 구성원, 전문가와의 협의 단계에서 취합된 견해들을 참고해야 할 것임.
배상의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건에서의 배상은 가능한 정도로 다음의 목표를 달성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각한 범죄로 초래된 고통의 경감 - 위법행위의 결과를 완화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한 정의 구현 - 추가적인 위반의 방지 - 소년병이었던 아동의 효과적인 재통합에 기여 ■ 배상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 범죄피해자, 관련 지역사회 간의 화해 촉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이행계획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탁기금은 이행계획안을 준비하고 동 계획안을 6개월 이내에 새로 구성되는 1심재판부에 제출해야 함. ■ 새로 구성되는 1심재판부는 신탁기금에 의하여 제출된 이행계획안의 승인을 포함하여 본 명령의 이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감독해야 함. ■ 계획의 승인 전에 당사자들은 자신의 이해관계 및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측면과 관련하여 1심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가짐. ■ 신탁기금은 Lubanga의 범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이행계획안에 기재해야 함. ■ 1심재판부에 의한 Lubanga의 배상책임액 결정 전에 당사자들은 Lubanga의 배상책임 범위에 대하여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 ■ 1심재판부에 의한 Lubanga의 배상책임액 결정은 배상명령의 일부를 구성함.

출처: 상소심재판부의 Lubanga에 대한 배상명령을 토대로 필자가 작성.

2016년 9월 19일, 신탁기금은 우선 상징적 집단배상 이행계획안을 1심 재판부(II)에 제출하였다.¹⁸³⁾ 1심재판부(II)는 2016년 10월 21일 동 계획안을 승인하고 이에 대한 이행을 명하였으며, 상징적 성격이 아닌 집단 배상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신탁기금이 제시한 상징적 집단배상 프로젝트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⁸⁴⁾

표 III-4 Lubanga 사건 신탁기금의 상징적 집단배상 프로젝트

항 목	주요 내용
주요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지역사회 인식 및 인지에 의한 피해 아동의 재통합 및 재활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범죄와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초래되는 지속적인 피해에 대한 인식 및 인지 제고 ■ 피해 아동에 대한 낙인의 실질적인 감소 ■ 직접피해자 및 간접피해자에 대하여 서비스에 기반한 집단배상을 발전시키고 실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관련 지역사회를 넘어 공공 영역에 있는 다른 이해관계자들도 이 같은 프로젝트로 달성된 결과에 대한 정보 공유
구성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념관 형태의 상징적 건축물의 개발 및 건립 ■ 기념사업(mobile memorialization initiative)의 개발 및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념주간, 정규 라디오 프로그램

출처: 신탁기금이 1심재판부(II)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작성.

신탁기금은 상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았다.¹⁸⁵⁾ 그리고 이전의 경험과 현지 협의에 기초하여 상징적 건축물과

¹⁸³⁾ Situation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in the Case of *The Prosecutor v. Thomas Lubanga Dyilo*, Trial Chamber II, Filing regarding symbolic collective reparations projects with Confidential Annex: Draft Request for Proposals, ICC-01/04-01/06-3223-Conf, ICC-01/04-01/06 (19 September 2016).

¹⁸⁴⁾ *Ibid.*, paras. 29~43.

¹⁸⁵⁾ *Ibid.*, para. 65.

기념사업에 일정 금액(미공개)을 할당하였고, 커뮤니케이션 및 출판 활동에도 일정 금액(미공개)을 추가적으로 할당하였다.¹⁸⁶⁾

라. 개별배상과 집단배상

ICC 절차 및 증거 규칙 제97조 제1항은 “재판소는 손해, 손실 또는 피해의 범위와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을 기반으로 하여 또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단 혹은 양자를 모두 기반으로 배상을 제공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배상과 집단배상의 정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개별배상은 개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하고, 집단배상은 어느 집단의 공동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CC는 재판소 설립 이후 3개의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내렸고, 현재까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Lubanga 사건에서는 집단배상명령만 내려졌으나, Katanga 사건과 Al Mahdi 사건에서는 개별배상명령과 집단배상명령이 내려졌다.¹⁸⁷⁾ Katanga 사건의 1심재판부(II)는 297명의 피해자들 각각에 대하여 상징적 성격의 금전배상으로서 미화 250달러를 제공하는 형태로 개별배상을 할 것과 주거 제공, 소득창출활동 제공, 교육 지원, 심리 지원의 형태로 집단배상을 할 것을 명하였다.¹⁸⁸⁾ Al Mahdi 사건의 1심재판부(VIII)는 팀북투(Timbuktu)

¹⁸⁶⁾ *Ibid.*

¹⁸⁷⁾ Situation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in the Case of *The Prosecutor v. Germain Katanga*, Trial Chamber II, Order for reparations pursuant to Article 75 of the Statute with one public annex (Annex I) and one confidential annex *ex parte*, Common Legal Representative of the Victims, Office of Public Counsel for Victims and Defence team for Germain Katanga (Annex II), ICC-01/04-01/07 (24 March 2017); Situation in the Republic of Mali in the Case of *The Prosecutor v. Ahmad Al Faqi Al Mahdi*, Trial Chamber VIII, Reparations Order, ICC-01/12-01/15 (17 August 2017).

¹⁸⁸⁾ Situation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in the Case of *The Prosecutor v. Germain Katanga*, Trial Chamber II, Order for reparations

내 종교적·역사적 건물에 대한 고의적 공격으로 발생한 경제적 피해와 관련하여, 해당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자들에 대한 개별배상과 팀북투 지역 사회에 대한 집단배상을 명하였다. 그리고 도덕적 피해와 관련하여, 공격으로 인하여 조상의 묘소가 파괴된 사람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개별배상과 해당 지역사회 전체의 정신적 고통과 문화 파괴에 대한 집단배상을 명하였다. 나아가 상징적 조치로서, Al Mahdi의 사과 영상을 재판소 웹사이트에 게시할 것을 사무국에 명하였다.

집단배상은 여러 사람들에게 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을 제공해야 하는 개별배상에 비하여 그 이행에 비용이 덜 들어가고, 피해자집단 전체에 공평하게 적용되며, ICC의 사건에서 포섭되지 못한 여타 피해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을 지닌다.¹⁸⁹⁾ ICC에 의한 집단배상 결정이 창의적인 배상 수단 및 메커니즘에 대한 새로운 법체계의 출현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¹⁹⁰⁾ 그러나 집단배상은 집단의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개별 피해자의 구제를 받을 권리를 타협하도록 하는 측면이 있으며, 추가적이거나 다른 요구를 가질 수 있는 취약계층을 소외시킬 수 있다.¹⁹¹⁾ 뿐만 아니라, 집단배상의 대상인 지역사회나 집단이 스스로를 이해관계 또는 필요를 공유하는 집단적 실체로 간주하지 않을 수도 있다.¹⁹²⁾

pursuant to Article 75 of the Statute with one public annex (Annex I) and one confidential annex *ex parte*, Common Legal Representative of the Victims, Office of Public Counsel for Victims and Defence team for Germain Katanga (Annex II), ICC-01/04-01/07 (24 March 2017).

¹⁸⁹⁾ Luke Moffett, *Justice for Victims before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London: Routledge, 2015), p. 179.

¹⁹⁰⁾ Carla Ferstman, "The Reparation Regim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Practical Considerations," *Leide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5, no. 3 (2002), p. 675.

¹⁹¹⁾ Luke Moffett, *Justice for Victims before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p. 179.

¹⁹²⁾ *Ibid.*

이러한 측면 때문에 집단배상명령만 내려진 Lubanga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과연 피해자 중심적인 정의를 실현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Lubanga 사건의 피해자들은 해당 지역사회가 아동을 징집하여 적대행위에 참여시킨 행위를 대체로 용인하였고 여기에 관여한 지도부를 지원하였으며 심지어는 협력한 경우도 있었다는 이유로 집단배상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¹⁹³⁾ 이러한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의 집단배상명령은 ICC의 피해배상제도를 구체적인 성격보다는 화해적인 성격으로 해석한 결과일 수 있으나, 이 같은 접근은 피해를 입은 개인들을 명시적이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배상의 의미와 효과를 감소시킨다는 지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¹⁹⁴⁾ 배상 재원의 부족, 피해자 확인의 어려움 등과 같은 현실적인 이유만으로 배상의 유형이 결정되어서는 안 되며, 배상은 피해자의 권리로서 인정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원칙에 입각한 구성요소를 지녀야 한다.¹⁹⁵⁾ 그런 의미에서 아직 배상절차가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지만 Katanga 사건과 Al Mahdi 사건의 1심재판부가 개별배상명령과 집단배상명령을 함께 내린 것은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Katanga 사건의 1심재판부는 피해 전체에 대한 금전배상이 아닌 상징적인 성격의 금전배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가 겪은 피해에 대한 일정한 구제조치를 제공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연장 또는 가축 구입,

¹⁹³⁾ Situation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in the Case of *The Prosecutor v. Thomas Lubanga Dyilo*, Trial Chamber I, Observations on the sentence and reparations by Victims a/0001/06, a/0003/06, a/0007/06, a/00049/06, a/0149/07, a/0155/07, a/0156/07, a/0162/07, a/0149/08, a/0404/08, a/0405/08, a/0406/08, a/0407/08, a/0409/08, a/0523/08, a/0610/08, a/0611/08, a/0053/09, a/0249/09, a/0292/09, a/0398/09 and a/1622/10, ICC-01/04-01/06 (18 April 2012), para. 16.

¹⁹⁴⁾ Luke Moffett, *Justice for Victims before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p. 181.

¹⁹⁵⁾ Jo-Anne M. Wemmers, *Reparation for Victims of Crimes against Humanity: The healing role of reparation* (London: Routledge, 2016), p. 179.

소규모 비즈니스 등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¹⁹⁶⁾

마. 피해자신탁기금

피해자신탁기금은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하는데, 하나는 재판소가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 내린 배상명령을 실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 재활, 심리적 재활,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¹⁹⁷⁾ 이에 피해자신탁기금은 국내적 피해배상제도에 존재하는 여러 요소들을 모두 결합시킨 매우 독특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¹⁹⁸⁾

첫 번째 임무와 관련하여, ICC 절차 및 증거 규칙 제98조 제2항은 배상 명령의 시점에서 각각의 피해자에게 직접 개별배상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재판소는 배상액을 신탁기금에 기탁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신탁기금에 기탁된 배상액은 신탁기금의 다른 재원과 분리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빨리 각각의 피해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ICC 절차 및 증거 규칙 제98조 제3항은 재판소가 피해자의 수, 배상의 범위·유형·방법을 고려할 때 집단배상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금을 통하여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 임무의 경우에는 ICC 절차와는 무관하게, 그리고 유죄판결과

¹⁹⁶⁾ Situation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in the Case of *The Prosecutor v. Germain Katanga*, Trial Chamber II, Order for reparations pursuant to Article 75 of the Statute with one public annex (Annex I) and one confidential annex *ex parte*, Common Legal Representative of the Victims, Office of Public Counsel for Victims and Defence team for Germain Katanga (Annex II), ICC-01/04-01/07 (24 March 2017), para. 300.

¹⁹⁷⁾ <<http://www.trustfundforvictims.org/two-roles-rfv>> 참조 (검색일: 2017.08.29.).

¹⁹⁸⁾ Frederic Megret, "Justifying Compensation by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s Victims Trust Fund: Lessons from Domestic Compensation Schemes," *Brookly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36, issue. 1 (2010), p. 139.

는 상관없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일반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 같은 지원에는 임의적 기부를 통하여 모금된 재원이 사용된다. 지원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체적 재활 프로그램은 피해자들에게 광범위한 신체적 치유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가능한 한 정상적으로 지역사회에서 기능하고 일상생활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심리적 재활 프로그램은 사회심리적이며 트라우마와 관련된 상황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피해자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으로, 피해자들의 낙인화를 줄이기 위하여 수용의 문화(a culture of acceptance)를 촉진하고 오랫동안 간직해 온 지역사회의 신뢰, 공동책임, 평화공존의 가치를 되살리는 것을 추구한다. 물질적 지원은 피해자의 급박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처하는 것으로, 재산의 파괴, 이주(displacement)의 결과, 가장의 죽음 등에 따른 생계원의 감소를 다루려는 것이다.

피해자신탁기금은 ICC 피해배상제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신탁기금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ICC 피해배상제도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신탁기금규칙 제21조에 따르면, 신탁기금의 자금은 i) 정부, 국제기구, 개인, 회사, 기타 단체에 의한 임의적 기부, ii) 벌금 또는 몰수를 통하여 징수한 현금 및 재산, iii) 배상을 위하여 지불된 금전, iv) 통상적인 할당금 이외에 당사국회의의 결정으로 신탁기금에 할당된 자금으로 구성된다. 신탁기금에 따르면, 신탁기금의 주요 수입원은 당사국들의 임의적 기부인데, 2004년부터 2014년 10월까지 국가들이 기부한 금액은 총 2,040만 유로(한화 약 271억 원)이다.¹⁹⁹⁾ 그리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사적 주체로부터의 기부는 8만 유로(한화 약 1억 6백만 원)이다.²⁰⁰⁾

¹⁹⁹⁾ <<http://www.trustfundforvictims.org/financial-information>> 참조 (검색일: 2017. 08.29.).

²⁰⁰⁾ *Ib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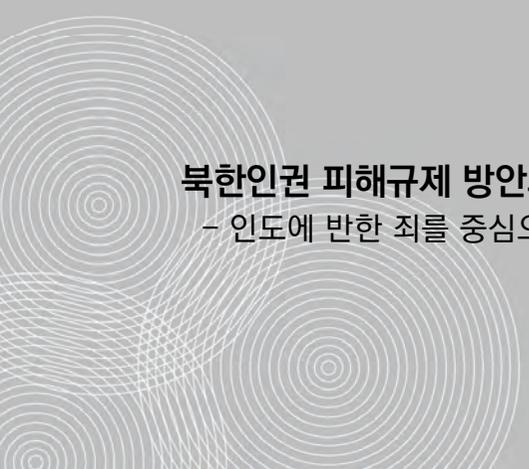
3. 소결

이상에서 국내법과 국제법에 의한 보상·배상과 특별지원 방안을 살펴봤다. 통일로 인해 북한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실체가 사라지고 북한 정권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통일한국에 승계되지 않게 된다. 이 점에서 통일한국이 인도에 반한 죄로 인한 북한주민의 피해를 보전해주어야 한다면 이는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배상이 아니라 보상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 통일 이후 북한주민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데 그 형태는 포괄입법의 형태와 개별입법의 형태 모두 가능하다. 보상과 함께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이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추모시설 건립 및 위령사업, 인권침해 보존 등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특별법을 운영할 위원회는 포괄입법의 경우에는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하거나 대통령 직속 기구로 운영하고, 개별입법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보상의 수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인도에 반한 죄의 행위 유형에 따라 다르게 산정할 필요가 있고, 유엔인권피해자 권리구제원칙을 비롯한 국제법상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인도에 반한 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북한주민들과 그 가족 및 유족들에게 특별법 제정을 통한 특별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별지원의 내용은 의료지원, 생활지원 및 생계지원 등이 되어야 한다. 특별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범죄은닉 재산 활용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배상명령제도의 적용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배상명령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통일 이전 북한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피해 금액을 산정하는 것과 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현재의 배상명령제도는 인도에 반한 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해 배상명령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 로마규정상의 피해자배상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로마규정 이행법률에는 피해자배상 제도에 상응하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ICC의 관련 판례에 주목하면서 피해자배상제도의 도입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7년 9월 현재 ICC의 피해배상 단계에 있는 사건은 총 3건이다. Lubanga 사건은 전쟁범죄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 피해자배상 관련 ICC의 첫 번째 유죄판결이다. Lubanga 사건의 1심재판부(I)는 2012년 8월 7일 피해자신탁 기금에 의한 집단배상을 명하였다. 그러나 2015년 3월 3일 상소심재판부는 집단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을 받은 Lubanga에게 직접적으로 내려져야 하며 그가 배상할 자력이 없다는 사실은 그의 배상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서 1심재판부(I)의 배상명령을 변경하였다. Katanga 사건은 인도에 반한 죄 혐의에 대한 최초의 유죄판결이다. Katanga 사건의 1심재판부(II)는 2017년 3월 24일 개별배상과 집단배상을 명하였으나 2017년 4월 26일 피해자 측과 Katanga 측이 각각 동 배상명령에 대하여 상소를 한 상태이다. Al Mahdi 사건의 경우 2016년 9월 27일 1심재판부(VIII)에 의하여 전쟁범죄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2017년 8월 17일 개별배상과 집단배상을 명하였다. 향후 ICC의 판결 결과와 판결의 이유, 판결의 주요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IV. 인간존엄성 및 정신건강 회복 방안

조영아(상지대학교)



북한인권 피해규제 방안과 과제

- 인도에 반한 죄를 중심으로 -

비인도적인 정권을 통해 조직적으로 자행되는 폭력은 사회 전반에 상흔을 남기며 또한 지난한 치유의 과제를 안긴다. 본 장에서는 국가 폭력의 영향력과 치유에 관련된 다양한 국내외 연구결과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통일 후 북한 정권의 인도에 반한 죄에 의해 피해를 입은 북한주민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과 회복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제1절에서는 폭압과 강제, 인권유린 등 국가기관이나 정부에 의해서 자행된 사회적 폭력으로 고통당하는 국내외 피해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북한 정권의 인도에 반한 죄로 고통을 겪을 북한주민의 심리적 고통을 예측하고, 피해자들의 회복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2절에서는 고문이나 잔학행위와 같은 만성적 외상을 입은 외상생존자들의 치료방법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방안을 생각해본다. 특히 북한 범죄피해의 대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문 생존자의 특성을 살펴보고, 극심한 폭력의 후유증과 이에 대한 치료방법을 고찰한다. 제3절에서는 북한 정권에 의해 부당한 피해를 입은 북한주민의 인간존엄성과 정신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국가나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1. 국내외 피해 사례와 치료적 시사점

가. 국내 사례

장기간의 권위주의 통치를 경험한 우리사회에서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국가폭력 피해자 규모를 정확히 가능하기는 어려우나 국가기관에 의해 과거 인권침해 사건들이 재수사되어 진상이 규명된 사건의 피해자 숫자만도 303,480명, 8,560건에 달한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드러난 숫자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이것의 몇 십 배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²⁰¹⁾

²⁰¹⁾ 임채도, “고문피해자 인권상황과 트라우마 치유,” 인권의학연구소·올바른 과거청산 단체인협의회,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보상·치유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자료집』(2012. 11.19.), p. 12.

대표적인 우리사회의 국가폭력 사건으로는 5·18민주화운동을 들 수 있다. 5·18민주화운동은 국가가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하여 민간인이 학살, 사망, 상해, 실종, 고문 및 인권유린을 당한 전형적인 국가폭력 사건으로, 5·18민주화운동 생존자들은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집단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존자들의 생활실태 및 후유증을 조사한 연구보고에 따르면 5·18 부상자와 구속자 및 부상자, 구속자의 가족, 유족의 41.6%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29.5%가 중간 이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겪고 있다. 또한 5·18 유공자의 32.8%가 만성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으며, 많은 수가 우울증과 불안감, 신체화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고, 일부는 정신분열증과 같은 심각한 정신장애로 악화된 경우도 있다. 5·18 참가자들은 1차적으로 그 당시의 고통스런 외상 경험을 일상에서 재 경험하며, 플래시백과 악몽에 시달리고 가해자로부터 느낀 수치, 모욕감, 공포를 재 경험하면서 극도의 회피 증상을 보이거나 가해자에 대한 복수, 공격 등의 극도의 흥분상태를 반복적으로 겪고 있다.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잊기 위해 약물이나 알코올에 의존하게 되어 심각한 알코올 중독 상태로 발전하여 일상적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만성화된 사례들이 많이 발견된다. 또한 정신적 취약상태와 더불어 실직, 사업실패에 따른 경제적 스트레스와 가정불화로 인해 정서적 지지체계가 무너져서 심리 사회적 건강이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⁰²⁾

이외에도 우리사회는 해방 이후 현재까지 민간인 학살, 고문, 실종 등 수 많은 폭력이 국가에 의해서 자행되었는데, 이러한 폭력의 직간접 피해자들은 수십 년이 지난 현재까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구체적

²⁰²⁾ 오수성 외, 『5·18민주 유공자 생활실태 및 후유증 실태조사 보고연구서』(광주: 5·18 기념재단, 2006), pp. 80~81; 오수성·신현균·조용범, “5·18 피해자들의 만성 외상 후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25권 2호 (한국심리학회, 2006), pp. 59~75.

으로 살펴보면, 제주 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가족 1,12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중등도 이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위험군에 속하는 비율이 54.8%, 중등도 이상의 우울에 속하는 비율이 22.5%로 보고되었고,²⁰³⁾ 고문피해자 223명 대상 심리건강 실태조사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76.5%, 신체화 증상 43.2%, 대인예민성 27.7%, 우울 증상 25.4%, 불안 증상 31.9%, 적대감 증상 27.7%의 유병율이 보고되었다.²⁰⁴⁾²⁰⁵⁾ 또한 한국전 전후 민간인 학살 피해자 527명에 대한 표본 조사 결과에서는 조사대상자의 21%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되었다. 그러나 조사대상의 80%는 치료경험이 전혀 없었으며, 9%는 후유증으로 병원치료를 받았고, 5%는 그중 정신과 치료를 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²⁰⁶⁾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캄보디아 사례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조직화된 폭력으로 인해 전 사회 구성원이 큰 고통을 받는 예로서 캄보디아를 들 수 있다. 캄보디아는 폴포트가 이끄는 4년간의 크메르 루즈(Khmer Rouge: KR) 집권기에 자행된 집단학살과 기아, 강제노역, 고문, 질병으로 전국민의 삼분의 일에 해당하는 200만여 명이 사망했으며, 지금까지도 사회적 차원의 집단 외상 후유증으로 많은 캄보디아인들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²⁰³⁾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제주 4·3 생존희생자 및 유가족 정신건강 실태조사 보고서』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2015), p. 8.

²⁰⁴⁾ 이화영 외, 『고문피해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11), p. 171.

²⁰⁵⁾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정신질환 평생 유병율은 27.6%이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평생 유병율은 1.6%(남자1%, 여자 2.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일년 유병율은 0.6%이다.

²⁰⁶⁾ 오수성 외, 『심리적 피해현황 조사보고서(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광주: 전남대학교 심리건강연구소, 2007), p. 10.

캄보디아 난민 993명을 대상으로 크메르 루즈 집권 전후 외상사건이 건강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력을 측정한 몰리카(Mollica) 등²⁰⁷⁾의 연구에 따르면 크메르 루즈 집권 동안 피난민들의 85%가 기아, 물, 쉼터, 의료시설의 부족, 정신개조, 강제노동을 경험하였고, 54%는 가족이나 친구가 살해되는 것을 목격했으며, 36%가 고문을 직접 당했다고 보고하는 등 피난민 대다수가 직접적인 외상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권이 끝난 1980년 이후로 가족이 살해되는 일, 두부 상해, 강간과 성폭행이 5% 감소하였지만 계속 지속되는 전쟁 상황, 폭력 등의 외상경험은 크메르 루즈와 피난 기간 동안과 거의 비슷했고 상당히 오래 지속되었다. 또한 집권이 종식된 지 10년 후인 1989년에서 1990년 사이에 80% 이상이 우울, 건강이상, 신체적고통을 보고하는 등 크메르 루즈 집권 동안이나 그 직후보다 신체, 정신건강 문제를 보이는 정도가 상당히 증가하였다. 즉, 캄보디아인에게 외상사건은 외상을 가져오는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10년 넘게 장기적인 고통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²⁰⁸⁾

우울은 크메르 루즈 집권 이후에 캄보디아인들이 겪는 대표적인 정신적 고통이다. 미국 대서양 연안으로 피난 간 993명의 캄보디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²⁰⁹⁾ 80% 이상이 우울감을 보고하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가 신체적

²⁰⁷⁾ Richard F. Mollica, K. Donelan, S. Tor, J. Lavelle, C. Elias, M. Frankel, and R. Blendon, "The effect of trauma and confinement on functional health and mental health status of Cambodians living in Thailand-Cambodia border camps," *JAMA*, vol. 270, no. 5 (1993), pp. 581~586; 이나빈·민정아·채정호, "캄보디아인의 집단외상과 정신건강," *Anxiety and Mood*, 제8권 2호 (2012), pp. 71~78에서 재인용.

²⁰⁸⁾ 이나빈·민정아·채정호, "캄보디아인의 집단외상과 정신건강," pp. 71~78.

²⁰⁹⁾ R. Srinivasa Murthy and Rashmi Lakshminarayana, "Mental health consequences of war: a brief review of research findings," *World Psychiatry*, vol. 5, no. 1 (2006), pp. 25~30.

고통을 호소하였다. 또한 캄보디아인들이 보고한 심리 증상들 중 약 55%가 우울증 진단에 부합되었으며, 15%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준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것은 캄보디아인의 우울, 불안 증상이 주로 신체적 고통으로 경험되고 표현된다는 점이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50명의 캄보디아 난민들의 외상경험,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해리, 우울 증상 유형을 베트남 참전 미국 생존자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의 결과와 비교한 칼슨(Carlson)과 로저호건(Rosser-Hogan)의 연구에서²¹⁰⁾ 캄보디아 킬링필드 생존자들은 미국 생존자에 비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핵심 증상을 많이 보고하였고, 신체 증상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여서 증상이 문화적 특성을 띠는 성을 제시하였다.²¹¹⁾

다. 북한이탈주민 사례

북한이탈주민을 통해서 조사된 북한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²¹²⁾ 북한에서는 고문과 비인도적 처우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북한은 심문 기간 동안 피의자의 자백을 받기 위해서 고문을 가하고 있고, 고문이 하나의 조사 방식으로 확립되었다. 피의자들이 자백할 때까지 고문하는 것을 정상적으로 여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급관료들이 하급관료들에게 효과적인 고문기술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국가보위성(구 국가안전보위부)에서는 많은 피의자들이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 예심과정에서 고문으로 인해 구류장에서 사망한다. 또한 인민보안성(구 인민보안부)에

²¹⁰⁾ Eve Bernstein Carlson and R. Rosser-Hogan, "Cross-cultural response to trauma: A study of traumatic experiences and posttraumatic symptoms in Cambodian refugee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vol. 7, no. 1 (1994), pp. 43~58.

²¹¹⁾ 이나빈·민정아·채정호, "캄보디아인의 집단외상과 정신건강," pp. 71~78에서 재인용.

²¹²⁾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2014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서울: 통일연구원, 2014), pp. 7~32.

서는 예심과정에서 고문을 당하며, 조사를 받지 않을 때에는 감방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바닥에 둔 자세로 하루 종일 생활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접 경험한 인권침해 실태를 보더라도 북한 사회의 만연한 폭력과 속박행위를 가늠할 수 있다. 여러 조사들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과 제3국 체류, 남한 입국과정에서 많은 외상과 인권침해를 겪는 것으로 일관성 있게 보고된다. 곽해룡의 연구에 따르면,²¹³⁾ 북한이탈주민들은 식량부족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 가족의 죽음, 공개처형 목격, 중국 사람들의 인권유린, 인신매매, 강제복송 공포 등의 외상사건을 가장 빈번히 경험하며, 북한을 탈출하거나 북한에 송환될 경우에도 북한의 사회 안전원에게 심하게 매질을 당하거나 고문, 구타, 강탈, 구금의 처벌을 받게 되거나 강간과 같은 성적 폭력에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강성록의 연구에서는²¹⁴⁾ 북한이탈주민이 북한 내에서 공개 처형 장면의 목격(86.3%), 아사자 목격(85.3%), 구타 장면의 목격(75.8%), 정치과오로 인해 처벌 받는 사람의 목격(67.4%), 가족 등의 질병에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주지 못한 경험(63.2%) 등의 외상 사건을 가장 빈번히 겪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외상적 사건은 국가 폭력 피해자나 난민의 경우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을 연구한 보고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유병율은 적용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국내 입국 이전 단계에서는 9.2%,²¹⁵⁾

213) 곽해룡,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문제에 관한 연구: 인권적 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pp. 19~24; 조상혁,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문제: 현황과 지원,” 전남대학교 정치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pp. 46~57.

214) 강성록, “탈북자의 외상척도 개발연구,”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p. 23.

215) 유정자, “재중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보호기관 대상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통일학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2006, p. 48.

국내 입국 초기 단계에서는 27²¹⁶⁾ ~ 29.3%,²¹⁷⁾ 지역사회 정착 단계에서는 27.2%로 조사되었으며,²¹⁸⁾ 우울 취약군은 27.5%에서 54.7%까지 추정되고 있다.²¹⁹⁾ 또한 2012년까지 발표된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 관련 실태조사와 기타 보고서를 분석한 하지현의 보고에 따르면,²²⁰⁾ 많은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조사에서 일반 남한 주민에 비해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알코올 사용 장애가 많이 관찰되었다. 특히 자신의 불편함을 신체 증상으로 표현하는 양상이 두드러졌으며,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라. 시사점

이와 같은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어떤 사회에서든 인권을 침해하는 속박과 강제행위가 인간의 정신과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치고 만성적인 후유증을 남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피해자들은 한결같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포함하여 정신건강에 치명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우울, 신경증, 신체화 장애와 같은 다양한 정신과적 증상을 겪었다. 또한 이러한 심리적 고통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았다. 따라서 통일 후 피해 북한주민들 역시 자연적 회복이 쉽지 않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집중적인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만성적 악화경로를 보일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216) 강성록, “탈북자의 외상척도개발연구,” p. iv.

217) 김희경·오수성, “탈북여성의 MMPI-2 프로파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29권 1호 (한국심리학회, 2010), p. 14.

218) 홍창형 외,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3년 추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제45권 1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06), p. 49.

219) 조영아·김연희, “초기거주 북한이탈여성의 정신건강 고위험군 예측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5권 3호 (한국심리학회, 2010), p. 510에서 재인용.

220) 하지현, “북한이탈주민의 정서적 소통방법,” 『통일인문학 논총』, 제53권 (통일인문학 연구단, 2012), p. 303.

경우 통일 후 예상되는 급격한 사회변화와 함께 높은 자살률로 이어질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사망 381명 가운데 10.4%가 자살하였는데, 이는 한국평균 자살률 0.02%의 500배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이다. 심리적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사람들에게 대해 진행한 심리학적 부검결과를 보면 조사한 10명 중 8명은 고문과 학대를 받았으며, 9명은 자살 전까지 기도원이나 정신병동에서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살의 가장 큰 이유는 고문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심각한 생활고로 인한 경제적 스트레스였다. 생활고로 인한 갈등이 가족구성원 및 친척들 간의 불화로 이어지고, 정서적 지지체계의 와해를 가져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²²¹⁾ 고문피해자 21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²²²⁾ 자살을 시도한 비율은 응답자의 24.4%에 달했으며²²³⁾ 피해자 가족 모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위험가능군에 해당되었다. 북한 사회에서 고문과 학대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점, 통일 후 체제변화에 따른 북한 사회 전반의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경제적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북한 범죄주민 및 일반 북한주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바이다. 또한 통일 후의 사회체제 변화에 따른 가족원 간의 증가된 정서적 부담이 가족 간의 정서적 지지를 힘들게 하고,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은 가족들에게 정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따라서 북한 피해주민들은 외상으로 인해 만성적이고 장기적인 후유증과 함께 적절한 개입이 없다면 통일 후 높은 적응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221) 5·18기념재단,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심리학적 부검 및 자살피해 예방대책과 사회적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광주: 5·18기념재단, 2008), pp. 1~35.

222) 이화영 외, 『고문피해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11), pp. 22~27.

223)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소득수준 '하'인 계층의 자살시도율 10.4%에 비해 2.4배 높은 수치이다.

또한 피해자들의 경우 분노, 죄책감, 불안, 공포 등의 정서조절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가족들에게 정서적 폭발이나 감정의 전이가 이루어져서 가족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가족갈등이 심화되면서 외상 회복에 결정적일 수 있는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고, 가족 안에서 피해자의 외상으로 인한 감정폭발이나 폭력적 행동이 발생하여 외상이 반복됨으로써 외상 후유증이 세대에 걸쳐 전이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5·18민주화운동 참여자들의 경우 부상자와 구속자의 약 삼분의 일이 5·18 경험으로 인해 결혼에 지장을 받았고 사분의 삼이 잦은 불화, 별거 생활, 이혼 등 가족관계에 어려움을 겪었다. 즉, 5·18 경험은 정서적 불안정성, 직업적응의 어려움 및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초래하여 가족 간의 관계가 나빠지는데 영향을 주었다.²²⁴⁾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즈 정권 당시 피해를 입은 외상생존자들도 외상으로 인해 유발된 분노로 인해 스스로 고통을 겪을 뿐 아니라 분노와 증오를 가족들에게 해소하려는 경향이 높아 회복을 위한 지지체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외상으로 인한 취약성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²²⁵⁾ 한국 전쟁 후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연구에서도 피해가족 자녀의 20% 내외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졌다.²²⁶⁾ 즉, 외상 후 스트레스가 세대를 걸쳐 전이된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은 외상으로 인한 가족기능의 약화와 외상의 세대 간 전이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외상 피해의 가장 뚜렷한 증상인 정서조절의 어려움으로 인한 일차적인 피해자는 가족이다.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장기적인 회복과정을 거쳐야 하는 외상피해의 경우 조절되지 않은 분노나 공포감을 우선적으

²²⁴⁾ 오수성 외, 『5·18민주 유공자 생활실태 및 후유증 실태조사 보고연구서』, p. 33.

²²⁵⁾ Devon E. Hinton, A. Rasmussen, L. Nou, M. H. Pollack, and M. J. Good, "Anger, PTSD, and the nuclear family: A study of Cambodian refugees," *Social Science & Medicine*, vol. 69, no. 9 (2009), pp. 1387~1394.

²²⁶⁾ 정홍주 외, "한국전쟁전후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 및 가족의 심리적 트라우마," 『민주주의와 인권』, 제15권 3호 (5·18 연구소, 2015), p. 27.

로 가족 내에서 해소하려고 할 것이며, 이것은 가족 내에서 가능한 지지마저도 이끌어 내지 못하는 악순환을 겪게 할 것이다. 특히, 통일 후의 정치적 여건상 사회나 공동체로부터 기대만큼의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러한 좌절감은 분노감을 증폭시키고 가족 내에서 폭발적인 정서표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들의 자녀에게 또 다른 외상으로 작용하여, 외상이 세대에 걸쳐 반복되는 결과를 양산할 수 있다.

자살, 외상의 세대 간 전이와 함께 북한 피해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적 개입이 없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는 알코올 중독이다. 음주에 대해 허용적인 북한 문화를 고려할 때, 다수의 피해자들이 외상의 후유증을 해결하기 위해 알코올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외상의 후유증이 체제 변화 후 북한 사회 전체가 겪게 될 상실감과 중첩되면서 음주가 심리적 고통에 대한 북한 사회의 보편화된 대처방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외상을 경험한 사람이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고 긍정적 정서를 증가시키는 능력을 갖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때 한 가지 쉬운 해결책이 중독이다. 상당수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들이 물질 남용의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은 일반적이며,²²⁷⁾ 중독성 물질은 정신장애의 증상들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처방이기는 하지만 일종의 자가 처방으로 간주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0년 실시한 고문피해자 21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²²⁸⁾ 고문피해자의 36.6%가 알코올 의존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외상생존자의 다수가 혼란스러운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 술에 의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북한 사람들에게 음주가 스트레스

²²⁷⁾ Ronald C. Kessler, Amanda Sonnega, Evelyn Bromet, M. Huges, and N. B. Nelso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vol. 52 (1995), pp. 1048~1060.

²²⁸⁾ 이화영 외, 『고문피해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pp. 22~27.

와 불안 경감을 위한 자가 치료 방안으로 빈번히 활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알코올 사용 장애 유병율을 한국 판 알코올 사용 장애 도구로 측정해 본 결과, 유병율이 10.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남성이 2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²²⁹⁾ 이는 2011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에서 발표된 알코올 사용 장애의 1년 유병율 4.3%(남성 6.6%, 여성 2.1%)의 두 배 이상에 해당된다.²³⁰⁾

또한 통일 후 북한 범죄피해자들이 만성적 영양부족, 외상 후유증으로 인한 신체적 질병과 상해, 정신건강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통일 후 급격한 사회체제의 변화로 인한 적응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면 피해자들은 새로운 사회의 경제적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사회체제의 변화는 건강하고 잘 기능하는 사람에게도 경제활동의 위축을 가져온다. 남한에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이러한 예를 잘 보여준다. 2011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총소득은 100만 원 이하가 31%, 150만 원 이하가 20.1%로 소득수준이 매우 열악했으며,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율도 일반국민에 비해 월등히 낮았다. 실업률 또한 3~4배 높았으며 부채수준도 심각했다.²³¹⁾ 소득수준과 고용율은 개인 차이를 보이는데, 이때 만성질환과 건강,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은 소득감소에, 우울 수준은 고용확률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²³²⁾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외상으로 인한 신체질환과 기능저하, 후유증에서 비롯되는

²²⁹⁾ 김병창·유시은, 『북한이탈주민 패널연구: 경제-정신보건-신체건강』(서울: 북한이탈주민재단, 2010), p. 80.

²³⁰⁾ 조맹제 외,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보고서(보건복지부 학술연구 용역사업보고서)』(서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2011), p. 17.

²³¹⁾ 이용화, “국내 정착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실태와 개선방안,” 『통일경제』, 제1권(2012), pp. 30~42.

²³²⁾ 유시은,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북한경제리뷰』, 제17권 4호(KDI, 2015), pp. 3~22; 김병창·유시은, 『북한이탈주민 패널 연구: 경제, 정신보건, 신체건강』, p. 104.

정신적 혼란을 극복해야하는 피해자들에게 체제 전환에 따르는 적응 스트레스는 감당할 수 없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5·18 관련자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5·18 이후 25년이 넘는 시점에서 무직인 경우가 당사자의 27%, 유족의 41%를 차지했고, 가구별 월 소득이 최저 생계비 아래인 경우가 50% 이상을 보여서 5·18 관련자들의 절반 이상이 심각한 빈곤상태에 있으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²³³⁾ 체제 변화가 없는 환경에서 조차도, 외상생존자의 경제적 적응이 장기적으로 쉽지 않다는 사실을 미루어 본다면, 적절한 치료적 개입과 경제안정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제공되지 않을 때, 피해자들이 새로운 사회의 빈곤층으로 등장할 것은 매우 분명한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대한 사회적 인식, 보상과 배상과정의 적절성과 처리과정에 따라서 2차 외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사회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회복의 과정은 일정 부분 피해자들에게 외상적 경험을 상기시킬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과정이 잘 계획되고 사전에 섬세하게 조정되지 않고 시행된다면 회복을 위한 사회적 처리 과정에서 새로운 외상이 발생할 수 있다. 크메르 루즈 정권이 무너진 지 30년이 되던 2009년 세워진 유엔 캄보디아 특별재판부(Extraordinary Chambers in the Courts of Cambodia: ECCC) 재판이 열렸을 때, ECCC 재판은 피해자들에게 사회 치유적 기능도 했지만 재판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2차적인 심리적 문제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정확한 기억을 요구받는 것, 과거 사실과 다시 만나면서 받는 상처, 재판 편주의, 적절한 감정상태를 요구받는 것, 증언 내용에 대한 선택을 강요받는 것, 용서가 선불리 논의되는 것, 배·보상 사안과 관련된 상처²³⁴⁾가 이에 해당

²³³⁾ 오수성 외, 『5·18민주 유공자 생활실태 및 후유증 실태조사 보고연구서』, p. 29.

²³⁴⁾ 전우택, “사회적 트라우마와 치유: 캄보디아 사례를 중심으로,” 『캄보디아 킬링필드를 통하여 보는 인간치유의 길(제50회 KPI평화포럼 자료집)』 (서울: 한반도 평화연구원,

된다. 5·18 유공자들의 경우에도 유사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5·18 유공자들의 경우 5·18에 대한 평가, 보상과 배상과정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도리어 2차 외상으로 이어졌다. 5·18 관련 단체의 활동은 국가로부터 끊임없이 탄압을 받았으며, 그 활동으로 인해 또 다시 낙인이 찍히는 일종의 악순환의 연속이었고, 그러한 생활 자체가 또 다른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가져오기도 했다.²³⁵⁾ 외상은 단순한 사건으로 개인에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그 사건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그 의미가 구성된다. 통일 후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피해자들이 겪은 피해에 대한 정의와 평가, 이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와 내용, 실천 절차, 사회 구성원의 합의나 인식에 따라서 외상은 더욱 힘을 얻거나 회복의 길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권이나 사회체제로부터 비롯된 부당한 압력에 의해 발생한 국내외의 범죄피해사건,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례를 종합해 볼 때, 통일 후 북한의 피해주민들 역시 장기적인 심리적 외상의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심리적 후유증은 단순히 물질적인 보상이나 정치적 복권만으로 치유될 수 없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적 개입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 국내외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적 후유증이 제대로 치유되지 못할 때에는 높은 자살율, 중독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외상의 후유증이 세대에 걸쳐 전이되거나, 범죄피해에 대한 처리 과정에 따라서 2차 외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사회에 부적응하면서 피해 북한주민들이 경제적 빈곤층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2016), pp. 5~62.

²³⁵⁾ 오수성 외, 『5·18민주 유공자 생활실태 및 후유증 실태조사 보고연구서』, p. 40.

2. 피해 북한주민의 심리적 외상의 영향과 치료 방안

가. 피해 북한주민의 심리적 외상의 영향

끔찍한 사건을 견뎌 온 사람들은 피할 수 없는 심리적 손상을 입는다. 외상은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남겨진 정신적인 후유증 또는 상처를 의미한다. 전투원 또는 시민으로서 전쟁에 노출되었거나 신체적 공격, 약탈, 강도, 학대 등의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사건, 강간이나 재난, 납치, 인질, 테러공격과 같이 큰 충격을 주는 사건 등이 외상적 사건으로 작용하며 특히 고문이나 감금과 같은 극도의 정치적 탄압이 있는 체제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가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생명 위협이나 심각한 신체적 상해의 위협을 느낄 만큼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건이 끝나도 오랜 기간 피해자의 삶에 영향이 남게 된다. 잔학행위가 자행된 여러 국가의 생존자들의 경우를 보는데, 북한 정권의 잔혹행위에 의한 피해 북한주민들도 여러 형태의 정신과적 증상과 신체적 상해 등의 고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잔혹행위의 후유증으로 인한 심리적 증상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라는 정신의학적 진단 기준에 의해 설명되고, 소통되어지고 있다. 크게 세 가지 기준에 근거하여 진단되는데, 극심한 외상적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외상 상황의 재 경험, 회피와 정서적 마비, 과도한 각성 등의 장애가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된다. 외상적 상황은 영상이나 생각, 지각을 포함하여 사건에 대한 반복적이고 침습적으로 떠오르며 고통스럽게 회상된다. 사건이 꿈으로 재연되기도 하며, 마치 외상적 사건을 다시 경험하는 듯한 지각과 착각을 가져오는 플래시백이 나타난다. 또한 외상적 사건과 유사하거나 이를 상징하는 사건에 노출되었을 때 강렬한 심리적 고통과 생리학적 반응이 발생한다. 원치 않는 외상사건의 지속적 재경험은 정반대로 자극에 대한 지속적 회피로 이어진다. 외상성

사건에 대한 생각, 기억, 느낌 또는 대화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사건의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활동이나 물체, 상황, 사람을 피하며, 외상성 사건의 중요한 부분을 기억하지 못한다. 심리 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회피행동이 증가하는데, 이전에 즐겨했던 활동에 흥미가 현저히 떨어지며, 다른 사람들과 사이가 멀어지거나 소원해지고 친밀감, 성적 관심과 같은 긍정적 감정을 경험하기가 힘들어진다. 또한 지나친 각성과 함께 과잉반응이 생기는데, 자극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어도 곧잘 화를 내고 공격적인 언어와 행동을 보일 수 있다. 알코올이나 약물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자살행동과 같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며, 기대하지 않은 자극에 큰 반응을 보이거나 놀라는 등 잠재된 위협에 대해 예민함이 고조된다. 집중력이 떨어지며, 수면 장애를 겪고, 이인증이나 비현실감 같은 지속적인 해리증상을 경험하기도 한다.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충격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이 보이는 다양한 심리적, 신체적 증상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허먼(Herman)은 특히 이 세 가지 핵심 증상들의 모순된 반응에 주목하였는데, 외상 피해자들은 침투와 억제, 재 경험과 기억상실, 과민하고 충동적인 행동과 완전하게 억제된 행동사이를 벗어나지 못하며 주기적인 전환에서 파생된 불안정성 때문에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다는 느낌과 함께 무력감이 악화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²³⁶⁾

고문, 인질, 납치 등의 국가폭력의 경우 피해자에게 심리적 외상이 발생하고, 그 후유증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포함하여 다양한 정신장애가 발생한다는 것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관한 장기 연구에서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은 홀로코스트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외상 후 스트

²³⁶⁾ 허먼 주디스 저, 최현정 역, 『트라우마: 가정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 (서울: 플래닛, 2007), p. 92.

레스 장애 유병율이 높았고,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었다.²³⁷⁾ 인권유린이나 고문 등 정치적 탄압을 피해 나온 난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50%가 진단 가능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보였으며,²³⁸⁾ 정치적 활동과 비정치적 활동으로 고문을 받은 터키의 고문 피해자들에 대한 연구에서도 18~33%가 평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²³⁹⁾ 또한 앞서 기술한 국내외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연구들에서 높은 비율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포함한 정신과적 문제가 보고된 바 있다.

그런데 북한 정권 하에서 자행된 국가폭력은 일반적인 외상성 사건에 비교해볼 때,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포괄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벗어날 수 없는 사회체제 속에서 악의적인 의도로 자행되었으며, 피해자의 경험이 철저하게 부정당하고, 억압당하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발생하였다. 신체적, 심리적, 도덕적 침해가 개인적 차원에서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가 속박과 공포의 원리에 의해 지배되는 일상적 침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침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생존을 담보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전방위적 속박 속에서 예측할 수 없이 반복되는 외상경험의 영향은 단순히 홍수나 화재, 지진, 교통사고 같은 비의도적이고 단회성으로 발생하는 외상사건 생존자들이 보이는 증상의 모습보다 훨씬 복잡할

²³⁷⁾ Efrat Barel, M. H. Van IJzendoorn, A. Sagi-Schwartz, and M. J. Bakermans-Kranenburg, "Surviving the Holocaust: A meta-analysis of the long-term sequelae of a genocide," *Psychological Bulletin*, vol. 136, no. 5 (2010), p. 677.

²³⁸⁾ Richard F. Mollica, G. Wyshak, and J. Lavelle, "The psychosocial impact of war trauma and torture on Southeast Asian refugees,"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 144, no. 12 (1987), pp. 1567~1572.

²³⁹⁾ Howard Johnson and Andrew Thompson, "The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in civilian adult survivors of war trauma and torture: A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vol. 28, no. 1 (2008), pp. 36~47.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점에서 장기 외상 피해자들의 변화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Complex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C-PTSD) 진단 기준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설명하는 증상을 넘어서 북한 피해주민들의 고통을 보다 세밀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²⁴⁰⁾

대체로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설명하는 증상들은 외상 사건 중에서도 아동기 학대나 가정폭력, 장기화된 전투 경험과 같이 반복적으로 지속된 외상경험으로 인한 변화를 말해준다.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주요 증상 중 대표적인 것은 정서 및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다.²⁴¹⁾ 이는 고문과 같은 복합적이고 고의적인 심리적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보이는 핵심적 증상의 하나로서, 정서나 충동 조절에 어려움은 분노 폭발, 자해행위나 자살몰두, 성적 충동 조절의 어려움, 위험행동에의 몰두로 이어진다. 주의력과 의식의 변화도 생기는데, 정신적 마비나 회피 같은 방법으로 외상적 사건을 처리할 수 없게 되면 의식을 현실에서 분리하게 되고 그 결과 기억상실이나 해리, 이인화(depersionalization)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타인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렵고, 반복적으로 피해자가 되기도 하며, 때로는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입히기도 하며,²⁴²⁾ 통합된 자기감에 손상을 가져오는데, 자신의 존재가

²⁴⁰⁾ PTSD라는 진단명은 참전군인들이 보이는 후유증에 기초하여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남성이거나 전쟁으로 인한 외상유형에 제한되어 있다. 그로 인해 강간 및 가정폭력과 같은 대인 폭력적 성격의 외상사건의 심리적 결과나 외상경험이 자기에 대한 지각의 변화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결과들을 충분히 포괄해주지 못한다. Bessel A. van der Kolk, and Christine A. Courtois, "Editorial comments: complex developmental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vol. 18 (2005), pp. 385~388.; Christine A. Courtois, "Complex trauma, complex reactions: Assessment and treatment,"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vol. 41 (2004), pp. 412~415.

²⁴¹⁾ 복합 PTSD는 기존의 외상 스트레스 장애 진단에서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극단적 스트레스로 인한 장애(Disorders of Extreme Stress Not Otherwise Specified: DESNOS)"로 분류되었는데, 진단기준은 정서 및 충동조절의 어려움, 주의력과 의식의 변화, 자기 인식의 변화, 가해자에 대한 인식변화, 대인관계의 변화, 신체화 증상, 의미체계의 변화 등으로 구성된다.

치에 대한 신념을 포기하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믿음이나 신념을 잃고 삶이나 세상에 대한 의미체계에 변화가 생긴다.

즉, 복합외상은 단순 외상과는 달리 표면적인 불안 증상들로 나타나기 보다는 정서적, 행동적, 대인관계 기능을 관장하는 개인의 심층적인 성격구조의 변화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의 심적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내적 표상-도식-이 자기, 타인, 외부 세계에 대해 왜곡된 내적표상으로 각인이 되고, 기존의 적응적인 도식마저도 부적응적인 것으로 변화시키거나 적응적인 생성을 방해하는 심층적인 변화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²⁴³⁾ 이로 인해서 외상을 경험한 이후에는 외상 경험자들은 더 이상 외상 경험 이전의 자신과 이후의 자신이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자신과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었다고 인식하여 심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한다.²⁴⁴⁾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의 외상경험의 후유증도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으로 더 적절하게 설명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대인외상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분류될 가능성이 2.11배 높았으며,²⁴⁵⁾ 외상경험은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통해서 남한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⁴⁶⁾ 이것은 인권침해와 같은 대인외상

²⁴²⁾ Jillian Fleming, Paul E. Mullen, B. Sibthorpe, and G. Bammer, "The long-term impact of childhood sexual abuse in Australian women," *Child Abuse & Neglect*, vol. 23, no. 2 (1999), pp. 145~159.

²⁴³⁾ Leslie Lebowitz and Elana Newman, "The role of cognitive-affective themes in the assessment and treatment of trauma reactions,"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vol. 3, no. 3 (1996), pp. 196~207; 안현의, "복합외상의 개념과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26권 1호 (한국심리학회, 2007), p. 109에서 재인용.

²⁴⁴⁾ 박철옥·안현의, "복합외상경험자의 자기의 회복과정," 『상담학연구』, 제17권 6호 (한국상담학회, 2016), p. 79.

²⁴⁵⁾ 김희경, "북한이탈주민의 외상유형에 따른 복합 PTSD와 PTSD증상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31권 4호 (한국심리학회, 2012), p. 1003.

유형이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중요한 유발요인이며, 남한사회적응이라는 현재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외상사건 자체이기보다는 외상으로 인한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다양한 증상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폭압적 인권탄압을 지속해온 북한 정치체제에서 자행된 범죄행위들은 단회성이 아니며, 인간에 의해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잔학 행위들이다. 이러한 행위들은 보위부와 같은 국가기관에 의해 시행될 수 있겠지만 이웃주민이나 가족, 친지와 같은 지인의 배신이나 고발행위로 시작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외상성 사건 중에서도 학대와 같이 애착대상으로부터 행해진 외상은 외상생존자에게 자기감과 삶에 대한 기본적인 신념을 무너뜨리는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북한 범죄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도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외상적 사건의 후유증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 보다는 반복적이고, 고의적이며, 애착대상에 의해 외상이 발생할 때 겪게 되는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으로 더 정확하게 설명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똑같은 외상사건을 경험했다고 해서 외상의 영향력이 모두 같을 수는 없다. 외상에 대한 준비도, 개인의 회복력, 대처, 사회적 맥락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외상 이후의 심리적 적응은 외상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을 어떻게 지각하고 수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리고 사건을 어떻게 지각하고 수용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으로는 개인적 요인과 더불어 사회문화적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러한 외상적 사건으로 인한 후유증은 개인의 회복력과 대처, 특히 통일 후 사회적 분위기와 시각,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우에 따라 다른 양상을 띠 것이다.

246) 정윤경·김희진, “북한이탈주민의 외상경험과 적응의 관계: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매개효과 분석,” 『사회복지연구』, 제45권 4호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4), p. 143.

나. 피해 북한주민의 심리적 외상에 대한 치료 방안

심리적 외상은 무력한 이들의 고통이다. 외상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 피해자는 압도적인 세력에 의해 무기력해진다.²⁴⁷⁾ 또한 인간 삶의 적응 능력을 압도하고, 위협 속에서 인간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반응요소들이 유용성을 잃으며, 건강하게 기능하는 자기보호체계가 찢겨진다. 가족, 우정, 사랑, 공동체에 대한 애착이 깨지면서 기본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외상적 상황에서 완전히 혼자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 외상 사건은 피해자의 신체와 신체기능을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자율성을 파괴하고 삶의 의미를 파괴한다. 즉, 사람들에게 통제감, 연결감, 의미를 제공해주는 일상적인 보살핌의 체계를 압도한다. 따라서 외상생존자의 회복에서 핵심적 요소는 이러한 무너진 통제감을 회복하고, 자신, 혹은 타인과의 안전한 연결을 통해 외로움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또한 통합된 자기감과 자기 가치감을 새롭게 구성하고 세상과 타인,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²⁴⁸⁾

북한의 피해주민들도 이러한 심리적 외상의 피해자로서, 외상생존자에 대한 일반적 치료방법을 따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외상 회복의 단계를 안전의 확립, 외상 이야기의 재구성, 생존자와 공동체 사이의 연결 복구로 설명한 허먼(Herman)의 3단계 모형과²⁴⁹⁾ 이를 바탕으로 하여 트라우마 상담모형을 제시한 이은아²⁵⁰⁾의 연구에 근거하여 북한 피해주민들의 심리적 외상에 대한 치료적 개입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허먼(Herman)이 제시한 외상 회복의 1단계는 안전단계이다. 허먼은 이 단계를 치료의 시작점으로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안전 확보에 대한

247) 허먼 주디스, 『트라우마: 가정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 p. 67.

248) 위의 책, p. 67.

249) 위의 책, p. 20.

250) 이은아, “트라우마 상담모형: 단계별 치유기제 및 기법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제16권 3호 (한국상담학회, 2015), pp. 581~602.

우선조치 없이는 다른 아무 치료적 작업도 수행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안전 확보란 진행 중인 외상을 멈추는 것이며, 자기 보호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기본 욕구들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로 부터의 학대 위협에 스스로를 노출시키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뿐 아니라 자신으로부터도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²⁵¹⁾ 즉, 안전이란 신체적, 정서적 안전뿐만 아니라 법적이고 경제적인 안전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 치료자들은 과도하게 압도된 외상반응이나 외상사건에 외상생존자들이 적절한 거리를 둘 수 있게 도움으로써, 외상 반응에서 비롯되는 압도되는 감정에서 벗어나 보다 통제적인 방향에서 상황을 다룰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²⁵²⁾ 외상반응이나 치료절차, 그 외에 피해자가 궁금해 하는 질문에 대해 답하며 적절한 심리교육을 실시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이 외상사건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며 생존하고자 하는 적응적 노력이라는 외상반응에 대한 정상화가 이루어지게 도울 수 있다. 또한 안전한 생활 거처를 발견하기, 적절하게 먹고 잠자기, 재정의 안정성 갖추기와 같은 외상생존자의 물리적 신체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치료자는 안전에 대한 심리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거나 외상반응이나 수면장애를 조절하기 위해 약물치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욕구 충족을 도울 수 있는 적절한 기관에 의뢰를 하거나 법정이나 경찰서에 동반하여 이들의 인권을 옹호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외상관련 지식과 심리적 안전에 대한 지식 및 대처, 신체 및 환경, 법, 경제적 생존과 안전과 관련된 지식을 제공하여 막연한 상황에 대한 불안을 최소화시켜 주는 것이다.

또한 치료자는 외상생존자가 치료 초기에 신체적, 심리적 안전지대를 선정하고 습득하도록 충분한 연습시간을 갖도록 도울 수 있다. 이는 치료

251) 허먼 주디스, 『트라우마: 가정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 pp. 260~291.

252) 이은아, “트라우마 상담모형: 단계별 치유기제 및 기법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p. 590.

회기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재외상화를 예방하고 외상에 대한 촉발제를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리게 되더라도 적응적인 통합을 유지할 수 있는 각성 범위(window of tolerance)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스스로 각성수준을 조절하는 기초능력을 교육한다는 의미이다.²⁵³⁾ 외상생존자, 특히 복합외상 경험자들은 각성 상태가 각성의 창(window of tolerance) 밖으로 쉽게 나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치료적 관점에서 각성수준 조절 능력 향상은 중요한 치료 목표가 된다. 치료적 개입은 외상생존자가 정서적으로 견뎌낼 수 있는 역량의 범위를 점점 확장시키기 위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더 높은 수준의 각성을 경험하게 해 주는 것이다.²⁵⁴⁾ 안전지대는 심상, 좋아하는 인형, 소리 등 다양한 형태나 매체를 활용하고, 기초적인 정서조절기술을 습득하면서 형성된다.²⁵⁵⁾ 또한 호흡을 통한 이완기법이나 안구운동 둔감화 및 재처리(Eye Movement Desensitization and Reprocessing: EMDR), 신체기반 접근들에서 사용되는 신체자극을 통한 자기진정 동작 등이 활용될 수 있다.²⁵⁶⁾

치료의 두 번째 단계는 외상생존자가 외상적 이야기를 기억하고 재구성하며 외상으로 인한 상실에 대한 애도가 일어나는 단계이다. 이 단계의 목표는 외상반응을 소거하고 인지재처리와 정서조절, 대처기술을 익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²⁵⁷⁾ 이 단계에서 공통적인 치료적 목표는 외상생존자로

²⁵³⁾ Daniel J. Siegel, *The Developing Mind: How relationships and the brain interact to shape who we are* (New York: Guilford Press, 1999).

²⁵⁴⁾ 이은아, “트라우마 상담모형: 단계별 치유기제 및 기법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p. 585.

²⁵⁵⁾ L. M. Najavits, *Seeking safety: A Treatment manual for PTSD and substance abuse* (New York: Guilford Press, 2002).

²⁵⁶⁾ Peter A. Levine, *In an unspoken voice: How the body releases trauma and restores goodness* (Berkeley, CA: North Atlantic Books, 2010); Pat Ogden, “Emotion, mindfulness and movement: Expanding the regulatory boundaries of the window of tolerance,” D. F. Siegal, and M. Solomon eds., *The healing power of emotion: Perspectives from affective neuroscience and clinical practice* (New York: W.W.Norton&Company, 2009), pp. 204~231.

하여금 안전한 상황에서 외상반응을 재경험하게 하여, 재조건화 혹은 재처리 과정을 통해 외상반응을 소거하는 것이다. 이러한 치료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에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인지행동치료기법인 노출치료²⁵⁸⁾(Prolonged Exposure: PE)가 사용될 수 있다. 노출치료에서는 실제나 상상노출, 점진적 노출을 통해 외상경험을 노출시키며, 이 과정을 통해 인지를 재구성한다. 이외에도 최근 들어 발전한 인지행동 요법인 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Mindfulness Based Cognitive Therapy: MBCT),²⁵⁹⁾ 수용전념치료(Acceptance Commitment Therapy: ACT),²⁶⁰⁾ 변증법적 행동요법(Dialectic Behavior Therapy: DBT),²⁶¹⁾ 안구운동 둔감화 및 재처리(Eye Movement Desensitization and Reprocessing: EMDR) 방법들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외상생존자 스스로가 자기 자신, 신체, 감정, 인지에 대해서 자각할 수 있도록 신체기반 접근이 활용되기도 한다. 만성적으로 외상을 경험한 복합외상경험자들은 심한 신체적인 통증을 느끼거나 혹은 통증에 무감각해지는 상태를 번갈아가며 경험하거나 몸 안에 갇힌 느낌 혹은 몸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한다.²⁶²⁾ 또한 신체감각을 느낌으로 바꾸어 표

²⁵⁷⁾ 이은아, “트라우마 상담모형: 단계별 치유기제 및 기법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p. 585.
²⁵⁸⁾ Edna B. Foa, “Psychological processes related to recovery from a trauma and an effective treatment for PTSD,” *Annual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vol. 821, no. 1 (2008), pp. 410~424.
²⁵⁹⁾ Z. V. Segal, J. M. G. Williams, and J. D. Teasdale, *Mindfulness-based cognitive therapy for depression: A new approach to relapse prevention* (New York: Guilford Press, 2002).
²⁶⁰⁾ Steven C. Hayes, K. D. Strosahl, and K. G. Wilson,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n experiential approach to behavior change* (New York: Guilford Press, 1999).
²⁶¹⁾ Marsha M. Linehan, *Cognitive Behavioral Treat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New York: Guilford Press, 1993).
²⁶²⁾ Bessel A. van der Kolk, Alexander C. McFarlane, and Lars Weisaeth, *Traumatic stress: The effects of overwhelming experience on mind, body, and society* (New York: Guilford Press, 2012).

현하고 적절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어렵고, 신체감각이 너무나 쉽게 자동적으로 촉발될 수 있어서,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힘들고 부인하고 해리하는 반응이 일어나기도 한다. 따라서 북한 피해주민들과 같은 복합 외상경험자들을 치료할 때에는 신체에서 느끼는 감각에 대해 민감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으며, 이 감각들을 통합하고 연결할 수 있는 치료적 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다.

외상을 기억하고 재구성한다는 것은 외상의 이야기가 더 의미 있고 정서적으로 견딜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치료 초기에 외상생존자들이 전하는 외상기억은 대체로 언어화되어 있지 않고 정적이다. 지루하고 전형적이며 감정이 묻어나지 않는다. 또한 시간에 따라 진전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해석을 드러내지 않는다.²⁶³⁾ 이때 외상 경험을 이야기하며 기억의 파편들을 조직화된 서술로 전환하는 것은 자기 이해를 촉진하며 다른 사람에게 경험을 말할 수 있도록 해준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해보는 것은 자서전적 기억을 구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외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정서를 참을 만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증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면 더 이상 그 경험 때문에 외롭지 않고 늦게나마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해와 지지, 위안을 받게 되며, 외상경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두려움과 외로움을 넘어설 수 있게 된다.²⁶⁴⁾ 다시 말해서 외상경험에 대한 기억의 재구성은 외상이 초래한 극심한 공포로 인한 단절로부터 새로운 의미세계와의 연결을 구축해내는 것을 의미한다.²⁶⁵⁾

외상기억을 노출하고 재구성하는 두 번째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안정감의 유지와 외상경험 노출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렌은

263) 허먼 주디스, 『트라우마: 가정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 p. 292.

264) 존 알렌 저, 권정혜 외 공역, 『트라우마의 치유』(서울: 학지사, 2010), pp. 129~375.

265) 노성숙, “5·18 트라우마와 치유,” 『신학전망』, 제194권 (광주카톨릭대학교, 2016), p. 236.

(Allen)은 처리하기와 간직하기로 설명하고 있는데, 처리하기는 외상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며 말하는 것을 의미하며, 간직하기는 정서적 반응을 조절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²⁶⁶⁾ 즉, 두 번째 단계의 치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각성수준이 적절하게 통합할 수 있는 각성수준(widows of tolerance) 안에서 자신의 외상사건을 들여다 볼 수 있을 정도의 안전감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²⁶⁷⁾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정서조절과 기억재처리 작업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후에는 외상생존자의 애도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치료자는 치료과정을 통해 회복될 수 없는 상실에 대한 슬픔을 애도할 수 있도록 돕고 이러한 슬픔이 가능한 사회적인 참여와 관심 가운데 다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허먼의 외상회복의 세 번째 단계는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외상경험자와 공동체가 다시 연결되는 단계로, 북한 피해주민들의 경우 통일된 한국사회 안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변화된 사회체제 안에 희망을 가지고 자리 잡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일상으로 복귀는 외상생존자가 자신의 일상으로 건강하게 복귀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독립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 환경적 동반성장이 요구되는 단계이다.²⁶⁸⁾ 외상사건은 미래에 대한 신뢰와 긍정성을 앗아가며, 그로 인해 현재의 실행력을 감퇴시킨다. 이 단계에서 외상생존자는 주체적으로 미래의 행복감을 추구하는 연습과 기술을 다시 갖추고 일상생활의 즐거움을 회복하며, 사회와 다시 연결되는 과정을 통해 외상사건이 외상생존자 개인에게 갖는 의미체계를 재구축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치료자는 외상생존자가 일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적절한 조언을 하거나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실험을

266) 존 알렌, 『트라우마의 치유』, pp. 276~283.

267) 이은아, “트라우마 상담모형: 단계별 치유기제 및 기법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p. 593.

268) 위의 글, p. 585.

함께 시도해볼 수 있다. 또한 외상생존자가 외상과 관련된 사회적 의식에 참여하여 사회적 지지를 주고받고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하게 도울 수 있다.

외상생존자들이 사회적 지지체계를 형성하고, 일상생활에서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집단치료가 활용될 수도 있다. 집단 치료의 중요한 이득은 고립감을 극복하고 정서적 지지의 토대를 형성하게 해주는 것이다.²⁶⁹⁾ 실제로 5·18 피해자들의 치료를 위해 설립된 광주트라우마센터에서는 집단치료와 고문치료에 주로 활용되는 증언치료를 변형한 형태의 ‘마이데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치료적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은 외상경험 재구성을 통한 삶의 통합 및 내적 성장, 가족 및 사회와의 연결감 강화를 목표로 한 회에 2시간씩 진행되는 데, 진행자와 주인공이 사전 면담 후에 고문 생존자나 가족 1명이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치료자와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에서 참관자들은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과 지지를, 주인공은 가족에게 미안함이나 가족 간에 털어놓지 못했던 감정을 표현하게 되었고,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며 용기를 북돋게 되었다.²⁷⁰⁾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족이 치료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외상생존자의 가족들은 종종 이들의 해리경험이나 의도적인 자해, 자살시도 등으로 인해 외상생존자를 두려워하며, 친밀감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외상을 입은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가족들이 대리적 외상경험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외상생존자 가족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

북한 피해주민들에 대한 치료의 최종 목표는 통일된 북한 사회와 연결되면서 자신들이 겪었던 고통의 의미를 새롭게 조망하고, 주체적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외상생존자에 대한 여러 치료

269) 허먼 주디스, 『트라우마: 가정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 pp. 358~389.

270) 광주트라우마센터, 『2014 5·18 관련자 등 국가 폭력 생존자 재활성과보고서』 (광주: 광주트라우마센터, 2015), p. 102.

적 접근들과 치료사례를 보건데 외상생존자가 궁극적으로 새로운 삶을 계획할 창조적 힘은 자신이 겪은 외상사건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데서 생긴다. 그러나 외상은 '사건 그 자체'로부터 독자적으로 야기되거나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회에 의해 그 사건의 의미가 구성되는 것이며, 사회적으로 부여되고 귀속된 특성은 사건이 전개됨에 따라 새롭게 부여되곤 한다.²⁷¹⁾ 특히, 북한 피해주민들이 겪는 심리적 외상은 대부분 정치적 이유에서 비롯되며, 분단이라는 역사적 비극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회정치적 맥락을 배제하고는 그 의미를 발견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성격적 특성이나 회복요인만을 강조한 심리치료적 접근은 이들이 겪은 외상 사건이 갖는 고통과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치유는 분단이 초래한 비극적 현실 속에서 발생한 폭력성을 사회 전체가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할 것이다. 공동체의 기억은 피해자들만이 겪은 외상적 피해를 사회 전체의 연대적 고통과 회복의 책임의식으로 확장할 수 있다. 왜냐하면 외상적 피해를 입지 않은 일반인 어느 누구도 이러한 분단이 초래한 외상의 피해를 절대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치부하거나 심리치료의 대상으로만 다루는 치료적 접근은 적절치 못하다. 이러한 폭력이 야기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고통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피해자의 고통을 분단구조가 초래한 한국사회 전체의 사회적 고통과 회복의 과제로 인식하게 하는 치료자의 활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치료적 활동이 특히 더 요구되는 것은 역사적으로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외상 사건을 벗어난 이후에도 자신들의 외상기억을 기억하기에 열악한 심리사회적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

271) 제프리 알렉산더 저, 박선웅 역, 『사회적 삶의 의미: 문화사회학』(서울: 한울, 2007); 노성숙, “5·18 트라우마와 치유,” p. 228에서 재인용.

다. 대체로 사건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국가 폭력 피해자들은 외상사건 이후에도 일상적인 격리, 감시 통제의 환경에 놓이거나 이로 인해 외상사건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에 더하여 사회로부터의 낙인과 타자화를 겪는다. 또한 침묵의 공모에 의해 주변 공동체로부터 분리되고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은 정치적 역학관계에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회적 부정의에 대한 분노의 감정은 이를 풀어가는 사회적 활동과 연결될 수밖에 없으며 이들의 회복을 위한 몸부림은 사회적 정의를 해결하는 문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²⁷²⁾ 따라서 치료자는 피해자가 입을 심리적 외상의 정치사회적 측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이들의 인권을 지키고 사회정의를 세우는 연대적 활동에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들에게 외상을 직접 가한 사람들에 대한 울분과 분노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해를 정당화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사회적 부정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들의 외상이 궁극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²⁷³⁾

피해자들은 통일 후 사회적 부정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거나 통일과정의 문제로 너무나 쉽게 처리해버리거나, 기억하기 싫은 역사적 사실로 묻혀지길 기대하는 사회적 환경에 놓일 경우, 외상반응의 감소나 증상의 해결과는 별도로 통일 이후의 사회에서 독립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성취하는 진정한 회복은 달성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생기는 사회적 고통은 결정적인 2차 외상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회복과 사회적 공동체에 대한 감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진실에 대해 발언하고, 피해자의 고통이 완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공적인 장이 필요하다.²⁷⁴⁾ 이를 위해 이들의 공동체가 이들의 고통과 연대하고 회복을 함께 책임지는 합의된 사회적 지지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치료자들은 외상생

272) 강용주, “민주, 인권, 평화도시 광주,” 『문화, 인권, 삶 그리고 광주』 (광주: 2014년도 제8기 광주정신계승 시민대학, 광주광역시, 지역문화교류 호남재단, 2014), p. 31.

273) 한홍구 외, 『광주트라우마센터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 (광주: 평화박물관, 2012), p. 8.

274) 허먼 주디스, 『트라우마: 가정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 p. 397.

존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외상의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공적인 장을 마련하고, 연결하며, 사회적 지지를 도출하는 역할과 연대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다. 북한의 고문 실태와 고문 생존자의 치유

고문이란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 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 동의, 묵인 아래 어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연루 혐의 행위를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박, 강요할 목적으로,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되는²⁷⁵⁾ 극심한 형태의 외상 경험을 말한다.

북한에서는 구류장, 집결소, 교화소 등의 교정시설 및 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 등의 기관에서 고문 및 각종 비인도적 처우가 매우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 탈북 주민들의 광범위한 증언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는 탈북 관련 범죄자들에게만 가해지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 범죄의 경우에도 비일비재하게 행해진다. 범죄사실을 밝혀내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도 있으며, 교정시설 내의 질서유지를 위해서도 가해지고 있다. 또한 고문 자체를 범죄자들에 대한 하나의 형벌로 사용하는 경우도 일반적이다.²⁷⁶⁾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밝혀진 북한 내 고문 유형을 살펴보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문이 자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구타, 고정 자세 강요, 95도 각, 종아리 뒤 각목 끼우고 꿰어앉히기, 전기고문, 몸에 물 붓기 및 물몽둥이 구타, 불 고문, 상자 감금, 비둘기 고문, 빛 고문, 물고문, 거꾸로 매달기, 손톱 밀 찌르기 등의 신체적 고문, 타인의 고문 및 처

²⁷⁵⁾ 고문방지협약 제1조 제1항.

²⁷⁶⁾ 한동호 외, 『북한 내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서울: 통일연구원, 2016), p. 9.

형 목격 강요, 폭언 및 인격모독, 비인도적 처우 등의 심리적 고문, 독방감금, 불결한 환경에 노출, 화장실 이용 제한, 수면박탈, 영양박탈, 열악한 의료 환경, 성적 굴욕감 등의 복합적 고문기법 등²⁷⁷⁾ 가능한 모든 고문방법이 동원된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에서 당한 고문에 대한 연구조사를 보면 고문이 북한 사회에서 얼마나 빈번히 자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30명을 대상으로 한 변주나 등의 연구²⁷⁸⁾에서 30명 모두 고문을 당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고문 후유장애로 피부외상 50%, 골절 40%, 뇌진탕 30%, 혈관손상과 출혈 및 신경손상과 마비 23%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소화기계(위궤양, 간염, 식욕상실, 체중상실, 변비 등 93%), 근육 및 골격계(신체구조 변형성 기능장애, 근육통, 감각마비, 피로감, 흉부통, 요통 등 83%) 중추 및 말초신경계(긴장형 두통, 뇌진탕, 혈관신경손상, 말초지각 마비 등 80%)의 만성적인 신체상의 고문후유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후유증에 대한 장기적 치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원하고 있었으며, 심리적 안정을 위한 치료, 의료적 치료, 정신과 전문의와의 상담, 재활 치료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고문은 강력한 외상사건으로 정신질환의 유발원으로 작용한다. 고문을 경험한 분쟁 지역 주민이 참여한 161개 유병율 연구들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를 보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유병율은 26.3~35.2%, 우울장애의 유병율은 26.3~35.6%로 나타났다.²⁷⁹⁾ 또한 24명의 고문 생존

277) 위의 책, pp. 9~51.

278) 변주나·정남옥·유양경, “탈북자 고문 후유장애 실태,” 『스트레스 연구』, 제14권 1호 (대한스트레스학회, 2006), p. 36.

279) Zachary Steel *et al.*, “Association of torture and other potentially traumatic events with mental health outcomes among populations exposed to mass conflict and displacement: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AMA*, vol. 302, no. 5 (2009), pp. 537~549; 최현정·이훈진·이화영, “고문 생존자의 외상 기억표상의 특성과 외상 후 심리적 증상과의 관계,” 『스트레스 연구』, 제14권 1호 (대한스트레스학회, 2006), p. 461에서 재인용.

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국내의 구조화된 정신과적 면담조사에서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시점 유병율 33.3%, 우울장애의 시점 유병율 41.6%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었다.²⁸⁰⁾

또한 고문과 투옥으로 인한 직장상실과 교육중단, 그리고 이로 인한 생존자의 사회경제적 무능의 문제가 연구들에서 지적되었고, 심리적 후유증으로 인해 사회생활이 제약되고 법적 문제가 발생하며, 신체화 증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사실도 보고되었다. 고문으로 인해 가족 간의 결별, 직업 및 사회적 지위의 상실, 사회적 지지체계의 박탈 및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겪는다고 보고되며,²⁸¹⁾ 가족 내의 폭력이 증가되며 가족이 파괴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²⁸²⁾

이러한 고문 생존자에 대한 치료는 일반적으로 복합외상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치료방법을 적용할 수 있겠다. 그중에서도 인권침해 경험을 사회적으로 증언하는 증언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증언치료는 인권침해 생존자들을 위한 개별심리치료법으로²⁸³⁾ 1970년대 칠레에서 고문 생존자 및 그들의 가족, 친지들의 외상치료를 위해 시엔푸에고스(Cienfuegos)와 모넬리(Monelli)가 개발한 치료법이다.²⁸⁴⁾ 증언치료는 치료과정을 통해 과거의 정치적 행위, 사적관계, 일과 사회적 관계를 현재와 미래에서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에이거(Agger)와 쟈슨(Jensen)

²⁸⁰⁾ 최현정·이화영·이훈진, “고문피해자의 정신과적 진단 실태,” 『신경정신의학』, 제51권 3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12), pp. 1~7.

²⁸¹⁾ S. Witterholt and M. Jaranson, “Treating torture victims on site: osinian refugees in Croatia,” J. Jaranson, and M. Popkin eds., *Caring for victims of tortur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1988), pp. 243~252.

²⁸²⁾ 이화영 외, 『고문피해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p. 37에서 재인용.

²⁸³⁾ I. Agger, *et al.*, “Testimony ceremonies in Asia: Integrating spirituality in testimonial therapy for torture survivors in India, Sri Lanka, Cambodia and the Philippines,” *Transcultural Psychiatry*, vol. 49, no. 3~4 (2012), pp. 568~589.

²⁸⁴⁾ A. Cienfuegos and C. Monelli, “The testimony of political repression as a therapeutic instrument,” *American Orthopsychiatric Association*, vol. 53, no. 1 (1983), pp. 43~51.

은²⁸⁵⁾ 증언치료를 ‘정치적 탄압과 인권침해에 대항하는 연대활동’이라고 말했다. 이 치료방식에서 생존자들은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언어로 이야기하도록 요구되며 중요한 사건들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을 명확히 하도록 질문을 받는다. 생존자들은 치료자와 협력하여 고통스러운 기억을 회복할 수 있고 그 기억들을 문서화하는 작업, 즉 증언 자료로 만든다. 이 작업의 기본적인 목적은 수치심과 치욕감으로 얼룩진 외상 이야기를 인간존엄성과 고결함이 있는 이야기로 전환하는 것이다.

실제로 증언치료는 TPO(Transcultural Psychosocial Organization) 캄보디아²⁸⁶⁾에 의해 캄보디아에 소개되어 크메르 루즈 기간의 생존자와 목격자들의 치유에 활용되었다.²⁸⁷⁾²⁸⁸⁾ 치료과정에서 고문 생존자는 치료자와 함께 증언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생존자는 외상과 관련 요인에 노출되면서 외상과 관련된 감정들을 표현하고 다룰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증언 기록과정에서 외상적 경험이 떠오르면서 지나치게 힘들어져

285) I. Agger and S. Jensen, “Testimony as ritual and evidence in psychotherapy for political refugee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vol. 3, no. 1 (1990), pp. 115~130.

286) TPO 캄보디아는 캄보디아의 정신 보건과 사회심리학적 지원 분야에서 선도적인 NGO이다. 1995년 2월 캄보디아인들의 정신적 문제 및 정신 보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네덜란드 기반의 NGO인 TPO International의 한 부서로서 설립되었다. 2000년에는 독립적인 지역 NGO로 등록되었으며, 현재는 캄보디아인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287) Sotheara Chhim, “TPO의 증언치료 안내서-크메르 루즈 학살 생존자를 위한 문화적 관점이 반영된 트라우마 치료,” 『2013 국가폭력과 트라우마 국제회의』 (5·18기념재단 주최 2013 국가폭력과 트라우마 국제회의 자료집, 2013.05.16.), pp. 43~64.

288) TPO 캄보디아에서 실시된 증언치료는 3일 동안 집단 또는 개인으로 진행되며 마지막 넷째 날 의례를 행하게 된다. 증언은 먼저 치료자(증언기록자)가 내담자와 신뢰를 쌓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관심사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시작된다. 증언에 앞서 증언치료에 대한 설명과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반응에 대한 심리교육, 전체 과정 설명이 이루어지며 그 이후 셋째 날까지 계속해서 생존자(내담자)의 외상적 요인을 듣고 증언을 수정하는 작업을 반복한다. 마지막으로 치료자가 요약한 증언을 내담자에게 읽어주고 기록한 것을 생존자에게 주고 기록에 서명하는 것으로 증언기록이 마무리된다. 증언기록이 끝난 후 마지막 날에는 증언을 하는 의례가 실시되는데, 성스러운 공간이나 억압이 이루어졌던 장소는 불교사원에서 진행된다. 생존자가 직접 증언기록을 읽거나 치료자(기록자)가 읽고 관중의 반응을 듣는다. 증언이 끝나고 나면 스님이 불경을 읊고 기도를 해 준다. 자세한 과정은 위의 책, pp. 43~64 참고.

서 현실감이 흐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 치료자는 신체화된 외상치료 기술을 활용하여 외상 에너지를 분출하게 하거나 몸을 두드리거나 방안을 주시하거나 몸을 이완하게 하여 생존자를 지나친 비탄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외상적 경험은 노출되고 서사가 있는 이야기의 형태로 자리 잡아 자신의 경험으로 통합되어진다. 이때 ‘증언’은 고문으로 고통받는 개인에게 단순한 외상경험의 노출을 넘어서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허먼(Herman)은²⁸⁹⁾ 외상환자에게 증언이 갖는 독특한 기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증언은 치유의 의례로서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 증언은 고해와 영성이라는 사적 차원과 정치적이고 법적인 공적 차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증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이 두 차원의 의미가 연결되어 개인적인 경험에 새롭고 커다란 차원이 열린다. 따라서 증언은 외상의 고통을 겪는 개인의 사적 차원과 사회공동체를 잇는 사회적 지지의 아주 구체적인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즉, 고문 생존자의 전환된 이야기는 ‘새로운 이야기’가 된다. 그것은 더 이상 ‘수치심과 모욕’이 아니며 오히려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것이 된다.²⁹⁰⁾ 다시 말해서, 증언치료요법은 지지적 상담을 기반으로 하는 일반적인 임상 또는 회복 상담의 방법과는 다르게 정신적이고 법적 접근의 치료법으로 정의 또는 인권의 맥락에서 개인의 고통을 공공과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기법이다.²⁹¹⁾

²⁸⁹⁾ 허먼 주디스, 『트라우마: 가정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 p. 302.

²⁹⁰⁾ Richard F. Mollica, “The trauma story: the psychiatric care of refugee survivors of violence and torture,” Ochberg Frank ed, *Post-traumatic therapy and victims of violence* (London: Routledge, 1988), pp. 295~314; 허먼 주디스, 『트라우마: 가정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 p. 302에서 재인용.

²⁹¹⁾ I. Agger, “Testimony Therapy of Torture Survivors in Asia. Seminar presentation at Yonsei University,” (May, 2016); 신보경, “캄보디아와 증언치료요법,” 『캄보디아 킬링필드를 통하여 보는 인간치유의 길(2016 제50회 KPI평화포럼 자료집)』 (서울: 한반도평화연구원, 2016), p. 107에서 재인용.

근래에 와서 증언치료요법은 지속노출 치료법(Prolonged Exposure Therapy)과의 통합을 기반으로 한 내러티브 노출치료법(Narrative Exposure Treatment: NET)으로 발전하였으며 이 기법은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을 위한 단기 심리치료의 한 방법으로 현재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주로 저·중소득 국가에서 발생하는 갈등(전쟁, 고문 등)과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한 트라우마 대응에 사용되며, 최근에는 고소득 국가 내에서의 정치적 망명 또는 난민들을 대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²⁹²⁾

내러티브 노출치료법은 증언치료요법과 마찬가지로 상담 이전에 심리교육을 진행함으로써 환자들이 치료법에 대해 보다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후, 환자들로부터 치료 동의서(informed consent) 받은 뒤 치료를 시작하게 되며 대체로 한 세션은 60~120분으로 한 주에 한 번 이상 최대 보름동안 세션을 진행한다. 첫 세션에서는 환자들에게 '인생선(lifeline)'을 줄을 활용하여 표현하게 한 후, 자신의 출생부터 현재까지의 즐거웠던 일과 슬펐던 일 등을 시간 순서대로 표시하게 하고 이후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치료법을 통해 환자를 자신이 경험한 과거 트라우마적 사건에 충분한 시간 동안 감정적 노출을 하게 함으로써 트라우마적 기억에 대한 힘들었던 습관적 떠오름과 감정적 반응을 감소하게 한다.²⁹³⁾

증언치료, 내러티브 노출 치료법과 함께 일반 정신건강 부문에서 개발된 지식과 기술에 기반한 심리치료,²⁹⁴⁾ 의학적, 정신의학적, 물리 치료적,

²⁹²⁾ K. Robjant and M. Fazel, "The emerging evidence for narrative exposure therapy: A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vol. 30, no. 8 (2010), pp. 1030~1039; 신보경, "캄보디아와 증언치료요법," p. 112에서 재인용.

²⁹³⁾ 위의 글, p. 112에서 재인용.

²⁹⁴⁾ 미국 고문피해자센터에서 발간하고 광주트라우마센터에서 번역하여 출간한 고문 생존자를 위한 안내서 『상처입은 자의 치유』에서는 고문 생존자를 돕기 위한 심리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전략을 다음과 같이 요약 설명하고 있다.

① 생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같은 외상 후 반응, 외상의 심리적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 반응들이 정당한 것임을 보여주라. ② 생존자들이 느끼는

사회적 측면의 다각적 측면의 재활 프로그램이 고문 생존자의 치료에 활용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생존자에게는 안전의 확보, 신뢰의 확립, 증상의 치료 혹은 경감이 필수적이다. 적절한 약물치료가 도움이 되며, 고문으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상실을 받아들이고, 애도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또한 가족과의 재결합을 통해 사회적응을 시도하고, 고문에 의한 정신적 후유증을 이해하도록 가족들을 교육한다.²⁹⁵⁾

그런데 고문치료과정에서 특히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고문이라는 잔학행위가 단순히 피해자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이는 고문의 궁극적 목적과 관련 있다. 고문의 주된 목적 중 하나는 개인에게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기능의 황폐를 초래하여 극심한 무력함과 피로움의 상태로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문은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기능의 기본적 상태를 공격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 고문자는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무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격을 붕괴하려고 한다. 꿈, 희망, 미래에 대한 목표를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 가족과 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는 피해자의 존재 의미를 고문자는 파괴시키고자 한다.²⁹⁶⁾ 동시에 고문은 그 피해자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감정에 대해 안전하고 치료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생존자의 감정을 듣고 받아들이고 함께 겪어라. ③ 구체적인 불안 관리 전략을 가르치고 치료적 관계를 내면화함으로써 생존자들이 스스로를 진정시키는 법을 배우도록 도우라. ④ 고문과 박해 경험에 대한 생존자들의 생각을 파악하게 도와주고, 그러한 생각이 고문으로 인한 것인지 검토해 보라. ⑤ 다양한 상실에 대한 애도를 통해 생존자들을 도우라. ⑥ 새로운 환경에 전반적으로 적응하고 직업적이고 교육적인 계획, 가족 안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재구축할 수 있게 생존자를 도우라. ⑦ 생존자가 잠재적인 외상 재경험 또는 예기치 않은 범죄피해 재경험을 예상하고 대처할 수 있게 도우라. ⑧ 외상으로부터 비롯된 생각, 감정, 신체 감각, 그 밖의 반응들을 외상과 연결지어라. 이러한 경험을 정상적이게 하라. ⑨ 가능한 범위 내에서 타인과 세상에 대한 신뢰의 구축 또는 재구축을 시도하라. ⑩ 타인과의 긍정적인 연결 또는 재연결을 도모하라. ⑪ 중요할 수도 있는 고문 전후의 외상경험들을 다루어라. ⑫ 내담자가 원하는 만큼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역할로 복귀할 수 있도록 궁극적인 연결, 재연결을 장려하라. 미국 고문피해자센터, 유헤미 역, 『상처 입은 자의 치유』 (광주: 광주트라우마센터, 2013), p. 74에서 발췌함.

²⁹⁵⁾ 이창호·정승용·전우택, “고문에 대한 정신의학적 고찰,” 『신경정신의학』, 제42권 2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03), p. 440.

무서운 본보기를 보여준다. 공동체 전체의 의지와 결합력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부, 부모, 자식, 기타 가족 구성원 간의 친밀한 관계를 깊이 손상시키고 또한 피해자와 그들의 공동체 간의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²⁹⁷⁾ 즉, 고문은 개인을 겨냥하여 이루어지지만 궁극적으로는 공동체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는데 사용되던 정치적 무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문치료에서는 다른 외상에 대한 치료와 달리 고문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개별적 증상과 장애를 넘어 외상이 지닌 의미, 권력, 정체성 같은 문제들을 다루어야 하며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맥락 속에서 생존자가 가진 문제를 인식하는 태도가 치료자에게 필요하다. 또한 고문의 궁극적인 목적인 생존자와 공동체와의 단절을 극복하고, 안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연결성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에 치료자가 이러한 생존자의 경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생존자가 겪는 단절감은 극복되지 못할 것이고, 고문치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회적 연대감의 시작은 달성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 정권에 의한 피해를 입은 고문 생존자의 재활에 참여하는 실무자들은 생존자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분단과 북한 정권유지를 위한 의도적인 정치 전략에 따르는 피할 수 없었던 결과라는 인식과 더불어 정치사회적 맥락 안에서 문제를 규정하고, 생존자뿐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문제를 풀어가려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자들의 인권향상을 위한 노력, 고문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은 공동체와 피해자의 사회적 연결을 위한 치료자의 중요한 개입전략이 될 것이다. 이들의 배상과 관련된 재판과정에서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거나 옹호활동을 하는 것, 재판 과정에서 2차

²⁹⁶⁾ 이화영 외, 『고문피해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11), p. 48.

²⁹⁷⁾ 위의 책, p. 48.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는 것도 피해자에게 중요한 지원이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고문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 것이 고문 생존자 치료의 첫 단계인 안전 확보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고문의 사회정치적 원인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정치적 활동에 참여하고 이를 위해 다른 전문가들과 연대 활동을 하는 인권적 차원의 활동이 고문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회복을 돕는 중요한 방안이 될 것이다.

3. 정신건강 지원정책

북한 피해주민들의 회복은 단순히 전문가의 치료적 노력으로 달성되지 않는다.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사회적 노력과 국가의 지원정책, 민간 차원의 활동과 지역사회와 공동체적 노력이 뒷받침 될 때 가능하다. 본 절에서는 피해자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 국가 및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과 지원방향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피해자의 인간존엄성 회복은 통일 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의 회복에 달려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정의롭지 않은 사회에서 불의의 사건을 기억하고 이야기하며 인정받고, 그 사건을 다시 삶으로 통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회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 조치와 정책은 북한 범죄피해자들의 인간존엄성과 정신건강 회복의 기초가 될 것이다. 국가 차원의 현실적 조치는 이들 피해자들의 고통을 공적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고통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도와줄 것이다. 경제적 배상, 명예회복, 진상규명 및 가해자의 진실한 사과, 국가의 공개적 사과, 추모유령사업²⁹⁸⁾ 같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를 덜어주려는 현실적인 노력이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적 치유 노력

²⁹⁸⁾ 정홍주 외, “한국전쟁전후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 및 가족의 심리적 트라우마,” 『민주주의와 인권』, 제15권 3호 (5·18 연구소, 2015), p. 409.

에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둘째, 피해자들의 물리적, 신체적, 법적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지원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피해자들과 같은 외상생존자들의 회복의 첫 걸음은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안전은 단순히 심리적인 안정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법적인 안전을 포함하는 기본적인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다. 심리적 외상은 재할에 성공하기까지 상당기간동안 신체적, 심리적 기능수준의 저하를 가져온다. 통일 후 급격한 사회변화는 일반 북한주민들에게도 새로운 적응을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통일한국에서 겪을 적응의 장벽은 너무나 자명하며, 이것은 회복 이전에 이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심리적 안전 이전에 이들의 신체적, 물리적, 법적 안전을 위한 제도가 국가 차원에서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사회 구성원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이나 갈등은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나 배상, 지원 기준에 대한 혼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책적 비밀관성이나 안전한 생존을 보장하지 못하는 지원정책은 이들의 심리적 회복 이전에 물리적 생존을 위협할 것이다. 따라서 권리보장을 위한 법적 지원, 신체적 질병치료를 위한 의료지원, 안정된 주거지원, 범죄피해에 대한 경제적 보상 및 배상, 생계비 지원 등에 관한 국가 차원의 사회지원정책 및 제도가 확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셋째, 피해자들 및 유가족들의 심리적 외상 치료를 위한 전문센터를 국가 차원에서 설립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기관을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전문적인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분단시기동안 국가로부터 부당한 폭력을 입은 피해자들의 치유에 대한 노하우를 쌓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5·18 피해자들의 외상치료를 위해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광주트라우마센터는²⁹⁹⁾ 국가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외상생존자의 치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치료기관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

다. 이러한 기관은 외상 피해자에 대한 치료뿐 아니라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가 양성 체제를 구축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외상에 대한 신경생리학적 지식, 법, 약물, 중독, 대리외상 같은 외상과 관련된 다양한 전문적 지식에 대한 관련 실무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서 관련 실무 지원자들의 네트워크가 구성될 수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전문치료와 전문가 교육의 허브를 담당하고, 치료의 전문성을 높이며, 병원, 법원, 경찰, 사회복지체계, 정책 결정자와 같은 다양한 관련 기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통일 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통일 후 피해자들이 다시 연결되는 사회가 이념적 갈등이 해소되고 변화된 체제에 대한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회일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공동체의 합의 속에서 평화롭게 통일이 이루어졌을지라도 그 과정에서 각자의 이념적, 경제적 입장 차이와 기대, 통일 이전의 사회에서의 위치와 역할에 따라서 통일한국에 대한 만족도와 이전 사회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과거 통일독일에서 볼 수 있었던 바와 같이, 남북한주민 간에, 또는 계층 간에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해나가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 범죄 피해자들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들이 입은 피해의 원인과 회복에의 책임에 대한 평가 역시 시각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기억하는 외상의 기억은 북한 사회 전체의 기억이 되지 못할 수 있다. 이전 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에 따라서

299)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이 이루어졌으나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이에 대한 치유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에 한국 내 국가 폭력 생존자들과 가족을 치유하고 이들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기관을 설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2년 10월 광주트라우마센터가 설립되었다. 센터는 설립이후 지금까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국가폭력 생존자와 가족들에게 치유,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치유 전문가 양성 및 안전한 환경조성 사업에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국가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인권옹호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기억은 부정되거나 왜곡될 수 있으며, 이러한 혼란과 갈등 속에서 피해자들은 공동체로부터 수용 받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사회갈등이 심하면 심할수록 피해자들의 진실은 드러나기 어렵다. 사회적 갈등이 심한 사회에서 피해자들이 겪은 기억은 진실과는 거리가 먼, 공동체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기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통일 후의 사회갈등의 치유는 피해자들의 치유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계층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공론화하고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가 집단이나 개인 간의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갈등해결 역량을 키워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사회갈등을 공론화할 수 있는 다양한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부분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들의 적극적 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각계각층의 입장을 듣고, 타협점을 마련하며, 공통의 방향성을 모색해나가는 이해와 토론의 문화가 사회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 과거의 역사적 기억에 대한 공동체의 공통된 기억을 마련하고, 이 기억을 인정하며, 공동체 전체가 과거에 저질러진 불의에 대해 치유적 공동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다양한 기회와 프로그램, 공간 등이 마련될 수 있으며, 관련 분야에서 민간단체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국 건강한 공동체가 형성되었을 때, 북한 범죄피해자들도 공동체로부터 배제와 소외를 당하지 않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새로운 삶의 창조라는 회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심리적 외상 치료 및 사회갈등 조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을 설립,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치유는 특정한 분야의 전문적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 법, 의학, 사회복지, 심리, 종교, 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과 전문인력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피해자의 치유는 단순히 개인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통

일 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갈등의 치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외상 및 집단갈등의 치유와 관련된 여러 수준의 전문가, 준전문가 인력이 양성될 필요가 있다. 전문가 양성 교육은 전문가 배출을 넘어서 분단이 가져온 피해와 갈등, 치유, 화해와 용서에 대한 사회 공동체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정을 통해서 연결된 관련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된 사회적 공론을 이끌어가는 주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피해자들이 지역사회 공동체에 연결되고 안착하기까지 공동체 안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미리 감지하고 예방하며, 전문적 치료실 밖에서 이들의 삶의 회복을 돕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피해자들의 회복의 최종 종착지는 외상으로 인해 단절된 공동체로 돌아가는 것이다. 외상은 관계의 기초가 되는 애착을 파괴한다. 외상에서 비롯되는 피해자의 무너진 타인에 대한 기대와 깨어진 신뢰는 공동체와의 재연결을 방해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공동체와 다시 연결되고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지지적 분위기는 필수적이다. 회복은 치료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진다. 지역사회가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이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적 인식을 가질수록, 외상적 기억에 대한 인정과 공통된 기억을 수용할수록, 피해자들의 공동체에 대한 애착은 재형성되기 쉽다. 따라서 정부 및 사회기관에서는 지역사회의 지지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동체의 치유적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벌일 수 있다. 방송이나 교육을 통해 대중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거나, 외상의 증상이나 대처법,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심리교육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준전문가를 발굴하여 피해자의 지역사회 연결과 회복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캄보디아에서는 크메르 루즈 정권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에서 실시되는 다양한 치료적 프로그램에 사회적 권위가 강한 승려나 마을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지역사

회가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원하는데 적극적 도움을 준다든지, 피해와 관련된 소송을 지원한다든지, 회복과정에 있는 피해자들의 가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의 치유에 지역사회가 참여하면 할수록, 이들이 겪은 사회적 단절감과 소외감은 빨리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피해자의 치료와 관련 있는 다양한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연대 활동을 통해서 피해자의 치료에 대한 전문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에 대한 치료의 효율성은 단순히 치료자 개인의 전문적 치료 역량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의 합의된 지지와 관심과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을 지닌 여러 영역의 전문가들이 협업을 통해 치유과정에 참여할 때 가능하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 간의 연대는 필수적이다. 국내외의 심리 외상 전문 치료 기관, 국가 폭력 피해자 재활기관, 사회 갈등조정 기관이 함께 연대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적 역량을 쌓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적절한 치료 방법의 개발, 국제적인 연대를 통한 국가의 책임환기, 대중들의 인식 전환, 치료 프로그램의 공유가 다양한 연대활동을 통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부문, 다양한 수준의 전문가들이 함께 해나가는 팀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여덟째, 피해자들의 치료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치료적 접근의 문화적 적합성이다. 문화는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고 행동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또한 문화는 행동을 변화시킬 동기를 자극하고 변화의 방법을 내포한다.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원리가 기본적인 외상 생존자의 치료원리를 따른다 할지라도 치료적 요소가 담기는 모습과 방법은 문화에 따라 다른 양상을 띠 수 있다. 피해자들은 삶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타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피해자들만의 경험이 아니다. 북한 사회의 공통적인 분위기이고, 생존을 위한 원칙과도 같은 것이다. 그

래서 외상의 기억을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며 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억압된 정서, 조절되지 않은 정서의 표현 방식도 더욱 극단적인 양상을 띠 수도 있다. 탈북주민들이 보고하는 정신질환에 대한 거부감이나 정신과적 진단과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 역시 외 정신과적 진단이나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외상의 심각도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치료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북한 문화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문화적으로 민감하고 적절한 평가와 진단, 치료개입, 지역사회 연결과 공동체 안에서의 회복과정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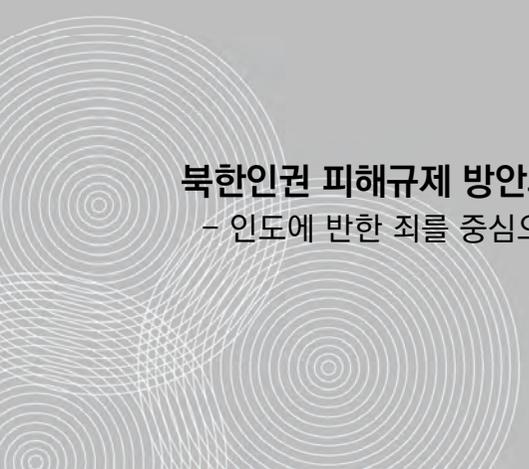
모든 심리치료의 근간에 놓인 기본 전제는 ‘진실을 말할 때 회복의 힘이 생긴다’는 믿음에 있다.³⁰⁰⁾ 이 치료적 믿음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치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적 외상의 가장 큰 특성은 바로 이 ‘진실’을 ‘말하기’ 힘들게 만든다는 것이다.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폭력과 잔학행위로 인한 심리적 외상이 제대로 치유되지 못했을 때, 그 폐해가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세대를 넘어서까지 전이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통일 이후 새로운 사회의 경제적 빈곤층으로 자리 잡아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다. 피해자들의 치료에 외상생존자들의 치료에 적용되었던 다양한 치료방법과 치료원리가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인간을 황폐화시키고, 사회 전체에 두려움의 족쇄를 채우는 고문 후유증의 치료에 사회적 인정 과정이 관여되는 증언치료나 의학, 심리, 물리치료, 사회적 측면의 다각적 재활 프로

³⁰⁰⁾ 허먼 주디스, 『트라우마: 가정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 p. 302.

그램이 활용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치료자는 개인적이고 심리 치료적 전문지식과 개입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 동시에 사회적이고 인권적 측면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피해자가 외상이 초래하는 ‘말하기’의 장애를 넘어서 자신이 경험한 ‘불의’의 경험을 ‘이야기’로 전환하도록 돕는 심리 치료적 접근과 사회적 ‘불의’의 장벽을 허물어 ‘이야기의 장’을 마련하는 인권적 접근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치료자의 두 가지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도록 돕는 것은 결국 피해자들이 재연결될 통일 한국의 공동체이다. 정의로운 사회에서 정의를 말하기 쉬우며, 불의가 불의로 취급된다. 통일 후의 사회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 정책,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된 지지를 보낼 수 있는 지지적 공동체, 피해자들의 물리적, 신체적, 법적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지원정책과 제도, 심리적 외상 전문치료기관의 설립 및 전문인력의 양성, 국내외 관련 기관의 연대 및 사회갈등 해소 노력이 함께 기울여질 때, 피해자들의 인간존엄성 회복은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V. 매장지 조사·발굴 및 유전자 보존 방안

이영환(전환기정의위킹그룹)



북한인권 피해규제 방안과 과제

- 인도에 반한 죄를 중심으로 -

살아서 남아 있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피해구제도 중요하지만 인도에 반한 죄로 사망한 자들과 그 유가족들에 대한 피해구제 역시 그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점에서 본 장에서는 인도에 반한 죄로 사망한 북한주민들의 복권 및 명예회복, 보상, 배상, 추모 및 위령(慰靈) 사업 등을 위한 선결 조치로 매장지 조사·발굴 및 유전자 보존 방안에 대해 분석한다. 제1절에서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의 불가결성에 대해 살펴본 후 제2절에서는 매장 추정지 조사에 대해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이와 같은 조사를 위해 향후 현장 조사·발굴 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검토한다. 제4절에서는 유전자 정보의 수집과 보존·활용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본다.

1.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의 불가결성

가. 실제적·객관적 진실규명

피해자 구제와 존엄성 회복 방안을 논의할 때, 피해자들에게 진실을 알 권리(right to know the truth)를 어떻게 보장해줄 것인가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구제제의 직접적 피해자들은 이미 사망하였거나 오랜 실종 상태이거나 회복불능의 치명적 상해를 입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 구제와 존엄성 회복 방안에 관한 가장 강력한 목소리는 피해가족들로부터 나온다. 인권운동그룹들도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해자 구제와 존엄성 회복 조치는 전환기의 정치사회 환경과 국가재정 여건 등에 따라 다양하게 마련될 수 있지만, 피해자와 가족들은 투명하고 철저한 진실규명의 선행을 요구하기 마련이다. 피해자들이 소외되었다고 느끼거나 진실규명이 미흡한 상황에서 배·보상 논의가 먼저 시작되고 국민적 찬반 논란거리로 비화될 경우, 피해자들은 여타의 조치들까지 전면 거부하여 한 발짝도 나아가기 어렵다.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이 바라는 진실규명 초점은 비당사자들의 관심과 다를 수 있다. 언론과 대중의 주된 관심은 주요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나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가해자와 가담자, 협조자가 누구인지에 집중된다. 구체제에서 숨죽여 살았던 대부분의 주민들은 누가 자신을 감시하고 당국에 밀고했던 것인지 궁금해 한다. 그러나 직접적 피해가족들은 강제실종되었거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가족, 친지 또는 지인들이 생사 여부를 가장 절실하게 알고 싶어 한다.³⁰¹⁾ 남아 있는 마지막 기록은 무엇이고, 사망하였다면 시신은 어떻게 되었으며, 유해를 찾을 수 있는지 여부가 피해가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진실이다. 피해가족들은 국가가 나서서 명백하게 피해가족임을 밝혀줄 것이고, 배·보상이나 지원정책은 그에 따라 합당하게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피해가족들의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구체제 하에서의 인권유린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진실위원회를 세우고 운영해왔다. 기능과 권한은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위원회의 보편적 역할은 투명하게 조사하여 결과를 공표하고, 정의와 법치를 세우기 위한 후속조치로 새 정부가 추진할 과제를 제시하는 기능이다. 강제실종과 살해가 광범위하게 벌어진 나라들에서는 진실위원회가 제 역할을 한 것인지 가늠하는 기준으로 유해 발굴 권고 여부를 꼽기도 한다.³⁰²⁾ 모범적 사례로 알려진 페루의 진실위원회는 전국에서 등록한 4,644개소의 매장 추정지 중 3개 추정지에서 발굴을 실시하고 2,200개 추정지에 대한 예비조사를 진행한 후,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을

³⁰¹⁾ Eduardo González, and Howard Varney, eds., *Truth Seeking: Elements of Creating an Effective Truth Commission* (Brasilia: Amnesty Commission of the Ministry of Justice of Brazil; New York: International Center for Transitional Justice, 2013), p. 3.

³⁰²⁾ Carlos Fernandez Torne, "Truth Commissions and the Accountability Relationships They Generate: A New Framework to Evaluate Their Impact," *Asian Journal of Peace building* vol. 3 no. 2 (2015), p. 245.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의인류학적 개입을 위한 국가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정부에 권고하였고, 그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유해 발굴이 계속되었다.³⁰³⁾ 그러나 진실위원회가 유해 발굴을 정부에 권고하더라도 실행되지 않거나 실행되더라도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는 우리 현대사 전반의 반민주적·반인권적 사건들에 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되어 2006년부터 한국전쟁기 민간인 피살자에 대한 유해 발굴을 실시하였다. 2009년까지 4년 동안 1,696구의 유해와 5,757점의 유류품이 발굴되었지만, 위원회의 후속조치 권고에도 불구하고 유해 발굴은 2010년부터 중단되었다. 발굴된 유해와 유류품들은 8년이 넘도록 임시 안치시설에 머물고 있다.³⁰⁴⁾

유해 발굴로 심각한 인권유린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입증할 수 있고 피해자의 신원을 일부 확인할 수 있지만, 누가 가해자인지까지 특정하는 것은 현실에서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개별 사건수사로는 쉽게 드러내기 어려운 큰 그림이 드러나기도 한다. 엘살바도르 내전(1980~1992년)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 진실규명이 좋은 예다.³⁰⁵⁾ 사건이 미국 주요언론에도 보도되면서 미 의회에서 대 엘살바도르 군사원조 재개에 관한 논란이 커졌지만, 미국과 엘살바도르 양국 정부 모두 이 사건이 엘살바도르 정부군과 반정부군의 단순 충돌일 뿐 학살을 뒷받침

³⁰³⁾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Final Report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Lima, 2003), <<http://cverdad.org.pe/ifinal>> (검색일: 2017.06.05.).

³⁰⁴⁾ 발굴된 유해들은 2009년 충북대에 마련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관’에 약 7년간 위탁 관리되다가, 2016년 9월 ‘세종시 추모의 집’으로 이전되어 한 차례 더 임시 관리되고 있다. 정부는 2020년을 목표로 전국단위 위령시설(대전시 동구 낭월동 선정)을 조성할 때까지 세종시에 임시 보존·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행정안전부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 <<http://pasthistory.go.kr/cms/CmsPageLink.do?link=/jinsil/info1.do>> (검색일: 2017.10.11.).

³⁰⁵⁾ 엘살바도르 사례는 다음 논문을 요약하였다. 노용석, “라틴 아메리카의 과거청산과 유해 발굴: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사례를 중심으로,” 『이베로아메리카』, 제12권 2호 (부산: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2010.12.), pp. 78~81.

하는 증거는 없다고 일축하였고, 미국의 군사원조는 계속되었다. 그러나 산 살바도로의 한 인권단체가 1990년 군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면서 아르헨티나 법의인류학팀(Equipo Argentino de Antropología Forense: EAAF)에 법의학적 도움을 요청하였다. 법원은 유해 발굴을 몇 차례 거부하였지만 1992년 유엔 엘살바도르 진실위원회는 유해 발굴을 결정하여 유해들이 수습되고 수백여점의 탄두, 탄피, 탄창(탄약통)들도 확보되었다. 증거물들은 미국으로 보내져 전문가들의 감식을 받았는데, 총기전문가들은 대부분의 미국에서 제작한 M16 소총이 사용된 것으로 결론지었고, 탄창에 새겨진 미군용 표식도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임을 증명하였다. 발굴 결과는 유엔 진실위원회 보고서에 담겼고,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엘살바도르에서 학살이 없었다는 종전의 정부 입장을 철회하였다.

나. 가해자 책임규명을 위한 법과학적 증거물 확보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 과정에서 수집되고 과학적으로 분석된 증거물들은 혐의자들에 대한 기소와 책임규명에 기여할 수 있다. 국제형사재판소들에서는 유해 발굴을 통해 확보되는 법과학적 증거물(forensic evidence)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활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³⁰⁶⁾ 다만, 유엔 등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는 혼합재판소로 국내에 설립된 유엔 캄보디아 특별재판부(ECCC)는 이를 활용하지 않은 차이가 있다.³⁰⁷⁾

³⁰⁶⁾ 일반적으로 법과학(forensic science)이란 법정 소송사건과 관련된 정보의 증거물로서의 가치를 평가하고 분석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Keith Inman and Norah Rudin, *Principles and Practices of Criminalistics: The Profession of Forensic Science* (Boca Raton, FL: CLC Press, 2001), p. 15; 법과학적 증거물(forensic evidence)이란 물질적, 생물학적, 전자적 형태의 증거물을 포함할 수 있지만, 이 글에서는 인권유린에 의한 사망자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발굴되는 유골과 유류품, 현장에서 수집되는 눈으로 볼 수 있거나 만질 수 있는 물체를 유효하고 검증가능한 과학적 방법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법정에서 쓰일 수 있을만한 증거물로서의 가치를 갖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1) ICC

2002년 설립된 ICC의 경우, 콩고민주공화국에 관한 첫 두 개의 사건에서는 과학적 증거물의 이용이 제한되었지만, 비교적 최근의 재판들에 해당하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케냐, 코트디부와르 관련 재판에서는 과학적 증거물들이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활용되어 재판부의 인식과 활용 방법은 거듭 진화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분쟁지역에서는 범죄현장을 보존하고 현장수사를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해당국 정부의 협조를 받는 것도 쉽지 않으며, 재원의 한계, 현장 투입인력과 피해자 및 증언자 등의 보호조치에서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검사들과 조사관들은 원격탐지(remote sensing), 사이버수사, 디지털 및 비디오분석과 같은 새로운 기술 활용에 관심을 기울이고, 비정부단체 및 법과학 분야 전문기관들과의 더욱 긴밀한 협업을 원하고 있다.

(2) ICTY

법과학적 증거의 이용에 소극적이던 다른 국제재판소들과 달리 ICTY 소추부는 1991년 이래로 발굴된 유해와 DNA 감식 결과, 범죄현장조사 결과, 사진과 영상 증거, 법과학적 수사 결과를 증거로 채택해왔다. 또한 법과학적 증거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소추부는 작은 규모이지만 법과학 팀을 구성하고, 범죄현장분석 전문가와 고고학 및 인류학자를 포함하는 전문가 명부를 만들어 수사에 활용해왔다. 이러한 전문가들로부터 언제든지 과학적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³⁰⁷⁾ 이하 각 재판소 사례 소개는 다음 보고서를 요약하였다. Human Rights Center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Beyond Reasonable Doubt: Using Scientific Evidence to Advance Prosecutions at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2012), pp. 3~5.

(3) ICTR

1994년 설립된 ICTR의 법과학 수사는 국제비영리인권단체인 인권을 위한 의사회(Physicians for Human Rights: PHR)와 공조로 진행되었다. 법과학 수사의 초점은 주로 사망원인과 살해방식을 밝히고, 발굴된 유해로 피해자가 전투원인지 민간인인지 여부와 사망자의 성별과 연령대를 판별하며, 광범위하게 벌어진 인권범죄의 본질과 양상을 밝히는데 두었다. 하지만 실제 법과학 증거와 수집과 분석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난관들에 직면하였다. 가장 큰 어려움은 유해 발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일이었는데, 이는 당초 재판소 예산에 유해 발굴 경비가 포함되지 않았던 탓이었다. 또한 PHR과 같은 인권단체와 외부 법과학 전문가들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재판소 내부에는 법과학 전문가나 지식이 부족했던 것도 문제로 꼽힌다. 국제공조의 제한도 아쉬운 점이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집된 법과학적 증거들은 혐의자 기소에는 물론 제노사이드(genocide) 범죄를 부인하려던 궤변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는데 효과적으로 쓰인 것으로 긍정 평가된다.

(4) ECCC

앞서 살펴본 3개의 국제재판소와 달리 캄보디아 정부와 유엔 간의 험난한 협상 끝에 2006년 혼합재판소로 국내에 설립된 ECCC는 집단매장지에서 확보된 법의학 증거물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관하여 2010년 4월 공동 수사판사들(co-investigating judges)은 “이미 다른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재판부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유무죄를 판단하거나 진실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추가 증거물을 법과학적 유해 발굴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하였다.³⁰⁸⁾ 재판부는 살해된

³⁰⁸⁾ ECCC는 검사 및 수사판사를 2인씩 두고, 캄보디아인과 외국인을 각 1인씩 임명한다. 이들 공동 검사(co-prosecutors) 및 공동 수사판사(co-investigating judges)는 합의제로 운영하되, 만약 이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심 재판부에

사람들의 명부, 사진, 고문으로 수감자들이 자백한 진술기록 등 과거 크메르루주 정권기의 문서 증거에 주로 의존하여 기소와 재판을 진행하였다. 재판부가 그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의 비영리인권단체인 캄보디아기록센터(Documentation Center of Cambodia: DC-Cam)는 예일대학교 및 호주사우스웨일즈대학교와 함께 수집한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캄보디아 전역에 운영된 수백 개의 감옥과 구금시설, 수천 개의 집단 매장지 위치 정보를 재판부가 고려하도록 제출하였다.

다. 피해자 배·보상 및 지원정책 수립

전환기에 이르면 가해자에 대한 단죄 요구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및 지원정책에 대한 요구도 크게 높아진다. 흔히 재판소나 진실위원회를 수립하면 공식조사절차를 통해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이 자연스럽게 파악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배·보상 및 지원정책의 대상을 결정하는 과정에는 많은 논란이 따르기 마련이다.

피해자들은 새로운 정부가 결정에 충분한 조사와 공정한 결정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새로운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현실적 난관이 많다. 특히 북한의 경우처럼 반세기 이상 지속된 인권침해는 피해자의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정식 조사에서 누락되는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들 스스로 피해를 신고하고, 실질적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³⁰⁹⁾

인권유린으로 인한 실종사망자의 가족 또는 친척이라는 것이 입증될

해결을 신청하여 결정에 따라 해결하고,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입건(prosecution)’ 또는 ‘수사(investigation)’ 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권오곤, “헤이그 통신(14): 캄보디아 특별재판부,” 『법률신문』, 2008.03.20.,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38268>> (검색일: 2017.06.05.).

³⁰⁹⁾ Eduardo González and Howard Varney, eds., *Truth Seeking: Elements of Creating an Effective Truth Commission*, p. 70.

경우 우선 피해 구제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피해자 또는 피해가족이 개별적으로 이를 입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피해 가족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유해 발굴 작업이 신속히 전개되고 신원확인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라. 권리에 기반한 북한지역 개발

북한에 큰 정치사회적 변화가 과연 일어날 것인지, 언제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중대한 전환기가 시작될 경우, 두 가지의 큰 경로로 예상하는 것은 가능하다. 통일이라는 대전환으로 이어질 경우와 내부 변화가 당장 통일로는 이어지지 않고 한동안 북한이 유지되는 경우이다. 통일 경로로 진행되는 전자의 경우 막대한 북한지역 개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고, 북한 내부 차원의 정치권력 변화가 일어나는 후자의 경우에도 국제사회로 막대한 규모의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의 전환기 사회 대부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권력을 대체하였으나 기반이 취약한 새 권력자들이 당면하게 되는 가장 절박한 과제는 대중적 지지를 빠르게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잠재적 경쟁자들을 압도할 것인가이다. 따라서 주민 전체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광범위한 경제개발을 우선하기 마련인데, 정당성을 위협롭게 하는 내부 수탈정책을 지속하기보다는 그에 필요한 재원을 주변 국이나 국제은행들에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우려는 이미 확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세계은행(World Bank)이나 국제부흥개발기금(IBRD),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국제금융기관들은 인권에 기반한 접근(Rights-Based Approach: RBA)과 국제공여자산 활용의 도덕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사망자 집단매장지 조사와 유해 발굴을 개발차관 제공이나 공여 조건으로 설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북한 내 매장 추정지를 미리 파악해두고 체계적으로 준비해둘 경우, 적절한 때가 왔을

때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마스터플랜을 짜는 데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개발지원에서 인권에 기반한 접근 규범의 적용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프레임과 결합하여 현지 주민의 필요와 기대에 대한 부응과 참여 개방성을 중요한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북한 전역에서 유해 발굴과 현장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도 주민참여와 의견수렴은 필수적이다. 의견수렴에는 유해 발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현장보존 및 발굴과정에서의 협력 확보뿐만 아니라 발굴지역의 향후 관리와 활용, 즉 보존기함과 관리방법 및 주체, 해당지역의 단계적 개발을 통한 지역 환원 구상까지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권리와 기대를 반영하는 정책구상과 추진이 요구된다.

2. 매장 추정지 조사

집단매장지(mass grave)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개념으로 정의된 것은 없지만, 이 용어는 각 사회의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쓰인다. 집단매장지는 일반적인 매장지와 다르다. 집단매장지의 개념 정의를 시도한 유엔의 한 인권특별보고관은 전투나 무력분쟁 상황에서의 사망자가 아닌 초법적 처형이나 약식 처형, 자의적 처형을 당한 피해자의 시체가 3구 이상 한 장소에 묻힌 경우를 집단매장지(mass grave)로 정의한 바 있다.³¹⁰⁾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매장지에는 특정한 기간 또는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번 시체를 묻어 결과적으로 여러 구의 시체가 매장되는 것이 보통인데, 공중위생 때문에 시체를 빨리 묻으려고 하거나 기아 사태나 대량학살 후 일반인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증거를 은폐하려는

³¹⁰⁾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Bulletin (1996), Twin Tribunals ICTY9/10, 14-VIII-1996.

육구가 작용할 때에 특히 더 그러하다. 따라서 확보할 수 있는 증언이나 기초적인 수준의 정보로는 단 몇 구의 시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 곳들도 실제 발굴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백 구 이상의 유해가 묻힌 대규모 매장지(massive grave)로 판명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캄보디아 기록센터 등이 주도해온 크메르루주 정권기 제노사이드 범죄를 조사 기록한 캄보디아 제노사이드 프로그램(Cambodia Genocide Program: CGP)에서는 4구 이상의 유해가 매장된 곳을 집단매장지로 분류하였으나, 이 중에는 1,000구 이상의 유해를 포함한 대규모 매장지도 발견되었다.³¹¹⁾

대규모 인권유린을 겪은 후 전환된 사회들 가운데 국가적, 공식적 차원으로 진실규명 메커니즘이 수립된 나라들에서는 현장에 조사 및 발굴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매장지 조사와 유해 발굴을 진행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아직 유혈분쟁이나 학살이 진행 중인 위험지역이거나 외부인들이 현장에 접근할 수 없는 곳들에 대해서는 여건에 따라 탈출자, 망명자, 난민들로부터 이들이 목격하였거나 또는 알고 있는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파악된 위치들은 미래의 현장 확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추정되는 장소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현장접근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파악할 수 있는 위치들은 아직 매장지라고 확정할 수 없는 매장 추정지로 간주되지만, 이러한 추정지를 파악해두는 예비조사는 향후 현지조사와 유해 발굴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현 단계에서 북한 내 인권범죄 피해 사망자 매장 추정지를 파악하고 기록하는 조사가 이러한 경우이다.

³¹¹⁾ Khamboly Dy, *A History of Democratic Kampuchea: 1975-1979* (Phnom Penh: Documentation Center of Cambodia, 2007), p. 4.

가. 민간조사 경과

북한 내 인권유린 사망·실종자 매장 추정지 위치조사는 민간에서 2015년부터 진행되고 있다.³¹²⁾ 2014년 서울에 설립된 전환기정의위킹그룹은 전미민주주의기금(NED)로부터 기금 지원을 받아 북한 전역에 산재해 있는 인권유린 사망·실종자 집단매장지 등 인도에 반한 죄 관련 위치들을 파악해 관련 정보를 기록하고 시각화된 방식으로 분석하기 위한 조사기록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누구나 쓸 수 있는 구글어스(Google Earth) 위성사진 등을 활용하여 북한 각지를 떠난 탈북민들을 심층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자의적 구금과 약식처형, 고문, 납치, 실종 등 인도에 반한 죄와 관련된 현장의 위치와 유관기관 및 시설물 위치를 파악하는 작업이다.³¹³⁾ 단체는 2015년 4월부터 2년간 국내로 입국한 탈북민 375명을 인터뷰한 결과를 토대로, 집단매장 추정지와 시체 소각장 등 47곳의 시신처리장소와 공개 및 비공개, 약식처형이 벌어진 곳으로 파악된 곳들이 300여 곳에 이른다는 결과를 2017년 7월 첫 보고서로 공개하였다.³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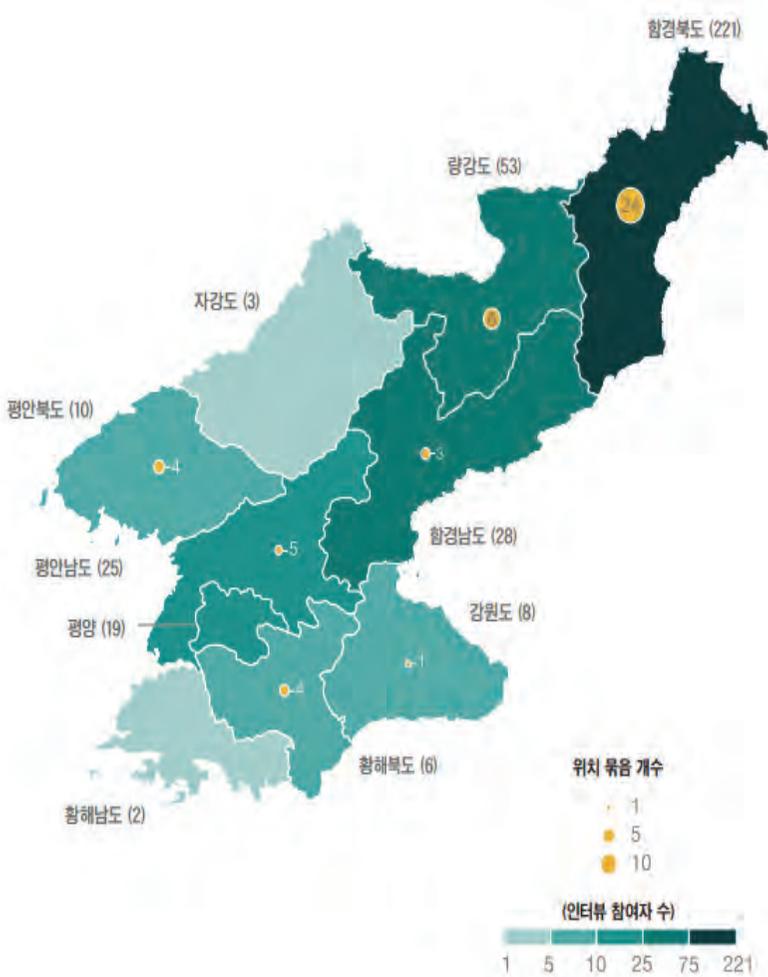
조사 초기단계임에도 나타나기 시작한 경향성으로 암매장 장소들은 대개 주거지역에서 떨어진 산비탈이나 산골짜기에 위치하거나 육안으로는 식별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경향성을 보였다. 관리소 같은 통제된 지역이나 교회소 같은 수감시설의 경우에는 시설 내 창고에 시체를 임시 보관하더라도 최종 매장이나 처리는 울타리 밖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

312) 아르헨티나에서도 1980년 초반부터 민간에 의해 자발적으로 유해 발굴 전문기관 EAAF가 발족되었고, 이후 라틴 아메리카 주변국의 유해 발굴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노용석, “라틴 아메리카의 과거청산과 유해 발굴,” p. 69.

313) 시설물 등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형태의 특정위치가 지목되는 경우 GPS 좌표를 기록하고, 같은 지역 출신의 다른 정보제공자를 통한 보강조사가 필요한 위치들은 범위 또는 반경 정도로 기록하며, 어느 경우에도 충분한 수의 교차 지목이 이루어지거나 결정적 정보제공자가 나타날 때까지 정보의 신뢰도 판단을 유예하는 것을 기본방식으로 하고 있다. 이영환, “북한인권과 전환기 정의,” 『북한인권 이슈브리프 01: 북한인권의 현황과 전망』(서울: 한국인권재단, 2016), pp. 194~195.

314) 전환기정의위킹그룹, 『북한 반인도범죄 매핑: 집단매장지, 살해장소, 문서증거 보관 추정지』(서울: 전환기정의위킹그룹, 2017), p. 8.

그림 V-1 각 도별 추정 매장지 및 시체처리장소 현황
: 인터뷰 인원 수 대비 수집된 정보(위치 묶음) 개수



출처: 전환기정의위킹그룹, 『북한 반인도범죄 매핑: 집단매장지, 살해장소, 문서증거 보관 추정지』, p. 38, 지도 1.

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³¹⁵⁾ 그 밖에 우려되는 점으로 일반주민들이 이용하는 공동묘지 구역에도 처형된 시체들이 일부 매장되었다는 증언이 있어 사실일 경우 향후 유해 발굴 과정에서 난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³¹⁶⁾

단체는 향후 통일과정 등 북한의 전환기가 도래하면 국가 공식조사가 시작되거나 다국적 조사단이 구성되어 집단매장지들을 찾는 현장조사를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현재 수집되고 있는 추정지 위치정보들이 신속한 위치확인과 현장보존, 효율적인 유해 발굴에 중요한 길잡이가 되도록 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유해들은 감식을 거쳐 사법적 증거물로 쓰이고, 유전자정보(DNA) 매칭으로 피해가족들이 확인되며, 피해도와 전체규모에 따라 금전적 배상 또는 비금전적·사회적 지원 계획, 추념사업과 역사교육 정책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는 미래를 위한 첫 준비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북한 전역에 인권유린으로 인한 사망자 매장지가 얼마나 많을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전환기정의위킹그룹의 조사에서는 2년간 실시한 375명의 탈북민과의 인터뷰로 47개소의 암매장 및 시체처리 위치를 파악한 상황인데, 이 정도는 전체 규모의 지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정책과 대비방안을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관해서는 캄보디아 ‘킬링필드(Killing Fields)’ 조사 선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폴 포트 정권에 의한 사망자 집단매장

315) 이는 크메르루주 정권기의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초기의 암매장 방식과도 유사하다. 크메르루주는 악명높았던 보안감옥(S-21)을 운용하였는데, 암매장은 대개 보안감옥 근처에서 이루어졌다. 다만 1976년 말에는 수감자들을 한 밤 중에 트럭에 태워 교외로 옮겨 꿩이, 도끼, 각목으로 때려죽이거나, 총살하여 보안감옥으로부터 10여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매장한 경우도 있었다. *Khamboly Dy, A History of Democratic Kampuchea: 1975-1979*, p. 55.

316) 영국에 위치한 비영리인권단체인 이란을 위한 정의(Justice for Iran)는 이란 정부가 매장 위치 탐지를 어렵게 할 목적으로 인권유린으로 인한 사망자 시신 여러 구를 일반 공동묘지 구역에 섞어 매장하였음을 밝혀냈다. 전환기정의위킹그룹 새라손 연구팀장 - 이란을 위한 정의의 Shadi Sadr 대표 인터뷰, 2016.07.21. 단체 웹사이트는 <<http://justiceforiran.org>>.

지와 전체 피해 추정규모에 대한 대규모 조사는 폴 포트 정권이 무너지고 15년이 흐른 1990대 중반에서야 시작되었지만, 캄보디아의 인권유린 사망자 살해장소와 집단매장지를 일컫는 ‘킬링필드’ 388곳을 찾아내었고, 여기에는 19,733개 이상의 집단매장지가 포함되었다.³¹⁷⁾ 캄보디아의 크메르루주 정권은 1970년대 후반 4~5년에 불과한 짧은 기간 존속하였고, 이 기간에 130~150만 명을 대규모로 학살한 경우였다. 그에 비해 북한의 경우 정권수립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약 70년이라는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강제실종, 공개 및 비공개처형이 지속되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게는 수 천 곳에서 많게는 수만 곳에 달하는 암매장지 또는 시체 처리장소가 북한 전역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전환기정의위킹그룹은 북한 내 매장 추정지 조사에 참여하는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향후 북한의 전환기를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향을 구상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병행하고 있다.³¹⁸⁾ 매장지 조사와 유해 발굴과 관련한 문항도 포함하여 향후 북한주민들이 선호할만한 정책방향이냐 기대를 가늠해보고 있는데, 인권유린으로 인한 사망자들의 유해 발굴 필요 여부에 대한 탈북민들의 생각을 묻은 결과, 272명의 응답자들 중 79.41%가 피해사망자 유해 발굴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하였다.³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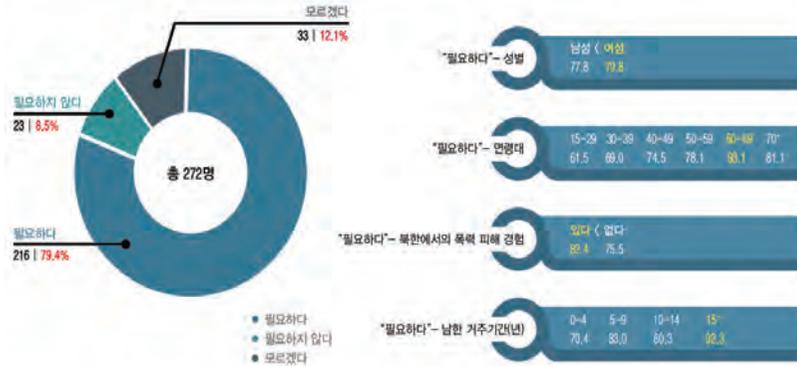
³¹⁷⁾ Khamboly Dy, *A History of Democratic Kampuchea: 1975-1979*, p. 4; 미국의회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은 예일대와 캄보디아기록보존센터(DC-Cam)가 공동수행한 캄보디아 제노사이드 프로그램(Cambodia Genocide Program: CGP)은 크메르루주 정권기의 문서와 위성사진, 증언으로 특정집단학살 및 집단매장지를 파악하였고, 현장 조사와 유해 발굴로 진전되어 진실과 책임규명, 대중교육까지 캄보디아의 변화에 막대한 기여를 해오고 있다.

³¹⁸⁾ 다만, 이 조사는 기본적으로 매핑조사 참여자를 모으는 방법이 눈덩이표본추출(snowballing) 방식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설문참여자들도 무작위적 표본(random sample)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표본의 편향성이 잠재되어 있고, 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statistical significance of variables)을 확인하기 위한 정확도 검증(accuracy tests)도 제한된다. 그러나 북한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여론조사를 수행할 수 있기 전까지 정책적 시사점을 탐색할 수 있는 조사로서의 한시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³¹⁹⁾ 이하 설문결과는 보고서에서 발췌·요약하였다. 전환기정의위킹그룹, 『북한 반인도범죄 매핑: 집단매장지, 살해장소, 문서증거 보관 추정지』, pp. 54~57.

그림 V-2 인권유린 피해사망자 유해 발굴 필요성

북한이 크게 바뀌는 전환이 일어난 후에는, 그동안 인권유린으로 사망하신 분들의 시체가 집단적으로 묻힌 곳들을 조사하고 유해를 발굴하는(찾아서 파내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출처: 전환기정의위킹그룹, 『북한 반인도범죄 매핑: 집단매장지, 살해장소, 문서증거 보관 추정지』, p. 55, 차트 7.

응답자의 성별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지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유해 발굴에 대한 지지율도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게다가 남한 정착 후 거주기간이 짧은 경우보다 10년 이상인 응답자들이 유해 발굴에 더욱 강한 찬성 입장을 보였다. 또한 북한에서 폭력을 당해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약간 더 높은 지지를 보였다.

피해사망자 유해 발굴이 필요하다고 보는 찬성 응답자들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는 이들이 책임규명, 진실규명, 피해가족 회복 지원 등 전환기 정의 실현을 위한 차원에서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해 발굴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 응답자들은 소수인데, 피해유가족들에게 “너무 고통스러울 것”이기 때문에 또는 유해 발굴보다는 경제발전 같은 것을 더 중요하게 신경써야 할 것 같아서라는 것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그림 V-3 유해 발굴이 필요한 이유

피해사망자 유해 발굴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복수응답)

응답 216명 (총 272명 중)



출처: 전환기정의위킹그룹, 『북한 반인도범죄 매핑: 집단매장지, 살해장소, 문서증거 보관 추정지』, p. 55, 차트 8.

그림 V-4 유해 발굴이 불필요한 이유

피해사망자 유해 발굴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복수응답)

응답 23명 (총 272명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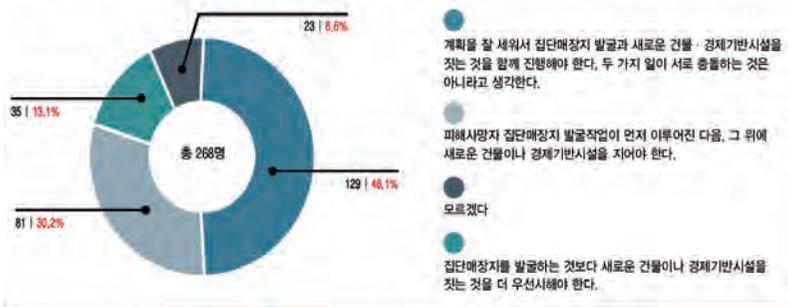
출처: 전환기정의위킹그룹, 『북한 반인도범죄 매핑: 집단매장지, 살해장소, 문서증거 보관 추정지』, p. 56, 차트 9.

인권유린 피해사망자 매장지 처리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들이 경험한 교훈들을 토대로, 북한에 전환기가 도래한다면 유해 발굴과 경제기반시설 건설 중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묻은 결과, 80%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두 가지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또는 유해 발굴

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응답결과들과 종합해 보면, 조사에 참여한 탈북민들은 북한 내 인권유린 사망자 매장지 조사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장애에 기회가 올 때 신속하게 발굴작업을 전개하려면 앞선 준비가 중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림 V-5 북한의 전환기에 고려되어야 할 매장지 처리 우선순위

북한이 크게 바뀌는 전환이 일어난 후에는, 새로운 지도자들이 다음 중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출처: “북한 반인도범죄 매핑,” p. 56, 차트 10.

나. 현장조사 우선 대상지 판별

통일단계 또는 이후 책임 및 진실규명 과정에서 북한지역 내 인권유린 사망자 매장지 조사를 벌일 경우, 수많은 추정지들 가운데에 우선 현장조사 대상지로 삼을지 판단하기 위해 상당한 사전조사와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 예컨대, 유해 발굴이 인권범죄 책임자 책임규명에 필요한 현장 증거수집에 초점을 두고 추진될 경우, 발굴 가능성이나 추정되는 유해 규모보다는 북한 지도부의 집단적 또는 개인적 책임규명에 중요한 살해 및 시체 처리현장이 현실적으로 우선 고려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달리, 책임규명 등 사법처리보다는 진실규명에 더 초점을 두고 북한지역 전체 인도에 반한 죄 피해 사망자 규모 추정에 우선할 경우, 유해 발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추정되는 매장 유해 규모가 클수록 우선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여하한 경우에도 실제 유해 발굴 작업을 벌이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력과 장비, 예산의 투입 여부를 결정하는 정책적 판단사항이 되고, 특히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매우 고조된 시점에서 첫 발굴이 진행되기 시작할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실제 유해 발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곳들을 선별하는 준비단계가 필수적이다.

고고학 또는 문화재 발굴조사에서는 부분적인 굴토조사를 통해 조사대상 지역에 존재하는 유구의 종류, 수량, 밀도, 층위 자료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발굴조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대상지역을 특정하는 것을 흔히 시굴조사라고 부른다. 인권유린에 의한 사망자 매장지를 조사하고 발굴하는 데에서는 시굴조사의 개념과 가장 가까운 절차를 현장 예비조사 또는 표본조사라고 부른다. 보편적으로 유해를 발굴하고 처리하는 과정은 1) 유해 매장 추정지 선정, 2) 발굴, 3) 신원감식, 4) 안장 및 봉안 등 4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현장 예비조사 또는 표본조사는 추정지 선정과 발굴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오류를 거듭 수정해나가면서 현장 상황에 부합하도록 더욱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나가는 과정이기도 한다. 우선 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이 얼마나 종합적이고 적합한 방식을 채택하는가에 따라 발굴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다. 당연한 이치로 전체 추정지 분포 조사가 체계적으로 선행될 경우, 상당한 인력과 비용의 낭비도 예방할 수 있다.

표본조사 대상지를 선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종합적으로 쓰인다. 매장 위치를 표시한 문서나 기록물이 실제 존재하여 인멸되거나 소실되지 않은 상태로 획득 가능할 때에는 한결 쉬울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목격자, 관련자, 생존자를 비롯하여 지역민들의 증언이나 제보를 수집하여 기초자료로 삼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이다. 전쟁 후 전사자 유해 발굴에서 특정전투가 벌어진 위치와 전투일지를 토대로 한 전사(戰史) 연구가 유용하게 활용되듯이 특정집단살해나 대규모 인권유린의 경우 정치적 사건에 따른 대규모 처형이나 숙청이 벌어진 시기 등에 관한 역사적 연구도 이 과정에 기여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이 1차 선별된 후 현장 예비조사를 통해 실제 발굴가능성이 높은 곳들을 판별하는 과정에서는 탐지봉이나 전기 방식, 화학반응을 이용한 토양 검사도 보편적으로 이용된다.

전환기 이전이나 전환기에 사회·경제 기반시설 건설이나 도시화 등 지역개발이 진행된 곳,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곳 등에서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유해 매장지를 찾는 것이 어려워지지만, 북한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대부분 지역에서 자연경관이 빠르게 바뀌지 않는다는 점은 상대적으로 용이한 측면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체를 강변 또는 강둑에 매장한 경우에는 퇴적물의 위치나 경로가 변화한 과정이나 강변 흙의 색깔 변화를 추적해서 확인해야 하는 과정이 따른다. 매장지 현지조사와 발굴을 전문적으로 하는 법의인류학자들은 경험과 기술, 지식을 토대로 유해가 얼마나 오래 묻혀 있었는지 파악하고, 누군가가 급하게 매장한 유해인지, 아니면 망자의 안녕을 기원하며 정성스럽게 묻은 것인지 적절히 판별할 수 있다.³²⁰⁾ 이러한 전문가들의 주도적 역할을 현장분석에 필수불가결한 부분이 될 것이다.

다. 민감정보 보호

유해 발굴과 신원감식에는 향후 북한 당국 또는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소추에 활용될 수 있는 민감정보의 수집과 관리 업무가 필연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고도의 데이터보안 시스템의 구축과 지속적 강화가 필수적이다.³²¹⁾

³²⁰⁾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기관(DPAA) 진주현 박사(법의인류학자) 인터뷰 (2017.04.11., 통일연구원).

³²¹⁾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경우에는 민감정보의 보호에 관한 기술 분야의 국제전문가들의 도움과 조언을 받고 있다. 기술적 조언을 제공하는 보안전문가와 기관들은 단체의 단체가 진행 중인 북한 매핑프로젝트 모델과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향후 무료공개(오픈소스화)하는 구상에 공감하고, 세계의 다른 인권조사그룹들과 인권활동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IT와 데이터보안, 디지털매핑 기술을 활용하는 인권조사기록 기관들이 국제적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매장 추정지 정보를 포함하여 유해 발굴 예정 또는 진행 위치와 경과, 책임자 및 현장 발굴팀, 기술인력 등의 인적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의 중요성은 이러한 데이터가 향후 인권범죄 혐의자들에 대한 기소와 재판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거나 관련 형사책임추궁 절차가 진행될 시기에는 더욱 높아진다. 예를 들어, 권오곤 전 ICTY 부소장 겸 상임 재판관에 따르면 세르비아인들은 재판소가 인공위성 사진 등으로 집단 매장지를 찾아냈다는 사실을 알고 시신들을 포클레인으로 끄집어내 수백 km 떨어진 곳으로 옮겨 묻어 증거를 은폐하려 한 바 있다.³²²⁾

또한 발굴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해 가족 및 친지의 유전자(DNA)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거나, 기관 간 공유하는 과정에서도 엄격한 보안 관리와 개인정보보호가 요구된다. 이 밖에도 DNA 제공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 내에서도 제3자의 접근권 범위와 조건 등에 관한 원칙을 확립해야 하고, 당사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세부절차를 수립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오늘날의 인권 관련 데이터는 방대한 양의 정보 처리와 관리 및 분석 편의성을 위해 전자적 형태의 기록물로 수집 관리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따라서 컴퓨터 등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등 도구의 안전성, 외부로부터의 데이터 해킹, 악의적 기록 변경 또는 변조를 막기 위한 데이터 보안 조치와 접근 통제 체계 구축, 지속적인 보안 강화가 필수적이다.

유해 발굴과 신원확인 등 일련의 과정에서 수집하는 모든 형태의 정보와 데이터를 체계적·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정부의 위탁으로 관리하는 모든 기관들에서 자체 보안전문가를 확보하고 기관 간 유기적으로 협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산 네트워크 망 분리(air gapping), 데이터 암호화(data encryption) 및 백업(backup), 기관보안

³²²⁾ “학살 증언한 청년은 시체 더미 속 꼬마,” 『신동아』, 2016.05.

-개인보안 역량의 동시 강화와 생활화, 최신 보안위협 분석과 선제조치 일상화 등이 요구된다.

3. 향후 현장조사·발굴 시 고려사항과 준비방향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절차 및 방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방향 구상단계에서부터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현장경험을 갖춘 국제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일 필요가 있다. 통일 과정을 고려하더라도 국제보편기준과 세계의 전환기 사례들의 교훈을 반영하는 동시에 한국인들이 적절하게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 국제전문가 그룹들과 공조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관여와 국내적 주도성 사이에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남북한 간 통일 협상 단계에서 북한 정권 주요책임자들의 인권범죄 책임추궁을 위한 증거수집 필요 논의가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상황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 2014년 COI 보고서 이후 임명된 북한인권 책임규명 독립전문가그룹이 2017년 2월 보고서에서 제시한 권고사항을 주목할 만하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유엔인권이사회는 유엔 차원에서 북한 내 중대한 인권침해를 평가하고 기소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는데, 북한 내 인권상황 관련 정보와 증거를 수집, 보존, 통합할 별도의 중앙기록보존소(independent central repository)를 설치하고 향후 책임규명 절차에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기 때문이다.³²³⁾

유엔의 강화된 조사기록 초점과 방식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고, 향후 인권유린 피해사망자 매장지 조사나 유해 발굴을 통한 증거수집까지 포함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COI가

³²³⁾ 유엔인권이사회 결의 34/24,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7.03.20.), <http://ap.ohchr.org/documents/dpage_e.aspx?si=A/HRC/34/L.23> (검색일: 2017.09.06.).

북한 내 관리소, 교화소 등의 위치 확인과 모니터링에 위성사진을 적극 활용하였다는 점,³²⁴⁾ 유엔훈련조사연구소(United Nations Institute for Training and Research: UNITAR)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위성 활용 조사모니터링 프로그램(UNITAR's Operational Satellite Applications Programme: UNOSAT)이 인도적 위기이자 인권위기 상황에 해당하는 시리아 내전 상황 분석에도 효과적으로 쓰였다는 점으로 미루어보면, 향후 통일 과정에서의 계획적 또는 우발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대규모 학살 감시나 증거수집 목적의 집단매장 위치 추적 등에 유엔의 역할이 요청될 가능성이 높다.³²⁵⁾

따라서 우리 정부는 매장지 등 주요 인권범죄현장들로 추정되는 곳들에 대한 유엔 차원의 모니터링과 향후 국제합동조사가 필요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가운데, 통일 대비 차원에서 국제공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으로 국내적 역량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나라가 갖추고 있는 관련 체계나 절차, 관련법, 인력과 기술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장래 북한지역에서 필요한 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준비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가. 재원과 전문인력 확보

유해 발굴에는 일반적으로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요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우리나라의 선례로 보면, 제주 4·3사건 유해 발굴 및 신원확인 사업처럼 정권 변화나 의지 여부에 따라 국비지원이 중단되거나 재개되는 경우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

³²⁴⁾ Christoph Koettl, "Sensors Everywhere: Using Satellites and Mobile Phones to Reduce Information Uncertainty in Human Rights Crisis Research," *Genocide Studies and Prevention: An International Journal*, vol. 11, issue. 1, p. 43, <<http://scholarcommons.usf.edu/gsp/vol11/iss1/7>> (검색일: 2017.09.06.).

³²⁵⁾ "Four Years of Human Suffering - the Syria Conflict as Observed through Satellite Imagery," <<http://www.unitar.org/unosat/four-years-human-suffering-%E2%80%93-syria-conflict-observed-through-satellite-imagery>> (검색일: 2017.09.01.).

나라는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0년 「제주도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관련 사업에 착수하였다.³²⁶⁾ 노무현 정부 하의 2003년 진상조사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대정부 건의사항들 중 하나로 제시된 유해 발굴 사업은 2006년에 이르러 근거조항이 특별법에 추가되면서 시작되었는데,³²⁷⁾ 2010년까지 국비 59억 원을 투입하여 발굴한 400여 구의 유해 중 71구가 신원이 확인되어 가족을 찾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하인 2011년부터 정부 지원이 중단되면서 발굴은 중단되었고, 제주도는 자체 예산으로 감식사업을 벌여 21구의 신원을 추가로 밝혀내었다. 2017년에는 지방비 예산마저 끊겨 그마저 중단될 위기에 처하여 유가족들의 원성이 계속되었다.³²⁸⁾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후 2017년 9월 정부는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였고, 2018년 1년간 국비 13억8천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재개할 것임을 밝혔다.³²⁹⁾ 그러나 정권 변화와 상관없이 지속될 수 있는 안정적 재원 확보는 앞으로도 숙제가 될 전망이다. 전문인력 확보도 중요한 과제이다. 국내에서 유해 발굴에 관한 가장

³²⁶⁾ 법률 제6117호, 2000년 1월 12일 제정.

³²⁷⁾ 2003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소속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제8차 전체회의를 통해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최종 확정하면서 유해 발굴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7개의 건의사항을 정부에 제시하였다. △제주도민과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사과, △4·3평화공원 조성, △진상규명 및 기념사업, △집단 매장지 유적지 발굴사업 지원, △4·3사건 추모기념일 지정, △진상보고서 교육자료 활용, △유가족들에 대한 실질적 생계비 지원; 법률에는 제3조에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의 유해를 발굴하여 영령들을 추모하고 제주 4·3사건의 주요유적지를 복원 및 정비하여 희생자 넋을 위령하고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한다는 조항으로 담겼다.

³²⁸⁾ “유해 발굴하면 뭐하나... 예산 없어 유전자 감식 ‘깜깜’,” 『JTBC』, 2017.04.04.,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448843> (검색일: 2017.09.28.). 현 제주공항 부지(옛 정뜨르비행장)에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00여 구를 포함, 사건 당시 행방불명된 인원이 3,8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³²⁹⁾ “4·3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 7년 만에 ‘재시동’,” 『제주신보』, 2017. 08. 07.,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8477>>; “제주 4·3사건 유해 발굴 사업 내년부터 재개,” 『동아일보』, 2017.09.12., <<http://news.donga.com/3/all/20170911/86278448/1>> (검색일: 2017.10.03.).

앞선 체계와 인력풀, 경험을 갖추고 있는 곳으로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으로 약칭)이 꼽힌다. 2000년 4월 ‘6·25전쟁 50주년 기념 사업’ 및 3년간 한시 사업(육군 주도)으로 시작된 이래 2007년 1월 국방부 산하 상설조직으로 창설된 국유단은 17년간 10,808구의 유해를 발굴하여 이 중 121위의 신원을 확인하는 성과를 내었다. 국유단의 감식 및 신원확인 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1) 발굴현장 임시 감식소에서 육안 및 유류품 위주로 피·아군 식별, 성별, 연령 등을 추정하는 기초감식, 2) 중앙감식소로의 유해 봉송과 등록번호 부여, 3) 미세영상확대장치·분석장비 등을 활용한 법의학적 분석과 유전자 검사용 유해 DNA 시료를 채취하는 정밀감식을 거쳐, 4) 신원확인 시까지 중앙감식소 유해 보관실에 일정기간까지 보관하며 DNA검사로 진행된다.³³⁰⁾

그러나 문화재발굴 과정에 비해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조사-발굴-감식의 주체가 상이하고, 발굴병은 대학 관련학과 1~2학년 학부생 위주로 현장발굴경험이 부족하며, 팀장급은 군 유해 발굴만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부족한 점으로 꼽히기도 한다.³³¹⁾ 신원확인이 어려운 유해와 발굴된 유해의 관리에서도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³³²⁾ 또한 전사자 유가족의 고령화 및 사망인원의 증가로 인해 신원확인이 어려워져 미확인 전사자 유해 보관 및 처리 방안의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해졌다.³³³⁾ 전사자 유해 보관 기조 하에서 전사자 유해 발

³³⁰⁾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대한민국 역사박물관, 『67년만의 귀향』(서울: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대한민국 역사박물관, 2017), p. 153.

³³¹⁾ 김인수, “매장문화재 조사기법을 적용한 전사자 유해 발굴,” 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08., p. 9.

³³²⁾ 전사자 유해의 신원 확인은 1.19%(2014년 누적), 발굴된 유해의 상태 및 낮은 DNA 대조군의 보유로 인해 신원 미확인 전사자 유해가 증가하였고, 연간 약 1,000여 구의 유해가 신규 발굴되는 추세에서 신원확인 1% 수준이 지속되면 6,000여 구를 수용하는 유해발굴감식단 보관시설의 한계 문제가 제기되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전사자 유해의 합리적 관리 및 신원확인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연구수행기관: NARU컨설팅, 2015.12.), pp. 1~2.

³³³⁾ 한인규, 『전사자 유해의 합리적 관리 및 신원확인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국방부 유해

굴의 총 규모를 13만 명으로 추산하면 130년의 사업 기간이 소요되고, 약 1% 수준의 신원 확인율이 유지될 경우, 10만여 구의 유해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³³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유단은 창설 후 조직의 증편과 민간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조사, 발굴, 신원확인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모델로 삼아온 미군 사망자 중앙신원확인감식소(Joint POW/MIA Accounting Command: JPAC, 지금의 DPAA의 전신)과 공동조사 발굴감식을 실시하였고, 실무연수 및 학술교류 등을 통해 업무 및 제도적인 부분에서도 큰 발전이 있었다. 현재 국유단은 본부를 국립현충원 내에 두고 독자적인 건물에 6개의 부서, 약 200여 명의 인원으로 이루어져 있다.³³⁵⁾ 그러나 국유단 근무 경험자들과 그동안 퇴직 또는 제대한 발굴단 인원들이 향후 북한지역 매장지 조사와 발굴에 참여하거나 재취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더라도, 북한지역에서 활동하고자 할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장래에 필요한 재원과 전문인력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지역 인권범죄피해 사망자 유해 발굴과 신원확인 전담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구상과 준비가 필요하다. 적절한 시기에 근거법률 제정안을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의치 않을 경우 새로운 법률 제정 없이 이미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근거하여 인권침해 현장증거 수집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법률 제정 ○○주년 기념사업으로 실행에 착수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한 소요사항에 대한 예비적 성격의 연구와 구상은 통일준비 특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해보는 것도 무리가 없

발굴감식단 연구용역보고서』(서울: 국방부, 2015), pp. 1, 95.

³³⁴⁾ 위의 보고서, pp. 1~2. 국유단은 2008년까지 발굴된 유해를 화장하였으나, 2009년 이후 발굴유해를 화장하지 않고 일정한 장소(국선제)에 보관하고 있다.

³³⁵⁾ 박선주,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67년만의 귀향』(서울: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대한민국 역사박물관, 2017), p. 230.

을 것이다. 국유단이 2000년 6·25 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한시적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을 시작하여 2007년 국방부 직할로 직제가 변경되었고, 2008년 국가 영구사업을 위한 「6·25전사자 유해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전사자 유해 발굴 전문기관으로 꾸준히 성장한 것을 선례로 삼을 만하다.³³⁶⁾

나. 현장훼손 방지와 발굴 우선 대상지 판별을 위한 정보기술의 이용

매장 추정지를 파악하고 현장발굴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위성 사진과 항공사진을 활용한 매핑기술의 유용성이 나날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혁신을 견인하고 있다. 위성사진을 활용한 원격탐지와 감시는 학살이 진행되고 있어 현장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특히 위력을 발휘한다.³³⁷⁾ 특히, 매장지 조사와 유해 발굴에서 정보기술의 진화가 가장 크게 기여하는 측면은 현장훼손(site disturbance) 방지이다. 증거현장은 혐의자나 가해자들이 훼손하려고 할 것이라고 추측하기 쉽지만, 실제로 많은 현장들은 체계적 훈련을 받지 않았거나 법의인류학적 지식과 경험이 없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

미래에 북한 내 현장으로 처음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최초대처자들(first responders)에 의한 현장훼손을 방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

³³⁶⁾ 한인규, 『전사자 유해의 합리적 관리 및 신원확인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국방부 유해 발굴감식단 연구용역보고서)』, p. 1.

³³⁷⁾ 유해 매장지에 대한 조사는 아니었지만, 현장접근이 불가능한 곳에서 벌어지는 학살상황을 감시하는 데에 선구적인 사례로서 미국 홀로코스트추모박물관과 구글어스가 협력한 다르푸르의 참상(Crisis in Darfur) 매핑 프로젝트가 참상을 신속하게 전세계로 알리고 국제적 개입을 견인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꼽힌다. 구글어스가 출시된 2005년, 아프리카 수단 다르푸르에는 대참상이 벌어지고 있었다. 30만 명이 학살되고, 1,600개가 넘는 마을들이 파괴됐으며, 2백5십만 명의 대량난민이 발생하였다. 2004년 유엔은 다르푸르사태를 제노사이드(genocide) 범죄로 규정하였고, 2005년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주범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하기로 결의하였다. 홀로코스트추모박물관과 구글은 세계가 참상의 전후를 위성사진으로 비교해보고 힘을 모으도록 하였다. 2007년 공개되었을 때 영어언론보도만 500건에 달했고, 수백여 블로그로 소개되어 제노사이드문제를 관한 인식을 높였고 구글어스 이용도 확산되는 변화를 견인하였다.

이다. 최초대처자의 범주에는 외교적·법적 또는 현실적 난관 때문에 사법기관 수사관들이 범죄현장을 확보하지 못하는 동안, 현장에 먼저 접근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는 국내 및 국제 NGO 관계자, 취재기자, 법과학자, 보건전문가와 그 밖의 민간의 비사법적 행위자들(non-court actors)이 포함된다.³³⁸⁾ 어떤 경우는 시신이 땅에 고꾸라진 채로 사망한 형태 자체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는데 일반인이나 군인 등 비전문가들이 발굴할 경우 현장훼손이 종종 벌어지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전문가는 현장조사는 반드시 법인류학자들의 주도로 주도면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³³⁹⁾

전문가들이 현장에 투입되기 전까지 지체되는 동안에는 가능한 한 현장훼손 방지에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 내 인권범죄 피해자 매장 추정지들은 언제든지 훼손에 취약한 상태이다. 아직 북한 내부로 접근할 수 없으므로 외부에서 현장을 보존할 방법이 전무하고, 북한 정권과 가해자들이 장래의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고 현장을 훼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³⁴⁰⁾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산사태 등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한 자연적 유실 가능성도 상존한다.³⁴¹⁾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국제적으로 이 분야에서는 현장에 접근하지

³³⁸⁾ Human Rights Center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First Responders: Workshop on Collecting and Analyzing Evidence of International War Crimes* (2014), <https://www.law.berkeley.edu/files/HRC/First_Responders_final_with_cover4.pdf> (검색일: 2017.09.01.).

³³⁹⁾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기관(DPAA) 진주현 박사(법의인류학자) 인터뷰 (2017.04.11., 통일연구원).

³⁴⁰⁾ 전환기정의위킹그룹, 『북한 반인도범죄 매핑: 집단매장지, 살해장소, 문서증거 보관 추정지』, p. 17.

³⁴¹⁾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는 소수민족인 ‘로힝야(Rohingya)’ 무슬림들이 살해되고 있는 미얀마 라카인주(Rakhine state)가 이러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적절한 공식조사와 현장보존 및 유해수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연 유실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어 국제적 개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않고도 위성과 항공사진 및 탐지센서를 이용하는 원격탐지조사(remote sensing) 기법이 각광받고 있다. 향후 북한지역 내 유해 발굴 가능성이 높은 위치들을 판별하고, 우선 현장보존이 필요한 위치들을 판단할 수 있게 도우며, 현장분석 성과를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서는 북한 내 위치들을 현장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집단매장지들에서 나타나는 지리적·지형적 경향성들을 토대로 숨겨진 매장지들의 위치를 찾는 원격탐지 기술이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국제실종자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Missing Persons: ICMP) 등 기관 활동과 미국 테네시대학교의 ‘시체 농장(Body Farm)’, 영국 런던대학교 골드스미스칼리지의 법의학아키텍처(Forensic Architecture) 등의 프로젝트들에 적용되고 있다.³⁴²⁾

집단매장지를 찾는 데에 원격탐지 기술을 적용하는 전제는 누군가를 살해하고 매장하는 경우, 시체를 묻을 위치를 정하는 데에서 어떤 경향성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사람들의 일반적 행동패턴을 면밀히 고려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시체나 수레와 같은 시체운반수단을 손으로 끌고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사도는 30도 정도로 간주되고, 45도 이상 가파른 곳에 매장하는 경우는 특별한 의도가 없는 한 극히 드물다. 따라서 경험 많은 전문가들이 현장에 도착하면 지형을 세심하게 읽어 가능성 높은 지점들로 추정지를 좁혀나갈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에 주목하는 연구자들은 맥락 특정 분류법(context-specific criteria)을 고안하여 추정 위치 분석에 사용한다.³⁴³⁾ 예를 들어 2000년대

342) “ICMP Finds Improved Methods for Locating Mass Graves,” <<https://www.icmp.int/press-releases/icmp-finds-improved-methods-for-locating-mass-graves/>>; <<http://fac.utk.edu/>>; <<http://www.forensic-architecture.org/>>; 전환기정의위킹그룹, 『북한 반인도범죄 매핑: 집단매장지, 살해장소, 문서증거 보관 추정지』, pp. 64~65 재인용.

343) James Walker, “Remote Sensing and Mass Graves Detection 101,” *Lemming Cliff*, 27 February 2017, <<https://medium.com/lemming-cliff/remote-sensing-and-mass-graves-detection-101-cff939ad9d82>>; 전환기정의위킹그룹, 『북한 반인도범죄 매핑: 집단매장지, 살해장소, 문서증거 보관 추정지』, p. 65.

중반 보스니아에서 협동연구를 진행한 위성사진 전문가, 지질학 전문가, 법의인류학자들은 조사 지역의 여러 집단매장지들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주요특징과 경향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³⁴⁴⁾ 이들이 얻은 통찰은 현장접근이 불가능한 북한의 경우처럼 원격탐지 기법이 특히 유용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조사여건들에도 응용해볼 만하다.

더 최근으로 테네시대학교의 시체농장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에이미 먼도프(Amy Mundorff) 교수는 은폐된 매장지를 찾는 데에 라이다(Light Detection and Ranging technology: LiDAR) 장비를 이용한 탐지(sensing) 기법을 이용하고 있다.³⁴⁵⁾ 이 방법은 현장을 위성사진이나 다른 원격탐지 수단으로 파악해둔 위치들을 파헤치거나 훼손하지 않는 방법으로 더 정밀하게 조사하고, 조사하고자 하는 위치들이 가해자측에 추적되어 현장증거가 인멸될 위험성을 차단하는 데에도 유용할 수 있다. 라이다 센서 장비를 장착하고 조사대상 지역의 상공을 날며 지상을 탐지하는 데에는 비행체가 필요한데, 드론과 같은 무인비행체(UAV) 기술의 진화와 가격 인하 추세 덕분에 기술혁신과 실용화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탐지방법은 특히 북한 정권의 갑작스러운 붕괴나 또는 붕괴 임박 시, 정치범수용소(관리소)나 교화소 등 대규모 수감시설 재소자들에 대한 대량학살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벌어질 때 해당지역들에 신속히 투입하여 상황을 정밀하게 감시하고 기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종의 시위 성격으로 발포나 대량학살을 억제하는 예방적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³⁴⁴⁾ 보스니아 지역에서 나타난 특징들로는 매장지들이 강의 계곡, 초원 또는 농지의 가장 자리, 도로에서 100미터 거리 이내, 도로변으로부터 매장 지점까지의 완만한 경사도, 우거진 잡초와 초목으로 뒤덮인 곳들인 경향성이 있었다. 토양 성분분석 방법도 “연구자들이 집단매장지의 정확한 위치를 지목할 수 있을 만큼 놀라운 경향성을 보였다.” “ICMP Finds Improved Methods for Locating Mass Graves,” <https://www.icmp.int/press-releases/icmp-finds-improved-methods-for-locating-mass-graves>.

³⁴⁵⁾ “Welcome to the Body Farm,” *Mental Floss*, 14 May 2014, <http://mentalfloss.com/article/56640/welcome-body-farm>.

다. 피해가족 참여와 현지주민 협조

매장지 조사와 유해 발굴에는 피해가족의 참여와 현지주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들이 제공하는 증언과 같은 구술정보는 뜻밖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과테말라에서의 유해 발굴에서는 1980년대 초 마야 부족민 학살 소식이 1990년과 1991년에 이르러 알려지면서 비밀묘지의 위치를 알려주는 제보들이 잇따랐다. ‘과테말라 범의인류학팀’인 EAFG(Equipo de Anthropologia Forense de Guatemala)이 결성되고 유해들이 발굴되면서 과테말라 정부는 민간인 학살을 인정하며 공식 사과하였다.³⁴⁶⁾ 미군전사자 유해 발굴 경험에 따르면, 위치 확인은 상당히 오랜 증언진술이기 때문에 종종 틀릴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매우 정확하게 확인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한다.³⁴⁷⁾

특히 가해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매장지일 경우, 해당 장소의 온전성(integrity)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현지주민들의 협조가 중요하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하였듯이 사전 준비와 조율이 부족할 경우, 유해 발굴이 진행되어야 할 장소들이 취재기자, 경찰, 군인,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고자 하는 현지주민들에 의해 사라지거나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³⁴⁸⁾ ICTR 사례에서는 정식 현장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피해가족들이 먼저 가족의 유해를 찾기 위해 매장지를 파헤쳐 어려움을 겪었다.³⁴⁹⁾ 증거를 인멸하려는 가해

³⁴⁶⁾ 과테말라의 유해 발굴 사례는 노용석, “라틴 아메리카의 과거청산과 유해 발굴: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사례를 중심으로,” pp. 83~84.

³⁴⁷⁾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기관(DPAA) 진주현 박사(범의인류학자) 인터뷰 (2017.04.11., 통일연구원).

³⁴⁸⁾ Global Yazidi Organization, *Mass Graves of Yazidis Killed by the Islamic State Organization or Local Affiliates On or After August 3, 2014* (Yazda, 28 January 2016), <<http://www.yazda.org/wp-content/uploads/2016/01/Yazda-Report-on-Mass-Graves-Jan-28-2016.pdf>>.

³⁴⁹⁾ Human Rights Center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First Responders: Workshop on Collecting and Analyzing Evidence of International War Crimes*, p. 5.

자들뿐만 아니라 유명세를 타고자 하는 정치인 또는 정치세력화된 집단, 특종기사로 경쟁하는 기자들에 의해서도 현장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재판소나 진실위원회와 같은 공식적인 조사기구의 설립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절차상 지연되는 동안 이러한 훼손은 여러 행위자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

좁게는 유해 발굴과 신원확인 측면에 결정적인 단서나 진술, DNA 정보를 구해야 하는 실질적인 이유 외에도, 세계의 전환기 사회 사례들의 중요한 시사점 중 하나가 피해자 중심(victim-centered)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라는 것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피해가족들이 자력으로 유해를 찾아 나서려고 할 가능성은 늘 있지만, 언제가 될지 기약할 수 없는 통제 공백 상황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현장을 보존하는데 앞장 설만한 동기가 강한 그룹은 피해가족들과 이들을 돕는 인권운동그룹들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네팔사무소는 네팔 강제실종문제에 관한 2009년 법안³⁵⁰⁾에 관한 지역협의회를 개최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법안수정방향에 관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해자들은 네팔진실위원회 구성과 위원 임명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과 함께 매장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유해 발굴 과정을 피해가족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다.³⁵¹⁾

그러나 유해 발굴에서 집단적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이 현지주민들에게 늘 환영받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현지주민들 중에는 실종 및 사망자의 가족들이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먼저

³⁵⁰⁾ Disappearance (Crime and Punishment) Act 2066, <<http://nefad.files.wordpress.com/2012/01/disappearance-bill.pdf>> (검색일: 2017.06.05.).

³⁵¹⁾ "Victims' voices for truth and justice merit a response: UN Human Rights Office," (OHCHR-Nepal, Media Advisory, 14 June 2011), <http://nepal.ohchr.org/en/resources/Documents/English/pressreleases/Year%202011/June/2011_06_14_Media_Advisory_Victims_voices_for_truth_n_justice_E.pdf> (검색일: 2017.06.05.).

피해가족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유해 발굴이 이들에게 미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영향에 대해 세심하게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다. ICTR의 경우, 유해 발굴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재트라우마(re-traumatization)를 겪을 위험성을 낮추는 것이 어려운 과제들 중 하나였다.³⁵²⁾

피해가족이 아닌 주민들의 협조를 얻는 것도 중요하다. 현장보존과 발굴이 장기간 또는 대규모로 진행되어야 할 경우, 그로 인한 사익 침해나 지역사회 차원의 불편에 대한 집단적 불만 고조 가능성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정부의 지원이 피해가족들에게만 배타적으로 제공될 것으로 보일 경우, 비당사자인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협조에 소극적일 수 있다. 따라서 비당사자인 주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캠페인과 인식증진,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한 구상도 필요하다.

라. 정보제공자와 현장인력 안전조치

증언자와 내부고발자 등 중요 정보제공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보수집단계에서는 기술적·절차적으로 증언자의 진술이나 외부유출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신상정보를 최소화하거나 별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후 유엔과 같은 국제기관이나 재판소와 같은 공식적으로 권능이 인정되는 기관의 정보제공 요청시 안전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수집된 정보의 활용에 관한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³⁵³⁾ 유가족 DNA 시료 채취도 결코 쉽지 않다. 사망 또는 실종자의 가족과 친지들을 백방으로 찾아 설득하고 시료 제공에 대한 동의를 구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접촉하는 사람들의 신원 노출을 방지하는 것도 관건이다.

³⁵²⁾ Human Rights Center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First Responders: Workshop on Collecting and Analyzing Evidence of International War Crimes*, p. 5.

³⁵³⁾ 이영환, “북한인권과 전환기 정의,” p. 195.

현장조사 및 발굴요원들은 가해 혐의자 또는 구체제의 잔존세력들의 표적이 되기 쉽다. 과테말라에서는 발굴 관계자들이 협박을 받았다.³⁵⁴⁾ ICTY는 소추관들에게 강력한 병력 배치 권한까지 부여하여 범죄현장조사를 지휘하게 하고 현장조사관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였다.³⁵⁵⁾

향후 북한 전역에 걸쳐 전개될 유해 발굴에서는 인권범죄현장 증거 수집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현장조사 및 발굴요원들이 가해 혐의자들의 목표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통일과정에서 남북한주민들 간 불신이나 정서적 반감도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요원들이 시시때때로 직면할 수 있는 위험 분석(risk analysis)이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현장투입 시에는 탈출루트와 장비 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군경의 경호가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지역 안정화와 통일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군경 합동 민사작전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해 발굴 현장에서 발굴요원들이 받을 수 있는 정신적 충격에 대비한 심리치료 대책도 구상하여야 한다. 매장 추정지가 도보로만 접근 가능한 산악지역에 있을 경우, 새 발굴팀 소속 탐사관들은 벽부터 산악등반을 시작해 일몰 전까지 반드시 하산해야 하는 매일처럼 반복해야 하는 고충도 크다. 따라서 정신적, 육체적 소진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고려되어야 한다.

마. 외부기대 관리

과도한 외부의 기대는 유해 발굴과 신원확인 기관과 이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에게 심리적·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사기를 현저히 낮추는 주원인이 된다. 외부의 기대를 과도하게 높이는 요인으로는 새 정부의 집권자나 기관 책임자가 성급하게 내놓는 비현실적 약속, 짧은 기간 한시적으

³⁵⁴⁾ 노용석, “라틴 아메리카의 과거청산과 유해 발굴: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사례를 중심으로,” p. 83.

³⁵⁵⁾ Human Rights Center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First Responders: Workshop on Collecting and Analyzing Evidence of International War Crimes*, p. 3.

로 설정되기 쉬운 법률, 부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한 추측성 언론보도, 피해가족들의 다급한 마음, 과학기술 적용의 복잡한 과정과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의 고려보다는 기술이 모든 것을 빠르게 해결해줄 것으로 믿는 과학 맹신주의를 꼽을 수 있다.

북한지역 주민들 중 피해자와 가족들의 목소리를 포함하기 위한 절차와 제도를 마련하고, 납북자 및 국군포로 가족, 이산가족, 탈북과정에서 가족을 잃은 탈북민들에게 관련 절차의 복잡성과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성과가 느리게 나오더라도 진행상황을 수시로 공개하여 당사자들로부터 안정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³⁵⁶⁾ 외부의 기대를 과도하게 높이는 주원인이 되는 언론의 보도는 다급한 마음이나 미확인된 소문에 의지하는 피해가족들을 인용하여 지나칠 정도로 무리한 기대감을 높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4. 유전자 정보의 수집과 보존·활용

가. 인권유린 사망·실종자 신원확인

오래된 유해로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일반적인 살인사건에서는 시신의 부패가 완전히 진행되지 않았거나 살해 또는 암매장 현장에서 발견되는 유류품으로 비교적 수월하게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규모 인권유린이 벌어진 현장에서 수습되는 유해들은 오랜 시간 경과로 인해 완전 부패되어 식별하기 매우 어렵고, 다른 유해들과 뒤섞여 있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유해 발굴 시에는 현장에서 수집되는 유류품도 함께 감식소로 옮겨지는데, 전사자 유해 수습에서는 인식표나 사진 및 편지 등 유용한 단서들이 함께 발견되기도 하지만, 북한지역에서의 인권유린 피해 사망자들의

³⁵⁶⁾ 이영환, “북한인권과 전환기 정의,” p. 197.

유해와 함께 발굴될 수 있는 유류품이 얼마나 신원확인에 도움될 지의 여부는 미지수이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유골에서 DNA를 추출하여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이 세계 곳곳에서 활용되어 왔지만, 문제는 뼈가 오래되면 소실되는 유전자 정보가 많다는 데에 있다. 유골 상태가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남아 있는 세포가 적고, 그만큼 정확한 DNA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다. 그러나 유골에 남아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이 2010년 경 비약적으로 진보하여 성공률이 크게 높아졌다.³⁵⁷⁾

유전자 정보 분석에 충분한 DNA를 간직한 상태의 유골을 수습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망자의 DNA 정보가 이전에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방식으로 보존되어 있지 않는 한, 발굴한 유골에서 추출한 DNA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가족의 DNA 확보가 필수적이다.

나. 유전자 정보 활용 신원확인기술 현황과 제한사항³⁵⁸⁾

DNA는 개인의 모든 유전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물질로서 저마다 부모로부터 절반씩 DNA를 물려받아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독특한 유전자 패턴인 DNA 프로필을 가진다. 유골 DNA검사(Bone DNA Test)는 뼈에서 DNA를 추출하고 고유한 DNA 프로필을 판독하여 친자 및 혈연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방법으로 국제실종자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Missing Persons: ICMP)와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기관(Defense POW/MIA Accounting Agency: DPAA)의 검사원리가 대표적이다.

³⁵⁷⁾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기관(DPAA) 진주현 박사(법의인류학자) 인터뷰 (2017.04.11., 통일연구원).

³⁵⁸⁾ 유전자 정보 활용 신원확인 원리와 제한사항에 대한 설명은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기관(DPAA) 진주현 박사(법의인류학자) 인터뷰를 토대로 하였다.

신원확인에는 세포 내 핵 DNA(Nuclear DNA 또는 nDNA)를 이용하는 방법과 세포질에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 DNA(mitochondrial DNA 또는 mtDNA)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핵 DNA에는 성별을 좌우하는 한 쌍의 성염색체(X and Y chromosomes, 여성은 XX, 남성은 XY)와 22쌍의 상염색체(autosomal DNA)가 있다. 이러한 핵 DNA는 신원확인에 제한적으로 쓰인다. 부계유전되어 남성만 갖는 성염색체인 Y염색체는 부계혈육을 확인하는 데에 유용하게 쓰이지만, 22쌍의 상염색체를 이용하는 방법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미토콘드리아 DNA는 핵 DNA보다 더 오랜 기간 유전자 정보를 유지하기 때문에 신원확인에 더 폭넓게 쓰인다. 첫째, 미토콘드리아 DNA는 세포질에 존재하고 세포질은 어머니의 난자를 통해서만 모계유전되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미토콘드리아 DNA는 아들과 딸 모두에게, 그 딸은 다시 자녀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대물림되어 세대를 거쳐 유지된다. 둘째, 미토콘드리아 DNA는 핵 DNA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숫자의 DNA 프로필을 갖고, 변형(mutation) 가능성도 낮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리한 점들에 주목하여 미국 DPAA는 미군 유해로 추정되는 오래된 유골에서 미토콘드리아 DNA를 추출하여 신원확인에 유용하게 쓰고 있다.

하지만 DPAA의 진주현 박사는 미군 유해의 신원확인에서는 인종 또는 민족간 차이를 보여주는 미토콘드리아 DNA 데이터베이스가 신원확인에 큰 힘을 발휘하지만, 한국인은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동일한 유전자 수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차이에 유의할 것을 당부한다. 즉, 동일한 유전자 수가 많아 차이를 식별하기 어렵게 되면 다른 외국인이 아닌 그냥 한국인이라는 정도밖에 알 수 없게 되고, 이는 장래 북한지역에서 발굴할 유골의 신원확인에도 동일한 난관이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처럼 상당히 단일한 민족으로 유지되어 동일한 유전자

정보가 많을 경우, 핵 DNA와 미토콘드리아 DNA가 모두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국유단은 1차로 미토콘드리아 DNA로 모계혈통을 대상으로, 2차로 핵 DNA를 이용하여 부계혈통을 대상으로 유전자를 감식하고 있다.³⁵⁹⁾ 미토콘드리아 DNA를 이용한 감식에서는 유골에서 확보한 유전자와 생존 친인척의 유전자를 비교하고, 핵 DNA를 이용한 감식에서는 Y-STR검사(남성의 Y염색체 비교를 통한 부계확인)와 상염색체(A-STR) 검사가 이루어진다. 핵 DNA와 미토콘드리아 DNA가 가족 및 친척과 매칭될 경우 훨씬 가깝게 관계를 파악할 수 있지만, 3세대가 넘는 혈연관계 조사는 Y염색체와 상염색체를 모두 이용하는 방법으로 가능하기도 하지만 기술적으로 매우 까다롭다.³⁶⁰⁾

요컨대, 사망자의 유전자 정보가 완벽하게 확보되더라도 비교가능한 가족 유전자 없이는 과학적 방법으로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모든 경우에 DNA 매칭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사망자의 신원과 매장시기, 위치 등에 대한 기록 정보를 확보할 수 있거나 상당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할 수 있을 경우, DNA 매칭까지 가지 않고도 유골의 신원을 알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매우 까다롭고, 더 큰 문제는 북한 당국이 그러한 세세한 기록을 남겨두고 있을지 알 수 없으며 가능성도 상당히 낮아 보인다는 점이다. 향후 유해 발굴과 신원확인에 도움될 수 있는 유전자 정보의 수집과 관리가 필요한 이유이다.

³⁵⁹⁾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대한민국 역사박물관, 『67년만의 귀향』, p. 163.

³⁶⁰⁾ ICMP는 총 23쌍(1쌍의 성염색체와 22쌍의 상염색체) 중 16쌍을 이용하는데, 이 분야에서 권위 있는 자료로 토마스 파슨스(Tomas J. Parsons) 법과학 국장의 매뉴얼과 연구결과가 널리 쓰인다.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기관(DPAA) 진주현 박사(법의인류학자) 인터뷰(2017.04.11., 통일연구원).

다. 유전자 정보 수집·관리 방향

우리 정부가 북한지역 내 인도에 반한 죄 피해 사망자 유해 발굴을 통일 과정 또는 이후 단계에서 진행하고자 한다면, 현재 운용하고 있는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체계와 경험을 토대로 하거나 확대 운영하는 방법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 관련 업무 관련성 및 연속성 측면에서는 국방부와 통일부가, 증거수집 등 수사와 범죄피해자 구제 측면에서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관련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1) 북한 관련 업무 관련성 및 연속성 측면

먼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의 전사자 유가족 유전자와 통일부 이산가족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의 발전과정과 운영상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국유단의 6·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는 유해 발굴 사업이 2000년부터 3년간 한시 기념사업으로 진행되고 2003년 7월 호국보훈관계장관 회의에서 사업 지속추진 결정이 이루어진 후, 2004년부터 구축되기 시작하였다.³⁶¹⁾ 유가족 DNA 시료 채취에서는 2004년부터 전국의 19개 군병원에서 DNA 시료 채취를 시작하였고, 2009년부터는 지역 보건소들에서도 가능해졌다. 2010년에는 특수 채취 키트(kit)를 이용해 보다 편하게 채취할 수 있게 되었고, 2011년부터는 현역장병 중 전사자 유가족을 선별해 채취하고 있다.³⁶²⁾ 이외에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병무청 등 12개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2017년까지 36,975명의 유가족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였다.³⁶³⁾ 유전자 검사감정서는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 명의로 통보한다.³⁶⁴⁾

361)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대한민국 역사박물관, 『67년만의 귀향』, p. 99.

362) 위의 책, p. 163.

363) 위의 책, p. 99.

통일부의 이산가족 유전자 검체 수집은 2014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2016년까지 민간 유전자 검사기관이 수집과 검사, 관리 등 일체의 과정을 위탁수행하였다. 그러다가 2016년 9월 국정감사에서 유전자 검체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후, 2017년 5월 말부터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National Biobank of Korea: NBK)으로 이전되어 보관·관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13년 11월 20일 일부 개정 시³⁶⁵⁾ 통일부 장관이 인체자원은행의 총책임자인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이산가족 유전자 검체의 보관·유지·폐기 여부 결정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형태로 일부 개정되었다(제4조의2 제4항).³⁶⁶⁾ 이와 함께 동 시행령 개정 시 통일부는 ‘이산가족 유전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해 이산가족의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한 폐기나 열람 요청에 대한 처리 규정도 마련하였다(제4조의2 제5항). 이산가족 유전자 검체 관리가 민간에서 정부로 전환된 것은 바람직한 변화인데, DNA 데이터는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기준(privacy protection standard) 요구되는 것이 국제보편 상식으로 통하는 것과도 부합한다.³⁶⁷⁾ 통일부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산가족 21,515명의 혈액·타액·모발 등 유전자 검체 총 64,545건을 확보했고, 2017년 1,000명의 검체를 추가로 확보해가고 있는데, 유전자 검사 업무는 통일부 주관 입찰 경쟁을 통해 민간업체가 이전처럼 계속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남아 있다.³⁶⁸⁾

³⁶⁴⁾ 위의 책, p. 172.

³⁶⁵⁾ 대통령령 제24894호.

³⁶⁶⁾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체 정부 직접 관리 확정,” 『연합뉴스』, 2017.06.20.

³⁶⁷⁾ 미국에서 핵 DNA 정보를 추출하는 일을 전문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구축해두고 있는 Armed Forces DNA Identification Laboratory(AFDIL)이나 DPAA는 엄격한 보안 관리 절차를 수립해두고 있다. DPAA 진주현 박사 인터뷰(2017.04.11., 통일연구원).

³⁶⁸⁾ “이산가족 유전자 검체 관리, 정부가 맡는다,” 『연합뉴스』, 2017.05.01.

그러나 국유단이나 통일부 및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의 관리 체계를 앞으로 북한지역 내 인도에 반한 죄 피해 사망자 신원확인을 위한 유전자 정보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우선 유전자 정보 수집과 관리에 필요한 업무절차 자체는 유사할 수 있지만, 수집 대상이 인권범죄 피해 사망자와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전사자 신원 확인이나 이산가족 관련 사업은 가족찾기라는 인도적 사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므로, 인권범죄 피해자 신원확인에 필요한 유전자 정보 수집과 관리에 요구되는 제반사항들이 간과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지역 내 매장지들에서의 주요 발굴대상은 실종민간인 유해이고 국유단의 발굴대상은 실종전사자 유해이므로 실종자 신원확인이라는 점에서 일견 유사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전자의 경우 유해의 발굴 및 수습뿐만 아니라 인권범죄 가해자들을 기소·처벌하는 데에 불가결한 증거 확보가 병행되어야 하고 현장보존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실종전사자 유해 발굴이나 신원확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경험과 기술을 요구한다.

(2) 증거수집 등 수사와 범죄피해자 구제 측면

북한의 인도에 반한 죄로 인한 피해 사망자들의 신원확인에 필요한 유해 발굴에서부터 사망자 DNA 추출, 유가족 DNA 정보 확보 및 매칭 등 일련의 체계는 국제적 차원의 보편적 형사사법절차와 요건 충족에 초점을 둔 전문기관을 모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절한 모델로는 ICTY의 가해혐의자 기소 및 재판과 인권유린으로 인한 피해사망자 신원확인이라는 두 측면에 공히 기여해온 국제실종자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Missing Persons: ICMP)을 꼽을 수 있다.

ICMP에서 이러한 일을 전담하는 법과학부(Forensic Science Department)는 법인류학국(Forensic Anthropology Division), 신원확인조정국

(Identification Coordination Division), 유전자연구국(DNA Laboratory Division)으로 구성되어 있다.³⁶⁹⁾ 비정부조직인 ICMP는 구유고 내전 사망자 신원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의 제안으로 설립되었다. 인권범죄로 인한 실종사망자들의 신원확인에 큰 기여를 해오다가 2001년 미국 9·11 참사, 2004년 인도양 쓰나미 사태 등 세계 곳곳의 대규모 재난현장에서 집단매몰되거나 대규모 사망자들의 신원확인에 참여하여 2만여 명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 국제협력과 기술지원 범위를 확대해가고 있다.³⁷⁰⁾

범죄수사와 나아가 피해자 구제 차원에 이르기까지 DNA 정보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활용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기관으로는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꼽힌다. 우선 범죄수사에서의 DNA 정보 수집과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는 2010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마련되었다.³⁷¹⁾ 2008년 조두순 사건 등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론이 형성되면서 재범 우려와 피해 정도가 큰 범죄자와 미수범에 대한 개인식별용 DNA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에 활용하기 시작하였다.³⁷²⁾

검찰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두고 있는 과학수사2과(DNA 및 법생

³⁶⁹⁾ 신원확인조정국은 가족으로부터의 정보수집활동(family reference collection) 조직, 현지 샘플링 캠페인, 우편 방식의 레퍼런스 키트 발송/회송 관리 등을 맡고, 유전자 연구국 산하에는 지역별 하위단위 DNA 연구실(Lab)들이 설치되어 있다.

³⁷⁰⁾ International Commission on Missing Persons 웹사이트 <<https://www.icmp.int/about-us/history>> (검색일: 2017.10.11.).

³⁷¹⁾ 법률 제9944호, 2010년 1월 25일 제정.

³⁷²⁾ 이 법 제5조에 따르면, 방화·실화, 살인, 상해·폭행,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인신매매, 강간·추행, 주거침입, 절도·강도, 폭력, 성폭력, 마약 등이고, 미수범도 포함될 수 있다. 흉악범죄 해결에 대한 지지여론에 힘입은 발전이었지만, 입법 과정에서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에 따라 DNA 정보 수집 대상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한정하였고, 제13조에서는 불기소 처분하거나, 무죄로 판결되거나, DNA를 채집할 수 없는 죄명으로 바뀌거나, 사망하는 등의 경우에는 DNA 정보를 즉시 삭제하고, 데이터 정보를 삭제한 뒤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알리도록 정하였다.

화학 감식 등 담당)은 대검찰청 내 모든 과학수사부서들과 함께 2008년 문을 연 디지털포렌식센터(Digital Forensic Center)에 위치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1991년 DNA 감식실을 설치하고, 1992년 국내 최초로 DNA 감식기법을 개발하였으며, 2007년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DNA 감식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을 획득하였다.³⁷³⁾ 2010년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DNA 신원확인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DNA수사담당관실을 신설하였는데, 이 부서가 2015년 과학수사부 신설과 함께 과학수사2과로 재편되어 오늘 날에 이르고 있다.³⁷⁴⁾

특히, 본 연구와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측면은 우리나라 사법기관들이 보유한 기술과 경험이 범죄수사에서의 가해혐의자를 특정하는 일에만 제한되지 않고, 피해구제를 목표로 인권 관련 피해사망자나 오래된 유골의 신원확인 업무까지 폭넓게 수행하여 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는 일본 도쿄 메구로(目黒)구 유텐지(祐天寺)에 보관 중이던 유골의 신원확인을 벌였는데, 처음에는 국과수에서 DNA 감식을 하다가 인력부족 등으로 확인에 시간이 오래 걸리자 대검찰청은 자체 DNA팀을 만들고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활용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중단으로 유골발굴사업도 중단되기는 하였지만, 대검찰청은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집단매장지에서 발굴된 유골들과 유가족들로부터 확보한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신원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또한 2015년 3월 법과학DNA국제심포

³⁷³⁾ 한국인정기구(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및 산업표준화제도 운영, 공산품의 안전·품질 및 계량·측정에 관한 사항, 산업기반 기술 및 공업기술의 조사·연구 개발 및 지원, 교정기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의 운영, 표준화 관련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기술표준원 조직으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기관장 역할을 수행한다. <<https://kolas.go.kr/usr/gud/abt/Introduce.do>> (검색일: 2017.10.11.).

³⁷⁴⁾ 대검찰청의 DNA 감식 관련 연혁은 웹사이트 <<http://www.spo.go.kr/spo/major/forensics/forensics01.jsp>> (검색일: 2017.10.11.).

지엄을 열었고, 2017년 8월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국제법유전학회(ISFG) 총회를 주최하여 유전자 정보를 활용한 과학수사와 신원확인 및 분석 등 최신기술을 수용하고 전문성을 배가해나가고 있다.³⁷⁵⁾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후손 확인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어 유용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2007년 12월 국과수 유전자감식센터는 국가보훈처와 협약을 맺고 해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들 중 국내 정착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후손 여부 확인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였다. 당시 감식센터장이 까다로웠던 사례로 꼽았던 독립유공자 차도선, 이명순 선생의 후손 확인은 6세대에 걸쳐 이루어졌다. 부계확인을 위한 Y-STR와 모계확인을 위한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으로 이루어졌고, 상당수 확인하는 결실도 거두었다. 1세대와 2세대가 모두 사망하여 DNA 분석으로는 친자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문제에 직면하자 결손된 정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문서들을 폭넓게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자료로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족보 등과 귀화신청자가 제출한 중국 당안자료 등을 활용하였고, 이러한 자료 검증을 위해 중국현지조사, 국내외 관련인 진술 및 당시 정황,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였다.³⁷⁶⁾

³⁷⁵⁾ 1968년 결성된 ISFG(International Society for Forensic Genetics)는 전세계 DNA 감식 전문가들이 따르는 감식기술 표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법유전학(DNA 감식, 감정 기술과 이론)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한다. 2017년 8월 서울에서 열린 제27회 총회에서는 국제실종자위원회(ICMP)의 토마스 파슨스 박사가 대규모 재난 피해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식 기술의 기여에 관해 강연하였고, DNA를 이용한 몽타주 작성 기술이 소개되는 등 신기술과 분석사례등 64건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대검찰청 보도자료, “대검찰청, 아시아 최초 제27회 국제 법유전학회 총회 개최”, 2017.08.29., <http://www.spo.go.kr/_custom/spo/_common/board/download.jsp?attach_no=185974> (검색일: 2017.10.11.).

³⁷⁶⁾ 한면수, “DNA 신원확인정보에 의한 독립유공자 후손 확인 사례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vol. 70 (서울: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2.03.), p. 384; 저자는 DNA 분석을 통한 혈육확인에서는 유전적 특징상 가까운 손수임에도 불구하고 유전적 연결고리가 없어 삼촌과 여자 조카, 고모와 조카(남, 여), 조부와 손녀, 조모와 손자 등 확인이 안 되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같은 논문, pp. 398~399.

(3) 북한인권 피해자 확인 및 구제를 위한 유전자 정보 수집·관리 방향

통일과정에서 북한지역 내 인권범죄 피해사망자 유해 발굴과 신원확인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첫째, 분단 상황에서는 북한인권문제의 피해자일 수 있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로부터 유전자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와 제도 마련 방안부터 모색하여야 한다. 피해가족임을 주장하거나 잠정적으로 유가족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가 뒤늦게 구축된다면, 향후 북한지역에서 유해를 발굴하더라도 신원확인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신원 미확인 유해 관리 부담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 이를 위해 국내로 이미 정착하였거나, 앞으로 정착할 탈북민들의 유전자 정보를 우선적으로 수집·보존해나갈 필요가 있다. 향후 북한지역 전역에 걸쳐 신원미상의 유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견되거나 발굴될 수 있고, 규모가 큰 관리소(정치범수용소) 지역들에서나 암매장 장소로 반복적으로 이용되어 온 곳들에서는 오랫동안 누적된 유해들이 대규모로 발굴될 가능성이 높다. 그중에는 북한지역 내에는 연고자를 찾을 수 없거나 가까운 가족이 모두 사망한 실종·사망자들도 다수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탈북하여 남한으로 정착한 가족들의 유전자 정보가 결정적인 신원확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셋째, 탈북민 중 무연고로 사망하는 경우에 대비해서도 유전자 정보를 수집·보존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탈북민들 중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가 나올 경우, 관할 지자체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와 보건복지부의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매뉴얼」에 따라 화장하여 10년 기한으로 무연고 납골시설에 보관해두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³⁷⁷⁾ 기본적으로 불에 완전히 태우는 화장과 파

³⁷⁷⁾ 「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108호) 제12조 1항은 보관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행령 제7조는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화장된 유골도 10년 이내에 가족을 찾지 못하면, 다른 무연고자 유골들과 함께 집단 매장된다.

쇄 과정을 거쳐 재의 형태가 되면 DNA 추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별도의 무연고 매장 장소를 마련할 수 없는 한, 시신을 발견한 시점으로부터 관련법에 따라 화장 처리하기 전에 유전자를 채취하여야 한다. 그런데 무연고 사망자는 유전자 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를 받을 수 있을만한 마땅한 법정대리인이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무연고 탈북민에 대해서는 예기치 못한 시기에 사망하기 전에 유전자 정보를 남겨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를 얻어 수집하거나 사망시 지정기관에서 채취할 수 있도록 미리 동의를 받아두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넷째, 현실적인 통일 대비와 진실규명, 피해자 구제 등 전환기 정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로서 유전자 정보 수집과 관리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알려나가야 한다. 특히, 당사자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고, 관련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보충적으로 반영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필요성과 활용목적, 절차와 수단이 선명하게 제시되어야 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당사자들의 이해뿐만 아니라 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언론 관계자들의 이해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 또 다른 인권침해 수단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불안감만 높아지는 역효과가 초래될 수 있다. 오늘날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높아져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와 동의 획득 절차, 데이터보안 수단, 목적 외 사용 차단 방법 등 구체적 방향을 구상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연구 결과를 탈북민 등 당사자들의 눈높이에서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자료로 만들고,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갖추어야 한다.

다섯째, 이산가족 및 납북자, 국군포로 가족 유전자 정보 수집과 보존이 지속되어야 하고 참여율도 더욱 높여야 한다. 향후 북한지역에서 유해 발굴이 진행된다면 같은 지역에서 여러 범주의 유해가 섞여서 발굴될 수도 있기 때문에 탈북민이나 북한주민들의 유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 외에도 북한 내 가족의 유해를 찾고자 희망하는 다양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들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통일대비 차원의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부처나 기관마다 독자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있는 여러 유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들을 단계적으로 통합관리하거나 필요한 시기가 도래할 때에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나가야 한다. 그런데, 관련 부처와 기관들마다 수집·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은 고유한 수집 목적과 관련 법률에 근거한 각각의 활용방향이 있고, 예산요구 및 인적 구성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 방향 설정에 관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일이다.

일곱째, 향후 통일과정에서 북한지역 내 주민들로부터 대규모로 유전자 정보 수집해야 하는 상황을 예상하여 대상범위와 소요예산, 실행방법 등 여러 측면에서 현실적 난관들을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여야 한다. 큰 규모의 유전자 정보 수집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다른 나라 사례들로부터 시사점을 찾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탈북민들과 달리 거의 모든 북한지역 주민들이 통일 전까지 남한 사회를 실제 경험해볼 수 기회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문용어 없이 쉽게 이해하고 유전자 검체 제공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수 있는 설명 방법과 홍보 방안을 다양하게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방향들을 포함하는 논의와 연구, 여론 수렴 및 계획 구상을 정부기관 한 두 곳에서 전담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해나가는 방향으로 여러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각각 다른 전문성과 자원, 관련 운영체계와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검찰, 국과수, 국방부, 통일부 등 국가기관 외에도 유해 발굴과 신원확인, 인권조사와 범죄수사 등에서 국내외 민간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여러 부류의 피해자 또는 가족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에서도 의견을 제시하고 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소결

통일과정에서의 북한지역 내 인권범죄 피해사망자 매장지 조사와 유해 발굴, 신원 확인 등 일련의 과제는 진실규명과 법과학적 증거물 확보를 통한 가해자 책임규명, 피해자 배·보상 및 지원정책 수립 기초를 마련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또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유해 발굴과 현장보존 작업이 지역 경제사회기반시설 건설에 대한 기대와 충돌할 가능성을 낮추고, 북한지역 주민들의 기대하는 방향으로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중요한 일이다. 북한 전역에 걸쳐 진행되어야 할 발굴 작업과 유전자 정보의 수집과 활용 과정에 북한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지역 주민들이 정의와 법치의 실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면 민주주의의 안착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면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가해자 그룹과 피해자 그룹 각각의 집단응집력을 높여 심각한 갈등이 초래되고 세대를 이어 악순환만 되풀이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세심하고 구체적인 계획과 실현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한다면, 장래의 통일 실현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통일 준비 과정에서부터 통일의 미래지향적 가치와 긍정적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미경험자나 미체험 세대로의 역사교훈 계승, 관련 학문과 기술 발전 및 파급도 촉진할 수 있다.

통일 과정에서 북한 전역의 수많은 매장지들을 현장조사하고 유해를 발굴하며 신원을 감식하는 일에는 막대한 인력과 재정투입이 필요할 것이다. 국내의 민간에서는 전환기정의위킹그룹이 집단매장지 등 향후 현장조사와 유해 발굴이 필요할 위치들을 위성사진과 탈북민 인터뷰조사로 파악하고 디지털지도 데이터베이스로 기록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 북한 내 여러 현장들에서 유해를 발굴하고, 법의학적 증거를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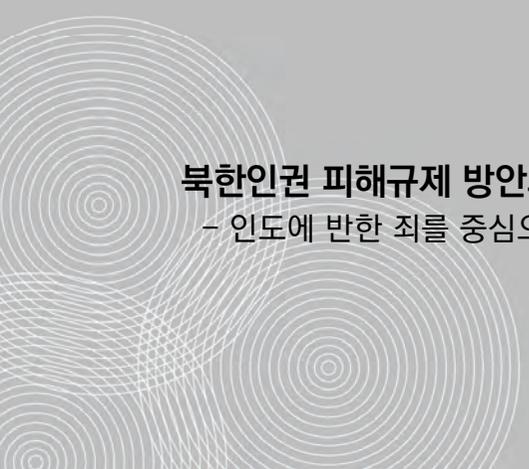
적으로 수집하며,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는 엄밀한 분석은 민간 역량을 넘어서 검증된 전문가들과 국가적, 제도적 정책추진이 필요한 영역이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북한지역에서의 현장조사와 발굴 등에 필요한 정책적 대비의 뼈대로서 정부 차원에서는 국내외 전문가풀을 구축하여 필요예산 규모와 전문인력 규모, 구성 및 운영방안 등에 관한 기초연구를 시작할 만하다. 또한 대규모 인권범죄 현장에서 유해를 발굴할 때 중요한 문제인 현장훼손 방지, 피해가족 참여와 현지주민 협조, 정보제공자와 현장인력 안전조치 등에 관한 국제사례의 시사점을 모으고 우리 현실에 맞도록 발전방안을 탐색해볼 만하다.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사법기관들과 민간에서도 이러한 방향의 조사와 연구, 관련 국제회의나 실무워크숍을 열며 전문가들을 모으고 관련 분야와 학제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의 네트워크들을 향후 통일단계에서 정부의 관련 정책입안과 추진 과정에 활용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훗날 북한지역에서 발굴하는 무수한 유해들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유전자 정보 수집·관리 방향을 구상해나갈 필요가 있다. 분단이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는 북한인권문제의 피해자일 수 있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로부터 유전자 정보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한 법률과 제도를 모색하고, 탈북민들의 유전자 정보 수집·보존 방안을 우선 구상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인권침해 우려를 초래하지 않도록 인권의 보호와 증진 목적, 절차와 수단이 명확하여야 하고, 당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이산가족 및 납북자, 국군포로 가족 유전자 정보 수집과 보존은 계속되어야 하고 참여율도 높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정부부처나 기관마다 독자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있는 여러 유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들을 필요한 시기에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나가야 한다.

VI. 결론 및 정책적 고려사항

이규창(통일연구원)



북한인권 피해규제 방안과 과제

- 인도에 반한 죄를 중심으로 -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큰 충격과 피해를 입은 북한주민들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통일 이후 사회통합의 초석이 마련될 수 있다. 인도에 반한 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북한주민들에게 법적인 차원에서 금전적인 보상·배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사법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구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인식에 따라 본 연구보고서는 구제의 대상으로 법적인 측면에서의 피해자들의 복권(復權)과 배상·보상 외에 인간존엄성 및 정신건강 회복 문제와 매장지 조사·발굴 및 유전자 보존 문제를 다루었다.

제II장에서는 복권 문제를 살펴보았다. 통일 이후 피해자 복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독일의 경우와 같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통일독일은 피해자 복권 문제에 대해 통일 초기에는 기존 동서독의 관련 제도를 활용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형사복권법·행정복권법·직업복권법의 제정을 통해 자유법치국가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판결과 행정처분에 대한 파기 내지 무효화 조치를 하고 그에 따른 후속청구권으로 각종 보상과 원호 조치를 취하였다. 특별법은 정당성 확보를 위해 통일합의서나 통일헌법에 근거하여 통일한국의 새로운 의회가 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률 형태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가능하다면 전환기 정의와 관련된 진실규명, 가해자 처벌, 피해자 구제, 불법 기록물 보존관리, 사회문화적 청산사업 등을 규율하는 포괄적인 단일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통일 과정과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성과 시급성에 따라 각 기제별로 단행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통일독일의 경우 형사복권법과 행정복권법 및 직업복권법을 구분하였으나 남북한 통일의 경우에는 굳이 행정복권법과 직업복권법을 이원화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정권에 의한 체제불법적 판결이나 행정처분에 대한 파기 내지 무효화의 판단은 그 기준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양립가능한지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의 양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매우 어려운 사법적 판단으로 사전에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

하기도 어려워 결국은 개별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 기준을 형성해 나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형사복권이나 행정복권의 심사는 모두 법원이 관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원의 복권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에 따라 발생하는 추후청구권에 기인한 보상 등의 조치는 행정업무에 해당하므로 기존의 관련 행정부서나 복권청과 같은 새로운 행정기구를 설립하여 담당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복권 관련 특별법에서는 이와 같은 업무 관할과 심사기준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신청 및 재판절차, 결정 및 효과, 불복방법 등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III장에서는 배상·보상 및 특별지원 방안을 분석하였다. 통일로 인해 북한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실체가 사라지고 북한 정권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통일한국에 승계되지 않게 된다. 이 점에서 통일한국이 인도에 반한 죄로 인한 북한주민의 피해를 보전해주어야 한다면 이는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배상이 아니라 보상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 통일 이후 북한주민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데 그 형태는 포괄입법의 형태와 개별입법의 형태 모두 가능하다. 보상과 함께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이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추모시설 건립 및 위령사업, 인권침해 보존 등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특별법을 운영할 위원회는 포괄입법의 경우에는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하거나 대통령 직속 기구로 운영하고, 개별입법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보상의 수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인도에 반한 죄의 행위 유형에 따라 다르게 산정할 필요가 있고, 유엔인권피해자 권리구제원칙을 비롯한 국제법상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인도에 반한 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북한주민들과 그 가족 및 유족들에게 특별법 제정을 통한 특별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별지원의 내용은 의료지원, 생활지원 및 생계지원 등이 되어야 한다.

제IV장에서는 인간존엄성 및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

다.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들은 폭력과 잔학행위로 인한 심리적 외상이 제대로 치유되지 못했을 때, 그 피해가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세대를 넘어서까지 전이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북한 피해주민들의 회복은 단순히 전문가의 치료적 노력으로 달성되지 않으며,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사회적 노력과 국가의 지원정책, 민간 차원의 활동과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노력이 뒷받침 될 때 가능하다. 첫째, 피해자의 인간존엄성 회복을 위해 통일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의 회복이 필요하다. 사회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 조치와 정책은 북한 범죄피해자들의 인간존엄성과 정신건강 회복의 기초가 될 것이다. 경제적 배상, 명예회복, 진상규명 및 가해자의 진실한 사과, 국가의 공개적 사과, 추모위령사업 같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를 덜어주려는 현실적인 노력이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적 치유 노력에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피해자들의 물리적, 신체적, 법적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지원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피해 북한주민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적 지원, 신체적 질병치료를 위한 의료지원, 안정된 주거지원, 범죄피해에 대한 경제적 보상 및 배상, 생계비 지원 등에 관한 국가 차원의 사회지원정책 및 제도가 확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셋째, 피해자 및 유가족들의 심리적 외상 치료를 위한 전문센터를 국가 차원에서 설립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기관을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전문적인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분단시기동안 국가로부터 부당한 폭력을 입은 피해자들의 치유에 대한 노하우를 쌓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전문치료와 전문가 교육의 허브를 담당하고, 치료의 전문성을 높이며, 병원, 법원, 경찰, 사회복지체계, 정책 결정자와 같은 다양한 관련 기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통일 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과거의 역사적 기억에 대한 공동체의 공통된 기억을 마련하고, 이 기억을 인정하며, 공동체 전체가 과거에 저질러진 불의에 대해 치유적 공동체로

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다양한 기회와 프로그램, 공간 등이 마련되어야 하며, 관련 분야에서 민간단체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심리적 외상 치료 및 사회갈등 조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을 설립,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정부와 사회기관은 지역사회의 지지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동체의 치유적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방송이나 교육을 통해 대중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거나, 외상의 증상이나 대처법,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심리교육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준전문가를 발굴하여 피해자의 지역사회 연결과 회복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피해자의 치료와 관련 있는 다양한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연대 활동을 통해서 피해자의 치료에 대한 전문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심리 외상 전문 치료 기관, 국가 폭력 피해자 재활기관, 사회 갈등조정 기관이 함께 연대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적 역량을 쌓아나가야 한다. 여덟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치료적 접근의 문화적 적합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들의 외상의 심각도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치료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북한 문화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적으로 민감하고 적절한 평가와 진단, 치료개입, 지역사회 연결과 공동체 안에서의 회복과정 수립이 필요하다.

제V장에서는 매장지 조사·발굴 및 유전자 보존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었다. 통일과정에서의 북한지역 내 인권범죄 피해사망자 매장지 조사와 유해 발굴, 신원 확인 등 일련의 과제는 진실규명과 법과학적 증거물 확보를 통한 가해자 책임규명, 피해자 배·보상 및 지원정책 수립 기초를 마련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또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유해 발굴

과 현장보존 작업이 지역 경제사회기반시설 건설에 대한 기대와 충돌할 가능성을 낮추고, 북한지역 주민들의 기대하는 방향으로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중요한 일이다. 북한 전역에 걸쳐 진행되어야 할 발굴 작업과 유전자 정보의 수집과 활용 과정에 북한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지역 주민들이 정의와 법치의 실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면 민주주의의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다. 통일 과정에서 북한 전역의 수많은 매장지들을 현장조사하고 유해를 발굴하며 신원을 감식하는 일에는 막대한 인력과 재정투입이 필요할 것이다. 향후 북한지역에서의 현장조사와 발굴 등에 필요한 정책적 대비의 뼈대로서 정부 차원에서는 국내의 전문가들을 구축하여 필요예산규모와 전문인력 규모, 구성 및 운영 방안 등에 관한 기초연구를 시작할만하다. 또한 대규모 인권범죄 현장에서 유해를 발굴할 때 중요한 문제인 현장훼손 방지, 피해가족 참여와 현지주민 협조, 정보제공자와 현장인력 안전조치 등에 관한 국제사례의 시사점을 모으고 우리 현실에 맞도록 발전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분단이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는 북한인권문제의 피해자일 수 있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로부터 유전자 정보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한 법률과 제도를 모색하고, 탈북민들의 유전자 정보 수집·보존 방안을 우선 구상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인권침해 우려를 초래하지 않도록 인권의 보호와 증진 목적, 절차와 수단이 명확하여야 하고, 당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이산가족 및 납북자, 국군포로 가족 유전자 정보 수집과 보존은 계속되어야 하고 참여율도 높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정부 부처나 기관마다 독자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있는 여러 유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들을 필요한 시기에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 나가야 한다.

본 연구보고서에서 다룬 피해자 복권, 보상 및 명예회복과 특별지원, 인간존엄성 및 정신건강 회복, 매장지 조사·발굴과 유전자 보존 방안은

각각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면서 상호 연관되어 있다. 북한주민들의 온전한 구제를 위해서는 이 네 가지 분야의 구제가 동시에 추진되어야만 한다. 특별법 제정도 각자 독자적인 영역을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 외에 이 네 가지 영역을 동시에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북한주민들의 구제를 위해 통일한국의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동시에 통일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해, 그리고 7천 5백만 통일한국의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게 어울려 살 수 있는 공동체의 형성을 위해서는 민간의 자발적인 활동이 정부의 역할 못지 않게 중요하다. 북한주민들의 복권, 보상, 의료지원, 심리치료, 생활지원 및 생계지원,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인간존엄성 및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 매장지 조사·발굴과 유전자 보존 활동은 오랜 시간과 상당한 재원이 소요된다. 이를 위해서는 범죄은닉 재산 활용 등을 통한 재원 마련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 이후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배상 명령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원 마련 방안의 일환으로 로마규정상의 피해자배상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로마규정 이행법률에는 피해자배상제도에 상응하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ICC의 관련 판례에 주목하면서 피해자배상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제의 범위는 다양하고 넓다. 본 연구보고서에서 다루지 못한 원상회복, 재활(사회복귀), 만족, 위령사업 및 추모사업, 재발방지 약속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와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보고서에서 다룬 북한주민들의 복권, 보상, 의료지원, 심리치료, 생활지원 및 생계지원,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의 인간존엄성 및 정신건강 회복, 매장지 조사·발굴과 유전자 보존 활동의 경우에도 통일의 상황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광주트라우마센터. 『2014 5·18 관련자 등 국가 폭력 생존자 재활성과보고서』.
광주: 광주트라우마센터, 2015.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대한민국 역사박물관. 『67년만의 귀향』. 서울: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대한민국 역사박물관, 2017.
- 김동춘. 『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 서울: (주)사계절출판사, 2014.
- 김병창·유시은. 『북한이탈주민 패널연구: 경제-정신보건-신체건강』. 서울: 북한이탈주민재단, 2010.
- 김석진·이규창.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분리 운영 방안: 경제적 및 법적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15.
- 김영탁. 『독일통일과 동독재건과정』.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7.
- 김하중. 『통일한국의 과거청산』. 서울: 나남, 2013.
- 김한균 외. 『통일시대의 형사정책과 형사사법통합연구(II): 통일시대의 과거·불법청산 및 사회통합 방안의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 동독 사회주의통일당 독재청산재단(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통일독일에서의 과거 공산주의자 청산문제』. 베를린: 동독 사회주의통일당 독재청산재단, 2011.
- 미국 고문피해자센터. 유현미 역. 『상처입은 자의 치유』. 광주: 광주트라우마센터, 2013.
- 법무부. 『통일독일의 구동독체제불법청산 개관』. 서울: 법무부, 1995.
- _____. 『독일통일 10년의 법적고찰』. 과천: 법무부, 2000.
- 법원행정처. 『북한의 형사법』. 서울: 법원행정처, 2006.
- 오수성 외. 『5·18민주 유공자 생활실태 및 후유증 실태조사 보고연구서』. 광주: 5·18기념재단, 2006.
- _____. 외. 『심리적 피해현황 조사보고서(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광주: 전남대학교 심리건강연구소, 2007.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2014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 서울: 통일연구원, 2014.

- 이규창. “북한형사사법 실태와 동향.” 박학모·김대근·이규창. 『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 _____. 외.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서울: 통일연구원, 2015.
- _____. 외.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로마규정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16.
- _____. 『남북통일과 국가재산·채무·양허권의 승계』. 서울: 통일연구원, 2016.
- 이금순·김수암·이규창. 『북한 정치범수용소』. 서울: 통일연구원, 2013.
- 이화영 외. 『고문피해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11.
- 전환기정의위킹그룹. 『북한 반인도범죄 매핑: 집단매장지, 살해장소, 문서증거 보관 추정지』. 서울: 전환기정의위킹그룹, 2017.
- 제프리 알렉산더 저. 박선웅 역. 『사회적 삶의 의미: 문화사회학』. 서울: 한울, 2007.
- 조맹제 외.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보고서(보건복지부 학술연구 용역 사업보고서)』. 서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2011.
- 존 알렌 저. 권정혜 외 공역. 『트라우마의 치유』. 서울: 학지사, 2010.
- 통일부. 『독일통일 총서 7: 과거청산분야 관련 정책문서』. 서울: 통일부, 2014.
- 한동호 외. 『북한 내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서울: 통일연구원, 2016.
- 한명섭. 『통일법제 특강』.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6.
- 한인규. 『전자사 유해의 합리적 관리 및 신원확인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연구용역보고서)』. 서울: 국방부, 2015.
- 한홍구 외. 『광주트라우마센터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 광주: 평화박물관, 2012.
- 허먼 주디스 저. 최현정 역. 『트라우마: 가정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 서울: 플래닛, 2007.
- 5·18기념재단.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심리학적 부검 및 자살피해 예방대책과 사회적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 광주: 5·18기념재단, 2008.

Dwertmann, Eva. *The Reparation System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ts Implementation,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Leiden: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10.
- Dy, Khamboly. *A History of Democratic Kampuchea: 1975-1979*. Phnom Penh: Documentation Center of Cambodia, 2007.
- González, Eduardo and Howard Varney, eds. *Truth Seeking: Elements of Creating an Effective Truth Commission*. Brasilia: Amnesty Commission of the Ministry of Justice of Brazil. New York: International Center for Transitional Justice, 2013.
- Hayes, Steven C., K. D. Strosahl, and K. G. Wilson.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n experiential approach to behavior change*. New York: Guilford Press, 1999.
- Human Rights Center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Beyond Reasonable Doubt: Using Scientific Evidence to Advance Prosecutions at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2012.
- Human Rights Center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First Responders: Workshop on Collecting and Analyzing Evidence of International War Crimes*. 2014. <https://www.law.berkeley.edu/files/HRC/First_Responders_final_with_cover4.pdf>.
- Inman, Keith and Norah Rudin. *Principles and Practices of Criminalistics: The Profession of Forensic Science*. Boca Raton, FL: CLC Press, 2001.
- Levine, Peter A. *In an unspoken voice: How the body releases trauma and restores goodness*. Berkeley, CA: North Atlantic Books, 2010.
- Linehan, Marsha M., *Cognitive Behavioral Treat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New York: Guilford Press, 1993.
- McCarthy, Conor. "The Rome Statute's Regime of Victim Redress: Challenges and Prospects." in Carsten Stahn. *The Law and Practic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 Moffett, Luke. *Justice for Victims before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London: Routledge, 2015.

- Mollica, Richard F. "The trauma story: the psychiatric care of refugee survivors of violence and torture." Ochberg Frank ed. *Post-traumatic therapy and victims of violence*. London: Routledge, 1988.
- Morris, Virginia and Michael P. Scharf. *An Insider's Guide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A Documentary History and Analysis*. New York: Transnational Publishers, 1995.
- Najavits, L. M. *Seeking safety: A Treatment manual for PTSD and substance abuse*. New York: Guilford Press, 2002.
- Ogden, Pat. "Emotion, mindfulness and movement: Expanding the regulatory boundaries of the window of tolerance." D. F. Siegal and M. Solomon eds. *The healing power of emotion: Perspectives from affective neuroscience and clinical practice*. New York: W.W.Norton&Company, 2009.
- Randelzhofer, Albrecht and Christian Tomuschat eds. *State Responsibility and the Individual: Reparation in Instances of Grave Violations of Human Rights*. Leide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9.
- Segal, Z. V., J. M. G. Williams, and J. D. Teasdale. *Mindfulness- based cognitive therapy for depression: A new approach to relapse prevention*. New York: Guilford Press, 2002.
- Siegel, Daniel J. *The Developing Mind: How relationships and the brain interact to shape who we are*. New York: Guilford Press, 1999.
- Van der Kolk, Bessel A., Alexander C. McFarlane, and Lars Weisaeth. *Traumatic stress: The effects of overwhelming experience on mind, body, and society*. New York: Guilford Press, 2012.
- Wemmers, Jo-Anne M. *Reparation for Victims of Crimes against Humanity: The healing role of reparation*. London: Routledge, 2016.

Witterholt, S. and M. Jaranson. "Treating torture victims on site: osinian refugees in Croatia." J. Jaranson and M. Popkin eds. *Caring for victims of tortur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1988.

<북한 자료>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2판.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7.

법률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증보판)』. 평양: 법률출판사, 2016.

2. 논문

강성록. "탈북자의 외상척도 개발연구."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강용주. "민주, 인권, 평화도시 광주." 『문화, 인권, 삶 그리고 광주』. 광주: 2014년도 제8기 광주정신계승 시민대학, 광주광역시, 지역문화교류 호남재단, 2014.

강윤주. "통일 법제 마련에 있어 국제법상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구현의 필요성." 『2016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세종: 법제처, 2016.

강준구. "체제불법 청산과 통일독일의 피해자 구제제도." 『헌법과 통일법』. 제3호, 서울대 헌법·통일법센터, 2013.

곽해룡.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문제에 관한 연구: 인권적 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김인수. "매장문화재 조사기법을 적용한 전사자 유해 발굴." 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08.

김한균. "대한민국의 과거·불법청산." 김한균 외. 『통일시대의 형사정책과 형사사법통합 연구(II): 통일시대의 과거·불법청산 및 사회통합 방안의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김희경. "북한이탈주민의 외상유형에 따른 복합 PTSD와 PTSD증상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31권 4호, 한국심리학회, 2012.

김희경·오수성. "탈북여성의 MMPI-2 프로파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29권 1호. 한국심리학회, 2010.

노성숙. "5·18 트라우마와 치유." 『신학전망』. 제194권, 광주카톨릭대학교, 2016.

- 노용석. “라틴 아메리카의 과거청산과 유해 발굴: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사례를 중심으로.” 『이베로아메리카』. 제12권 2호, 부산: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2010.12.
- 박선주.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67년만의 귀향』. 서울: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대한민국 역사박물관, 2017.
- 박철옥·안현의. “복합외상경험자의 자기의 회복과정.” 『상담학연구』. 제17권 6호, 한국상담학회, 2016.
- 변주나·정남옥·유양경. “탈북자 고문 후유장애 실태.” 『스트레스 연구』. 제14권 1호, 대한스트레스학회, 2006.
- 신보경. “캄보디아와 증언치료요법.” 『캄보디아 킬링필드를 통하여 보는 인간 치유의 길(2016 제50회 KPI평화포럼 자료집)』. 서울: 한반도평화연구원, 2016.
- 안현의. “복합외상의 개념과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26권 1호, 한국심리학회, 2007.
- 오수성·신현균·조용범. “5·18 피해자들의 만성 외상 후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25권 2호, 한국심리학회, 2006.
- 유시은.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북한경제리뷰』. 제17권 4호, KDI, 2015.
- 유정자. “재중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보호기관 대상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통일학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2006.
- 이규창. “북한 경제법령상의 분쟁해결제도 분석과 평가: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신·구 조문 비교를 중심으로.” 『북한법령 연구』. 과천: 법무부, 2012.
- _____. “집단살해죄의 주관적 구성요건과 북한인권.” 『통일과 법률』. 제29호, 법무부, 2017.
- 이나빈·민정아·채정호. “캄보디아인의 집단외상과 정신건강.” *Anxiety and Mood*. 제8권 2호, 2012.
- 이영환. “북한인권과 전환기 정의.” 『북한인권 이슈브리프 01: 북한인권의 현황과 전망』. 서울: 한국인권재단, 2016.
- 이용화. “국내 정착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실태와 개선방안.” 『통일경제』. 제1권, 2012.
- 이은아. “트라우마 상담모형: 단계별 치유기제 및 기법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 『상담학연구』. 제16권 3호, 한국상담학회, 2015.
- 이진국. “국제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배상의 가능성과 한계.” 『형사정책연구』. 제26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 이창호·정승용·전우택. “고문에 대한 정신의학적 고찰.” 『신경정신의학』. 제42권 2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03.
- 이효원. “통일 이후 북한의 체제불법에 대한 극복방안.” 『법학』. 제51권 4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임예준.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책임의 국가승계: 이론적 쟁점에 대한 소고” 『국제법학회논총』. 제61권 4호, 대한국제법학회, 2016.
- 임채도. “고문피해자 인권상황과 트라우마 치유.” 인권의학연구소·올바른 과거 청산 단체협의회.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보상·치유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자료집』. 2012.11.19.
- 장복희. “동아시아지역에서의 무력충돌의 성폭력 희생자들에 대한 법적 보상·배상.” 『인도법논총』. 제34호, 대한적십자사, 2014.
- 전우택. “사회적 트라우마와 치유: 캄보디아 사례를 중심으로.” 『캄보디아 킬링 필드를 통하여 보는 인간치유의 길(제50회 KPI평화포럼 자료집)』. 서울: 한반도 평화연구원, 2016.
- 정윤경·김희진. “북한이탈주민의 외상경험과 적응의 관계: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매개효과 분석.” 『사회복지연구』. 제45권 4호,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4.
- 정홍주 외. “한국전쟁전후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 및 가족의 심리적 트라우마.” 『민주주의와 인권』. 제15권 3호, 5·18 연구소, 2015.
- 조상혁.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문제: 현황과 지원.” 전남대학교 정치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 조영아·김연희. “초기거주 북한이탈여성의 정신건강 고위험군 예측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5권 3호, 한국심리학회, 2010.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제주 4·3 생존희생자 및 유가족 정신 건강 실태조사 보고서』.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2015.
- 최현정·이훈진·이화영. “고문 생존자의 외상기억표상의 특성과 외상 후 심리적 증상과의 관계.” 『스트레스 연구』. 제14권 1호, 대한스트레스학회, 2006.

- _____ . “고문피해자의 정신과적 진단 실태.” 『신경정신의학』. 제51권 3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12.
- 하지현. “북한이탈주민의 정서적 소통방법.” 『통일인문학 논총』. 제53권, 통일인문학연구단, 2012.
- 한동훈. “정치적 피해자에 대한 사법적 회복.” 『통일법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쟁점과 과제』.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 주최 학술회의 자료집, 2016.09.09.
- 한면수. “DNA 신원확인정보에 의한 독립유공자 후손 확인 사례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vol. 70, 서울: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2.03.
- 홍창형 외.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3년 추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제45권 1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06.
- Agger, I. and S. Jensen. “Testimony as ritual and evidence in psychotherapy for political refugee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vol. 3, no. 1. 1990.
- _____ *et al.* “Testimony ceremonies in Asia: Integrating spirituality in testimonial therapy for torture survivors in India, Sri Lanka, Cambodia and the Philippines.” *Transcultural Psychiatry*. vol. 49, no. 3~4. 2012.
- _____ . “Testimony Therapy of Torture Survivors in Asia. Seminar presentation at Yonsei University.” May, 2016.
- Barel, Efrat, M. H. Van IJzendoorn, A. Sagi-Schwartz, and M. J. Bakermans-Kranenburg. “Surviving the Holocaust: A meta-analysis of the long-term sequelae of a genocide.” *Psychological Bulletin*. vol. 136, no. 5. 2010.
- Carlson, Eve Bernstein and R. Rosser-Hogan. “Cross-cultural response to trauma: A study of traumatic experiences and posttraumatic symptoms in Cambodian refugee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vol. 7, no. 1. 1994.
- Chhim, Sotheara. “TPO의 증언치료 안내서-크메르 루즈 학살 생존자를 위한 문화적 관점이 반영된 트라우마 치료.” 『2013 국가폭력과 트라우마

국제회의』. 5·18기념재단 주최 2013 국가폭력과 트라우마 국제회의 자료집, 2013.05.16.

- Cienfuegos, A. and C. Monelli. "The testimony of political repression as a therapeutic instrument." *American Orthopsychiatric Association*. vol. 53, no. 1. 1983.
- Courtiois, Christine A. "Complex trauma, complex reactions: Assessment and treatment."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vol. 41. 2004.
- Danieli, Yael. "Reappraising the Nuremberg Trials and their Legacy: The Role of Victims in International Law." *Cardozo Law Review*. vol. 27, issue. 4. 2006.
- Ferstman, Carla. "The Reparation Regim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Practical Considerations." *Leide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5, no. 3. 2002.
- Fleming, Jillian, Paul E. Mullen, B. Sibthorpe, and G. Bammer. "The long-term impact of childhood sexual abuse in Australian women." *Child Abuse & Neglect*. vol. 23, no. 2. 1999.
- Foa, Edna B. "Psychological processes related to recovery from a trauma and an effective treatment for PTSD." *Annual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vol. 821, no. 1. 2008.
- Hinton, Devon E., A. Rasmussen, L. Nou, M. H. Pollack, and M. J. Good. "Anger, PTSD, and the nuclear family: A study of Cambodian refugees." *Social Science & Medicine*. vol. 69, no. 9. 2009.
- Johnson, Howard and Andrew Thompson. "The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in civilian adult survivors of war trauma and torture: A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vol. 28, no. 1. 2008.
- Kessler, Ronald C., Amanda Sonnega, Evelyn Bromet, M. Huges, and N. B. Nelso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vol. 52. 1995.

- Koettl, Christoph. "Sensors Everywhere: Using Satellites and Mobile Phones to Reduce Information Uncertainty in Human Rights Crisis Research." *Genocide Studies and Prevention: An International Journal*. vol. 11, issue. 1. 2017. <<http://scholarcommons.usf.edu/gsp/vol11/iss1/7>>.
- Lebowitz, Leslie and Elana Newman. "The role of cognitive-affective themes in the assessment and treatment of trauma reactions."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vol. 3, no. 3. 1996.
- Megret, Frederic. "Justifying Compensation by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s Victims Trust Fund: Lessons from Domestic Compensation Schemes." *Brookly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36, issue. 1. 2010.
- Mollica, Richard F., G. Wyshak, and J. Lavelle. "The psychosocial impact of war trauma and torture on Southeast Asian refugees."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 144, no. 12. 1987.
- Mollica, Richard F., K. Donelan, S. Tor, J. Lavelle, C. Elias, M. Frankel, and R. Blendon. "The effect of trauma and confinement on functional health and mental health status of Cambodians living in Thailand-Cambodia border camps." *JAMA*. vol. 270, no. 5. 1993.
- Murthy, R. Srinivasa and Rashmi Lakshminarayana. "Mental health consequences of war: a brief review of research findings." *World Psychiatry*. vol. 5, no. 1. 2006.
- Robjant, K. and M. Fazel. "The emerging evidence for narrative exposure therapy: A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vol. 30, no. 8. 2010.
- Steel, Zachary *et al.* "Association of torture and other potentially traumatic events with mental health outcomes among populations exposed to mass conflict and displacement: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AMA*. vol. 302, no. 5. 2009.

- Torne, Carlos Fernandez. "Truth Commissions and the Accountability Relationships They Generate: A New Framework to Evaluate Their Impact." *Asian Journal of Peacebuilding*. vol. 3, no. 2. 2015.
-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Final Report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Lima, 2003.
- Van der Kolk, Bessel A. and Christine A. Courtios. "Editorial comments: complex developmental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vol. 18. 2005.
- Walker, James. "Remote Sensing and Mass Graves Detection 101." *Lemming Cliff*. February 27, 2017.

3. UN자료

- Address to the UN Security Council by Carla del Ponte, Prosecutor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for the Former Yugoslavia and Rwanda, ICTY Doc. JL/P.I.S./542-e. 21 November 2000.
-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s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UN Doc. A/RES/60/147. 21 March 2006.
- Committee against Torture, General Comment No. 3. UN Doc. CAT/C/GC/3. 19 November 2012.
- 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 UN Doc. A/RES/40/34. 29 November 1985.
- Disappearance (Crime and Punishment) Act 2066. <<http://nefad.files.wordpress.com/2012/01/disappearance-bill.pdf>>.
-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No. 31. UN Doc. CCPR/C.21/Rev.1/Add.13. 26 May 2004.
-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Bulletin (1996). Twin Tribunals ICTY9/10, 14-VIII-1996.

- Institute de Droit International. *State Succession in Matters of State Responsibility: Final Report*. Ghent: IDI, 2015.
-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Crimes against humanity: Texts and titles of the draft preamble, the draft articles and the draft annex provisionally adopted by the Drafting Committee on first reading*. UN Doc. A/CN.4/L.892. 26 May 2017.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Manfred Nowak. UN Doc. A/HRC/4/33. 15 January 2007.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of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 UN Doc. A/69/518. 14 October 2014.
- Resolution ICC-ASP/1/Res.6. 9 September 2002.
- Resolution ICC-ASP/4/Res.3. 3 December 2005.
- Situation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in the Case of *The Prosecutor v. Thomas Lubanga Dyilo*. Trial Chamber I. Judgment pursuant to article 74 of the Statute. ICC-01/04-01/06. 14 March 2012.
- Situation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in the Case of *The Prosecutor v. Thomas Lubanga Dyilo*. Trial Chamber I. Scheduling order concerning timetable for sentencing and reparations. ICC-01/04-01/06. 14 March 2012.
- Situation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in the Case of *The Prosecutor v. Thomas Lubanga Dyilo*. Trial Chamber I. First Report to the Trial Chamber on applications for reparations. ICC-01/04-01/06. 28 March 2012.
- Situation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in the Case of *The Prosecutor v. Thomas Lubanga Dyilo*. Trial Chamber I. Observations on the sentence and reparations by Victims a/0001/06, a/0003/06, a/0007/06, a/00049/06, a/0149/07, a/0155/07, a/0156/07, a/0162/07, a/0149/08, a/0404/08,

- a/0405/08, a/0406/08, a/0407/08, a/0409/08, a/0523/08, a/0610/08, a/0611/08, a/0053/09, a/0249/09, a/0292/09, a/0398/09 and a/1622/10, ICC-01/04-01/06. 18 April 2012.
- Situation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in the Case of *The Prosecutor v. Thomas Lubanga Dyilo*. Trial Chamber I. Decision on Sentence pursuant Article 76 of the Statute. ICC-01/04-01/06. 10 July 2012.
- Situation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in the Case of *The Prosecutor v. Thomas Lubanga Dyilo*. Trial Chamber I. Decision establishing the principles and procedures to be applied to reparations. ICC-01/04-01/06. 7 August 2012.
- Situation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in the Case of *The Prosecutor v. Thomas Lubanga Dyilo*. The Appeals Chamber, Judgment on the appeals against the “Decision establishing the principles and procedures to be applied to reparations” of 7 August 2012 with AMENDED order for reparations (Annex A) and public annexes 1 and 2. ICC-01/04-01/06 A A 2 A 3. 3 March 2015.
- Situation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in the Case of *The Prosecutor v. Thomas Lubanga Dyilo*. Trial Chamber II. Filing regarding symbolic collective reparations projects with Confidential Annex: Draft Request for Proposals. ICC-01/04-01/06-3223-Conf. ICC-01/04-01/06. 19 September 2016.
- Situation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in the Case of *The Prosecutor v. Germain Katanga*. Trial Chamber II. Order for reparations pursuant to Article 75 of the Statute with one public annex (Annex I) and one confidential annex *ex parte*. Common Legal Representative of the Victims, Office of Public Counsel for Victims and Defence team for Germain Katanga (Annex II). ICC-01/04-01/07. 24 March 2017.
- Situation in the Republic of Mali in the Case of *The Prosecutor v. Ahmad Al Faqi Al Mahdi*. Trial Chamber VIII. Reparations Order.

- ICC-01/12-01/15. 17 August 2017.
- UN Doc. A/HRC/25/CPR.1. 7 February 2014.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UN Doc. A/HRC/25/63. 7 February 2014.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UN Doc. S/RES/827. 25 May 1993.
- UN Doc. S/2000/1063. 2 November 2000.
- UN Doc. S/2000/1198. 15 December 2000.
- UN Doc. S/2010/588. 19 November 2010.
- UN General Assembly. *Official Records*. Fifty-fifth Session, Supplement no. 10. UN Doc. A/56/10.
- UN Human Rights Office. "Victims' voices for truth and justice merit a response." OHCHR-Nepal, Media Advisory, 14 June 2011. <http://nepal.ohchr.org/en/resources/Documents/English/pressreleases/Year%202011/June/2011_06_14_Media_Advisory_Victims_voices_for_truth_n_justice_E.pdf>.
- United Nations.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General Assembly Official Records Seventy-second Session Supplement No. 10*. New York: United Nations, 2017. UN Doc. A/72/10.

4. 기타자료

- 『동아일보』.
- 『법률신문』.
- 『서울경제』.
- 『신동아』.
- 『연합뉴스』.
- 『제주신보』.

『JTBC』.

Lemming Cliff.

Mental Floss.

<<http://cverdad.org.pe>>.

<<http://pasthistory.go.kr>>.

<<http://www.forensic-architecture.org>>.

<<http://www.spo.go.kr>>.

<<http://www.trustfundforvictims.org>>.

<<http://www.unitar.org>>.

<<http://www.yazda.org>>.

<<https://kolas.go.kr>>.

<<https://medium.com>>.

<<https://www.icmp.int>>.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구제”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검색일: 2017.07.07.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전자자 유해의 합리적 관리 및 신원확인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연구수행기관: NARU컨설팅, 2015.12.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기관(DPAA) 진주현 박사(법의인류학자) 인터뷰 (2017.04.11., 통일연구원).

이예영. “집단살해죄의 구성요건과 북한인권침해 책임규명에 대한 지정토론문.” 대법원 통일사법연구위원회. 제39차 회의자료, 2017.05.22.

이효원. “통일국가의 사회통합방안.” 통일연구원 비공개 자문회의, 2017.06.09.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새라 손 연구팀장 - 이란을위한정의 Shadi Sadr 대표 인터뷰, 2016.07.21., <<http://justiceforiran.org>>.

부록: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s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United Nations

A/RES/60/147



General Assembly

Distr.: General
21 March 2006

Sixtieth session
Agenda item 71 (a)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16 December 2005

[on the report of the Third Committee (A/60/509/Add.1)]

**60/147.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 General Assembly,

Guided by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¹ the International Covenants on Human Rights,² other relevant human rights instruments and the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³

Affirming the importance of addressing the question of remedies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 a systematic and thorough way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Recognizing that, in honouring the victims' right to benefit from remedies and reparat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keeps faith with the plight of victims, survivors and future human generations and reaffirms international law in the field,

Recalling the adoption of the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by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in its resolution 2005/35 of 19 April 2005⁴ and by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in its resolution 2005/30 of 25 July 2005, in which the Council recommended to the General Assembly that it adopt the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1. *Adopts* the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nexed to the present resolution;

¹ Resolution 217 A (III).

² Resolution 2200 A (XXI), annex.

³ A/CONF.157/24 (Part I), chap. III.

⁴ See *Official Records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2005, Supplement No. 3* and corrigendum (E/2005/23 and Corr.1), chap. II, sect. A.

05-49642

2. *Recommends* that States take the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into account, promote respect thereof and bring them to the attention of members of the executive bodies of government, in particular law enforcement officials and military and security forces, legislative bodies, the judiciary, victims and their representatives, human rights defenders and lawyers, the media and the public in general;

3. *Requests* the Secretary-General to take steps to ensure the widest possible dissemination of the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in all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United Nations, including by transmitting them to Governments and inter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by including the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in the United Nations publication entitled *Human Rights: A Compilation of International Instruments*.

64th plenary meeting
16 December 2005

Annex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Preamble

The General Assembly,

Recalling the provisions providing a right to a remedy for victims of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found in numerous international instruments, in particular article 8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¹ article 2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² article 6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³ article 14 of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⁴ and article 39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⁵ and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s found in article 3 of the Hague Convention respecting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of 18 October 1907 (Convention IV),⁶ article 91 of the Protocol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and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Protocol I) of 8 June 1977,⁷ and articles 68 and 75 of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⁸

¹ Resolution 2106 A (XX), annex.

²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1465, No. 24841.

³ *Ibid.*, vol. 1577, No. 27531.

⁴ Se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The Hague Conventions and Declarations of 1899 and 1907*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15).

⁵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1125, No. 17512.

⁶ *Official Records of the United Nations Diplomatic Conference of Plenipotentiaries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Rome, 15 June–17 July 1998*, vol. 1: *Final documents*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021.5), sect. A.

Recalling the provisions providing a right to a remedy for victims of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found in regional conventions, in particular article 7 of the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¹¹ article 25 of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¹² and article 13 of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¹³

Recalling the 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 emanating from the deliberations of the Seventh United Nations Congress on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Treatment of Offenders and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0/34 of 29 November 1985 by which the Assembly adopted the text recommended by the Congress,

Reaffirming the principles enunciated in the 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 including that victims should be treated with compassion and respect for their dignity, have their right to access to justice and redress mechanisms fully respected, and that the establishment, strengthening and expansion of national funds for compensation to victims should be encouraged, together with the expeditious development of appropriate rights and remedies for victims,

Noting that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requires the establishment of "principles relating to reparations to, or in respect of, victims, including restitution,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 requires the Assembly of States Parties to establish a trust fund for the benefit of victims of crim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and of the families of such victims, and mandates the Court "to protect the safety, physic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dignity and privacy of victims" and to permit the participation of victims at all "stages of the proceedings determined to be appropriate by the Court",

Affirming that the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contained herein are directed at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hich, by their very grave nature, constitute an affront to human dignity,

Emphasizing that the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contained herein do not entail new international or domestic legal obligations but identify mechanisms, modalities, procedures and methods for the implementation of existing legal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hich are complementary though different as to their norms,

Recalling that international law contains the obligation to prosecute perpetrators of certain international crime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obligations of States and the requirements of national law or as provided for in the applicable statutes of international judicial organs, and that the duty to prosecute reinforces the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to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egal requirements and procedures and supports the concept of complementarity,

¹¹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1520, No. 26365.

¹² *Ibid.*, vol. 1144, No. 17955.

¹³ *Ibid.*, vol. 213, No. 2889.

Noting that contemporary forms of victimization, while essentially directed against persons, may nevertheless also be directed against groups of persons who are targeted collectively,

Recognizing that, in honouring the victims' right to benefit from remedies and reparat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keeps faith with the plight of victims, survivors and future human generations and reaffirms the international legal principles of accountability, justice and the rule of law,

Convinced that, in adopting a victim-oriented perspectiv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ffirms its human solidarity with victims of violations of international law, including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s well as with humanity at large,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Adopts the following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I. Obligation to respect, ensure respect for and implement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1. The obligation to respect, ensure respect for and implement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s provided for under the respective bodies of law emanates from:

- (a) Treaties to which a State is a party;
- (b) Customary international law;
- (c) The domestic law of each State.

2. If they have not already done so, States shall, as required under international law, ensure that their domestic law is consistent with their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by:

(a) Incorporating norm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to their domestic law, or otherwise implementing them in their domestic legal system;

(b) Adopting appropriate and effectiv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other appropriate measures that provide fair, effective and prompt access to justice;

(c) Making available adequate, effective, prompt and appropriate remedies, including reparation, as defined below;

(d) Ensuring that their domestic law provides at least the same level of protection for victims as that required by their international obligations.

II. Scope of the obligation

3. The obligation to respect, ensure respect for and implement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s provided for under the respective bodies of law, includes, *inter alia*, the duty to:

(a) Take appropriat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and other appropriate measures to prevent violations;

(b) Investigate violations effectively, promptly, thoroughly and impartially and, where appropriate, take action against those allegedly responsible in accordance wi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

(c) Provide those who claim to be victims of a human rights or humanitarian law violation with equal and effective access to justice, as described below, irrespective of who may ultimately be the bearer of responsibility for the violation; and

(d) Provide effective remedies to victims, including reparation, as described below.

III.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at constitute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4. In case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constituting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States have the duty to investigate and, if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the duty to submit to prosecution the person allegedly responsible for the violations and, if found guilty, the duty to punish her or him. Moreover, in these cases, States shoul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cooperate with one another and assist international judicial organs competent in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these violations.

5. To that end, where so provided in an applicable treaty or under other international law obligations, States shall incorporate or otherwise implement within their domestic law appropriate provisions for universal jurisdiction. Moreover, where it is so provided for in an applicable treaty or other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States should facilitate extradition or surrender offenders to other States and to appropriate international judicial bodies and provide judicial assistance and other forms of cooperation in the pursuit of international justice, including assistance to, and protection of, victims and witnesses,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egal standards and subject to international legal requirements such as those relating to the prohibition of torture and other forms of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IV. Statutes of limitations

6. Where so provided for in an applicable treaty or contained in other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statutes of limitations shall not apply to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hich constitute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7. Domestic statutes of limitations for other types of violations that do not constitute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ose time limitations applicable to civil claims and other procedures, should not be unduly restrictive.

V.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8. For purposes of the present document, victims are persons who individually or collectively suffered harm, including physical or mental injury, emotional suffering, economic loss or substantial impairment of their fundamental rights, through acts or omissions that constitute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or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here appropriate, and in accordance with domestic law, the term "victim" also includes the immediate family or dependants of the direct victim and persons who have suffered harm in intervening to assist victims in distress or to prevent victimization

9. A person shall be considered a victim regardless of whether the perpetrator of the violation is identified, apprehended, prosecuted, or convicted and regardless of the famil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erpetrator and the victim.

VI. Treatment of victims

10. Victims should be treated with humanity and respect for their dignity and human rights, and appropriate measures should be taken to ensure their safety, physic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nd privacy, as well as those of their families. The State should ensure that its domestic laws, to the extent possible, provide that a victim who has suffered violence or trauma should benefit from special consideration and care to avoid his or her re-traumatization in the course of legal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designed to provide justice and reparation.

VII. Victims' right to remedies

11. Remedies for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clude the victim's right to the following as provided for under international law:

- (a) Equal and effective access to justice;
- (b) Adequate, effective and prompt reparation for harm suffered;
- (c) Access to relevant information concerning violations and reparation mechanisms.

VIII. Access to justice

12. A victim of a gross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or of a serious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hall have equal access to an effective judicial remedy as provided for under international law. Other remedies available to the victim include access to administrative and other bodies, as well as mechanisms, modalities and proceeding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domestic law. Obligations arising under international law to secure the right to access justice and fair and impartial proceedings shall be reflected in domestic laws. To that end, States should:

- (a) Disseminate, through public and private mechanisms, information about all available remedies for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 (b) Take measures to minimize the inconvenience to victims and their representatives, protect against unlawful interference with their privacy as appropriate and ensure their safety from intimidation and retaliation, as well as that of their families and witnesses, before, during and after judicial, administrative, or other proceedings that affect the interests of victims;
- (c) Provide proper assistance to victims seeking access to justice;
- (d) Make available all appropriate legal, diplomatic and consular means to ensure that victims can exercise their rights to remedy for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or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13. In addition to individual access to justice, States should endeavour to develop procedures to allow groups of victims to present claims for reparation and to receive reparation, as appropriate.

14. An adequate, effective and prompt remedy for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or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hould include all available and appropriate international processes in which a person may have legal standing and should be without prejudice to any other domestic remedies.

IX. Reparation for harm suffered

15. Adequate, effective and prompt reparation is intended to promote justice by redressing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or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Reparation should be proportional to the gravity of the violations and the harm suffered. In accordance with its domestic laws and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a State shall provide reparation to victims for acts or omissions which can be attributed to the State and constitute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or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 cases where a person, a legal person, or other entity is found liable for reparation to a victim, such party should provide reparation to the victim or compensate the State if the State has already provided reparation to the victim.

16. States should endeavour to establish national programmes for reparation and other assistance to victims in the event that the parties liable for the harm suffered are unable or unwilling to meet their obligations.

17. States shall, with respect to claims by victims, enforce domestic judgements for reparation against individuals or entities liable for the harm suffered and endeavour to enforce valid foreign legal judgements for reparation in accordance with domestic law and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To that end, States should provide under their domestic laws effective mechanisms for the enforcement of reparation judgements.

18. In accordance with domestic law and international law, and taking account of individual circumstances,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hould, as appropriate and proportional to the gravity of the violation and the circumstances of each case, be provided with full and effective reparation, as laid out in principles 19 to 23, which include the following forms: restitution, compensation, rehabilitation, satisfaction and guarantees of non-repetition.

19. *Restitution* should, whenever possible, restore the victim to the original situation before the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or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occurred. Restitution includes, as appropriate: restoration of liberty, enjoyment of human rights, identity, family life and citizenship, return to one's place of residence, restoration of employment and return of property.

20. *Compensation* should be provided for any economically assessable damage, as appropriate and proportional to the gravity of the violation and the circumstances of each case, resulting from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uch as:

- (a) Physical or mental harm;
- (b) Lost opportunities, including employment, education and social benefits;
- (c) Material damages and loss of earnings, including loss of earning potential;
- (d) Moral damage;

- (e) Costs required for legal or expert assistance, medicine and medical services, and psychological and social services.
21. *Rehabilitation* should include medical and psychological care as well as legal and social services.
22. *Satisfaction* should include, where applicable, any or all of the following:
- (a) Effective measures aimed at the cessation of continuing violations;
 - (b) Verification of the facts and full and public disclosure of the truth to the extent that such disclosure does not cause further harm or threaten the safety and interests of the victim, the victim's relatives, witnesses, or persons who have intervened to assist the victim or prevent the occurrence of further violations;
 - (c) The search for the whereabouts of the disappeared, for the identities of the children abducted, and for the bodies of those killed, and assistance in the recovery, identification and reburial of the bodies in accordance with the expressed or presumed wish of the victims, or the cultural practices of the families and communities;
 - (d) An official declaration or a judicial decision restoring the dignity, the reputation and the rights of the victim and of persons closely connected with the victim;
 - (e) Public apology, including acknowledgement of the facts and acceptance of responsibility;
 - (f) Judicial and administrative sanctions against persons liable for the violations;
 - (g) Commemorations and tributes to the victims;
 - (h) Inclusion of an accurate account of the violations that occurred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raining and in educational material at all levels.
23. *Guarantees of non-repetition* should include, where applicable, any or all of the following measures, which will also contribute to prevention:
- (a) Ensuring effective civilian control of military and security forces;
 - (b) Ensuring that all civilian and military proceedings abide by international standards of due process, fairness and impartiality;
 - (c) Strengthening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 (d) Protecting persons in the legal, medical and health-care professions, the media and other related professions, and human rights defenders;
 - (e) Providing, on a priority and continued basis,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education to all sectors of society and training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as well as military and security forces;
 - (f) Promoting the observance of codes of conduct and ethical norms, in particular international standards, by public servants, including law enforcement, correctional, media, medical, psychological, social service and military personnel, as well as by economic enterprises;
 - (g) Promoting mechanisms for preventing and monitoring social conflicts and their resolution]

(h) Reviewing and reforming laws contributing to or allowing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X. Access to relevant information concerning violations and reparation mechanisms

24. States should develop means of informing the general public and, in particula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of the rights and remedies addressed by these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and of all available legal, medical, psychological, social, administrative and all other services to which victims may have a right of access. Moreover, victims and their representatives should be entitled to seek and obtain information on the causes leading to their victimization and on the causes and conditions pertaining to the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to learn the truth in regard to these violations.

XI. Non-discrimination

25. The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se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must be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be without any discrimination of any kind or on any ground, without exception.

XII. Non-derogation

26. Nothing in these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shall be construed as restricting or derogating from any rights or obligations arising under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 In particular, it is understood that the present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are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all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t is further understood that these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are without prejudice to speci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XIII. Rights of others

27. Nothing in this document is to be construed as derogating from internationally or nationally protected rights of others, in particular the right of an accused person to benefit from applicable standards of due process.

KINU 통일포럼 시리즈

- 2015-01 제7차 KINU 통일포럼: 동북아 국제질서 전환기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와 통일·외교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 2015-04 제10차 KINU 통일포럼: 통일담론 3.0과 북한 변화 전략 통일연구원
- 2015-05 제11차 KINU 통일포럼: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대내외 정책 평가와 전망 통일연구원
- 2016-01 제12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방향 통일연구원
- 2016-02 제13차 KINU 통일포럼: 북한 제7차 당대회 분야별 평가 및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 2016-03 제14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한국의 북한인권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통일나침반

- 2015-01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 북한연구센터 신년사 분석팀
- 2015-02 최근 2년 간 마일중력 4개국 정상외교 분석 및 한국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김진하 외
- 2015-03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한동호, 도경욱
- 2015-04 북한 외화벌이 추세와 전망 김석진
- 2015-05 연해주 지역 북한 노동자의 실태와 인권 이애리아, 이창호
- 2015-05 The Reality and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Workers in the Maritime Province of Russia Lee Aeliah
- 2016-01 효율적 대북제재: 데이터 분석과 함의 이 석
- 2016-02 2016년 북한 신년사 분석 김갑식 외
- 2016-03 4차 북핵실험 이후 대북정책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 2016-04 4차 북핵실험 이후 정세 전개와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 2016-05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반도 정세 및 대응 방안 통일연구원 북핵대응 T/F팀
- 2016-06 4차 북핵실험 이후 미중관계와 대북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대외협력팀
- 2017-01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관련 주요 발언 통일연구원
- 2017-02 2017년 북한 신년사 분석 홍 민 외

통일플러스

- 2015-01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1 (봄호) 통일연구원
- 2015-02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2 (여름호) 통일연구원
- 2015-03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3 (가을호) 통일연구원
- 2015-04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4 (겨울호) 통일연구원
- 2016-01 KINU 통일 + Vol.2 No. 1 (봄호) 통일연구원
- 2016-02 KINU 통일 + Vol.2 No. 2 (여름호) 통일연구원
- 2016-03 KINU 통일 + Vol.2 No. 3 (가을호) 통일연구원

KINU Insight

2017-01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주요 활동 분석	홍민
2017-02 중국의 19차 당 대회 평가와 정책적 고려사항	전병곤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5	도경옥 외	19,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5</i>	도경옥 외	23,000원
북한인권백서 2016	도경옥 외	18,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6</i>	도경옥 외	22,500원
북한인권백서 2017	도경옥 외	2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7</i>	도경옥 외	24,500원

연구보고서

2015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5-01 김정은 정권의 정치체제: 수령제, 당-정-군 관계, 권력엘리트의 지속성과 변화	김갑식 외	9,000원
2015-02 북한의 시장화와 사회적 모빌리티: 공간구조-도시정치-계층변화	홍민	13,000원
2015-03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교육과정·교과서	조정아 외	13,500원
2015-04 2015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인식, 요인, 범주, 유형	박종철 외	16,500원
2015-05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추진을 위한 다자주의적 접근	현승수 외	8,000원
2015-06 북한주민의 임파워먼트: 주체의 동력	박영자 외	10,500원
2015-08 인권개선을 위한 기술협력	한동호 외	6,500원
2015-09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과 대북정책: 사례와 적용	이기현 외	7,500원
2015-10 한반도 중장기 정세 변동 및 정책 도전 관련 요인의 식별(2015~2030)박형중 외	박형중 외	16,500원
2015 '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및 경제공동체 동시 형성방안	손기웅 외	10,500원
2015 2015년 통일예측시계	홍석훈 외	10,000원
2015 남북한 통합과 북한의 수용력: 제도 및 인식 측면	김수암 외	15,500원
2015 북한에 의한 납치 및 강제실종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10,000원
2015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이규창 외	8,000원
2015 통일외교 콘텐츠 개발	김진하 외	9,000원

2015 통일 이후 국가정체성 형성방안: 이론과 사례연구 중심	박종철 외	10,000원
2015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분리 운영방안: 경제적 및 법적 분석	김석진 외	8,000원
2015 한반도 통일의 비용과 편익: 정치사회경제분야	조한범 외	11,500원
2015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역할: 주변 4국과 G20	조한범 외	14,000원
2015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남북중 협력방향 모색(종합요약보고서)	전병곤 외	10,000원
2015 길림성의 대북경제협력 실태 분석: 대북투자를 중심으로	배종렬 외	13,000원
2015 Inter Korean Relations and the Unification Process in Regional and Global Contexts	박종철 외	

■ 정책연구시리즈 ■

2015-01 전환기 쿠바와 북한 비교: 정책적 함의	박영자 외
-------------------------------	-------

■ Study Series ■

2015-01 Tasks and Implementing Strategies of the "Trust-Building" Policy	Park, Young-Ho
2015-02 The Growth of the Informal Economy in North Korea	Kim, Suk-Jin
2015-03 The Experiences of Crossing Boundaries and Reconstruction of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Identities	Cho, Jeong-ah et al.
2015-04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Policie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KINU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Studies

2016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6-01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정성운 외	14,000원
2016-02 일본 아베정권의 대외전략과 대북전략	이기태, 김두승	6,500원
2016-04 과학기술발전과 북한의 새로운 위협: 사이버 위협과 무인기 침투	정구연, 이기태	6,000원
2016-05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및 통일담론: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분석	오경섭, 이경화	8,000원
2016-06 남북통일과 국가재산-채무양허권의 승계	이규창	8,000원
2016-0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주화 외	12,000원
2016-08 대북정책전략 수단 효용성 분석: 이란의 경험과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홍우택 외	7,000원
2016-09 북한 민생경제 진흥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김석진, 홍제환	8,000원
2016-10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	박영자 외	13,000원
2016-11 북한에서 사적경제활동이 공적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조한범 외	9,500원
2016-12 북한인권 제도 및 실태 변화추이 연구	임예준 외	8,500원
2016-13 최근 중동사태에 비추어본 북한 체제지속성 연구	김진하 외	7,000원
2016-14 「그린데탕트」 실천전략: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사업을 중심으로	조한범 외	7,000원
2016-15 Pathways to a Peaceful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도경욱 외	14,000원
2016-16 한중수교이후 북중관계의 발전: 추세분석과 평가	이기현 외	8,000원

2016-17 국내적 통일준비 역량 강화방안	김수암 외	8,500원
2016-18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인식조사	김수암 외	15,000원
2016-19 전환기 남북관계 영향 요인 및 향후 정책 방향	신중호 외	16,500원
2016-20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로마규정 관할범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이규창 외	12,000원
2016-21 2016년 통일예측시계	홍우택 외	7,000원
2016-22 남북한 주민의 통일국가정체성 인식조사	박종철 외	19,000원
2016-23 구술로 본 통일정책사	홍민 외	12,000원
2016-24 북한 전국 시장 정보	홍민 외	13,000원
2016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와 한국의 정책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7,500원
2016 북한의 제4차, 5차 핵실험 이후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통일전략 모색과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	홍석훈 외	9,500원

■ 정책연구시리즈 ■

2016-01 미국 대선 주요 후보의 Think-Tank 및 의회 네트워크 분석	정구연, 민태은
2016-02 대북제재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	신중호 외
2016-03 개성공단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개성공단 운영 11년(2005~2015)의 교훈	임강택, 이강우
2016-04 북한 해외노동자 실태 연구	이상신, 오경섭, 임예준

■ Study Series ■

2016-01 Identifying Driving Forces for Changes and Policy Challenges on the Korean Peninsula (2015-2030)	Park, Hyeong Jung et al.
2016-02 China's Neighborhood Diplomacy and Policies on North Korea: Cases and Application	Lee, Ki-Hyun et al.
2016-03 The Costs and Benefits of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Areas	Cho, Han-Bum et al.
2016-04 Development of Unification Diplomacy Contents	Kim, Jin-Ha
2016-05 South and North Korean Integration and North Korea's Adaptability: From the Perceptive Point of View	Kim, Soo-Am et al.

2017년도 연구보고서

■ 정책연구시리즈 ■

2017-01 지속가능한 통일대북정책: 환경 분석과 추진방향	이규창 외
2017-02 통일국민협약 추진방안	조한범, 이우태
2017-03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서독정부의 대동독정책 연구	이상신 외
2017-04 대북제재 국면에서 남북교류협력 추진 방안	임강택, 홍제환
2017-0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이규창 외

■ 연구총서 ■

2017-01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 인도에 반한 죄를 중심으로 - 이규창 외 11,500원

■ Study Series ■

2017-01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Nuclear Advancement and Response Measures
Chung, Sung-Yoon et al.
2017-02 Study on Changing Trend of Human Rights Institution and Situation in North Korea
Rim, Ye Joon et al.
2017-03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North Korea's Asymmetric Threat:
Rise of Cyber Warfare and Unmanned Aerial Vehicle Chung, Kuyoun-Lee, Kitae
2017-04 Study on North Korean Defectors' Perception about Democracy and the Market
Economy Kim, Soo-Am et al.

연례정세보고서

201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5~2016 8,000원
201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6~2017 8,000원

논문총

통일정책연구, 제24권 1호 (2015)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4, No. 1 (201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4권 2호 (2015)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4, No. 2 (201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5권 1호 (2016)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5, No. 1 (201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5권 2호 (2016)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5, No. 2 (201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6권 1호 (2017)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6, No. 1 (2017) 10,000원

기타

2015 북한교화소 한동호 외
2016 북한 내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한동호 외
2016 Torture and Inhumane Treatment in North Korea Han, Dong-ho et al.
2016 북한 여성·아동 인권 실태 도경옥 외
2016 Human Rights Situation of Women and Children in North Korea Do, Kyung-ok et al.
2016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북한 노동자 이애리아 외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9,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신청서

* 표는 필수항목입니다.

신청자 성명* (입금자가 다를 경우 별도 표기)		소 속*	
간 행 물* 받 을 주 소	(우편번호 :)		※도로명 주소 기입必
연 락 처*	TEL	이메일	
이메일 서비스	수신 ()		수신거부 ()
회 원 구 분*	학생회원 ()	일반회원 ()	기관회원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일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연구원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도서회원 가입 신청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소속, 주소, 연락처, 회원구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금일로부터 1년
※ 회원자격 갱신 시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1년간 연장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도서 회원 가입 및 발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 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보내주시시오.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앞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8, E-Mail: books@kinu.or.kr

※ 온라인 신한은행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통일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범죄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3/5년차)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 인도에 반한 죄를 중심으로 -

